

발 간 등 록 번 호

11-1170000-000320-14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 열 번째 판 -

수정·증보판



일러두기

- * 이 책은 법령문을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작성할 때 참고할 만한 사항들을 종합하여 정리한 것으로, 2023년 12월 발간한 제10판(증보판)의 내용과 사례 등을 일부 수정·보완하였습니다.
- * 이 책의 용어편과 문장편의 각 정비기준은 법령을 알기 쉽게 표현하기 위한 일반적 기준을 정리한 것이므로, 법령을 입안할 때에는 그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 이 책에 수록된 사례는 2025년 12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 조문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몇몇 사례는 이 책의 사용 목적에 맞게 법령 조문을 간결하게 편집하여 사용하거나, 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 이 책에서 언급하는 ‘국어사전’은 ‘표준국어대사전’을 말하고, ‘국어사전적 의미’는 ‘표준국어대사전에 풀이된 의미’를 말합니다.
- * 별책으로 따로 엮은 ‘정비 권고 용어’ 목록에는 2018년부터 집중적으로 발굴한 법령 및 행정규칙 속 어려운 전문용어에 대한 권고안을 다수 추가했습니다. 쉬운 용어로 대체하거나 뜻풀이를 함께 적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마련된 권고안은 여러 전문 분야의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는 데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차례

제1장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소개

제1절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알법) 사업 경과	2
제2절 알법의 필요성	5
제3절 알법의 기본 원칙	6

제2장 | 용어편

제1절 용어 정비의 원칙	10
제2절 용어 정비의 실제	12
1. 어려운 한자어	12
가. 쉬운 말로 고치기	12
나. 쉬운 말로 풀어 쓰기	17
다. 축약어 풀어 쓰기	19
라. 문맥에 따라 고쳐 쓰기	21
마. 설명 붙이기	26
바. 한자를 같이 쓰기	28
사. 바꿀 수 있는 것만이라도 우선 바꾸기	29
아. 한문 투 표현 고치기	31
자. 한자어의 본뜻대로 바르게 쓰기	32
차. 굳어진 용어는 그대로 쓰기	34
2. 일본식 용어	36
가. 일본식 한자어	36
✓ 필수 정비 대상 일본식 한자어 목록	42
나. 일본식 외래어	44
✓ 일본식 외래어 정비 목록	45

3. 전문용어	46
가. 전문용어의 뜻과 정비 필요성	46
나. 전문용어 정비 원칙	46
다. 전문용어 정비 유형 및 예시	47
라. 분야별 전문용어 정비 목록	53
4. 외래어와 외국어	57
가. 외래어와 외국어의 순화 및 정비	57
나. 외래어와 외국어 표기 시 유의사항	60
✓ 틀리기 쉬운 외래어·외국어 표기 목록	63
✓ 외국어 정비사례 목록	63
다. 법령 이름 속의 외국어	64
라. 원어(외국 글자) 표기 시 대문자·소문자 사용법	65
5. 차별적·권위적 용어	66
가. 차별적 용어의 정비	66
✓ 장애 관련 필수 정비 대상 용어 목록	69
나. 권위적 용어의 정비	70
6. 법령문의 관용적 표현 등	72
가. 관용적 표현	72
나. 조사	81
다. 숫자	85
라. 준말과 본딧말	87
마. 통일해서 쓸 용어	89
바. 구별해서 쓸 용어	92
7. 어문 규정	97
가. 띄어쓰기	97
나. 두음법칙	111
다. 문장부호	112

차례

제3장 | 문장편

제1절 문장 정비의 원칙	120
제2절 문장 정비의 실제	121
1. 바른 문장 쓰기	121
가. 주어를 분명히 밝힌다	122
1) 법령 문장에는 원칙적으로 주어를 쓴다	122
2) 주어가 잘 드러나도록 쓴다	126
3) 주격 조사와 보조사를 적절하게 사용한다	128
나. 목적어를 분명히 밝힌다	130
1) 생략된 목적어를 찾아 쓴다	130
2) 목적어의 형태를 갖춘다	131
3) 목적어를 서술어 앞에 둔다	131
4) 목적어를 서술어와 잘 어울리도록 쓴다	132
다.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명확히 한다	133
1) 주어와 서술어를 바르게 쓴 예시	134
2) 서술어를 찾아 쓴 정비사례	134
2. 간결한 문장 쓰기	135
가. 긴 문장은 짧게 나누어 쓴다	135
1) 향으로 나누어 규정하는 경우	135
2) 단서를 두는 경우	142
3) 후단을 두는 경우	144
4) 열거된 사항을 호나 목으로 나누어 규정한 정비사례	145
나.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한다	148
1) 중복되는 표현	148
2) 당연한 내용	150
3) 불필요한 내용	150

3. 명확한 문장 쓰기	152
가. '또는', '및'의 접속 관계를 분명하게 쓴다	152
1) '또는'을 사용하는 경우	152
2) '및'을 사용하는 경우	153
3) '또는'이나 '및'을 사용할 때의 유의사항	154
나. 의미가 불명확한 수식어를 쓰지 않는다	156
다. 중의적, 다의적 표현은 정확한 표현으로 고쳐 쓴다	157
라. 이중 부정문은 되도록 긍정문으로 쓴다	157
마. 지시어의 내용을 직접 쓴다	159
바. 문맥상 필요한 내용을 생략하지 않는다	162
1) 명사가 생략된 경우	162
2) 부사어가 생략된 경우	163
3) 형용사의 어미 등이 생략된 경우	164
4) 필요한 내용이 생략된 경우	165
4. 자연스러운 문장 쓰기	166
가. 되도록 능동문으로 쓴다	166
1) 피동문의 주어를 찾아 쓴 경우	166
2) 이중 피동문을 고쳐 쓴 경우	167
3) 피동문으로 쓰는 경우	168
나. 일본어 투 표현을 쓰지 않는다	169
1) 일본어 투 정비 대상 목록	170
2) 일본어 투 표현의 정비	170
다. 어순을 자연스럽게 한다	196
1) 관형절(구) 어순 정비사례	197
2) 부사절(구) 어순 정비사례	197

차례

5. 한눈에 보이는 문장 쓰기	200
가. 표를 활용한다	200
나. 계산식을 활용한다	201
다. 그림을 활용한다	202
문장의 짜임	203

제4장 | 법령 유형별 작성례

1. 법률 작성례	206
2. 대통령령 작성례	218
3. 부령 작성례	227

제5장 | 어문 규정

1. 한글 맞춤법	236
2. 외래어 표기법	271

별책 부록 | 정비 권고 용어

제1장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소개

제1절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알법) 사업 경과

제2절 | 알법의 필요성

제3절 | 알법의 기본 원칙

알기 쉽고 반듯한 법령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법률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제1절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알법) 사업 경과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한자 문화권에 있었고, 일본법이 도입된 영향으로 우리 법령에는 어려운 한자어와 어색한 일본어 투 표현 등이 많이 있었다. 법제처는 이와 같이 어려운 법령을 국민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법령 용어 순화 사업’과 ‘법률 한글화 사업’을 거쳐 현재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18년부터는 ‘어려운 용어 사전 차단 및 사후 정비’를 도입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법령안 새로 쓰기’를 시작하는 등 여러 경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법령용어 순화 사업’은 1985년부터 2003년까지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에 대한 순화 용어를 마련한 것으로, 법령용어 순화의 기초 자료를 만들었으나, 실제 법령 용어를 순화하는 작업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02년부터 ‘법률 한글화 사업’을 추진, 2004년에 한자로 된 모든 법률을 한글로 바꾸는 「법률 한글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¹⁾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법률의 한글화만으로는 법을 알기 쉽게 하기에는 부족하고 용어 및 문장의 전체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으면서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하였고, 2008년 제17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지난 사업의 취지를 이어받아 2006년부터 추진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법령 속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등의 용어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불필요하거나 복잡한 표현을 정리하는 문장 정비에도 중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5개년 계획’(2006. 5. 30. 국무회의의 보고)을 세워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법제처 주도로 법령을 일반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법률 977건을 알기 쉬운 법률안으로 정비하여 국회에 제출했고 이 중 890건의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 하위법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알기 쉽게 정비했다.

1) 「민법」, 「상법」, 「형법」 등 장기적 연구가 필요한 8건의 법률은 제외하였다.

동시에 법을 입안하는 단계부터 법령이 알기 쉽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2007년부터 법제처에 접수되는 모든 제정법령, 전부개정법령에 대해 상시적인 알법 심사 체계를 구축했고, 법령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법 문장 자체를 쉽고 반듯하며 명확하게 쓰도록 하는 기준을 다시 수립했다. 2014년부터는 법령 속의 비하 표현, 차별적·권위적 법령용어, 전문 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어려운 용어의 정비를 추진하는 등 한층 심화된 사업을 진행했다.

2018년부터는 법령에 여전히 남아 있는 전문용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집중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어려운 용어로 인해 법령의 활용이나 해석을 전문가나 공무원이 독점하게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효과적인 정비를 위해 현행 법령을 모두 조사하여 어려운 용어 3,500여 개를 찾아냈고, 그에 대한 알기 쉬운 용어나 표현을 마련하여 법령 정비까지 추진했다. 또한 법령에 남아 있는 일본식 용어에 대한 기획정비를 추진, 총 50개의 용어를 선정하여 일괄 정비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행정규칙 속에 있는 어려운 한자어와 전문용어 등을 찾아내어 알기 쉽게 정비했다. 법령을 보충하는 행정규칙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전문용어 등 어려운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등 46개 모든 부처의 행정규칙 중 국민 생활에 밀접한 행정규칙에서 총 6,452개의 어려운 용어를 발굴, 이에 대한 정비안을 마련하여 소관 부처에 제공했다.

2023년부터는 법령 문장 정비에 주력하고 있다. 그간의 사업을 통해 어려운 용어 등은 대체로 개선되었으나 일반 국민은 여전히 법령을 어렵게 느끼고 있고, 이는 길고 불명확한 문장과 복잡한 법령 체계가 원인인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민 생활 관련성, 국민의 관심도, 정비의 효과성을 고려하여 2023년에는 주택·건축·도로·교통 분야의 법령을, 2024년에는 금융·경제 분야 법령과 재산·가족관계 법령을 대상으로 어려운 문장을 발굴하여 간결하고 알기 쉽게 집중 정비했고, 2025년에는 사회복지 분야 법령을 대상으로 어려운 문장을 발굴하여 정비 중이다.

현행 법령 속 용어·문장의 정비와 동시에, 어려운 용어가 법령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사전에 막기 위한 사전 차단 업무도 2018년부터 진행 중이다. 법령 개정·제정 시 공람되는 부처 의견조회안 등을 검토하여 어려운 용어를 찾아내고 그에 대한 정비안을 마련하여 소관 부처에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2019년부터는 ‘국민과 함께 하는 법령안 새로 쓰기’를 통해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국민참여단이 제출한 입법예고안 속 어려운 용어 및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개선 의견을 검토하여 소관 부처에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령이 입안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1 소개

2 용어

3 문장

4 작성례

5 어문규정

나아가 2021년부터는 글자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법조문에 대해 그림, 표, 사진 등의 시각 콘텐츠를 함께 볼 수 있는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에 「건축법」, 「도로교통법」 등 12개 법령을 대상으로 431개의 시각 콘텐츠를 개발한 것을 시작으로, 2025년에 재정·경제, 교육·학술 등의 분야 80개 법령을 대상으로 530여 개의 시각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매년 시각 콘텐츠 제공 대상 법령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법제처의 노력으로 법령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및 법 활용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제2절 > 알법의 필요성

국민은 법과 제도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간다. 그런데 법령문에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나 어려운 한자어, 예스러운 말투, 어색한 번역 투 표현이나 복잡한 문장이 많으면 국민들이 법과 제도를 이해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 국민에게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입법 의도와 제도를 정확히 알린다면 법을 이해하지 못해 어기는 일이 줄어들어 반듯한 사회로 가는 길이 한 걸음 더 앞당겨질 것이다.

알법의 필요성은 알법 사업의 첫해인 2006년 국회에 제출하여 통과된 63건의 알법 법률 개정안에 공통적으로 제시되었던 제안 이유에 잘 나타나 있다.

제안이유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어야 하고 올바른 언어생활의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일반적인 어법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 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 이렇게 함으로써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법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1 소개

2 용어

3 문장

4 작성례

5 어문규정

제3절 ▶ 알법의 기본 원칙

쉬운 법령

모든 법령문을 한글로 표기한다.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한자어, 어려운 전문 용어, 외국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정비한다.

- 법령문은 직접적으로 그 적용 대상이 되거나 필요해서 찾아보는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용어로 알기 쉽게 써야 한다.
- 이를 위해 먼저 한자로 표기된 법령은 원칙적으로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거나 다른 단어와 그 뜻이 혼동될 우려가 있는 단어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쓰거나 그 용어에 대한 뜻풀이를 함께 적는다.
- 어려운 한자어와 전문용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번역 투 문장, 지나치게 줄여 쓴 말은 법령문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게 하므로 의무교육을 받은 보통 수준의 국민이면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법령문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때 ‘어렵다’는 기준은 법률 전문가의 관점이 아닌, 일반 국민의 눈높이가 되어야 한다.

뚜렷한 법령

명확하고, 논리에 어긋나지 않으며, 나타내려는 뜻이 한눈에 들어오는 표현으로 정비한다.

- 법령문은 용어와 표현 등이 명확해야 하며, 논리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법령문을 적용하는 국가기관이나 법령의 적용을 받는 국민이 법령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법령은 국민 생활의 많은 부분을 규제하고 영향을 미치므로 내용을 명확하게 하여 조금이라도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게 한다.
- 이해를 어렵게 하는 불분명한 수식 관계, 복잡한 회계 관계가 서술된 문장은 계산식과 도표를 활용하거나 각 호로 구분하는 등 시각적으로 알아보기 쉽게 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반듯한 법령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등의 어문 규정을 충실히 지킨다.

- 법령문이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는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과 외래어 표기법 등의 어문 규정을 잘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그동안 법령의 입법 과정에서는 법리적인 문제와 관련된 기준 외에는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입법 실무상의 편의나 법률 전문가의 관점에서 '관행화된 법령문 표현'이라고 하면서 띄어쓰기 등 한글 맞춤법을 따르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 그러나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정은 법령문이라고 해서 예외로 할 수 없는, 문장을 쓸 때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입법을 할 때에도 어문 규정을 따른다.

자연스러운 법령

어색한 문어체나 번역체 문장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친숙하고 매끄러운 문체로 다듬는다.

- 법령문의 문체도 일상생활에서 쓰는 문체와 가깝게 만들어서 읽는 사람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이해하기 어려운 고어체(古語體)에 가까운 문어적(文語的) 표현이 법령의 위엄과 무게 그리고 권위를 뒷받침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 우리말의 문체를 살려서 자연스러운 법령문을 쓰도록 한다.

제2장

용어편

제1절 | 용어 정비의 원칙

제2절 | 용어 정비의 실제

알기 쉽고 반듯한 법령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법률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제1절 > 용어 정비의 원칙

한글로 표기

- 법령문은 한글로 표기한다.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로 순화

-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주 쓰는 용어로 쓴다.

한자어의 순화

- 어려운 한자어는 고유어나 쉬운 한자어로 고쳐 쓴다. 다만, 고유어나 쉬운 한자어로 쓰면 오히려 그 뜻을 이해하기 어렵게 되는 경우에는 먼저 한글로 쓰고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쓴다.
- 쉬운 한자어라도 같은 뜻으로 더 널리 쓰이는 쉬운 고유어가 있으면 고유어로 바꾼다.

일본식 한자어의 순화

- 직역된 일본어나 고유 일본어를 한자로 표기한 일본식 한자어는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에 대응하는 우리말이 없다면 널리 쓰이는 적절한 한자어로 순화한다.

전문용어의 순화

- 특정 분야에서 사용하는 전문용어라도 법령에 있는 용어는 되도록 일반 국민이 알기 쉽게 고쳐 쓴다. 다만, 국민이 평소 거의 접하지 않거나 일상생활과 관련성이 낮은 용어는 무리해서 바꾸지 않는다.

외국어와 외래어의 순화

- 외국어는 되도록 쓰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고 있고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는 외국어나 외래어는 쓸 수 있다.
- 어렵거나 전문적인 외국어나 외래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외래어 표기법에 맞추어 한글로 먼저 쓰고, 괄호 안에 원어나 뜻풀이 등 도움말을 함께 쓴다.

차별적·권위적 용어의 정비

- 관행적으로 사용해 온 차별성이 있는 용어나 권위적인 용어는 시대에 맞는 적절한 용어로 바꾸어 쓴다.

어문 규정의 준수

-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등 어문 규정에 맞지 않는 용어는 어문 규정에 맞게 고쳐 쓴다.

정비 용어 목록의 활용

- 이 책의 부록인 [정비 권고 용어] 목록은 그동안 발간된 ‘법령 용어 순화 편람’을 통합하고 최근까지의 정비 사례를 추가한 것이다. 제시된 순화어를 참고하되 적절한 순화어가 없으면 다른 용어를 찾아 쓰거나 법 문장의 문맥에 따라 적절하게 응용해서 순화한다.

각 부처 등의 국어 순화 정책에 따른 용어 순화

-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국어 순화 사업에 따라 결정된 순화 용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대로 쓴다.

※ 정비 대상에서 제외하는 용어**법령의 정의·약칭**

- 법령의 정의·약칭을 통해 해당 용어의 개념을 설명하고 그 법령 내에서 범위를 한정하여 사용하는 용어는 그대로 쓴다.

특수 분야의 용어

-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성이 낮은 분야에서 쓰이는 용어는 바꾸어 쓸 적절한 용어가 없으면 무리해서 순화하지 않는다.

사물의 명칭 등

- 사물의 이름이나 정책명 등의 명칭은 그대로 쓴다. 행정기관의 정책명은 지을 때부터 되도록 쉬운 용어로 짓도록 한다.

제2절 > 용어 정비의 실제

1 어려운 한자어

가. 쉬운 말로 고치기

정비기준

- 용어가 어려운지, 알기 쉽게 고칠 필요가 있는지, 어느 정도까지 알기 쉽게 고칠 것인지는 법령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판단한다.
- 법률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없으면서 어렵기만 한 한자어로 된 용어는 쉬운 말로 고친다.
- 글자만 같고 뜻은 다른 동음이의어와 구별하거나 내용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한글과 한자를 함께 쓸 수 있다. 이 경우 한자는 괄호 안에 쓴다.
- 어려운 한자어는 아니지만 바꾸어 써도 의미의 변화가 없는 고유어가 있으면 되도록 한자어 대신 고유어를 쓴다.

💡 **개임(改任)하다 → 교체 임명, 교체**

- ‘개임하다’는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임명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로서 말소리만으로는 그 뜻을 짐작하기 어렵다. ‘교체 임명’이나 ‘교체’로 바꾸어 쓴다.

예

제4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제48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제48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수도법」 제49조제1항제9호)

💡 개피(開披)하다 → 개봉하다, 뜯다

예

군용통신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군용통신에 의한 전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개피**, 훼손, 은닉 또는 방기하거나 고의로 수취인이 아닌 자에게 교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군용통신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군용통신으로 받은 전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개봉**, 훼손, 숨기거나, 내버려 두거나 고의로 수취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용전기통신법」 제18조)

💡 구거(溝渠) → 도랑

- '수채 물이 흐르는 작은 도랑'이라는 뜻의 '구거(溝渠)'는 '도랑' 또는 '구거(溝渠: 도랑)'로 바꾸어 쓴다.

예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구거(溝渠)·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다리**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 부의(附議)하다 → 회의(심의)에 부치다

예 1: 회의에 부치다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9조제2항제3호)

예 2: 심의에 부치다

그 밖에 가축전염병의 관리 및 방역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

그 밖에 가축전염병의 관리 및 방역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 **심의에 부치는** 사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조제2항제6호)


1 소개

2 용어

3 문장

4 작성례

5 어문규정

 사위(詐僞) → 거짓, 속임수

- ‘사위(詐僞)’는 일상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 말이다. 같은 뜻을 가진 ‘거짓’이나 ‘속임수’로 바꾸어 쓴다.

예

사위(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사람*

* 개정 내용 반영 (「건축사법」 제39조의3제1호)

 실사(實査) → 실제조사, 현지조사, 현장조사

- ‘실사’는 ‘어떠한 사실을 조사하거나 검사한다’는 뜻이다. 문맥에 따라 ‘실제조사’, ‘현지조사’, ‘현장조사’ 등으로 바꾸어 쓴다.

예 1: 실제조사

경영상태를 실사(實査)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거래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조합으로서 제18조에 따른 기금관리위원회(이하 “기금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산림청장이 결정한 조합.

→

경영상태를 실제조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거래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조합으로서 제18조에 따른 기금관리위원회(이하 “기금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결정한 조합.

* 개정 내용 반영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예 2: 현지조사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현지실사, 문헌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

 자중(自重) → 물건 자체의 무게, 자체 중량

예

외곽시설은 자중·수압·파도 및 토압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 시설되어야 한다.

→

외곽시설은 그 시설 자체의 무게, 수압, 파도 및 토압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 시설되어야 한다.

(「항만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 ※권고안

💡 잔임기간(殘任期間) →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전임자의) 남은 임기

예 1: 임기의 남은 기간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예 2: 남은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비상임이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선임된 후임비상임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비상임이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선임된 후임비상임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공기업을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 전폐(全廢)된 → 모두 잃은

예

언어의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이 **전폐된** 자



언어의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 필증(畢證) → 증명서, 확인증, -증

- ‘필증’은 ‘어떤 것을 마쳤음을 증명하는 서류’란 뜻으로 사용하는 말이다.
- ‘졸업했다는 증명서’를 ‘졸업증명서’로 표현하고,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재직 증명서’로 표현하듯이 ‘○○필증’을 ‘○○를 마쳤다는 증명서’의 의미를 지닌 ‘○○증명서’나 ‘○○확인증’ 등으로 적절하게 바꾸어 쓸 수 있다.

예 1: 증명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된 카지노기구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합격필증**을 붙이거나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된 카지노기구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증명서(이하 “**검사합격증명서**”라 한다)를 붙이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 제25조제4항)

※ 위 예시에서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증명서’는 ‘합격하였다는 증명서’로 더 간결하게 쓸 수 있다.

예 2: 확인증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제86조제5항에 따른 **신고필증** 및 요금표를 민박주택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제86조제9항*에 따른 **신고확인증** 및 요금표를 민박주택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개정 내용 반영

(「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2제1호)

 **필(畢)하다 → 마치다**


예

공개경쟁임용시험합격자가 임용후보자등록을 **필한** 후 그 명부의 유효기간내에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한 경우(대학생 군사훈련과정 이수자를 포함한다)의 의무 복무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임용되지 못한 기간은 제4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가 임용후보자등록을 **마친** 후 그 명부의 유효기간 내에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한 경우(대학생 군사훈련과정 이수자를 포함한다)의 의무복무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임용되지 못한 기간은 제4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지방공무원법」 제36조제5항)

 **허위(虛僞) → 거짓**


예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2조제7호)

 **회무(會務) → (○○○의) 사무, 업무**

- ‘회무’는 ‘회의에 관한 여러 가지 사무’의 뜻 외에 ‘모임이나 단체에 관한 여러 가지 사무’의 뜻을 가진 한자어이다. 실제 법령에서는 ‘회의’ 자체의 사무보다는 ‘위원회’나 ‘기구(機構)’ 등에 관한 사무 또는 업무로 쓰이므로 문맥에 따라 적절하게 바꾸어 쓴다.

예 1: 사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국가경찰위원회 규정」 제2조제1항)

예 2: 업무

위원장은 국립공원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국립공원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위원장은 국립공원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국립공원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5조제7항)

나. 쉬운 말로 풀어 쓰기

정비기준

- 용어를 다른 용어로 대체하기 어렵거나, 대체어가 있더라도 그 문장에서 해당 용어만 수정하면 문장이 어색해지는 경우에는 문장 전체를 수정해서 알기 쉽게 풀어 쓴다.

💡 매취사업(買取事業)

→ 회원과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 등을 중앙회가 일괄 구매하여 직접 판매하는 사업

예


매취사업



회원과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 등을 중앙회가 일괄 구매하여 직접 판매하는 사업

(「산림조합법」 제110조제2항제4호)


※ 위 예시에서 '임산물'은 내용에 따라 '제품', '물품' 등으로 쓸 수 있다.

 **예상 상병기간(傷病期間) → 질병의 치유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 '상병'은 대개 '부상·질병'으로 정비하나, 문장으로 풀어 정비할 수도 있다.

예
 예상 상병기간
 →
 질병의 치유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선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 '소요되다'도 순화 대상어이므로 '질병의 치유에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으로 순화할 수 있다.

 **차인잔액(差引殘額) → 수입총액에서 지출총액을 뺀 나머지 금액**

예
 불용액에 있어서는 수입총액 지출총액과 차인잔액(불용액)
 →
 불용액에 있어서는 수입총액, 지출총액 및 수입총액에서 지출총액을 뺀 나머지 금액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3조제3항제2호)

 **탈모(脫帽) → 모자를 쓰지 않음**

예
 사진(신청전 6월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이어야 한다) 2매
 →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찍은 상반신의 반명함판이어야 한다) 2장
 (『중자산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3호)

 **합의간주(合意看做) → 합의한 것으로 보는 경우**

예
 당사자 사이에 합의(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합의간주를 포함한다)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부는 당사자들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당사자 사이에 합의(제19조제3항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부는 당사자들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다. 축약어 풀어 쓰기

정비기준

-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이 주로 사용하는 축약어(縮約語: 줄여 쓴 말)는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줄이지 않은 온전한 말로 풀어 쓴다.

💡 폐지·분합 → 폐지·설치·분할·통합, 폐지·설치·분리·합병

예

지방자치단체의 **폐지(廢置)·분합** 명칭변경, 관할구역 조정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연구

→

지방자치단체의 **폐지·설치·분할·통합** 명칭변경, 관할구역 조정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연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2제3항제10호)

💡 개폐 → 개정 또는 폐지, 개편 또는 폐지

예 1: 개정 또는 폐지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에서의 직제의 **개폐**와 같은 법 제73조의4제1항에서의 직제의 변경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공립대학은 제외한다)의 학교·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에서의 직제의 **개정 또는 폐지**와 같은 법 제73조의4제1항에서의 직제의 변경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공립대학은 제외한다)의 학교·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교육공무원법」 제53조제3항)

예 2: 개편 또는 폐지

중앙소방학교 및 지방소방학교 교관의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기구의 개편, 직제·정원의 변경 또는 교육과정의 **개폐**가 있거나 교관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중앙소방학교 및 지방소방학교 교관의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기구의 개편, 직제·정원의 변경 또는 교육과정의 **개편 또는 폐지**가 있거나 교관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렇지 않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8조제2항)


1
소개

2
용어

3
문장

4
작성례

5
어문규정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 → 그 직책이(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


예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립학교 교원은 형(刑)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이나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이나 학과의 개편 또는 폐지로 인하여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립학교법」 제56조제1항)

 **균분 → 균등 배분**

 **균분하다 → 똑같이 나누다, 균등 배분하다, 동일하게 나누다, 같은 금액으로 나누다**

예 1: 균등 배분

유족의 순위는 제2항에 열거한 순위에 따르되, 행방불명 등으로 지급이 어려운 사람은 제외하며, 우선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일 때에는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항)

예 2: 똑같이 나누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를 지급받을 자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의 순으로 한다. 이 경우 동순위자가 2인이상 있을 때에는 **균분하여** 지급하되, 그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항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의 순으로 한다. 이 경우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연금법」 제55조제2항)

 **풀어 쓰지 않는 경우**

- 한 단어로 굳어진 단어는 풀어 쓰지 않고 그대로 쓴다.

예


국공립, 국내외, 수출입, 임직원, 출입구, 승하차

※ '국공립'을 풀어 쓸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공립'으로 쓰지 않고 '국립·공립'으로 쓴다.
 국·공립(×)/ 국립·공립(○)/ 국공립(○)

라. 문맥에 따라 고쳐 쓰기

정비기준

- 같은 용어라도 해당 문맥에 어울리는 표현으로 바꾸어 쓴다.
- 이 경우에도 명사나 명사형은 우리말만으로는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바꾸지 않고 한자어를 그대로 쓴다.

 **가중하거나 경감하다** → (기간을, 금액을) 늘리거나 줄이다
 → (처분을) 가중하거나 경감하다
 → (세금을) 감면하다

- 범위가 명확한 '기간'이나 '금액'이 대상일 때에는 '늘리거나 줄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해도 자연스럽게 '가중하거나 경감하다'를 우리말인 '늘리거나 줄이다'로 고쳐 쓴다.
- '처분'은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처분'이 대상일 때에는 '경감하다'를 '줄이다'로 고치면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읽히지 않으므로 '경감하다'를 그대로 쓴다.
- '세금'과 어울려 쓰이는 '감면(減免)하다'는 '매겨야 할 부담 따위를 덜어주거나 면제한다'는 뜻으로 쓰이므로 '감면하다'를 그대로 쓴다.

예 1: 줄이다

시·도지사등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환경보전과 국민건강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17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그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

시·도지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2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수 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제2항)

예 2: 늘리거나 줄이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사업자의 사업규모·위반행위의 정도 및 횡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금액의 5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사업자의 사업 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횡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

예 3: 경감하다

주무부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때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

예 4: 감면하다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에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한 남한주민에게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교부 → 지급, 발급, 교부**

 **교부하다 → 내주다, 주다, 지급하다, 발급하다, 교부하다**

- 문맥에 따라 금품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다’로, 등록증, 인증서, 증명서 등의 경우에는 ‘발급하다’로 바꿀 수 있다.
- (돈)을 교부하다 → 지급하다, 내주다, 주다, [명사] 지급, 교부
- (증명서)를 교부하다 → 발급하다, 내주다, 주다, [명사] 발급, 교부
- ‘교부’, ‘교부하다’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나 관공서에 교부금, 교부세, 보조금, 출연금 등을) 교부하다

예 1: 지급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17조제2항)

예 2: 발급

제9조의2(등록증의 **교부**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국토해양부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9조의2(등록증의 **발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 등록을 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1항)

예 3: ‘교부’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제10조(출연금의 **교부**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부가 공단에 출연금을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이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기재하다** → 쓰다, 적다, 적어 넣다, 써넣다, (장부에, 대장에, 명부에) 기록하다
→ (전자문서에) 기재하다, 기록하다, 입력하다, 작성하다

- '기재하다'는 '쓰다', '적다', '적어 넣다', '써넣다'로 바꾸어 쓴다.
- 장부, 대장, 명부 등과 함께 쓰일 경우에는 '기록하다'로 바꾼다.
- '전자문서'와 어울려 쓸 때에는 '기재하다, 기록하다, 입력하다, 작성하다' 등으로 문맥에 맞게 쓴다.

예 1: 적다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생조건이 고시된 경우에는 동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검역증명서에 수출국의 검역내용·위생상황 등 위생조건의 준수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위생조건이 고시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검역증명서에 수출국의 검역내용·위생상황 등 위생조건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

예 2: 기록하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은 자는 물품의 반출입상황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라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생략하는 절차에 대하여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164조제5항)

예 3: 입력하다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은 수수료 산정일 10일 전까지, 같은 항 제3호의 내용은 수수료 산정일 3일 전까지 유선 또는 무선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입력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

 **미달하다** → 미달하다, ~보다 낮다, ~를 충족하지 못하다, ~에 미치지 못하다

예 1: 보다 낮다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법인세법」 제15조제2항제1호)

예 2: 충족하지 못하다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7호)

예 3: 미치지 못하다

교육훈련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된** 자에 대하여는 다시 교육훈련을 받게 하여야 한다.



교육훈련 성적이 수료점수에 **미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교육훈련을 받게 하여야 한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 위 예시에서 ‘사람에 대해서는’은 ‘사람은’ 또는 ‘사람에게는’으로 다듬을 필요가 있다.

 **병과(併科)하다** → 동시에 부과하다, 함께 부과하다, 병행하다, 포함하다, 병과하다

- ‘처분’이나 ‘조치’의 경우 ‘병과하다’는 ‘함께 부과하다’ 또는 ‘동시(에) 부과하다’로 바꾸어 쓴다.
- 문맥에 따라 ‘병행하다’, ‘포함하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 ‘형벌’이 포함되는 경우 ‘부과하다’와 어울리지 않으므로 ‘병과하다’를 그대로 쓴다.

예 1: 동시에 부과하다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일 경우에는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예 2: 병행하다

제6차시험: 면접시험. 다만, 실기시험을 **병과할** 수 있다.



제6차시험: 면접시험. 다만,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6조제1항제6호)

예 3: 포함하다

제1차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별로 기입형을 **병과**할 수 있다.



제1차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별로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32조제2항)

예 4: '병과(併科)'를 그대로 쓰는 경우

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

(「건축법」 제108조제2항)

※ 동음이의어인 '병과(兵科)'는 '병과(併科)'와 구분되도록 한자를 괄호 안에 함께 쓴다.

- 병과(兵科): 보병, 포병, 공병 따위로 군인이나 부대를 그 임무에 따라 나눔. 또는 그 임무.


예

전문 또는 기술분야에 종사한 자로서 당해 분야와 직접 관련이 있는 **병과**의 준사관으로 임용되는 자



전문 분야나 기술 분야에 종사한 자로서 그 분야와 직접 관련이 있는 **병과(兵科)**의 준사관으로 임용되는 자

(「군인보수법」 제9조제3호)

 **이격(離隔)** → 간격, 간격을 두다, 거리, 옮기다, 떨어뜨리다

- '이격거리'에서 '이격'은 '사이가 벌어지다, 사이를 벌려 놓다'의 뜻이고, '거리'도 '떨어진 길이'라는 뜻이다. 의미가 중복되지 않도록 '간격' 또는 '거리'로 바꾸어 쓴다.

예 1: 이격거리

광고물등 간 **이격거리**는 주행방향을 기준으로 하여 200m 이상이 되게 설치해야 한다.



광고물등 간 **간격**은 주행방향을 기준으로 하여 200m 이상이 되게 설치해야 한다.

(「육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육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 '간격'이나 '거리' 등으로만 바꿀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문맥에 어울리는 표현으로 바꾸어 쓴다.

예 2: 떨어뜨리다

다만, 외벽 및 옥실에서 **이격하여** 설치하는 옷방 또는 불박이 가구에는 배기설비 또는 통풍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외벽 및 옥실에서 **떨어뜨려** 설치하는 옷방 또는 불박이 가구에는 배기설비 또는 통풍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4조제2항)



마. 설명 붙이기

정비기준

- 적절한 우리말 순화 용어를 찾기 어려운 한자어는 그 한자어를 한글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그 뜻을 쉬운 우리말로 풀어 쓴다.
- 낯선 한자어나 어려운 전문용어 등은 괄호 안에 한자를 먼저 쓴 후 쌍점(:)을 찍고 그 뜻을 쉬운 우리말로 풀어 쓴다.
- 이 경우 괄호 안에 풀어 쓰는 말은 한자나 원어 병기 방식과 같이 해당 한자어가 맨 처음 나오는 곳에서 한 번만 쓴다.

안벽 → 안벽(부두벽)

예

구축물 : 선거·교량·**안벽**·부교·궤도·저수지·궤도·굴뚝·정원설비 및 그 밖의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 등



구축물 : 선거·교량·**안벽(부두벽)**·부교(받침기둥 없이 물에 띄우는 다리를 말한다)·궤도·저수지·궤도·굴뚝·정원설비 및 그 밖의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 등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호)

※ ‘안벽’이 ‘부두벽’을 말한다는 것이 널리 알려지면 ‘안벽(부두벽)’을 쓰지 않고 바로 ‘부두벽’으로 쓴다.

도막 → 도막(도로 도포막)

예

건조**도막** 안에 총주석함량이 킬로그램당 2천 5백밀리그램 이하로서 화학적 촉매제로 작용하며 생물파괴제로 작용하지 아니하는 수준의 방오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건조 **도막(도로 도포막)** 안에 총주석함량이 킬로그램당 2천 5백밀리그램 이하로서 화학적 촉매제로 작용하며 생물파괴제로 작용하지 않는 수준의 방오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호)

💡 만곡부 → 만곡부(彎曲部: 굽은 구간)

예

수면하 배출구는 선저폐수 만곡부 근처의 화물구역 안에 있어야 하며, 선박의 해수흡입구로 잔류물과 물의 혼합물이 재흡입되는 것을 피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

수면하 배출구는 선저폐수 만곡부(彎曲部: 굽은 구간) 근처의 화물구역 안에 있어야 하며, 선박의 해수흡입구로 잔류물과 물의 혼합물이 재흡입되는 것을 피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5)

💡 침사지(沈砂池) → 침사지(沈砂池: 모래나 흙 등을 가라앉히기 위한 못)

예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홍수 시 하류지역의 유량상승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거나 토사유출이 우려되지 않을 것. 이 경우 하류에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사방댐, 침사지(沈砂池), 저류지(貯溜池)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토사유출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본다.

→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홍수 시 하류지역의 유량상승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거나 토사유출이 우려되지 않을 것. 이 경우 하류에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사방댐, 침사지(沈砂池: 모래나 흙 등을 가라앉히기 위한 못), 저류지(貯溜池)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토사유출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본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 호소 → 호소(湖沼: 호수와 늪)

예

외국의 동일 국가 내의 항구 사이 또는 외국의 호소·하천 및 항내의 수역에서만 항해하는 선박의 항해구역은 제15조에 준하여 평수구역·연해구역 또는 근해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

→

외국의 동일 국가 내의 항구 사이 또는 외국의 호소(湖沼: 호수와 늪)·하천 및 항내의 수역에서만 항해하는 선박의 항해구역은 제15조에 준하여 평수구역·연해구역 또는 근해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1
소개2
용어3
문장4
작성례5
어문규정

바. 한자를 같이 쓰기

정비기준

- 한자 병기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한다. 문맥상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거나 동음이의어가 있는 등의 경우에만 한자를 병기한다.
 - ‘차대(車臺)’, ‘실화(失火)’, ‘입목(立木)’ 등과 같이 한글로만 표기해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나 ‘보전(保全, 補填)’, ‘조정(調整, 調停)’ 등과 같은 동음이의어, 한글표기만으로 그 뜻이 분명하지 않은 용어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쓸 수 있다.
- 한자 병기는 법령에서 해당 용어가 맨 처음 나오는 곳에서 한 번만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법령에서 혼동의 우려가 있으면 여러 번 할 수 있다.
 - 「약사법」은 ‘약사(藥師)’와 ‘약사(藥事)’가 여러 번 서로 엇갈려 나오고 있어 그 용어가 나올 때마다 각각 구별해서 한자를 병기했다.

고가 → 고가(高架)

- ‘높이 건너질러 가설(架設)한다’는 뜻이 있다고 해서 고가(高架)를 단순히 ‘공중에 설치하는’으로 고친다면,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의도하는 본래 의미와는 다르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풀어 쓰지 않고 한자를 함께 쓰는 정도로만 고친다.

예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인공구조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인공구조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공해대 → 공해대(公海帶)

- ‘공해대’는 일반인에게는 낯선 한자어이지만 항공 분야 관계자들에게는 일상적인 용어이다. 이런 경우 무리해서 순화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되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쓴다.

예

외국의 군함 또는 비상업용 정부선박이 영해를 통항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그 통항 3일전까지(공휴일은 제외한다) 외교부장관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 선박이 통과하는 수역이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으로서 동 수역에 **공해대**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외국의 군함 또는 비상업용 정부선박이 영해를 통항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라 그 통항 3일 전까지(공휴일은 제외한다) 외교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고해야 한다. 다만, 해당 군함 또는 선박이 통과하는 수역이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으로서 해당 수역에 **공해대(公海帶)**가 없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제4조)

사. 바꿀 수 있는 것만이라도 우선 바꾸기

정비기준

- 같은 말이라도 고유어와 한자어가 각각 널리 쓰이고 있는 경우 되도록 쉬운 고유어를 쓴다.
- 다만, 한자어가 다른 말과 어울려 복합명사처럼 굳어져 쓰이는 경우에는 한자어를 그대로 쓴다.



연령 → (홀로 쓸 때) 나이

→ (복합명사처럼 쓸 때) 연령

- ‘사람’의 경우 ‘연령’은 ‘나이’로 바꾼다.
- 다만, ‘연령’이 ‘수급연령’처럼 한자어와 어울려 하나의 의미단위로 쓰일 때에는 ‘연령’을 ‘나이’로 순화하는 것이 어색하므로 ‘연령’을 그대로 쓴다.

예: 수급연령 → 수급연령(○), 수급나이(×)

예

이 법에 의한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는 행위자, 피해자, 고소인·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성명·**연령**·직업·용모 기타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등을 신문등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다.



이 법에 따른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는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실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제2항)


1 소개


2 용어

3 문장

4 작성법

5 어문규정

 **저감** → **저감, 줄이기**

 **저감하다** → **줄이다**

- ‘저감하다’는 ‘줄이다’, ‘낮추다’ 등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 다만, ‘저감대책’, ‘저감시설’ 등과 같이 하나의 의미단위로 쓰일 때에는 무리해서 순화하지 않고 ‘저감’을 그대로 쓴다.


예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오염부하량의 저감계획에 따라 오염원별로 오염부하량을 **저감**하는 시기가 적정하게 지정되어 있을 것

→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오염부하량의 저감계획에 따라 오염원별로 오염부하량을 **줄이는** 시기가 적정하게 지정되어 있을 것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제2호)

 **전대** → **전대(轉貸)**

 **전대(轉貸)하다** → **다시 대여하다**

- ‘전대’는 ‘다시 대여하다’로 바꾸어 쓴다.
- 다만, ‘전대 절차’, ‘전대 제한’ 등 다른 한자어와 어울려 쓰일 때에는 ‘전대’를 그대로 쓴다.

예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당해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전대해서는** 아니 된다.

→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斡旋)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개정 내용 반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제1항)

아. 한문 투 표현 고치기

정비기준

- 법령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여부(與否)’와 ‘유무(有無)’는 한문과 영어의 부가의문문의 영향을 받은 표현이다.
- 우리말에서는 잘 쓰지 않는 표현인 ‘여부’나 ‘유무’는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쓰는 경우가 많으므로, 문맥을 잘 살펴서 ‘여부’나 ‘유무’가 없으면 뜻이 달라지는 경우와 같이 꼭 필요할 때에만 쓴다.

💡 충족하는지 여부 → 충족하는지, 충족하는지 여부

- ‘여부(與否)’는 ‘그리함과 그렇지 않음’을 의미하는데, ‘충족하는지’에서 어미 ‘~는지’는 그 자체가 사실에 대한 판단이나 의문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므로, ‘충족하는지’와 ‘여부’를 같이 쓰면 의미가 중복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여부’를 쓰지 않는다.
- 다만, ‘여부’나 ‘유무’의 결과에 더 중요한 의미를 두는 경우에는 보다 명확하게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여부’를 살려 쓸 수 있다.

예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65조의6제4항) ※권고안

💡 승인 여부

- ‘승인 여부’에서 ‘여부’는 ‘승인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의미하고 있는 반면, ‘승인’만으로는 그런 의미를 표현할 수 없으므로 ‘승인 여부’를 그대로 쓴다.

예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제3항)

 **타당성 여부, 타당성 유무 → 타당성, 타당한지**

-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결국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굳이 ‘여부’를 쓸 필요가 없다.


예

시·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신청을 받으면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보호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신청을 받으면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보호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상수원관리규칙」 제6조제1항) ※권고안

 **환자의 유무**

- ‘환자의 유무’는 ‘환자가 있는지 없는지’라는 뜻인데 ‘환자’만으로는 그런 뜻을 나타낼 수 없으므로 ‘환자의 유무’를 그대로 쓴다.

예


제6조에 따른 검역조사의 대상이 되는 운송수단의 장은 해당 운송수단이 검역 장소에 접근하였을 때에는 해당 검역 장소를 관할하는 검역소장에게 검역감염병 **환자등의 유무**와 위생 상태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검역법」 제9조제1항)

자. 한자어의 본뜻대로 바르게 쓰기

정비기준

- 한자어의 뜻을 잘못 사용한 것은 바로잡는다.
- 우리말의 조어법(단어를 구성하는 규칙)에 어긋난 어색한 말은 쓰지 않는다.

 **자문하다/자문을 구하다 → 자문하다(○)/자문을 구하다(X)**

- 바른 표현:
 - [질문할 때] 자문하다, 조언을 구하다, 문의하다, 묻다(○)
 - [질문에 대답할 때] 자문에 응하다, 자문에 답하다, 자문에 검토 의견을 내놓다(○)
- 틀린 표현: 자문을 받다/자문을 얻다/자문을 구하다/자문을 요청하다(X)

- 자문(諮問)은 ‘물을 자(諮) 자와 ‘물을 문(問) 자로 이루어진 단어로서 ‘어떤 일을 좀 더 효율적이고 빠르게 처리하려고 그 방면의 전문가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기구에 의견을 묻는다’라는 뜻이다.
- ‘자문’ 자체가 ‘묻는다’는 뜻이므로 ‘자문을 구하다’나 ‘자문을 요청하다’라는 말은 ‘질문하는 것을 구하다’나 ‘질문하는 것을 요청하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틀린 말이다. 이런 말들은 ‘자문하다’, ‘의견을 듣다’로 고쳐 써야 의도가 제대로 전달된다.2)

예

발주자가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설계 등 용역업자, 건설업자 및 감리자의 검토 의견서를 제출받아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동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

발주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 용제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려면 설계 등 용역업자, 건설업자 및 감리자의 검토의견서를 제출받아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아야** 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


예

“설계자”라 함은 자기 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 의도한 바를 해설하며 지도·**자문하는 자**를 말한다.

→

“설계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해설하며, 지도하고 **자문에 응하는 자**를 말한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13호)

 **현재하다 → (현재) 있다**

- ‘현재(現在)’는 시간을 가리키는 명사로만 쓰일 뿐, ‘현재 거기에 존재한다’라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 ‘현재하다’와 같은 동사로 쓰일 수 없다. 따라서 ‘현재하다’는 ‘(현재) 있다’로 고친다.

예

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

피고인이 **현재** 관할구역에 **있지** 않는 경우에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8조제1항) ※권고안

2) ‘자문위원’, ‘자문위원회’라는 용어도 적절한 표현은 아니나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어 그대로 쓰기로 한다.



 **필요있다/필요 있다 → 필요하다, ~할 필요가 있다**

- ‘필요있는’은 어색한 조어이다. 문맥에 따라 ‘필요한’, ‘~할 필요가 있는’으로 고쳐 쓴다.

예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필요한 경우**
→ **필요가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49조) ※권고안

차. 굳어진 용어는 그대로 쓰기

정비기준

- 쉬운 말로 바꿀 경우 그 법적 의미를 온전하게 살리지 못하는 경우에는 굳이 순화하지 않고 종전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 해당 용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필요하면 괄호에 한자를 함께 쓴다.

 **멸실하다/멸실되다**

- ‘멸실하다’를 ‘없어지다’로 바꾸면 ‘멸실 후 잔해가 남아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게 되므로 ‘멸실하다’를 그대로 사용한다.

예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 멸실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을 전면해체하고 제33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한 경우에는 멸실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건축물관리법」 제34조제1항)

 **현저한**

- ‘현저한’을 ‘뚜렷한’, ‘매우 큰’으로 바꾸면 ‘뚜렷이 드러나다’라는 ‘현저한’의 의미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게 되므로 ‘현저한’을 그대로 사용한다.

예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5항)

💡 양도, 양수

- 한자어와 가장 뜻이 비슷한 고유어가 원래 용어의 법적 의미를 완전하게 전달하지 못하면 굳이 순화하지 않고 종전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필요하면 한자를 함께 쓴다.

예

양도하다 → 양도하다(○), 양도(讓渡)하다(○), **넘겨주다(×), 넘기다(×)**
 양수하다 → 양수하다(○), 양수(讓受)하다(○), **넘겨받다(×)**

💡 개의(開議)하다

- ‘개의(開議)’는 ‘안건에 대한 토의를 시작하다’의 뜻이지만 단순히 구성원이 모여 회의를 시작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의사정족수(의사 진행에 필요한 구성원의 출석 인원수)가 충족된 상태에서 회의를 시작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는 회의 용어이므로 ‘시작하다’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쓴다.

예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6조의2제4항)

💡 호선(互選)하다

- ‘호선’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어떤 조직의 구성원들이 서로 투표하여 그 조직 구성원 가운데에서 어떠한 사람을 뽑다’이다. 어려운 한자어지만 이를 단순히 ‘선출하다’로 바꾸면 누가 뽑는지(선출 주체), 어떤 절차로 뽑는지(선출 방법) 등이 드러나지 않아 선출의 주체와 방법을 추가로 규정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회의 용어로 굳어진 단어이므로 관용을 존중하여 그대로 쓴다.

예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국어학·언어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국어기본법」 제13조제4항)

1 소개

2 용어

3 문장

4 작성례

5 어문규정

💡 상계(相計)하다

- ‘상계하다’는 ‘채무자와 채권자가 같은 종류의 채무와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일방적 의사 표시로 서로의 채무와 채권을 같은 액수만큼 소멸하다’는 복잡한 법적 의미를 가진 용어이다. ‘맞계산하다’ 등은 법적 의미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므로 ‘상계하다’를 그대로 쓴다.

예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매 사업연도 말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을 초과한 경우 사용자는 그 초과분을 향후 납입할 부담금에서 상계(相計)할 수 있으며, 매 사업연도 말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고 사용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초과분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4항)

2 일본식 용어³⁾

가. 일본식 한자어

정비기준

- 일본식 한자어란 직역된 일본어나 고유 일본어를 우리말 한자음으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 일본어에서는 한자를 음독(音讀: 음으로 읽는 것)하거나 훈독(訓讀: 뜻으로 읽는 것)한다. 일본 사람들이 한자로 적으면서도 한자의 음으로 읽지 않고 한자의 뜻으로 읽는 용어는 고유 일본어라고 할 수 있는데, 뜻으로 번역해야 하는 용어를 우리의 한자음 그대로 사용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식 한자어가 되었다.
- 이와 같은 일본식 한자어는 법령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 이에 대응하는 우리말이나 쉬운 한자어로 적절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
- 일본식 한자어라도 바꾸어 사용할 만한 우리말을 찾기 어렵거나 우리말이 법령문에서의 원래 의미를 나타내지 못하면 바꾸지 않는다.

3) 일본어 투 표현 정비에 대한 내용은 문장편 제169쪽 참조.

💡 가도(假道) → 임시 도로, 임시 통로

- ‘가(假)’에는 ‘거짓’과 ‘임시’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임시’의 의미를 띤 ‘가-’는 ‘임시’로 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허가’를 ‘임시 허가’로 순화한 것이 좋은 예이다.⁴⁾
- ‘가처분’, ‘가석방’과 같이 그 자체가 하나의 법률용어로 정착되어 쓰이는 것은 고치지 않고 그대로 쓴다.

예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명령에 의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는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관한 조사·측량 및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특별한 용도가 없는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통로 또는 **가도**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수목 기타의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폐지 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명령에 의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는 공공하수도에 관한 조사·측량·공사 또는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특별한 용도가 없는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통로 또는 **임시도로**의 용도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수목 그 밖의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하수도법」 제8조제1항)

※ 위 예시에서 ‘수목 그 밖의 장애물’은 ‘수목이나 그 밖의 장애물’로 고쳐 쓴다.

💡 감안(勘案)하다 → 고려하다

예


상환기준소득은 교육부장관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고시한다.

→

상환기준소득은 교육부장관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고시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8조제5항)

4) 그러나 ‘가설건물(假設建物)’에서의 ‘가설’은 기간적 의미는 물론 형태의 의미도 있으므로 ‘가설건물’은 ‘임시 건물’로 고치지 않고 그대로 쓴다.

 **노임(勞賃) → 임금**


예

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이를 산정한다.

→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적힌 **임금**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명기(明記)하다 → 명확하게 적다, 명확하게 기록하다**
→ 분명히 적다, 분명히 기록하다


예

골재채취업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골재채취구역마다 골재의 종류·채취량등을 **명기**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

골재채취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재채취구역마다 골재의 종류·채취량 등을 **명확하게 적은**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골재채취법」 제21조제1항)

 **명(命)하다 → 처분을 하다, 명하다**

- ‘명하다’를 ‘처분을 하다’와 같이 명확하게 다른 말로 고칠 수 있으면 고친다.
- ‘명령하다’는 어감이 너무 강하므로 ‘명하다’를 ‘명령하다’로는 고치지 않는다.


예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조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조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취소처분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 제80조제1항) ※권고안

 **응(應)하다 → 따르다, 응답하다, 받다, 응하다**

- ‘(명령에) 따르다, (요구에) 응답하다, (검사를) 받다’로 바꿀 수 있다.
- ‘~에 응하다’가 지시하는 내용을 풀어 쓴다.

- 지시하는 내용을 직접 밝히거나 '따르다' 등으로 바꾸기 어려우면 '~에 응하다'를 그대로 쓸 수 있다. '교섭', '협의', '협상' 등은 서로 의논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따르다'로 바꿀 수 없다. 이런 경우 '응하다'를 그대로 쓴다.

예 1: 받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역의 해제를 받은 자는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시일과 장소에 출석하여 재검진 또는 재심문에 **응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검역 해제를 받은 사람은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날짜와 시간 및 지정하는 장소에서 재검진이 나 재심문을 **받아야** 한다.

(중전 「검역법」 제14조제2항)

예 2: 지시하는 내용을 풀어 쓴 경우

중앙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중앙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30조제1항)

예 3: 따르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3항 전단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예 4: '응하다'를 그대로 쓰는 경우

시·도 교육감이나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섭·협약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합의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

입회(立會) → 참관, 참석, 참여

- '입회(立會)'는 '어떠한 사실이 발생하거나 존재하는 현장에 함께 참석하여 지켜봄'이라는 뜻이므로 문맥에 따라 '참관'이나 '참석' 또는 '참여'로 바꾸어 쓴다.
- '참관', '참석', '참여'는 다음과 같이 의미에 차이가 있으므로, 조문의 내용에 맞게 적절한 순화어를 사용한다.

예 1: 참관

③ 토지소유자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토지현황조사에 대한 **입회**
3. 임시경계점표지 및 경계점표지의 설치에 대한 **입회**



2. 토지현황조사에 대한 **참관**
3. 임시경계점표지 및 경계점표지의 설치에 대한 **참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3항)

예 2: 참석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수용자를 면담하는 위원등은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에게 면담장소에 **입회**하는 구금·보호시설의 직원의 수를 제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시설수용자를 면담하는 위원등은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에게 면담장소에 **참석**하는 구금·보호시설의 직원의 수를 제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4조제2항)

※ 위 예시에서 ‘응해야 한다’는 ‘따라야 한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예 3: 참여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사업주는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해당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제3항)

- ‘입회(立會)’와 동음이의어인 ‘어떤 모임에 들어가 회원이 됨’이라는 뜻의 ‘입회(入會)’는 ‘가입’으로 순화할 수 있다.

예

입회 및 탈퇴에 관한 규정



가입 및 탈퇴에 관한 규정

(「세무사법 시행령」 제24조제3호)

💡 공부(公簿) → 공적 장부, 공부(公簿), 공문서

- ‘공부(公簿)’는 ‘관청이나 관공서에서 법규에 따라 작성하여 갖추어 두는 장부’를 말한다. ‘공적 장부’로 순화할 수 있다.
- 법령 내용에 따라 그 의미가 완전하게 전달되지 않을 때에는 ‘공부(公簿)’를 그대로 쓴다.

예 1: 공적 장부

조합의 합병 후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소멸된 조합의 명칭은 존속하거나 설립된 합병조합의 명칭으로 본다.



조합의 합병 후 등기부나 그 밖의 공적 장부에 표시된 소멸된 조합의 명칭은 존속하거나 설립된 합병조합의 명칭으로 본다.

(「산림조합법」 제63조제2항)

예 2: ‘공부’를 그대로 쓰는 경우

행정청은 제8조에 따라 부정이익등을 환수하거나 제9조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재산 관계 공부(公簿) 등의 열람·복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 부분(副本) → 부분(副本), 복사본

- ‘부분’은 원본과 동일한 내용의 문서로서, 소송을 제기할 때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자기의 주장을 알리기 위해 소장과 똑같이 만든 것을 말한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할 때 소장과 함께 부분을 상대방 수만큼 제출한다. 고유의 법적 의미가 있는 용어이므로 ‘부분’은 그대로 쓴다.
- ‘부분’이 ‘원본과 같음’의 뜻을 나타내는 직인이나 천공(穿孔: 구멍 뚫기) 등이 없이 단순히 ‘복사한 것’의 의미로 쓰인 경우에는 ‘복사본’으로 바꾸어 쓴다.

예 1: ‘부분’을 그대로 쓰는 경우

심사장은 이익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익신청서 부분(副本)을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상표법」 제66조제1항)

1 소개

2 용어

3 문장

4 작성례

5 어문규정

예 2: 복사본

매립시설 검사기관의 장은 분기별 검사실적을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 다음 달 2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검사결과서 **부분**이나 그 밖에 검사와 관련된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매립시설 검사기관의 장은 분기별 검사실적을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 다음 달 20일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고, 검사결과서 **복사본**이나 그 밖에 검사와 관련된 서류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 개정 내용 반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의2제6항)

필수 정비 대상 일본식 한자어 목록

용어	한자	순화어	용어	한자	순화어
가도	假道	임시 도로, 임시 통로	관능검사	官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능검사[인간의 오감(五感)에 의하여 평가하는 제품검사] • 관능검사[인간의 오감(五感)에 의하여 ○○의 품질을 평가하는 일] • 감각활용검사 • 감각기관활용검사
가료	加療	치료			
가식	假植	임시 식재, 임시 심기, 겹심기			
가필하다	加筆	고쳐 쓰다			
감안(하다)	勘案	고려(하다)			
갑상선	甲狀腺	갑상샘			
개호	介護	간병	구근	球根	구근(알뿌리)
거래선	去來先	거래처	구배	勾配	경사도, 기울기, 경사
건錠	錠錠	잠금장치	구좌	口座	계좌
계기하다	掲記	규정하다, 열거하다	굴삭기	掘削機	굴착기
견습	見習	수습	납골당	納骨堂	봉안당
계리	計理	회계처리	납득하다	納得	수긍하다, 받아들이다
계출	届出	신고	노임	勞賃	임금
고리	高利	고금리	녹비	綠肥	풋거름
고아원	孤兒院	보육원	대합실	待合室	맞이방, 대기실
곤색	紺色	감색	두개골	頭蓋骨	머리뼈
공란	空欄	빈칸	마대	麻袋	포대, 자루
공하다	供	제공하다, 쓰이다, 사용되다 [‘공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문맥에 맞게 순화]	명기하다	明記	(명확하게/분명히) 적다, 기록하다

용어	한자	순화어	용어	한자	순화어
명찰	名札	이름표	잔교	棧橋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잔교(棧橋: 다리모양의 구조물) • 잔교(선박을 매어두거나 부두에 닿도록 구름다리 형태로 만든 구조물) • 구름다리 • 부두연결다리
명하다	命	처분을 하다, 명하다 ※ 명령하다(×)			
미강	米糠	쌀겨			
미불	未拂	미지급			
부락	部落	마을	저리	低利	저금리
분비선	分泌腺	분비샘	전도	前渡	선지급, 미리 지급
붙입	拂入	납입, 납부	절취선	截取線	자르는 선
붙하	拂下	매각	절취하다	截取	자르다
빙점	氷點	어는점	제전	祭典	행사, 축제
사리	砂利	자갈	주말하다	朱抹	붉은 선으로 지우다
사찰	査察	조사	지득하다	知得	알게 되다
시건	施鍵	잠금	지불	支拂	지급
시말서	始末書	경위서	지참	遲參	지각
어분	魚粉	어분(생선가루), 생선가루	청부	請負	도급
어획고	漁獲高	어획량	추월	追越	앞지르기
연돌	煙突	굴뚝	침목	枕木	받침목
엽연초	葉煙草	잎담배	통달	通達	도달
음용수	飲用水	먹는 물, 마시는 물	품신	稟申	건의
응하다	應	(명령에) 따르다, 응답하다, (검사를) 받다, (협상에) 응하다	하구언	河口堰	하굿둑
이서	裏書	서명, 확인, 배서	하청	下請	하도급
일부인	日附印	날짜도장	한천	寒天	우무, 우뚝가사리
입회	立會	참관, 참석, 참여	행선지	行先地	목적지
자	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 [사람만 가리킬 때] • 자 [사람 외에 단체, 법인 등도 가리킬 때] 	후불	後拂	후지급
잔고	殘高	잔액	흑판	黑板	칠판

1 소개

2 용어

3 문장

4 작성례

5 어문규정

나. 일본식 외래어

정비기준

- 일본식 외래어란 일본에서 들어온 외래어가 본래의 발음에 여러 변화를 겪은 후 우리나라에 그대로 들어와 사용된 것을 말한다.
- 일본식 외래어는 해당 용어를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바르게 고쳐 써야 한다.
- 일본식 외래어를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바르게 썼더라도, 대체할 수 있는 쉬운 우리말이 있으면 바꾸어 사용한다.

💡 가성소다 → 수산화나트륨

- ‘가성소다’는 ‘가성(苛性)’과 ‘소다(soda)’의 합성어로, ‘수산화나트륨(水酸化 Natrium)’을 나타내는 일본식 표현이다. ‘가성소다’는 해당 용어의 정확한 명칭과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려우므로 원어 ‘水酸化 Natrium’을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수산화나트륨’으로 쓴다.

예

저장 중인 다이아마이트 등의 약포에서 니트로글리세린이 스며 나와 상자의 표면 또는 마루바닥이 오염된 때에는 물 150밀리리터에 **가성소다** 100그램을 녹이고 알코올 1리터를 혼합한 액체로 니트로글리세린을 분해시키고, 마른 걸레로 닦아낼 것



수산화나트륨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1항제11호)

※ ‘다이아마이트’는 ‘다이너마이트’로, ‘마루바닥’은 ‘마룻바닥’으로 고쳐 쓴다.

💡 센타 → 센터

- ‘센타’는 원어인 ‘center’를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센터’로 고쳐 쓴다.

예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노인복지**센타**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선정·수행해야 한다.



노인복지센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8)

💡 타이루 → 타일

- ‘타이루’는 ‘tile’의 일본식 발음을 그대로 한글로 표기한 것이다. ‘타이루’는 받침을 가진 음절 끝에 모음을 첨가해 음절의 수를 늘려서 발음한 것으로, 이는 받침소리가 발달하지 않은 일본어의 특성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다. 외래어 표기법에 맞게 ‘타일’로 고쳐 쓴다.

예

작업장 바닥은 타이루, 콘크리트 등 내수성자재를 사용하고 청소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이어야 한다.

→

타일

(「가족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14의2)

✔️ 일본식 외래어 정비 목록

용어	원어	순화어	용어	원어	순화어
가리	加里	칼륨	바란스	balance	밸런스
가성소다	苛性 soda	수산화나트륨	센타	center	센터
구리스	grease	그리스(grease), 윤활유	스라브/ 슬라브	slab	슬래브
기아	gear	기어, 변속장치	엑기스	extract	추출물, 진액
레자	leather	인조 가죽	타이루	tile	타일
모타	motor	모터	휴즈	fuse	퓨즈
미싱	sewing machine	재봉틀			

1 소개

2 용어

3 문장

4 작성례

5 어문규정

3 전문용어

가. 전문용어의 뜻과 정비 필요성

- 전문용어는 특정한 전문 분야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를 말한다.
- 전문용어는 어려운 한자어나 외국어 등이 많은데, 관련 종사자들에게 익숙한 말이더라도 일반인에게는 어려운 말이므로 법령문에서는 쉬운 말로 고쳐 써야 한다.
- 「국어기본법」 제14조제1항에서 공공기관은 공문서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에서 국가는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분야의 용어라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전문용어라면 법령 등 공문서에서는 일반 국민이 알기 쉽게 고쳐 써야 한다.

제14조(공문서등의 작성·평가) ① 공공기관등은 공문서등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제17조(전문용어의 표준화 등) ① 국가는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국어기본법」

나. 전문용어 정비 원칙

- 전문용어의 순화안은 대상 용어의 개념을 분명하고 간결하게 드러내는 것으로 대체하여 대체어만 보고도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 전문용어의 순화안은 우리말로 대체하는 것을 제일 먼저 고려하되,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친숙하고 쉬운 용어로 한다.
- 적절한 우리말 대체어가 없는 경우에는 괄호를 사용하여 해당 용어에 뜻을풀이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정비할 수 있다.
- 의미 전달을 위해 괄호에 설명이나 영문 등 원어를 병기할 경우 법령에서 해당 용어가 맨 처음 나오는 곳에서 한 번만 병기하며, 영문 등 원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쓴다.
- 전문용어의 순화안도 의무교육(중학교 졸업)을 마친 국민이 학교에서 배운 용어의 범위에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를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⁵⁾

다. 전문용어 정비 유형 및 예시

정비기준

- 전문용어를 알기 쉬운 말로 정비할 때에는 다음의 단계별 유형을 참고한다.
- 아래 1)부터 5)까지의 유형 외에 전문용어의 뜻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른 방식이 있다면 그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1) 대상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대체하는 방식

대상 용어에 대응하는 알기 쉬운 우리말이 있다면 그 말로 대체한다. 한자어나 외국어 등의 원래 형태에 상관없이 되도록 알기 쉬운 우리말로 대체하는 것을 우선 고려한다.

응결수 → 물방울

예

천정은 청소가 용이한 구조로서 이물이나 먼지가 쌓이거나 **응결수(凝結水)**가 떨어지지 아니하여야 한다.

→

천정은 청소가 용이한 구조로서 이물이나 먼지가 쌓이거나 **물방울**이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 위 예시에서 ‘천정’은 ‘천장’으로 고쳐 쓴다.

토텔름 → 면도용 파우더

예

차. 남성용 **토텔름(talcum)**

→

차. 남성용 **면도용 파우더**

(종전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3)

- 5) 일반 법령용어는 의무교육(중학교 졸업)을 마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전문용어는 전문 분야에서만 사용한다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고등학교 교육 수준으로 어휘 범위를 넓혔다. 이는 국립국어원의 『전문용어표준화 안내서』의 표준화 대상 용어 선정 기준과 맞춘 것이다.

1
소개

2
용어


3
문장

4
작성례

5
어문규정

2) 대상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대체하되, 대상 용어를 괄호에 병기하는 방식

대상 용어를 알기 쉬운 말로 대체하되, 한자나 외국 글자 등 원어를 병기하면 그 용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에는 괄호에 원어를 함께 쓴다.

 **에프알피(FRP) → 강화플라스틱(FRP)**

예


취급시설 중 건강기능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스테인레스·알루미늄·**에프알피(FRP)**·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세척하기 쉬우며,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하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용출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

취급시설 중 건강기능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스테인레스·알루미늄·**강화플라스틱(FRP)**·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세척하기 쉬우며,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하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용출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 ‘스테인레스’는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스테인리스’로 고쳐 써야 한다.

 **드레싱 → 소독(dressing)**


예

육창부위 및 **드레싱** 빈도, 방광훈련 방법, 가족 지지체계 및 지역사회 자원 등 상담

→

육창부위 및 **소독(dressing)** 빈도, 방광훈련 방법, 가족 지지체계 및 지역사회 자원 등 상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전굴 → 앞굽하기[前屈], 앞굽하기[전굴(前屈)]**

예

전굴, 후굴, 좌굴, 우굴

→

앞굽하기[前屈], 뒤굽하기[後屈], 왼쪽굽하기[左屈], 오른쪽굽하기[右屈]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별표 2)

※ 순화된 고유어에 대응하는 한자어를 함께 보일 때는 한글 맞춤법(이 책 제267쪽 참조)에 따라 대괄호를 쓴다.

💡 저질상태 → 밑바닥 퇴적물 상태(저질 상태)

예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해도 저감대책을 실행하기로 결정한 경우 침몰선박의 위치, 침몰한 해역의 수심, 수온, 조류, **저질(底質) 상태**, 계절, 화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법 제77조에 따른 해양오염영향 조사의 실시, 침몰선박의 인양, 침몰선박의 연료유 수거·회수, 침몰선박에 적재된 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거·회수 등 위해도 저감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해도 저감대책을 실행하기로 결정한 경우 침몰선박의 위치, 침몰한 해역의 수심, 수온, 조류, **밑바닥 퇴적물 상태(저질 상태)**, 계절, 화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법 제77조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의 실시, 침몰선박의 인양, 침몰선박의 연료유 수거·회수, 침몰선박에 적재된 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거·회수 등 위해도 저감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의3제2항)

3) 대상 용어를 쓰고 괄호 안에 쉬운 용어를 추가하는 방식

대상 용어를 대체할 쉬운 말이 있으나 해당 분야에서 사용 빈도가 높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어 순화어로 바로 대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용어를 쓰고 괄호 안에 알기 쉬운 용어를 쓴다.

💡 집수정 → 집수정(물저장고)

예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순환골재를 배수층(排水層) 설치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수소이온농도지수(pH)가 9.8 이하인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배수로나 **집수정** 등 배출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순환골재를 배수층(排水層) 설치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수소이온농도지수(pH)가 9.8 이하인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배수로나 **집수정(물저장고)** 등 배출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

1 소개

2 용어

3 문장

4 작성례

5 어문규정

 **캡타이어케이블 → 캡타이어케이블(경질고무케이블)**


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거나 전기기계·기구(배선기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자에 전선(코드, **캡타이어케이블** 및 케이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부착하는 공사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거나 전기기계·기구(배선기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자에 전선[코드, **캡타이어케이블(경질고무케이블)** 및 케이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부착하는 공사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

 **스웨이징(Swaging) → 스웨이징(압축가공)**


예

스웨이징(Swaging) 머신

→

스웨이징(압축가공) 머신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17)

 **트랜스폰더 → 트랜스폰더(질의응답장치)**

예

무선항행업무(레이다·**트랜스폰더**·거리측정기·전파고도계)

→

무선항행업무[레이다·**트랜스폰더(질의응답장치)**·거리측정기·전파고도계]

(「전파법 시행령」 별표 10)

4) 대상 용어를 쓰고, 괄호 안에 한자나 원어를 병기한 후 설명을 추가하는 방식

대상 용어를 대체할 쉬운 말이 없고 원어가 해당 용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 등으로 원어를 병기하고 그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인다.

 **첨포시험** → **첨포시험(貼布試驗: 접촉 피부염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원인 추정 물질을 몸에 붙여 반응을 조사하는 시험)**

예

인체 **첨포시험(貼布試驗)** 자료

→

인체 **첨포시험(貼布試驗: 접촉 피부염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원인 추정 물질을 몸에 붙여 반응을 조사하는 시험을 말한다)** 자료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호바목)

 **적응증** → **적응증(適應症: 적용 대상 질병이나 증상)**


예

의약품의 **적응증(適應症)** 또는 효능·효과를 그대로 표시하는 명칭(진단용 시약 등 특수한 제제는 제외한다)

→

의약품의 **적응증(適應症: 적용 대상 질병이나 증상을 말한다)** 또는 효능·효과를 그대로 표시하는 명칭(진단용 시약 등 특수한 제제는 제외한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1조제2항제2호)

 **파이핑** → **파이핑(piping: 흠·모래 등이 깎여 땅속에 관 모양의 물길이 생기는 현상)**


예

댐의 **파이핑(piping)** 및 구조적 균열

→

댐의 **파이핑(piping: 흠·모래 등이 깎여 땅속에 관 모양의 물길이 생기는 현상을 말한다)** 및 구조적 균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6호)

 **플레어스택** → **플레어 스택(flare stack: 배출가스연소탑)**

예

방제시설은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 스크러버 및 **플레어스택**의 처리용량, 고정식 소화설비, 고정식 유해 감지시설, 방류벽 및 비상전원 등 사고예방, 대응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서 시설명, 위치 및 성능에 관한 기본사양과 목록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배출물질 처리시설 현황은 스크러버(scrubber: 세정기) 및 **플레어 스택(flare stack: 배출가스연소탑)** 등 배출물질을 처리하는 시설이 적절한 성능과 용량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 개정 내용 반영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1 소개

2 용어

3 단장

4 작성례

5 어문규정

5) 대상 용어를 쓰지 않고 다른 쉬운 표현으로 풀어 쓰는 방식

대상 용어를 문장으로 풀어 쓰는 것이 더 알기 쉽고 적절한 경우에는 문장으로 풀어 쓸 수 있다.

 절연상태 → 전기나 열이 통하지 않는 상태

예


동력기동장치와 수중모터 간 동력전선의 절연상태를 확인할 것

→ 동력기동장치와 수중모터 간 동력전선의 절연상태(전기 또는 열이 통하지 않는 상태)인지를 확인할 것

→ (※권고안)

동력기동장치와 수중모터 간 동력전선에 전기나 열이 통하지 않는 상태임을 확인할 것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 3)

 거선한 → 받침대 등으로 들어 올려놓은

예

선박길이 24미터 미만인 목선 및 특수재질선박과 선박길이 12미터 미만인 강선을 거선(擧船)한 경우

→ 선박길이 24미터 미만인 목선 및 특수재질선박과 선박길이 12미터 미만인 강선을 받침대 등으로 들어 올려놓은 경우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라. 분야별 전문용어 정비 목록

1) 건설 분야

대상 용어	정비안
공동구	공동구(共同溝: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하는 지하 설치 시설물)
드잡이공	드잡이공(기울어진 구조물을 해체하지 않고 도구를 이용하여 바로잡는 사람)
소단	소단(小段: 비탈면의 경사를 완화시키기 위해 중간에 좁은 폭으로 설치하는 평탄한 부분)
수장재	수장재(修粧材: 내부·외부 장식재)
업라이트	지지대(upright)
일위대가(一位代價)	단위 수량당 단가
조적공사	벽돌쌓기 공사

2) 경제/경영 분야

대상 용어	정비안
B/L No.	선하증권번호/선하증권(bill of lading)번호
I/L	수입 승인서(Import License)
유산스	유전스(usance: 기한부 어음)
외화획득률	외화획득률(外貨獲得率: 외화획득액에서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제조 롯트 번호	제조단위번호
차인부정액	예비비지출요구액
팩터링어음	팩터링어음(기업이 상거래와 관련하여 취득한 어음을 팩터링 회사가 사들인 후 관리·회수하는 어음)

3) 공업/공학 분야

대상 용어	정비안
DSC 인코더	DSC(Digital Selective Calling: 디지털선택호출) 인코더
Scintillation Counter	방사능 측정 계수기
텐터(tenter)	텐터(tenter: 원료를 주형에 맞게 펴는 공정)
동점도	운동점성계수
럽처밸브	럽처밸브(rupture valve: 압력배관 파손 시 기름의 누설에 의한 승강기의 하강을 방지하는 장치)
모달(modal)프로그램	모달(modal)프로그램(진동 분석 프로그램)
자분탐상시험기	자분탐상시험기(자기를 이용한 결함 조사기)

1 소개

2 용어

3 단정

4 작성례

5 어문규정

4) 교통 분야

대상 용어	정비안
강제햇치카바	강제해치커버(갑판 아래 짐칸 입구를 강제로 덮는 장치)
밸러스트 콤팩터	밸러스트 콤팩터(ballast compactor: 철도자갈다짐기)
보선원	선로보수원
사이드포트	사이드포트(하역을 위한 선체 옆면 출입구)
수밀 격벽	수밀 격벽(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칸막이벽)
스파 부이(spar buoy)	원기둥 부표
인터체인지(IC)	나들목(IC)

5) 기계 분야

대상 용어	정비안
UV-VIS 분광분석계	자외선-가시광선 분광광도계
개스킷	개스킷(gasket: 누설방지재)
교반장치	교반장치(휘저어 섞는 장치)
버니어캘리퍼스	버니어캘리퍼스(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
앵커	앵커(anchor: 구조물과 지반을 결합하는 정착재)
덤웨이터	소형물품 운반용 승강기
탑재체	탑재체(搭載體: 정찰, 통신, 지구 탐사, 대기질 감시, 기상예보 등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성본체에 실은 장비)

6) 농업/축산/산림 분야

대상 용어	정비안
사이로/싸이로/사일로(silo)	사일로(사료 저장고)
삽수(插穗)	삽수(꺾꽂이순)
선발육종	품종개량
용재림	용재림(用材林: 재목을 이용할 목적으로 가꾸는 나무숲)
정지	땅고르기
조사료	조사료(粗飼料: 단백질, 전분 등이 적고 섬유질이 많은 사료)
포장시험	포장시험(圃場試驗: 밭 등에서 이루어지는 시험)
활착	활착(活着, survival: 나무를 옮겨 심은 뒤에 그 나무가 살아남음)

7) 의학/보건 분야

대상 용어	정비안
ALT값	간기능검사(ALT)값
Child-Pugh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HCV	C형간염바이러스(HCV)
경·비골 이개	정강이뼈·종아리뼈 분리
공기색전증	공기색전증(기포가 동맥이나 정맥을 따라 순환하다가 혈관을 막는 것)
비골(腓骨)	종아리뼈
비골(鼻骨)	코뼈
안구진탕증	눈떨림증(안구진탕증)
의사증(擬似症)	의사증(擬似症: 전염성 질환으로 의심되는 병)
족종골/종골	발꿈치뼈
헤르니아(hernia)	탈장

8) 전기/전자 분야

대상 용어	정비안
Plate Reader	색깔 농도 비교 판독기(plate reader)
급전선(給電線)	급전선(給電線: 전파에너지를 전송하기 위하여 송신장치 또는 수신장치와 안테나 사이를 연결하는 선)
멀티미터	멀티미터(multimeter: 휴대용 전류 전압계)
멀티테스터	전기회로시험기
오실로스코프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 전압의 변화를 화면으로 보여주는 장치)
큐비클	큐비클(전기 기기, 수전·변전 설비 등을 둘러싼 구조물)
피토관	피토관(pitot tube: 기체나 액체의 흐르는 속도를 구하는 장치)

9) 정보통신 분야

대상 용어	정비안
ARS	자동응답시스템(ARS)
PDA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URL	인터넷주소/인터넷주소(URL)
VAN	부가가치통신망(VAN)
R&D	연구·개발
리더기	판독기
호스팅	호스팅(hosting: 서버 대여, 운영 등의 서비스)

1
소개2
용어3
단장4
작성례5
어문규정

10) 해양/수산 분야

대상 용어	정비안
밸러스트수	평형수(밸러스트수)
버큘탱크로리	진공탱크로리
빌지킬	빌지킬(bilge keel: 선박이 흔들리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측과 선저를 잇는 만곡부에 설치된 얇고 긴 판)
선가대(船架臺)	선가대(船架臺: 선박을 땅 위로 끌어 올려놓을 수 있는 구조물 및 설비)
채니기	채니기(採泥器: 바다 등의 바닥에서 모래 등 침전물을 긁어내는 장비)
청항선	청항선(淸港船: 해상 오염물질의 제거 작업을 하는 선박)
폰툰부선	폰툰부선(pontoon 解船: 선박을 정박할 수 있도록 수면 위에 인공적으로 설치한 부선)

11) 화학/공업 분야

대상 용어	정비안
PCB	폴리염화비페닐(PCB)
SCR	선택적 환원촉매장치(SCR)
TEQ	TEQ(독성 등가치)
T-N	총질소(T-N)
강열잔분	강열잔분(強熱殘分: 검체를 세게 가열할 때 휘발하지 않고 남는 물질)
공시험(空試驗)	공시험(空試驗: 본시험과의 대조를 위해 같은 조건에서 분석대상 성분을 제외한 실험)
데시케이터	데시케이터(desiccator: 물질 건조, 흡습성 시료 보존을 위한 유리 건조기)

4 외래어와 외국어

가. 외래어와 외국어의 순화 및 정비

정비기준

- 외래어는 ‘외국에서 들어온 말로 국어처럼 쓰이는 단어’를 말한다.⁶⁾
- 순화어를 만들어 쓸 때에는 국어 조어법을 준수한다.
- 외국어는 대응되는 우리말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여 우리말로 바꾸어 쓴다.
- 한글 외에 의미 전달을 위해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때에는 괄호 안에 쓴다.
- 널리 알려진 용어여도 원어로 적을 경우 그 의미나 읽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한글로 적는다.

헬멧(helmet) → 안전모

- ‘헬멧’은 국어사전에 등재되어 있으나 ‘안전모’라는 쉬운 우리말이 있다.

예

대형 또는 간이 저장조, 개인 보호용구(헬멧·작업복 등) 등 각종 기자재의 적정 수량 및 그 확보방안




대형 또는 간이 저장조, 개인 보호용구(안전모·작업복 등) 등 각종 기자재의 적정 수량 및 그 확보방안

(「가족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8조의2제2호)

6) 이 책에서는 국어사전 등재 여부에 따라 등재된 용어는 외래어, 등재되지 않은 용어는 외국어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국어사전에 등재되었더라도 ‘퍼걸러(pergola)’ 같은 어려운 용어를 그대로 법령에 쓸 수 없고, ‘콘서트’ 같이 ‘연주회’나 ‘음악회’ 등 쉬운 우리말 대체어가 있는 용어를 법령에 쓸 수는 없다. 따라서 외래어인가 외국어인가의 구분보다는 해당 용어의 난이도나 우리말 대체어 유무를 기준으로 해당 용어의 정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인텔리전트(intelligent)** → **지능형**

 **헬스케어(health care)** → **건강관리**


- ‘인텔리전트’, ‘헬스케어’는 모두 외국어이다. 각각에 대응하는 우리말을 찾아 쓴다.

예

인텔리전트 퍼스널 헬스케어 기기
→
지능형 개인 건강관리 기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 외래어나 외국어를 바꾼 우리말이 생소하거나 어감의 차이가 있어 순화어만 제시해서는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우면 순화어와 함께 괄호 안에 그 용어의 한글 표기를 적거나 원어를 적을 수 있다.

 **호버크래프트(hovercraft)** → **공기부양정(호버크라프트)**

예

호버크래프트
→
공기부양정(호버크라프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

 **예인훅(曳引 hook)** → **예인용 고리(hook)**


예

예인훅
→
예인용 고리(hook)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2)

- 외래어나 외국어의 적절한 우리말 순화 용어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외래어나 외국어를 먼저 한글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쓴 후 쌍점(:)을 찍고 그 뜻을 쉬운 우리말로 풀어 쓴다.

7) 문장부호 쌍점(:)의 사용 기준은 제264쪽 참조.


 부지(Bougie) → 부지(bougie: 확장기)

예
 부지(Bougie)
 →
 부지(bougie: 확장기)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별표 2)

 모터 그레이더(motor grader) → 모터 그레이더(motor grader: 땅 고르는 기계)

예
 모터 그레이더
 →
 모터 그레이더(motor grader: 땅 고르는 기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

- 외국어를 간략하게 줄인 약어에 대응하는 우리말이 있으면 쉬운 우리말을 먼저 쓰고 약어는 괄호에 적는다.

 ARS(automatic response system) → 자동응답시스템(ARS)

예
 ARS
 →
 자동응답시스템(ARS)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별표 4)

 RPM미터(revolutions per minute) → 분당 회전수 측정기(RPM미터)

예
 RPM미터 5대 이상
 →
 분당 회전수 측정기(RPM미터) 5대 이상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2)

- 바꾸어 쓸 적절한 우리말이 없을 때에는 어문 규정의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외래어나 외국어를 한글로 표기하고, 예시와 같이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적을 수 있다.

예

가. 인터넷 **프로토콜(protocol)** 주소: 인터넷에서 컴퓨터 및 정보통신설비가 인식하도록 만들어진 것
 나. **도메인(domain)** 이름: 인터넷에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사람이 기억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 외래어와 외국어 표기 시 유의사항

- 외국어를 한글로 표기할 때는 어문 규정의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다.

1. 국어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24자모만으로 쓴다.
2. 하나의 음운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기호로 적는다.
3. 받침에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
4. 파열음(ㅂ, ㄷ, ㄱ 계열의 자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이미 굳어져 사용되고 있는 외래어는 관행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표준국어대사전이나 국립국어원 누리집의 외래어 표기법 용례 찾기를 참고한다.
 [예: 핀셋(pincette), 카세트(cassette): 뒷부분의 자모나 발음기호가 같지만 우리말 표기는 ‘셋’과 ‘세트’로 다름]

1) 된소리 ‘ㄱ, ㄷ, ㅂ, ㅅ, ㅈ’를 원칙적으로 쓰지 않는다

사이렌 → 사이렌

예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는 댐의 저수를 방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시·도지사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지하고, 일반인에게는 방류일시 및 주의사항을 방송·**사이렌**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의 저수를 방류함으로써 하류에 현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 예측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라 관계 시·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고, 일반인에게는 방류일시 및 주의사항을 방송·**사이렌**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예외로 된소리를 쓸 수 있는 경우

- 위의 기준과 달리 일본어, 중국어 등에는 ‘쓰나미’ ‘마오쩌둥’과 같이 된소리 표기가 일부 허용된다.
- 또 2005년부터는 태국, 베트남 등지의 언어 표기에 대해 ‘푸켓’ ‘호찌민’처럼 된소리 표기를 쓰기로 했다. 그 이유는 그 나라의 음운체계가 우리나라와 같이 예사소리/거센소리/된소리의 세 체계(ㅂ/ㅃ/ㅍ, ㄱ/ㅋ/ㆁ, ㄷ/ㅌ/ㄸ, ㅈ/ㅊ/ㅉ)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2) 받침에는 일곱 글자(ㄱ, ㄴ, ㄹ, ㅁ, ㅂ, ㅅ, ㅇ)만 쓴다

- ‘ㅍ’ 대신 ‘ㅂ’으로, ‘ㅌ, ㄷ, ㅈ’ 대신 ‘ㅅ’으로 쓴다.
- 짧은 모음 다음의 끝소리 [p], [t], [k]는 받침으로 적는다. ‘coffee shop’을 우리말 소리로 옮기면 [커피숍]이고, ‘diskette’은 [디스켓]이지만, 받침에는 일곱 글자만 쓰므로 ‘-숍’, ‘-켓’으로 쓴다.

예

coffee shop [kɔfi ʃɔp] → 커피숍
diskette [disket] → 디스켓

3) ‘ㅈ, ㅊ’ 다음에는 이중모음(ㅑ, ㅓ, ㅕ, ㅗ 등)을 쓰지 않는다

- 우리말은 ‘ㅈ’과 ‘ㅊ’ 뒤에 오는 ‘ㅑ, ㅓ, ㅕ, ㅗ’와 ‘ㅑ, ㅓ, ㅕ, ㅗ’의 발음이 구분이 되지 않으므로 이를 구별하지 않고 ‘ㅑ, ㅓ, ㅕ, ㅗ’ 한 가지로 적는다.

예

juice → 주스(○), 쥬스(×)
television → 텔레비전(○), 텔레비전(×)

- 그러나 ‘슈퍼마켓’, ‘튕튕’ 등 ‘ㅈ, ㅊ’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에 이중모음을 쓸 수 있다.

4) 이중모음 [ou]는 ‘ㅜ’로 표기한다

예

불도우저 → 불도저
로우더 → 로더
로울러 → 롤러

1 소개

2 용어

3 문장

4 작성례

5 어문규정

5) 어중의 [i]이 모음 앞에 오거나, 모음이 따르지 않는 비음([m], [n])앞에 올 때에는 ‘르’로 적는다

예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칼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

6) [f], [p]는 ‘ㅍ’으로 표기한다

예

“개인정보**파일**”이라 함은 특정개인의 신분을 식별할 수 있는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개인정보의 집합물로서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기타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것을 말한다.

(중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4호)

☑ 틀리기 쉬운 외래어·외국어 표기 목록

대상 용어	순화어	대상 용어	순화어
데이타	데이터	알콜	알코올
룩스	럭스	오리지널	오리지널
맛사지	마사지	칼라	컬러
메뉴얼	매뉴얼	컨텐츠	콘텐츠
바베큐	바비큐	케비넷	캐비닛
밋데리	배터리	콘베이어	컨베이어
브라켓	브래킷	컨테이너	컨테이너
스노우	스노	콘택트렌즈	콘택트렌즈
스테인레스	스테인리스	택	태그
심볼	심벌	프리젠테이션	프레젠테이션
싱가폴	싱가포르	휴즈	퓨즈

☑ 외국어 정비사례 목록

대상 용어	순화어	대상 용어	순화어
논슬립	미끄럼 방지장치	업로드	자료전송
다운로드	내려받기	오일펜스	기름막이/유류오염확산차단장치 (Oil Fence)
다크네이비	진남색	이메일	전자우편
대표브랜드	대표상품	인프라	기반/기반시설
리더기	판독기	카테터	도관
리스크관리	위험 관리	커버류	덮개류
메이크업	화장·분장	타운	마을
스커트	치마	파이프라인	송유관
시멘팅을 하다	시멘트를 바르다	팜플렛	소책자
아쿠아리움	수족관	하이픈	붙임표(-)
아쿠아슈즈	수중용 기능성 신발	헬멧	안전모
안전펜스	안전울타리	화이버보드	섬유판(파이버보드)

1 소개

2 용어

3 문장

4 작성례

5 어문규정

다. 법령 이름 속의 외국어

정비기준

- 법령 이름에는 되도록 외국어나 외래어를 쓰지 않는다.
- 부득이하게 외국어나 외래어를 쓸 수밖에 없으면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다.
- 부득이하게 외국어 원어를 써야 할 경우라도 법령 이름에는 쓰지 않고 해당 용어가 나오는 조문에서 쓴다.

💡 심사 과정에서 법령 이름에 쓴 외국어가 정비된 사례

커버드 본드	→ 이종상환청구권부 채권 (「이종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⁸⁾
금융허브(hub)	→ 금융중심지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홈리스(homeless)	→ 노숙인 등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⁹⁾

💡 법령 이름에 외국어를 쓴 사례¹⁰⁾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이러닝’은 ‘전자학습’이라는 순화어가 있으나, ‘이러닝’이 널리 사용되는 현실을 반영한 법령 이름으로 보인다.
- 외국어인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을 대체할 순화어가 없어 법령 이름에 외국어를 썼는데, 외국어 원어는 이 법의 정의규정에서 괄호 안에 병기했다.

8) 법 제정 시 입안 단계에서 부처와 관계자들은 ‘커버드 본드’를 제명과 조문에서 그대로 쓰기를 원했으나 외국어를 쓰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여 조문의 정의에서만 원어를 병기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9)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부랑인·노숙인의 이미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없애고, 부랑인·노숙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체계를 통합하기 위하여 통합 명칭으로 ‘홈리스’를 쓴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성사되지 못하고 2011년 ‘노숙인 등’으로 개정되고 2011년 위의 법률이 제정되었다.

10) 의원입법 등의 이유로 법령 이름에 외국어가 쓰인 사례가 생겼고 그 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은 외국어 법령 이름의 법률이 제정되었다. 프랑스의 경우 e-learning이 ‘온라인학습’이란 의미가 있는 프랑스어 ‘apprentissage en ligne’로 바뀌었는데, 새로운 개념과 연관이 있는 어휘를 이용하여 프랑스어로 정의하고 명명함으로써 언어를 풍부하게 만드는 데 국가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라. 원어(외국 글자) 표기 시 대문자·소문자 사용법

정비기준

- 로마자는 대문자·소문자를 구분해서 쓰면 법령문의 가독성이 높아진다. 글자 간의 높낮이 차이가 있어 구별이 쉽기 때문이다.
- 대문자·소문자의 표기는 예외가 있으므로 표준국어대사전이나 국립국어원 누리집의 외래어 표기법 용례 찾기를 참고하여 정확하게 표기한다.

1) 대문자·소문자의 구분

가) 용어를 원어로 표기할 때는 기본적으로 소문자로 쓴다.

- 선하증권(bill of lading)
- 스미스골절(smith fracture)
- 패스트 로프(fast rope)

나) 약어는 대문자로 표기한다.

- 그러나 법령문에 약어를 쓸 때는 약어만 쓰면 안 된다. 그 의미나 읽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먼저 한글을 쓴 후 괄호 안에 약어를 함께 쓴다.

- 데이터베이스 - 데이터베이스(DB)
- 간기능검사 - 간기능검사(ALT)
- 조류인플루엔자 - 조류인플루엔자(AI)

2) 대문자 또는 소문자로만 써야 하는 경우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단위체계나 기호를 로마자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표준 규범을 사용한다.

- 국제단위계(International System Units)¹¹⁾

단위기호	이름	양	단위기호	이름	양
A	암페어	전류	m	미터	길이
cd	칸델라	광도	mol	몰	물질량
K	켈빈	온도	s	초	시간
kg	킬로그램	질량			

11) 별표나 별지 서식에서는 단위기호를 쓸 수 있다. 이 경우 의무교육만을 받은 사람이 알기 어려운 기호는 단위기호를 먼저 쓰고 괄호 안에 한글을 함께 적는다. 예) cd → cd(칸델라)

- 원소기호와 한글 표기¹²⁾

원소기호	한글 표기(기호)	원소기호	한글 표기(기호)
Al	알루미늄(Al)	Mn	망간(Mn)
As	비소(As)	Ni	니켈(Ni)
Cd	카드뮴(Cd)	Pb	납(Pb)
Co	코발트(Co)	Se	셀레늄(Se)
Cu	구리(Cu)	Zn	아연(Zn)
Li	리튬(Li)		

5 차별적·권위적 용어

- 특정 집단이나 계층, 대상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나 고정 관념을 심어줄 우려가 있는 용어는 순화된 표현으로 바꾸어 쓴다.

가. 차별적 용어의 정비

정비기준

- 성차별적인 용어, 특정 직업에 부정적 느낌을 갖게 하는 용어, 장애인을 비하(卑下)하는 어감이 있는 용어는 적절한 다른 말로 바꾸어 쓴다.

1) 성차별적 용어

자(子) → 자녀

예

①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


①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를 할 때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 아버지가 외국인인 **자녀**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민법」 제781조) ※2015년 국회제출안

12) 원소기호의 한글 표기는 법령에서 개정된 사례만을 모은 것이다.

2) 특정 직업군에 대해 부정적인 느낌을 줄 수 있는 용어

 강사료 → 강의료, 강사의 강의료

- '강사료'는 직업명과 비용을 합성한 용어로, 특정 직업에 대한 차별성을 지닌 용어이다.


예

강사료와 수당

→

강의료와 수당

(「약사법 시행령」 제34조의8제5항제1호)

 파출부 → 가사도우미

- '파출부'는 직업과 성에 대한 편견을 갖게 하는 사회적 차별 용어이다.

예


청소 및 파출부 관련직

→

청소 및 가사도우미 관련직

(종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3) 장애인을 비하하는 어감이 있는 용어

 불구자 → 신체장애인, 장애인


예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곳에 도움을 받아야 할 노인·어린이·불구자·다친 사람 또는 병든 사람이 있거나 시체 또는 죽어 태어난 태아가 있는 것을 알면서 빨리 이를 관계공무원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곳에 도움을 받아야 할 노인, 어린이, 장애인, 다친 사람 또는 병든 사람이 있거나 시체 또는 사산아가 있는 것을 알면서 이를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6호)

 **농아자 → 청각 또는 언어 장애인,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농아자’는 듣지 못하는 사람과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아울러 이르거나, 듣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 말하지 못하게 된 사람을 이르는 말이지만 법조문에서는 선택적 의미로도 ‘농아자’라는 단어를 사용한 경우가 있으므로 순화할 때 문맥을 보고 순화안을 선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
 제223조(농아자의 통역) 듣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할 수 있다.
 →
 제223조(청각 또는 언어 장애인의 통역) 듣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사람의 진술은 통역인이 통역하게 할 수 있다.
 (「군사법원법」 제223조)

 **불구폐질 → 영구장애**

예
 부양의무자가 불구폐질, 장기질환, 취학, 수형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근로할 수 없는 사람인 경우로서 그 부양의무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영구장애, 장기질환, 취학, 수형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근로할 수 없는 사람인 경우로서 그 부양의무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2호)

 **장애자 → 장애인¹³⁾**

예
 노인·아동·심신장애자·청소년 및 婦女의 보호와 복지증진
 →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라목)

13) ‘장애인’으로 바꾸는 것은 비하의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라 용어를 통일하려는 것이다.

☑ 장애 관련 필수 정비 대상 용어 목록¹⁴⁾

대상 용어	개선 용어	대상 용어	개선 용어
간질	뇌전증	맹인	시각 장애인
간질병자	뇌전증 환자	불구	(신체) 장애인
농아	청각 및 언어 장애	불구자	(신체) 장애인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정신병자	정신질환자

4) 그 밖의 차별적 용어

💡 혼혈아 → 다문화가족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

- 부모 중 한쪽이 외국인인 사람을 비하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다문화가족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이 좋다.

예

고아, **혼혈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외국의 정부·단체 또는 친척 등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사람

→

고아, **다문화가족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외국의 정부·단체 또는 친척 등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사람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3호라목)

💡 사생아 → 혼외자녀

- 결혼하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을 비하하는 의미를 지니므로, '혼외자녀'로 바꾸어 사용하도록 한다.

14) 2014년 「문화재보호법」 등 109건의 법률에서 사용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는 차별적 용어를 발굴하여 일괄 개정하였다.

나. 권위적 용어의 정비

정비기준

- 행정기관이나 특정인이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어감을 내포하고 있는 관(官) 중심의 표현은 쓰지 않는다.
- 시대에 맞지 않는 관행적인 용어, 권위적인 용어는 일반 국민의 정서에 맞는 표현으로 바꾸어 쓴다.

과태료에 처한다 → 과태료를 부과한다

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시달 → 지시, 전달, 통보

- 상부에서 하부로 명령하거나 통지한다는 의미로 ‘시달하다’를 사용하는데, 경직된 어감이 있으므로 일상적인 표현으로 쓴다.

예

국도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

국도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교통안전법」 제17조제2항)

💡 **임검** → **현장조사, 현장검증**

- ‘임검(臨檢)’은 ‘검사에 임한다’, ‘검사한다’는 의미인데 조사자와 조사대상자를 위계에 의해 구분하는 권위적인 어감이 있다.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현장에 가서 조사하는 일을 의미하는 ‘현장조사, 현장검증’ 등으로 순화하여 쓴다.

예

법 제102조제3항에 따른 **임검** 또는 검진지령서의 발급

→

법 제102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의 발급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제12호)

💡 **징구하다** → **내게 하다, 받다**

- ‘징구’는 ‘돈이나 서류 따위를 내게 요구하다’는 의미인데 일반 국민들에게는 생소하면서도 강압적인 어감을 준다.
- 행정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권위적 의미를 지닌 용어이므로 ‘내게 하다’, ‘받다’ 등으로 적절하게 순화하여 쓴다.

예

매입필증 **징구의무자**가 매입자로부터 매입필증을 제출받아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가** 매입자로부터 매입필증을 제출받아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 ‘매입필증’은 ‘매입증명서’ 또는 ‘매입확인증’으로 순화하여 쓸 수 있다.¹⁵⁾

💡 **통할(統轄)하다** → **총괄하다**

- ‘통할하다’는 ‘모두 거느려 다스리다’의 뜻을 가진 말로서 권위적인 어감이 있다. 지휘 통솔의 목적이 강한 조직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일상적인 표현인 ‘총괄하다’로 바꾸어 쓴다.

예

이사장은 공제중앙회를 대표하고 공제중앙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이사장은 공제중앙회를 대표하고 공제중앙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15) 제15쪽 ‘필증’ 참고

6 법령문의 관용적 표현 등

가. 관용적 표현

정비기준

- 법령문에서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써 온 ‘상당하다’, ‘내지’, ‘~라 함은’, ‘~에 의한’, ‘~하지 아니하다’ 등의 한자어나 옛말 투는 일상에서 쓰는 쉽고 간결한 용어나 표현으로 바꾼다.
- 두 가지 이상의 뜻을 가진 용어를 각각 다른 표현으로 쓸 수 있을 때에는 그 다른 표현으로 명확하게 밝혀 쓴다.
- 일상에서 거의 쓰지 않는 옛말 투나 번역 투 표현은 일상적인 표현으로 고쳐 쓴다.

상당(相當)하다 → 적절하다, 타당하다, 해당하다, 상당하다

- ‘상당하다’는 일상 언어생활에서는 ‘꽤 많다’라는 뜻으로 주로 사용되지만, 법령에서는 ‘적절하다’, ‘상응하다’, ‘타당하다’, ‘해당하다’, ‘합당하다’의 뜻으로 많이 사용된다.
- 여러 가지 뜻을 가진 다의어이므로 조문에 따라 일상적인 쉬운 표현으로 고쳐 쓴다.
- 다만, ‘일정한 금액, 수치, 정도 따위에 이르다’ 또는 ‘꽤 많다’의 뜻으로 쓰였을 때에는 일상에서도 ‘상당하다’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대로 쓴다.

예 1: 적절한

위원회는 조정의 신청이 부적법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흠을 바로 잡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흠을 바로 잡을 것을 명할 수 있다.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예 2: 타당하다고

신고의무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병역사항 신고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신고기관의 장이 인정할 때에는 1월의 범위안에서 신고기일을 정하여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고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사항 신고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신고기관의 장이 인정할 때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신고일을 정하여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예 3: 해당하는

제1084조(채권의 유증의 물상대위성) ① 채권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유언자가 그 변제를 받은 물건이 상속재산 중에 있는 때에는 그 물건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② 전항의 채권이 금전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그 변제받은 채권액에 **상당한** 금전이 상속 재산중에 없는 때에도 그 금액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제1084조(채권 유증의 물상대위성) ① 채권을 유증한 경우에 유언자가 그 채권의 변제로서 받은 물건이 상속재산 중에 있는 때에는 그 물건을 유증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채권이 금전을 대상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변제받은 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전이 상속재산 중에 없는 때에도 그 금액을 유증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084조) ※권고안

예 4: 일정한 정도에 이르다 → '상당하다'를 그대로 쓴다


4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한**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지도관·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공직자 등의 병역사상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예 5: 적지 않은, 꽤 큰 → '상당하다'를 그대로 쓴다

제3항의 경우 피성년후견인이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민법」 제947조의2제4항)

 **당해(當該) → 해당, 그**

- '당해'는 법령문 외에는 잘 쓰지 않는 한자어이다. 명사 앞에 쓰여 바로 그 사물이나 대상에 해당됨을 나타낼 때에는 '해당'이나 '그'로 바꾸어 쓴다.
- 지시하는 내용이 문장에 나온 후 '당해'가 나올 때에는 '그'로 바꾼다.
- '그'가 반복적으로 나오거나 '그'가 무엇을 지시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그'보다는 '해당'으로 바꾸는 것이 자연스럽다.

예 1: 해당

공익법인이 **당해**연도의 예산으로 상환할 단기차입을 행한 경우에는 예산수지를 명확히 하여 **당해**연도에 반드시 상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익법인이 **해당** 연도의 예산으로 상환할 단기차입을 행한 경우에는 예산수입·지출을 명확히 하여 **해당** 연도 안에 반드시 상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


예 2: 그

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한 자는 열람 또는 복사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제6항) ※권고안

 내지(乃至)

- ‘내지’는 국어사전상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진 한자어이다. ‘또는’이라는 의미 외에, 수량을 나타내는 말들 사이에 쓰일 경우 ‘얼마에서 얼마까지’라는 의미도 있어 혼동을 줄 수 있다.
- ‘또는’의 의미로 쓴 ‘내지’는 ‘또는’으로 바꾸어 쓴다.
- 법령문에서 조 번호 등과 어울려 쓰는 ‘내지’는 ‘~부터 ~까지’, ‘~부터 ~까지의 규정’, ‘~ 이상 ~ 이하’ 등으로 명확하게 쓴다.
- 조 번호와 어울려 쓴 ‘내지’
 - 원칙: ‘~부터 ~까지’ 다음에 ‘~의 규정’을 붙여서 뒤에 오는 말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한다.
 - 예외: ‘~부터 ~까지’가 열거되는 조문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의 규정’을 붙이지 않아도 문장이 자연스러우므로 ‘의 규정’을 붙이지 않는다.

예

- | | |
|---|--|
|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 → 제2항 부터 제4항 까지의 규정에 따라 |
| 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 → 제3항 부터 제5항 까지 및 제7항에 따라 |
| 제5조 내지 제7조, 제9조, 제12조 및 제15조 내지 제20조를 준용한다. | → 제5조 부터 제7조 까지 , 제9조, 제12조 및 제15조 부터 제20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 해당 인용조항의 범위에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가지번호까지 명시해야 한다.

- | | |
|--|---|
| 제5조 내지 제11조를 준용한다. | → 제5조 부터 제9조 까지 , 제9조의2, 제9조의3,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
| 제74조 내지 제77조 및 제78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제5항 부터 제7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 계급과 어울려 쓴 ‘내지’

예

대통령경호실의 **1급 내지 4급** 경호공무원

→

대통령경호실의 **1급부터 4급까지의** 경호공무원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제3호)

• 축척과 어울려 쓴 ‘내지’

예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치·구역도는 **축척 1만분의 1 내지 2만5천분의 1**로 하여 유어장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면허·허가어업의 어장구역 또는 면허 양식업의 양식장 구역이 표시된 도면에 작성하되, 그 작성방법은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7조를 준용한다.

→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치·구역도는 **축척 1만분의 1부터 2만5천분의 1까지**로 하여 유어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면허·허가어업의 어장구역이 표시된 도면에 작성하되, 그 작성방법은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7조를 준용한다.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항) ※권고안

• 기간과 어울려 쓴 ‘내지’

예


第31條(授業年限) ① 大學(大學院大學을 제외한다)의 授業年限은 **4년 내지 6년**으로 한다. 다만, 授業年限을 6년으로 하는 경우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제31조(수업연한) ① 대학 및 대학원의 수업연한(授業年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사학위과정: **4년 이상 6년 이하**로 하되,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등교육법」 제31조제1항제1호)

 기타(其他)

- ‘기타’는 ‘그 밖의 또 다른 것’이라는 뜻을 가진 말로서 주로 ‘앞말이나 앞 문장과 대등한 것이 또 있음’을 나타낼 때 쓴다.
- ‘기타’는 다음에 오는 말의 수식 범위에 따라 명사나 명사구를 수식하는 관형어(그 밖의)의 역할을 하거나, 이어지는 절을 수식하는 부사어(그 밖에)의 역할을 한다. ‘그 밖의’를 쓸지 ‘그 밖에’를 쓸지는 문장에서 수식관계를 고려하여 선택한다.
- ‘기타’ 다음에 오는 말이 길어질수록 ‘그 밖의’보다는 ‘그 밖에’로 바꾸어 쓰는 것이 자연스러울 때가 많다.
- ‘기타소득’처럼 굳어진 용어는 그대로 쓴다.

• 기타+명사 → 그 밖의

- ‘그 밖의’는 원칙적으로 그 뒤 명사가 바로 오고, 그 명사를 꾸며줄 때 쓴다.

예
 상업 기타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10인
 →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 편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10명

예
 중국인, 일본인, 기타 외국인 → 그 밖의 외국인

| 예외 |

- ‘기타’ 뒤에 바로 명사가 오더라도 ‘기타’가 그 명사를 꾸며주지 않을 때에는 ‘그 밖의’를 쓰지 않는다. 이 경우 문장 전체와 호응하는 부사어 ‘그 밖에’를 쓴다.

- 다음 예시에서 ‘기타’ 뒤에 명사(위원회)가 왔지만 명사 ‘위원회’와 호응하지 않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체를 수식하고 있다.

예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기타+형용사/동사+명사 → 그 밖의

- ‘그 밖의’가 바로 뒤에 오는 형용사나 동사와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으면서 그 형용사나 동사 뒤에 오는 명사를 꾸며 줄 때에는 ‘그 밖의’를 쓴다.

예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 예외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기타 + 형용사 + 명사’의 구성이지만 ‘그 밖의’로 쓰지 않고, 관용어처럼 ‘그 밖에’를 쓴다.¹⁶⁾

16) ‘위원회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원래 모습은 ‘위원회의 구성·운영 기타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였다. 그런데 ‘위원회에 관하여’는 없어도 문장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 생략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것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면서 ‘기타 필요한 사항’이라는 표현으로 굳어진 경우이다. 원래의 문장구성으로 보면 ‘그 밖에’를 쓰는 것이 사실은 예외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예

위원회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⑤ 그 밖에 ○○○○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처럼 마지막 항에 쓰이는 “그 밖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나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으로 구체적으로 쓴다.

- 기타+절/동사구+명사 → 그 밖에
- ‘그 밖에’는 뒤에 ‘절’이 올 때도 쓴다.

예

도로·공원·철도·수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 시설

→ 도로·공원·철도·수도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

- 기타소득 → 현행 유지
- 「소득세법」, 「지방세법」에서 사용하는 ‘기타소득’은 소득을 구분하기 위한 특정 명칭으로 굳어져 있으므로 순화하지 않고 그대로 쓴다.

💡 자(者) → 사람, 자

- 법령에서는 ‘자’가 ‘자연인’이나 ‘법인’의 법인격을 가진 명칭으로 쓰인다.
- ‘자’나 ‘사람’ 모두 ‘자연인’인 ‘사람’을 나타낼 때 쓸 수 있지만 ‘자’가 ‘사람’만을 의미할 때에는 ‘사람’으로 고쳐 쓴다.
- ‘자’가 ‘사람’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를 의미할 가능성이 있으면 ‘사람’으로 바꾸지 않고 ‘자’를 그대로 쓴다.

예 1: ‘사람’만을 가리키는 경우

성년에 달한 자는 양자를 할 수 있다.

→ 성년이 된 사람은 입양(入養)을 할 수 있다.

(「민법」 제866조)

예 2: ‘법인/단체’를 포함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에 따라 사립과학관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그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각각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1 소개

2 용어

3 문장

4 작성례

5 어문규정

💡 인(人) → 명

- ‘명’은 사람을 셀 때, ‘인’은 사람을 셀 때나 한자어 수와 함께 쓰이는 명사이다.
- ‘명’이나 ‘인’ 모두 사람을 세는 단위로 쓸 수 있지만, 법령문에서는 사람만을 세는 단위명사로 ‘명’을 쓰고, 법인이나 단체를 포함할 때는 ‘자/사람’의 구분처럼 ‘인’을 쓰기로 한다.
- ‘위원 3인’처럼 ‘인(人)’이 홀로 단위명사로 쓰일 때에는 ‘명’으로 바꾸어 쓴다.
- 그러나 2인승, 3인분, 5인 가족 등과 같이 굳어진 표현은 그대로 쓴다.

예 1: ‘사람’만을 가리키는 경우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도서로 지정할 수 있는 도서는 10인 이상의 인구가 상시 거주하는 도서이어야 한다. 다만, 10인 미만의 인구가 상시 거주하는 도서라도 도서의 특성을 감안하여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도서를 지정도서로 지정할 수 있다.



법 제4조에 따라 개발대상섬(이하 “지정섬”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섬은 10명 이상의 인구가 상시 거주하는 섬으로 한다. 다만, 10명 미만의 인구가 상시 거주하는 섬이라도 섬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섬을 지정섬으로 지정할 수 있다.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예 2: ‘법인/단체’를 포함하는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발기인은 3인 이상으로 하되, 채권금융기관이 2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1항)

예

10인(×), 10명(○), 2인승(○), 3인분(○), 5인 가족(○)

💡 제○조의 규정에 의하다

- ‘~에 의한/의하여/의한다’가 ‘무엇에 의거하거나 기초하다’의 뜻으로 쓰였을 때에는 ‘~에 따른/따라/따른다’로 바꾼다.¹⁷⁾
- ‘규정(規定)’은 ‘그 정하여 놓은 것’을 뜻하는 말인데 ‘제○조’에 ‘규정’의 의미가 있으므로 ‘규정’을 생략할 수 있다.
- 다만,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에서와 같이 ‘규정’을 생략하면 뜻이 모호해지는 경우에는 ‘규정’을 그대로 살려 쓸 수 있다.

17) ‘의하여’가 방법이나 수단 의미로 쓰였을 때에는 ‘~으로’ 등으로 바꾼다. 다만, ‘의하여’를 ‘~으로’로 바꾸었을 때 수단이나 방법의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에는 바꾸지 않고 그대로 쓴다.(자세한 내용은 제193쪽 참조)

예	
제○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에 따른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 제○조에 따라
제○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조에 따른다

예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 ~라(이라) 함은 → ~란(이란)

- 정의 규정에서 쓰는 ‘~(이)라 함은 ~을/를 말한다’에서 ‘~(이)라 함’의 ‘함’은 ‘말함’의 의미를 나타내므로 서술어가 중복되어 어색하다. ‘~란 ~을/를 말한다’로 고쳐 쓴다.

예	
2. “가맹본부”라 함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2. “가맹본부”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권고안

💡 ~함에는 → ~할 때에는, ~하는 경우에는

예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신청을 함에는 담보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	
→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신청을 할 때에는 담보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64조제1항) ※권고안

 **때**

- ‘~한 때’와 ‘~하는 때’는 ‘~하였을 때’, ‘~할 때’로 바꿔 쓴다.
- 과거의 법령문에서 ‘~한 때’와 ‘~하는 때’ 두 가지 표현이 주로 쓰였는데, 이는 자연스러운 표현이 아니다.
- ‘때’라는 명사는 ‘~ㄴ/을’ 형의 관형어와 호응하기 때문에 (특히 ‘가정’의 조건절에서) ‘~한 때’와 ‘~하는 때’로 쓰는 것은 자연스럽게 않다.
- 다만, 어떤 행위가 일어나는 ‘시점’이 중요한 의미가 있을 때에는 ‘~한 때’나 ‘~하는 때’를 쓸 수 있다.

현행 유지

② 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으로 한다.

1. 영 제40조제1항제1호의 경우: 응급조치를 **한 때**부터 24시간 이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

 **경우**

- ‘경우’는 앞에 오는 말의 어미 형태에 제약을 받지 않으므로 ‘~한 경우’, ‘~하는 경우’와 ‘~할 경우’ 등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예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전송·선로설비를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때** 또는 전송망사업자나 기간통신 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나 중계유선방송사업자와 전송·선로설비의 이용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기술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송·선로설비를 설치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설치한 전송·선로설비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 **설치할 때, 설치하는 경우**

→ **체결하였을 때, 체결한 경우**

→ **변경하였을 때, 변경한 경우**

(「방송법」 제80조) ※권고안

나. 조사

정비기준

-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거나 그 말의 뜻을 도와주는 ‘조사’는 어법에 맞게 고쳐 쓴다.
- 불필요하게 사용된 복합조사(둘 이상의 조사가 모여서 된 조사)는 삭제하거나 문맥에 어울리는 다른 조사로 고쳐 쓴다.

1) 조사

💡 ~이/가 정하는 → ~에서 정하는, ~(으)로 정하는

- ‘대통령령/~부령/정관’ 그 자체는 행위 주체가 되어 무엇을 정할 수 없는 비인격체이다. 그런데 법령에서 사물을 주어로 하여 ‘대통령령/~부령/정관이 정하는’ 같은 어색한 표현을 많이 쓰고 있다.
- 법률의 경우 상위법에서 위임받은 것을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사 ‘에서’를 사용하여 ‘○○법에서 정하는, 이 법에서 정하는’으로 쓴다.
- 대통령령이나 총리령·부령 등은 해당 법률에서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이므로 ‘~으로 정하는’을 쓴다.

법이 정하는, 법률이 정하는	→	법에서 정하는, 법률에서 정하는
대통령령/부령/총리령이 정하는	→	대통령령/부령/총리령으로 정하는
조례가 정하는	→	조례로 정하는, 조례에서 정하는

💡 경우를 제외한다 → 경우는 제외한다

- 주로 단서나 괄호에서 예외를 표현할 때에는 앞서 말한 것과 다름을 드러내는 경우이므로 ‘대조’를 나타내는 보조사 ‘은/는’으로 고쳐 쓴다.

예

교직원의 퇴직·사망·장해(직무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고, 교직원의 직무로 인한 부상·질병·장해·사망에 대해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다.



교직원의 퇴직·사망·장해(직무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고, 교직원의 직무로 인한 부상·질병·장해·사망에 대해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3조)


1 소개

2 용어

3 문장

4 작성례

5 어문규정

 예/에게

- ‘에’와 ‘에게’는 여격(與格) 조사로서 앞말이 어떤 행동/움직임이 미치는 대상임을 나타낸다.
- 앞말이 사람인지 사물인지에 따라 ‘에’와 ‘에게’를 구별해서 쓴다. 즉, ‘나무에 물을 준다’와 ‘운동선수에게 물을 준다’에서처럼 앞말이 사물[무정명사(無情名詞)]일 때에는 ‘에’를 쓰고, 앞말이 사람·동물[유정명사(有情名詞)]일 때에는 ‘에게’를 쓴다.¹⁸⁾
- (기관, 단체)에게 → ~에
- 기관이나 단체는 무정명사이므로 ‘에게’를 쓰지 않고 ‘에’를 써야 한다.

예 1: 에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이 신청한 방송시설의 이용일시가 서로 중첩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회가 모든 정당에게 공평하게 그 일시와 순서를 정하여야 한다.

→

제4항에 따라 정당이 신청한 방송시설의 이용일시가 서로 중첩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모든 정당에 공평하게 그 일시와 순서를 정하여야 한다.

(「국민투표법」 제30조제5항) ※권고안

예 2: 에

지정신청기관이 제2항에 따라 통합적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정신청기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지정신청기관이 제2항에 따라 통합적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정신청기관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74조제3항) ※권고안

- 기관에게 → 기관으로 하여금
- 사역(使役)의 의미를 살릴 필요가 있을 때에는 ‘~로 하여금’으로 바꾼다. 이때 뒤에 오는 동사를 ‘~하도록/~하게’의 형태로 쓰면 행동을 시킨다는 의미가 명확해진다.
- 다음 예시와 같이 ‘지원기관에’를 쓰면 ‘지원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하는 것’으로 읽힐 우려가 있으므로 사역 표현을 쓴다.

18) 무정명사(無情名詞)는 감정을 나타내지 못하는 식물이나 무생물을 가리키는 명사이고, 유정명사(有情名詞)는 감정을 나타내는 사람이나 동물을 가리키는 명사이다.

예 3: ~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53조에 따른 관리기관·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에** 물류 단지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물류단지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53조에 따른 관리기관·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으로 하여금** 물류 단지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물류단지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1조제4항) ※권고안

- 사업자, 시행자 등 ‘○○자’에 대하여 → ○○자에게
- ‘사업자’, ‘시행자’, ‘신청인’ 등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자(者)/-인(人)’이 붙은 용어는 ‘사람’으로 보고 ‘에게’를 쓴다.

예 4: 에게

주무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를 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행위의 시정 또는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주무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를 하고 있는 **사업자에게는** 그 행위의 시정 또는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 ※권고안

2) 복합조사

💡 **까지에** → ~까지, ~ 시점까지, ~ 시까지

- 조사 ‘까지’와 ‘에’를 합성하여 쓰는 것은 자연스럽게 않으므로 ‘에’를 삭제한다.
- 문맥에 따라서는 의미를 잘 전달하기 위해 시점을 추가할 수 있다.

예

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혼인이 성립할 때까지**
- **혼인이 성립하는 시점까지**
- **혼인 성립 시까지**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한 경우에는 **혼인이 성립할 때까지** 그 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약정으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민법」 제829조제4항) ※2015년 국회제출안


1 소개

2 용어

3 문장

4 작성례

5 어문규정

 **즉시로, 즉시로부터¹⁹⁾ → 즉시, 바로 그때부터**

- ‘즉시’는 그 자체로 부사어로 쓰인다. 따라서 ‘즉시’를 ‘즉시로’나 ‘즉시로부터’와 같이 조사와 결합하여 쓰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예
 전항의 판결은 **즉시로** 집행할 수 있다.
 → 제2항의 판결은 **즉시** 집행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제3항) ※권고안

예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 기간을 시(時), 분(分) 또는 초(秒)로 정한 경우에는 **바로 그때부터** 기산(起算)한다.
(「민법」 제156조) ※2015년 국회제출안

 **공직으로부터 → 공직에서**

- ‘로부터’는 시작점을 나타내는 조사이나 다음 예시에서 ‘공직으로부터’는 시작점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니므로 문맥에 적절한 조사로 수정한다.

예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
 탄핵결정은 **공직에서** 파면함에 그친다.
(「대한민국헌법」 제65조제4항) ※권고안

 **처음으로부터 → 처음부터**

- 조사 ‘부터’만으로도 시작점의 의미가 충분히 전달된다.

예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
 주, 월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마지막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민법」 제160조제2항) ※2015년 국회제출안

19) ‘로부터’는 격조사 ‘로’와 보조사 ‘부터’가 결합한 조사로서, 어떤 행동의 출발점이나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조사이다.

다. 숫자²⁰⁾

정비기준

- ‘1, 2, 3...’은 아라비아숫자, ‘일, 이, 삼...’은 한자어 수사, ‘하나, 둘, 셋...’은 고유어 수사이다.
- 부자연스럽게 쓴 아라비아숫자를 자연스러운 우리말 표현으로 바꾼다.²¹⁾

1) 숫자

각호의 1 → 각 호의 어느 하나

예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 둘

예
2 이상의 필지 → **둘** 이상의 필지

2) 숫자의 표기

- 법령 본문에서 수는 만, 억 단위로 한글을 넣어 주되, 마지막 천 단위 아래 자투리 숫자가 없을 때에는 ‘천’도 한글로 쓴다.
- 수식은 아라비아숫자를 쓴다.
- 별표나 별지 서식에서는 아라비아숫자를 주로 쓴다.

12억3456만7500원 (○) 350백만원 (×) 3억5천만원 (○) 3억√5천만원 (×)
700미터 (○) 5만2천미터 (○)

20) 숫자와 어울려 쓰는 단위명사는 숫자와 붙여 쓴다. 숫자와 단위명사의 띄어쓰기는 제253쪽 참조.

21) 일반적으로 적은 수효를 셀 때에는 ‘강아지 두 마리’처럼 고유어를 쓰지만, 수가 커지면 ‘강아지 오십 마리’처럼 한자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3) 수(數)

- ‘수(數)’는 ‘몇, 여러, 약간’의 뜻을 가진 말로서 ‘수십, 수백’과 같이 접두사로 쓰이기도 하고, ‘수 킬로미터’처럼 관형사로 쓰이기도 한다. ‘수개’, ‘수죄’ 등 어색한 조어는 자연스러운 말로 풀어 쓴다.
 - 수개 → 여러, 여러 개
 - 수인 → 여러 명(사람만 포함되는 경우), 여럿(단체나 법인이 포함되는 경우)
 - 수죄 → 죄가 여러 개, 여러 가지 죄
 - 수회 → 여러 차례
- ※ ‘수(數)’는, ‘수십, 수백’과 같이 숫자 앞에 쓸 때는 접두사이기 때문에 붙여 쓰지만, ‘수 킬로미터’처럼 단위나 차례 앞에 쓰일 때는 관형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예 1: 수개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決定)으로 한 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6조)

예 2: 수인

예 3: 수회

수인에 대한 청구 또는 동일인에 대한 수회의 청구를 한 때에는 거절증서 1통을 작성한다.

→

여러 명에게 청구하거나 동일인에게 여러 차례 청구하였을 때에는 거절증서 1통을 작성한다.

(「거절증서령」 제7조)

예 4: 수죄

제1항 본문의 경우 일건 수죄인 때에는 공소시효가 가장 늦게 완성되는 죄의 공소시효기간에 의한다.

→

제1항 본문의 경우 하나의 사건이 여러 죄에 해당될 때에는 공소시효가 가장 늦게 완성되는 죄의 공소시효기간에 따른다.

(「검찰보존사무규칙」 제10조제2항)

조문의 번호 체계

- 조문 번호의 순서는 다음과 같은 순으로 한다.²²⁾
- 1. → 가. → 1) → 가) → (1) → (가)

²²⁾ 번호 체계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랐다.

라. 준말과 본딤말

정비기준

- 준말은 본딤말의 일부분이 줄어든 것이다. 어미나 접사가 줄어 준말이 된 경우는 본딤말과 의미 차이가 없으므로, 일상에서 잘 쓰이지 않는 본딤말은 일상적인 언어 습관에 맞게 준말로 고친다.
- 법률을 제외한 대통령령, 부령 등 하위법령에서는 준말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상에서 준말과 본딤말이 혼용되는 표현은 하위법령에서 둘 다 쓸 수 있다.
- 법률에서도 본딤말을 써서 어색하다고 느껴지는 말은 준말로 쓸 수 있다.

1) 준말을 쓰는 경우

~하여 → ~해

- ‘~하여’가 독립적으로 쓰이지 않고 ‘하여서는’처럼 다른 요소와 결합할 때는 법률과 하위법령 모두 준말을 쓴다.

예

[법률/하위법령] 진입하여서는
→ 진입해서는

예

[법률/하위법령] 대하여는, 대하여서는
→ 대해서는

- ‘~하여’ 다음에 ‘주다’ 등의 보조용언²³⁾이 올 때에는 하위법령에서는 준말을 쓸 수 있다.

예

[하위법령] 다음 서류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 다음 서류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23) 보조용언은 본용언과 연결되어 그것의 뜻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용언을 말한다. ‘가지고 싶다’의 ‘싶다’, ‘보여 주다’의 ‘주다’ 따위를 말한다.

 **이었던, 이어야 → 였던, 여야**

- ‘ㅣ’ 뒤에 ‘ㄱ’가 와서 ‘ㅋ’로 준 경우에는 법률과 하위법령 모두 준말을 쓴다.

예	
	가입자 이었던 자
[법률/하위법령]	→ 가입자 였 던
	인정된 자 이어야 한다
[법률/하위법령]	→ 인정된 자 여야 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니 된다, 아니하는, 아니하게**

- 하위법령에서는 ‘그렇지 않다’, ‘안 된다’, ‘않은’, ‘않게’로 사용한다.

예	
	그러 하지 아니하다
[하위법령]	→ 그렇지 않다
	아 니된다/아니 된다
[하위법령]	→ 안 된다

예	
	하 지 아니한 경우
[하위법령]	→ 하지 않은 경우
	하 지 아니하게 된 경우
[하위법령]	→ 하지 않게 된 경우

2) 본딴말을 쓰는 경우

 **본딴말 ‘~하여’를 쓰는 경우**

- ‘~하여’가 보조용언 등이 없이 쓰일 때에는 법률과 하위법령 모두 ‘~하여’의 형태를 유지한다.

- ‘대하여’, ‘위하여’ 등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예	
[법률/하위법령]	△△에 관한 제○조를 위반 하여 ~를 한 자(○)
	△△에 관한 제○조를 위반 해 ~를 한 자(×)

예	
[법률/하위법령]	△△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

💡 본딤말 ‘~되어’를 쓰는 경우

- 일상생활에서 준말을 쓰더라도 문장에서는 잘 쓰지 않는 준말은 법률과 하위법령 모두 본딤말로 쓴다. ‘되어’, ‘~되어야’ 등은 문어(문장)에서는 ‘되어’, ‘~되어야’로 더 많이 쓰므로 ‘되어’의 형태를 유지한다.²⁴⁾

예

[법률/하위법령]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마. 통일해서 쓸 용어

정비기준

- 같은 의미나 대상에 대하여 서로 다른 표현을 쓰던 것은 하나의 용어로 통일해서 쓴다.

💡 혹은 → 또는

- ‘또는’은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뜻을 가진 순우리말이다. 반면 ‘혹은’은 한자 ‘혹(或)’과 보조사 ‘은’으로 이루어진 말로서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뜻 외에 ‘더러는’이라는 두 가지 뜻을 가졌다.
- 법령에서 쓰는 ‘혹은’은 대부분 ‘그렇지 않으면’의 의미로 쓰고 있으므로 순우리말인 ‘또는’으로 통일해서 쓰기로 한다.

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 **혹은** 노인 등 부양지원을 요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정에 대하여 부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 **또는** 노인 등 부양지원이 필요한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정에 대하여 부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건강가정기본법」 제25조제1항) ※권고안

24) 일상적으로 ‘했다’의 경우 구어(말)에서 ‘했다’를 주로 쓰지만 문어(문장)에서는 ‘하였다’, ‘했다’ 두 가지를 혼용한다. 반면 ‘됐다’의 경우 구어에서 ‘됐다’를 주로 쓰지만 문어에서는 ‘되었다’를 주로 쓴다. 이처럼 문장에서 잘 쓰이지 않는 준말은 본래의 형태대로 적기로 한다.


 **같음하다**

- ‘같음하다’를 ‘대신하다’로 고치지 않는다.
- ‘대신하다’는 ‘같음하다’와 의미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으며, 고유어인 ‘같음하다’를 굳이 한자어인 ‘대신하다’로 바꿀 필요가 없으므로 **‘같음하다’를 그대로 쓴다.**

예: ‘같음하다’를 그대로 쓰는 경우

시·도지사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같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같음하여** 6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32조제1항)

 **불(\$)** → 달러

- 화폐 단위 중 혼용되고 있는 ‘달러’와 ‘불(弗)’은 ‘달러’로 통일해서 쓴다.


예

관광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의 금액이 미합중국화폐 **5억불** 이상일 것



관광사업에 투자하려는 외국인투자의 금액이 미합중국화폐 **5억달러** 이상일 것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3조제1항제1호)

 **월** → 개월

- ‘월’이 달을 세는 단위로 쓰일 때에는 ‘**○개월**’로 고쳐 쓴다. ‘○월이 지난 후 시행한다’고 하면, 1년 열두 달 중 특정한 달(○월)이 지난 후 시행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므로 기간임을 밝혀 명확히 쓴다.

예

군병원장은 심신장애인이 군병원 또는 민간요양기관에 입원한 날부터 **3월**이내에 의무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의무조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군병원장은 심신장애인이 군병원 또는 민간요양기관에 입원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의무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의무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0조제2항)

💡 얻다 → 받다

- 승인(면허, 인가, 동의 등)을 얻다 → 승인(면허, 인가, 동의 등)을 받다
- 종래에 '승인'은 '얻다'와, '면허, 인가, 동의' 등은 '받다'와 어울리는 것으로 써 왔으나, 특별히 구별해서 써야 할 이유가 없고 실익도 없으므로 '받다'로 통일해서 쓴다.
- '의결'의 경우 '받다', '거치다' 등의 표현을 적절히 사용한다.

예

승인을 **얻다** → 승인을 **받다**
 면허를 **얻다** → 면허를 **받다**
 인가를 **얻다** → 인가를 **받다**
 동의를 **얻다** → 동의를 **받다**

✔ 통일할 용어 목록

대상 용어	통일 표현	대상 용어	통일 표현
불(弗)	달리	혹은	또는
월	개월[기간의 단위로 쓸 때]	화상회의	영상회의
얻다	받다	1월말까지/ 6월말까지	1월 31일까지/ 6월 30일까지
평방미터	제곱미터		
해외 해외동포	국외 재외동포	2월말까지	2월 말일까지

바. 구별해서 쓸 용어

정비기준

- 말소리가 같은 동음이의어 또는 말소리가 비슷한 용어는 뜻이 서로 다르므로 구별해서 써야 한다.

결재/결제

- ‘결재’는 결정할 권한이 있는 상관이 부하가 제출한 안건을 검토하여 허가하거나 승인한다는 뜻이다.
- ‘결제’는 증권 또는 돈을 주고받아 사고파는 당사자 사이의 거래 관계를 끝맺는 일로서 주로 돈과 관련된 일에서 쓰는 단어이다.

예: 결재

공개대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백지신탁한 주식이나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하여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결재**, 지시, 의견표명 등의 방법을 통하여 관여해서는 아니 된다.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1제1항)

예: 결제

범칙금은 제8조에 따른 납부 방법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낼 수 있다. 이 경우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경범죄 처벌법」 제8조의2제1항)

기간/기한

- ‘기간’은 ‘어느 때부터 다른 어느 때까지의 동안’을 뜻하는 말로 시간적 간격의 길이를 표시하는 용어이다.
- ‘기한’은 ‘미리 한정하여 놓은 시기’라는 뜻 외에 어떤 법률의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한다거나 언제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하는 것과 같이 법률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일정한 일시의 도달에 매이게 하는 경우에 쓴다.
- 실무상으로는 ‘기간’과 ‘기한’의 개념이 사전적·이론적 개념과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체로 허가기간, 면허기간과 같이 어떠한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사실이 발생하는 시점과

중점이 정해져 있는 경우를 ‘기간’으로, 납부기한, 제출기한과 같이 중점만 정해져 있는 경우를 ‘기한’으로 쓰고 있다.

- 그 기간이나 기한을 확대하는 경우에도 이를 구별하여 ‘기간’은 ‘연장’으로, ‘기한’은 ‘연기’로 주로 쓰고 있다.²⁵⁾

예: 기간을 연장

국토교통부장관이 제6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인가 여부를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2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7항)

예: 기한을 연기

공단은 농어업인이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8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0조제1항)

 **기한 내에/기한내에 → 기한까지**

- ‘기한’은 ‘미리 한정하여 놓은 시기’를 뜻하므로 ‘일정한 시간적 범위의 안’을 뜻하는 ‘내’보다는 ‘범위의 끝’임을 나타내는 보조사 ‘까지’와 어울린다.

예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반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퇴직공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그 납부의무자에게 납부를 독촉하여야 하며 납부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한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반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퇴직공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그 납부의무자에게 납부를 독촉하여야 하며, 납부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권고안

예

분할납부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분할납부하기로 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공인회계사법」 제52조의4제3항제1호)

25) 국회법제실(2024) 『법제기준과 실제』 참조.

 **이내/이상/이하**

• 이내²⁶⁾

- ‘이내’는 명시한 숫자까지 범위를 한정할 때 쓴다.

예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3조제1항)

• ~이상 ~이내/~내지 ~이내 → ~ 이상 ~ 이하

- ‘~ 이상 ~ 이하’는 일정한 숫자에서 시작되어 일정한 숫자까지로 범위를 한정할 때 쓴다.

예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행정규제기본법」 제25조제1항)

예
 제30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은 전체 고용인원의 **3퍼센트 내지 8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업체별 고용비율 이상으로 취업보호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
 제30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전체 고용인원의 **3퍼센트 이상 8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업체별 고용비율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

 **로서/로써**

- ‘로서’는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낼 때 쓰고, ‘로써’는 수단이나 방법, 도구를 나타낼 때다.
- ‘로서’는 예1의 ‘사람’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구조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의 경우처럼 ‘로서’에 결합한 명사와 뒤에 오는 내용이 의미적으로 대등한 경우에 쓴다.
- ‘로써’는 재료, 원료, 수단, 도구 등임을 나타낼 때 쓰이므로, ‘~을/를 써서’, ‘~을/를 가지고’, ‘~행위를 하여’ 등으로 바꾸어 읽었을 때 자연스러운 경우가 많다.

26) 국어사전에서 ‘이내’는 ‘일정한 범위나 한도의 안, 시간, 거리, 수량 따위를 나타낼 때에 두루 쓴다.’로 풀이되어 있는데 ‘15 이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15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예 1: 자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구조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제3호)

예 2: 방법

협회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서 성립한다.

→

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

- 문장 해석에서 '자로서' 앞뒤의 선후 관계를 밝혀 줄 필요가 있을 때에는 '~를 한 후' 등으로 명확하게 쓴다.

예 3: 선후 관계가 있는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기관에서 2주 이상의 ○○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기관에서 2주 이상의 ○○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전 「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 적하(積下)/적하(積荷)²⁷⁾

- '적하(積下)'는 '짐을 부림'이란 말로 화물이나 짐 따위를 일정한 목적지에 내림을 뜻한다.
- '적하(積荷)'는 '화물을 배나 차에 실음, 또는 그 화물'이란 말로 쓰인다.
- 동음이의어이면서 정반대의 의미를 가진 용어들인데다 문맥상의 의미도 혼동하기 쉬우므로 법령에 쓸 때에는 한자를 병기해야 한다.

예: 적하(積下)

화약류는 관할 경찰관서의 승인을 얻지 않고는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탁송을 받거나 적하(積下)하지 못한다.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4조)


※ 위 예시에서 '승인을 얻지 않고는'은 '승인을 받지 않고는'으로 고쳐 쓴다.

27) '적하(積下)'나 '적하(積荷)'는 둘 다 어려운 용어이므로 되도록 '(화물/짐)을 내리다/신다'로 풀어 쓰도록 한다. 특히 '적하(積荷)'는 일본식 한자어이므로 '적하(積貨)'로 쓰거나 '화물 적재'로 쓴다.

예: 적하(積荷)

선박의 가로 방향에 있어서는 선박의 측면에 가깝게 적재할 것. 다만, 가드레일, 불워크(Bulwark)지지대, 도선사의 승선·하선 통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적하(積荷) 틈의 어떠한 부분도 선박의 측면에서 선박 너비의 평균 4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31조의4제3호)

 해치다/침해하다

- ‘해치다’는 ‘어떤 상태에 손상을 입혀 망가지게 하다’라는 뜻이다.
- ‘침해하다’는 ‘침범하여 해를 끼치다’라는 뜻이다.

예: 해치다

누구든지 측량기준점표지를 이전·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예: 침해하다

시·읍·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가 등록부에 기록된 사람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부당한 목적에 의한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증명서의 교부를 거부할 수 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7 어문 규정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기본 원칙인 반듯한 법령을 만들기 위해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및 <외래어 표기법>을 따른다.²⁸⁾
- 법령문의 간결성·함축성 등을 고려한 오랜 관습은 예외로 일부 허용하되, 최소한으로 한다.

가. 띄어쓰기

1) 법령 이름 띄어쓰기

정비기준

- 단어별로 띄어 쓴다.
예시)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 명사(복합명사)만으로 이루어진 법령 이름은 최대 8음절²⁹⁾까지 붙여 쓸 수 있다.
- 예외적으로 8음절을 초과하는 복합명사로 이루어진 조직, 단체 또는 기금의 명칭을 포함하는 법령 이름은 붙여 쓸 수 있다.
예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등 하위법령임을 나타내는 명칭은 띄어 쓴다.
예시) 아동복지법∨시행령
- ‘기본법’, ‘특별법’, ‘특례법’ 등 법률의 성격을 나타내는 명칭은 원칙적으로 띄어 쓴다.
예시) 고용정책∨기본법

28) ‘어문 규정’은 법령문에서 자주 틀리는 띄어쓰기, 두음법칙, 문장부호 등을 중심으로 기술하기로 한다.

29) 일반적으로 사람이 한 번에 독해할 수 있는 적절한 음절의 수는 8음절 내외라고 한다.

• 법령 이름 띄어쓰기 권고안(작성 기준일: 2025. 10. 31.)

- 법령 이름이 아직 한글화가 되지 않았거나 띄어쓰기가 되지 않은 법령 이름을 인용할 때에는 개정되기 전이라도 아래 ‘권고안’으로 인용한다.
- 법령 이름이 아직 띄어쓰기가 되지 않았거나 띄어쓰기가 되었다더라도 적절하지 않게 되어 있는 법령 이름은 그 법령을 일부개정하거나 전부개정할 때 아래 ‘권고안’에 따라 법령 이름 띄어쓰기를 적용하여 개정한다.
- 법령 이름을 다른 법령에서 쓸 때에는 법령 이름이라는 것이 드러나도록 법령 이름 앞뒤에 홑낫표(「 」)를 붙인다.

현행	권고안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과학기술기본법	과학기술▽기본법
國家保安法	국가보안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국가표준기본법	국가표준▽기본법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법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법
國際民事司法共助法	국제민사사법▽공조법
국제선박등록법	국제선박▽등록법
국제수형자이송법	국제수형자▽이송법
군무원인사법	군무원▽인사법
군수품관리법	군수품▽관리법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
기상관측표준화법	기상관측▽표준화법
기상산업진흥법	기상산업▽진흥법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학도서관진흥법	대학도서관▽진흥법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 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 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
대한민국국기법	대한민국▽국기법

현행	권고안
도시V및V주거환경정비법	도시V및V주거환경V정비법
독립유공자예우에V관한V법률	독립유공자V예우에V관한V법률
독서문화진흥법	독서문화V진흥법
디자인보호법	디자인V보호법
만화진흥에V관한V법률	만화V진흥에V관한V법률
먹는물관리법	먹는V물V관리법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V진흥법
문화재보호법	문화재V보호법
물류정책기본법	물류정책V기본법
민방위기본법	민방위V기본법
발전소주변지역V지원에V관한V법률	발전소V주변지역V지원에V관한V법률
범죄수익은닉의V규제V및V처벌V등에V관한V법률	범죄수익V은닉의V규제V및V처벌V등에V관한V법률
보건의료기본법	보건의료V기본법
보험사기방지V특별법	보험사기V방지V특별법
부정청탁V및V금품등V수수의V금지에V관한V법률	부정청탁V및V금품V등V수수의V금지에V관한V법률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V기본법
산업디자인진흥법	산업디자인V진흥법
상법시행법	상법V시행법
생명공학육성법	생명공학V육성법
생활체육진흥법	생활체육V진흥법
소비자기본법	소비자V기본법
소하천정비법	소하천V정비법
수산과학기술진흥을V위한V시험연구V등에V관한V법률	수산과학기술V진흥을V위한V시험연구V등에V관한V법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수산종자산업V육성법
수입식품안전관리V특별법	수입식품V안전관리V특별법
숙련기술장려법	숙련기술V장려법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산업V진흥법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안전V기본법
실종아동등의V보호V및V지원에V관한V법률	실종아동V등의V보호V및V지원에V관한V법률
아동·청소년의V성보호에V관한V법률	아동·청소년의V성V보호에V관한V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양성평등V기본법
어업자원보호법	어업자원V보호법
여성기업지원에V관한V법률	여성기업V지원에V관한V법률
영상진흥기본법	영상V진흥V기본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V보육법
예금자보호법	예금자V보호법

1 소개

2 용어

3 문장

4 작성례

5 어문규정

현행	권고안
豫算會計에관한特例法	예산회계에 관한 특별법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원양산업 발전법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援護財産特別處理法	원호재산 특별처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 발전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의무소방대설치법	의무소방대 설치법
인성교육진흥법	인성교육 진흥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 보장법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별법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특별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 관리법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재외국민등록법	재외국민 등록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 기본법
전력기술관리법	전력기술 관리법
전원개발촉진법	전원개발 촉진법
전통무예진흥법	전통무예 진흥법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조경진흥법	조경 진흥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 임대차보호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 기본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지방문화원진흥법	지방문화원 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지역문화 진흥법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 촉진법

현행	권고안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학교도서관진흥법	학교도서관진흥법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해양환경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행정규제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조사기본법	행정조사기본법
협동연구개발촉진법	협동연구개발촉진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2) 법령문의 띄어쓰기

정비기준

- 띄어쓰기는 한글 맞춤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어사전에 하나의 단어로 등재된 용어는 당연히 붙여 쓰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가)~다)에 따른다.
- 이름이 아닌 고유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어문 규정의 허용 규정에 따라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다.

원칙	허용
대한중학교	대한중학교
한국대학교 사범대학	한국대학교 사범대학

- 전문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어문 규정의 허용 규정에 따라 붙여 쓸 수 있다.

원칙	허용
만성골수성백혈병	만성골수성백혈병
중거리탄도유도탄	중거리탄도유도탄

1 소개

2 용어

3 문장

4 작성례

5 어문규정

가) 띄어 쓰는 경우

💡 항 번호(①, ②) 다음에는 한 칸 띄어 쓴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V이 법

💡 각V조, 각V항, 각V호, 각V목

- 의존명사 ‘조, 항, 호, 목’의 앞말이 숫자가 아닐 경우 앞말과 띄어 쓴다.³⁰⁾
- 각조, 각항, 각호, 각목 → 각V조, 각V항, 각V호, 각V목
- 다만, 가목(目), 나목(目) 등은 ‘제1조’, ‘제1항’, ‘제1호’ 등을 붙여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목’, ‘나목’처럼 붙여 쓴다.

💡 동법, 동조, 동항, 동호, 동목 → 같은V법, 같은V조, 같은V항, 같은V호, 같은V목

- 관형사 ‘동(同)’은 ‘같은’으로 정비하여 ‘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항, 같은 호, 같은 목’으로 쓴다.

💡 본법, 본장, 본조 → 이V법, 이V장, 이V조

- 관형사 ‘본(本)’은 ‘이’로 바꾸어 ‘이 법, 이 장, 이 조’로 쓴다.

💡 V강제징수, V체납처분³¹⁾

- 법령용어나 전문용어로 볼 수 있는 명사구로서 띄어 쓰더라도 의미를 이해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는 용어는 띄어 쓴다.

국세V강제징수 지방세V체납처분

💡 아니V된다, 안V된다, 아니하다

- ‘아니V된다’, ‘안V된다’는 ‘아니’, ‘안’과 다음 글자를 띄어 써야 한다. ‘아니’와 ‘안’은 부사이고 ‘되다’는 동사여서 별개의 단어이기 때문이다.
- ‘~하지 아니하다’에서와 같이 보조용언으로 쓰이는 ‘아니하다’는 ‘않다’의 본딧말로서 하나의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30) 표준국어대사전에 ‘각항(各項)’이 하나의 단어로 실려 있으나 ‘각기 다른 여러 가지’를 의미한다. 법령에서 ‘각 항’은 조(條) 아래의 낱말의 항(項)을 가리키므로 법령의 관용대로 띄어 쓴다.

31) 국세에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강제징수’를 사용하고, 지방세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사용한다.

💡 -용ㅍ

- ‘-용(用)’ 다음은 띄어 쓴다.

공사용ㅍ건축물

💡 ㅍ유효기간

- ‘유효기간’은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법령용어이고 ‘유효기간’이 포함된 명사구를 띄어 쓰더라도 혼선의 소지가 적으므로 띄어 쓴다.

어업면허ㅍ유효기간

💡 ㅍ안, ㅍ밖, ㅍ전, ㅍ후, ㅍ이상, ㅍ이하, ㅍ미만, ㅍ이내, ㅍ이전, ㅍ이후

- ‘안, 밖, 전, 후, 이상, 이하, 미만, 이내, 이전, 이후’는 모두 앞말과 띄어 쓴다.

학교ㅍ안에서, 자연공원ㅍ밖, 이 법 시행ㅍ전, 합병ㅍ후, 10년ㅍ이상, 5년ㅍ이하,
3개월ㅍ미만, 1년ㅍ이내, 2015년 4월 1일ㅍ이전, 2010년 5월 2일ㅍ이후

- ‘지체 없이’는 한 단어가 아니므로 띄어 써야 한다.


예

촉탁법원이 제1항의 비용명세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법원보관금 출금명령서를 세입세출외현금출납 공무원에게 회부하여 법 제9조의 예납금중에서 위 비용상당액을 국고귀속시키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촉탁법원이 제1항의 비용명세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ㅍ없이** 법원보관금 출금명령서를 세입세출외현금출납 공무원에게 회부하여 법 제9조의 예납금 중에서 위 비용상당액을 국고귀속시키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국제민사사법공조규칙」 제4조제2항) ※권고안

 **의존명사 ‘v시’**

- ‘시’는 명사나 어미 ‘~을’ 뒤에 쓰여 ‘어떤 일이나 현상이 일어날 때나 경우’라는 뜻의 의존명사이다. 따라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예

제37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시**의 제출서류 등)

→


제37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v시**의 제출서류 등)

제37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신청할 때**의 제출서류 등)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 제목)

- 그러나 ‘비상시’, ‘평상시’처럼 하나의 단어로 굳어져 사용되는 단어는 붙여 쓴다.


비상시, 필요시, 유사시, 평상시, 혼잡시, 일출시, 일몰시

 **의존명사 ‘v중, v내, v외’**

- 의존명사 ‘중, 내, 외’는 모두 앞말과 띄어 쓴다.

관계 전문가**v중**, 기일**v내**, 규정된 사항**v외**

 **붙여쓰기를 허용하는 경우**

 **정의, 약칭**

- 법령문의 ‘정의’나 ‘약칭’은 법령 내에서 구별하기 쉽도록 붙여 쓸 수 있다.
-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쓰고 있는 중요한 용어나 어구에 대해 그 법령 자체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법령의 해석과 적용상의 의문점을 없애기 위해 두는 입법기술의 한 방식이다.
- ‘약칭’은 하나의 법령 내에서 법령문의 표현을 간결하게 하고, 특정 내용이나 대상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활용하는 입법기술의 한 방식이다.
- 다른 법령에서 정의하거나 약칭한 용어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띄어쓰기에 따른다.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4호)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이하 이 조에서 “**심의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건축법」 제4조제1항)

- 의존명사 ‘등’은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등’은 두 가지의 국어사전적 의미가 있다.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뜻과 두 개 이상의 대상을 열거한 다음에 쓰여 ‘대상을 그것만으로 한정함’을 나타내는 뜻이 있다.
- 법령의 정의나 약칭에서 주로 쓰는 ‘등’은 두 번째 의미로 쓴 것이다. 그러나 법령문뿐만 아니라 일반 문장에서도 두 가지의 다른 ‘등’을 구별하기란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법령에서 정의나 약칭에 쓰는 ‘등’은 그것만으로 한정하는 ‘등’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기관, 단체

- 기관(위원회, 협회 등), 단체(공단, 공사, 조합 등), 기금 등의 이름은 붙여 쓸 수 있다.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축산업협동조합, 한국마사회, 축산부류도매시장법인

~시설, ~사업, ~계약, ~계획, 직종 등의 이름

- ‘고유명사 성격의 명사구’는 띄어 쓰지 않고 붙여 쓸 수 있다.
 - ▶ 법령에서 일정한 기준이나 요건 등을 충족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용어의 일반적인 의미를 한정하거나 축소하고 있는 경우, 즉 노인복지시설, 가맹계약, 노인복지상담원 같은 경우는 ‘고유명사 성격의 명사구’로서 띄어 쓸 수도 있고 붙여 쓸 수도 있다.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에서 일정한 인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있어 의미가 한정됨
가맹계약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가맹사업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으로 의미가 한정됨
노인복지상담원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 가운데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위촉된 사람을 의미함

나) 붙여 쓰는 경우

 '조 번호'와 '조 제목'은 붙여 쓴다.

제2조(정의)

 '조 번호, 항 번호, 호 번호, 목 번호'를 서로 붙여 쓰고, '가지번호'도 붙여 쓴다.

- 제△조제△항제△호△목

제5조제2항제4호가목(○), 제5조의3(○)
제5조 제2항 제4호 가목(×), 제5조의 3(×)

※ 조, 항, 호 목의 번호는 하나의 명칭 또는 의미단위이므로 붙여 쓴다.

제5조제2항제4호가목

 행정처분


- 하나의 법률행위나 행정처분은 붙여 써도 어문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므로 알아보기 쉽게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건축허가, 영업정지, 허가취소, 인가취소, 등록취소, 변경허가, 변경인가, 변경등록, 변경신고, 중지명령, 착공신고, 폐쇄명령, 행정처분

 장관 직책

- '기관 이름'과 '장관 직책'은 붙여 쓴다.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V장관(×)

 장 제목

- 법령문에서 '장 제목'은 글자 간격을 벌리지 않고 붙여 쓴다.

제 1 장 총 칙 → **제1장 총칙**
제 9 장 벌 칙 → **제9장 벌칙**

💡 게을리하다

- ‘게을리하다’는 부사 ‘게을리’에 접미사 ‘하다’가 붙어서 동사가 된 것이므로 ‘게을리하다’로 붙여 쓴다. ‘멀리하다’, ‘가까이하다’ 등과 같다.

멀리하다, 가까이하다, 게을리하다(○)
게을리V하다(×)

💡 관계있다, 관계없다, 상관있다, 상관없다, 관계없이, 상관없이

- 하나의 낱말로 국어사전에 실려 있으므로 붙여 쓴다.

💡 접미사 ‘-당’

- (수, 단위를 나타내는 대다수 명사 또는 명사구 뒤에 붙어) ‘마다’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서 앞말에 붙여 쓴다.

마리당 삼천원, 시간당 얼마, 40명당

💡 접미사 ‘-별’

-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것에 따른’의 뜻을 나타내는 접미사로서 앞말에 붙여 쓴다.

능력별, 성별, 월별, 직업별, 학년별

- 다만, 굳이 쓸 필요가 없거나 다른 말로 풀어 쓸 수 있으면 적절하게 바꾼다.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및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

방청권의 **종류**는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및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국회방청규칙」 제5조) ※권고안

💡 접미사 ‘-상’

- ‘앞말과 관계된 입장’ 또는 ‘앞말에 따름’이라는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서 앞말에 붙여 쓴다.

관계상, 미관상, 사실상, 외관상, 절차상

- '구체적인 또는 추상적인 공간에서의 한 위치'라는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서 앞말에 붙여 쓴다.

인터넷상, 통신상

 **접미사 '-하'**

-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것과 관련된 조건이나 환경'이라는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서 앞말에 붙여 쓴다.

식민지하, 원칙하, 지도하, 지배하

- 다만, 굳이 쓸 필요가 없거나 다른 말로 풀어 쓸 수 있으면 적절하게 바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외국의 관할하에 있는** 위성망과의 혼신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외국이 관할하는** 위성망과의 혼신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파법」 제40조제1항)

 **단위명사**


- 숫자 뒤에 쓰는 단위명사는 숫자와 붙여 쓴다.

12억3456만7500원 (○) 3억5천만원 (○) 5만2천미터 (○) 700미터 (○)

※ 어문 규정에 따르면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 관형사 뒤에 단위명사가 붙어서 차례를 나타내거나 단위명사가 아라비아숫자 뒤에 붙을 때는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또 금액 등을 적을 때에는 번조 등의 사고를 방지하려는 뜻에서 모두 붙여 쓰는 것이 관례이므로, 법령문에서는 숫자와 단위 명사를 띄어 쓰지 않고 모두 붙여 쓴다.

다) 띄어 쓰는 경우와 붙여 쓰는 경우의 구분

- 의존명사는 띄어 쓰고, 접미사와 어미는 붙여 쓴다.

 **의존명사 '간'과 접미사 '간'**

- 의존명사 '√간'
- 한 대상에서 다른 대상까지의 '사이'를 뜻하거나, 일부 명사 뒤에 쓰여 '관계'의 뜻을 나타내는 의존명사 '간'은 띄어 쓴다.

(대상의 사이) 서울과 부산[∨]간
(관계) 부모와 자식[∨]간

- 다만 '간'이 앞말과 함께 한 단어로 굳어진 예들은 붙여 쓴다.

국제^간, 다자^간, 피자^간, 고부^간, 부녀^간, 부부^간, 부자^간, 동기^간, 천지^간

• 접미사 '-간'

- 기간을 나타내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동안'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서 앞말에 붙여 쓴다.
- 경우에 따라 '간'은 '동안'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이틀^간, 한 달^간, 삼십 일^간
이틀[∨]동안

의존명사 '데'와 연결어미 '데'

• 의존명사 '∨데'

- '데'가 '곳이나 장소', '일이나 것', '경우'의 뜻을 나타낼 때에는 의존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 '데에'에서 '에'를 생략할 수 있다.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기본법」 제2조)

※ '데' 뒤에 '에' 등 조사가 결합할 수 있으면 띄어 쓰고, 결합할 수 없으면 붙여 쓴다.

• 연결어미 '-는데/-은데/-는데'

- 상황을 미리 말할 때 쓰는 연결어미 '-는데, -은데, -는데'의 '데'는 앞말에 붙여 쓴다.

없는데, 가는데, 사는데

💡 의존명사 '바'와 연결어미 '바'

• 의존명사 'ㅂ바'

- '앞에서 말한 내용 그 자체나 일 따위를 나타내는 말'로서 '방법, 일, 것' 등에 가까운 뜻을 나타낼 때에는 의존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의존명사는 체언이므로 조사 '에', '의' 등이 결합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ㅂ바에 따라

• 연결어미 '-ㄴ바/-은바/-는바'

- '-ㄴ바, -은바/-는바'는 뒤 절에서 어떤 사실을 말하기 위하여 그 사실이 있게 된 것과 관련된 상황을 제시하는 데 쓰는 연결어미이므로 어미의 일부인 '바'를 앞말에 붙여 쓴다.
- 주로 '-ㄴ데', '-니' 따위에 가까운 뜻을 지닌다. 고어 투의 문어체 표현으로, 보고서 등 공문서에 자주 사용되나 되도록 일상생활에서 쓰는 표현으로 바꾸어 쓴다.

검토했바(=검토했으니), 정해진바(=정해졌으므로, 정해졌는데),
실시되는바(=실시되므로, 실시되는데), 들은바(=들어보니), 읽은바(=읽어보니)

💡 의존명사 '지'와 연결어미 '지'

• 의존명사 'ㅂ지'

- '어떤 일이 있었던 때부터 지금까지' 를 나타내는 뜻으로 쓸 때에는 의존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제78조에 따라 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ㅂ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여 그 후의 이 법에 따른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84조)

※ '지'를 비슷한 의미의 명사인 '시간'이나 '기간'으로 바꾸어 읽었을 때 자연스러우면 띄어 쓴다.

• 연결어미 '-ㄴ지/-은지/-는지'

- 막연한 의문이 있는 채로 이어지는 절의 사실이나 판단과 관련시키는 데에 사용될 때에는 연결어미이므로 어미의 일부인 '지'를 앞말에 붙여 쓴다.

통일부장관은 재단의 자산이 정당한 목적으로 사용·관리되고 있는지 관리한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나. 두음법칙

- 두음법칙이란 단어의 첫소리에 ‘ㄴ’이나 ‘ㄹ’이 올 수 없는 음운법칙을 말한다.

💡 년, 연

- 한자음 ‘녀, 뇨, 뉴, 니’가 첫머리에 오면, 두음법칙에 따라 ‘여, 요, 유, 이’로 적는다.

예
년월일 → 연월일

- 합성어는 아니지만 두 단어가 결합하여 쓰이는 경우에는 두 단어가 결합되기 전의 형태에서 두음법칙을 적용한다.

예

경과년수		경과연수
내용년수		내용연수(耐用年數)
승인년도	→	승인연도
제조년월일		제조연월일
회계년도		회계연도

※ ‘전년도’는 ‘전년+도(접미사)’의 구성이므로 두음법칙과 상관없이 ‘전년도’로 쓴다.

💡 리

-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리(里), 리(理)
- 구역을 나타내는 ‘리(里)’를 두음법칙에 따라 ‘이’로 쓰면 대명사 ‘이’와 혼동될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동·리’ 또는 ‘리’로 쓴다.

예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제4항)

※ ‘동·리’ 또는 ‘리’로 쓰더라도 ‘리’의 장(長)은 ‘이장’으로 쓴다.

- ‘까닭’, ‘이치’의 뜻을 나타내는 의존명사 ‘리(理)’는 본음대로 적는다.

예
그럴 리가 없다.

 열/울


-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는 ‘열, 울’로 적고, 그 밖에는 ‘렬, 룰’로 적는다.

예
열/울: 나열, 비율, 선율, 전율, 백분율
렬/룰: 확률, 유량변동률

다. 문장부호³²⁾

1) 가운뎃점

- 열거된 여러 단위가 대등하거나 밀접한 관계임을 나타낼 때 가운뎃점³³⁾을 사용한다.
- 예: 지정·공고, 조사·연구, 조사·심의, 지도·감독, 위법·부당, 기록·유지, 설치·운영, 유지·관리, 부과·징수 등
- ‘A, B·C, D 및/또는 E’ 처럼 입법기술 면에서 쉽표(.)와 가운뎃점(·)이 혼용된 경우에도 가운뎃점을 사용한다.

 가운뎃점을 ‘와, 과, 나, 이나’ 등으로 바꾸어 쓸 수 있는 경우

- 두 단어 사이의 가운뎃점

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사의 관리에 필요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구축하여 운영할
→ 구축·운영할

※ 연결되는 사항이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 가운뎃점으로도 연결할 수 있다.

32) 문장부호의 자세한 쓰임은 한글 맞춤법 부록(이 책 제259쪽)을 참조하고, 여기서는 법령문에서 주로 사용하는 문장부호의 사용법에 대해서만 살핀다.
33) 법령에 가운뎃점을 입력할 때에는 훈글(HNC)문자표 HNC코드번호가 ‘357D’[전각 기호(일반)]인 가운뎃점을 쓴다. 문자표 맨 밑의 오른쪽에 있다.

예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이
 →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이
 →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이

• 세 개 이상 단어나 구절 사이의 가운뎃점


- ‘A·B 또는 C’의 경우 셋 중 선택임을 뜻하나, A는 당연히 포함되고 B와 C 중 선택적으로 하나가 더 포함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므로, 문맥에 따라 그렇게 해석될 우려가 있으면 ‘A나 B 또는 C’로 열거하거나 각 호 등으로 나누어 규정하는 방법으로 명확하게 한다.

예

• A·B 및 C	→	• A, B 및 C	• A, B 또는 C
		• A와 B 및 C	• A나 B 또는 C
		• A·B 및 C	• A·B 또는 C

- 다음 예시를 보면, 가운뎃점을 써도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규모, 건축물의 형태’라는 점이 명확하다. 이렇게 수식관계에서 ‘건축물의’가 어디까지 수식하는지 명확하게 드러낼 때에는 쉼표보다는 가운뎃점이 시각적으로 유리하다.

예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고려할 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운뎃점을 써서는 안 되는 경우

- 구나 절을 연결하는 경우: 띄어져 있는 구(句)인 ‘주무기관의 장’을 ‘기획재정부장관’과 가운뎃점으로 연결해서는 안 된다.


예
 예산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은 기획재정부장관·주무기관의 장 및 감사원장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기획재정부장관, 주무기관의 장 및 감사원장

사무소이전·개업·휴업 및 폐업 → 사무소V이전, 개업, 휴업 및 폐업



- ‘직계존·비속’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아우르는 말이나 가운데점을 사용할 경우 앞뒤로 하여 ‘직계존’과 ‘비속’으로 읽힐 우려가 있다. 이런 경우는 ‘직계존비속’으로 가운데점을 쓰지 않거나 ‘직계 존속·비속’,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 풀어 쓴다.

예
 직계존·비속 → 직계존비속, 직계 존속·비속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가운데점의 적절한 사용**

- 가운데점 사용 시 문맥을 보아 의미 단위로 묶어 주어야 한다.
- ‘주민등록표 등본’과 ‘주민등록표 초본’이라는 의미이므로 ‘주민등록표등·초본’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예
 주민등록표등·초본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주민등록표 등본과 주민등록표 초본

 **가운데점을 사용하여 간결하게 표현한 경우**

- 다음 사례는 가운데점과 ‘및’, ‘또는’이 한꺼번에 쓰인 문장을 간결하게 정리한 것이다.
- 가운데점(·)을 사용하면서 줄여 쓰는 경우도 많은데, 절약되는 음절이 대부분 한두 음절 정도에 불과하면서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으므로 되도록 줄여 쓰지 않고 정확하게 모두 표기한다.

예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효율적인 학교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의 실정에 따라 초등학교 및 중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시설·설비 및 교원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 실정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 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시설·설비 및 교원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30조제1항)

 **가운데점이 필요 없는 경우**

- 한 단어로 굳어진 용어는 가운데점 없이 붙여 쓴다. 한 단어인지 아닌지는 국어사전 등재 여부로 알 수 있다.

✓ 한 단어로 굳어진 용어 목록

대상 용어	정비 용어	대상 용어	정비 용어
국·공립	국공립	인수·인계	인수인계
국내·외	국내외	임·직원	임직원
송·수신	송수신	천재·지변	천재지변
수·출입	수출입	총·포	총포
신·구	신구	출·입구	출입구, 출입문
어·패류	어패류	통·폐합	통폐합

2) 쉼표

- 어구를 열거할 때에는 쉼표를 쓴다.

기본 계획의 수립, 시행 결과의 확인, 최종 성과의 종합

- 절과 절 사이에는 쉼표를 쓴다.

예

광역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허가권자나 도지사(이하 "허가권자등"이라 한다)의 제11조에 따른 건축 허가나 사전승인에 대한 질의민원을 **심의하고**, 기초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 한다)·군수·구청장의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와 관련한 질의민원을 심의한다.

(「건축법」 제4조의4제2항)

💬 가운뎃점과 쉼표의 구분

- 열거되는 단어의 무리 사이에는 쉼표를 쓰고, 이와 같이 열거되는 개별 단어 사이에는 가운뎃점을 쓴다.

예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신이면 및 군자면**, 영암군 **삼호면·이호면 및 학산면**, 무안군 **일로읍 및 몽탄면**과 나주시

3) 마침표

- 괄호 안에 문장이 하나일 때에는 마침표를 찍지 않고, 둘 이상일 때에는 맨 마지막 문장에만 마침표를 찍지 않는다.

예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쌍점

- 쌍점(:)은 어문 규정에 따라 앞말에 붙여 쓴다.

예
 제6차시험 : 면접시험. 다만, 실기시험을 병과할 수 있다.
 → 제6차시험: 면접시험. 다만,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6조제1항제6호)

- 용어 뒤 괄호 안에 해당 용어의 원어나 한자어를 쓰고 뜻을 적을 경우 그 원어나 한자어 뒤에 쌍점을 쓴다.

예
 Colles → 콜리스 골절(Colles fracture: 손목 관절의 2.5cm 이내 노뼈의 아래 끝 골절)
 계대배양(繼代培養) → 계대배양[繼代培養: 세포증식을 위해 새로운 배양접시에 옮겨 세포의 대(代)를 이어 배양하는 방법]

5) 큰따옴표

- 법령문에서 큰따옴표(“ ”)는 주로 정의하는 용어나 약칭에 사용한다.
- 정의나 약칭 뒤에 한자나 원어를 괄호에 병기할 때 큰따옴표는 한글 용어에만 하기로 한다.

예
 “사업주(事業主)”란 근로자를 고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업(이하 “건설업”이라 한다)을 하는 자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면허·허가·등록 등을 받거나 한 자를 말한다.
 →
 “사업주”(事業主)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권고안

6) 괄호

- 법령문에서 괄호는 우리말 표기와 원어 표기를 아울러 보일 때, 보충적인 내용을 덧붙일 때 사용하는데, 주로 소괄호(())를 쓴다.
- 다음의 경우에는 대괄호([])를 사용한다.
 - 괄호 안에 또 괄호를 쓸 필요가 있을 때 바깥쪽의 괄호는 대괄호를 사용하고, 안쪽의 괄호는 소괄호를 사용한다.
 - 예) 큰아버지[백부(伯父)]
 - 고유어에 대응하는 한자어를 함께 보일 때 쓴다.
 - 예) 나이[年歲]

예

사시로 인하여 정면 또는 하방 20도 이내 주시 시 **복시**가 있는 사람



사시로 인하여 정면 또는 하방 20도 이내 주시 시 **검보임[복시(複視)]**이 있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부비동(副鼻洞)**암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코안·**코결골[부비동(副鼻洞)]**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예

비상통신업무: 지진·태풍·홍수·해일·**설해**·화재, 그 밖의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인명구조·재해구호·교통통신의 확보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하는 무선통신업무



비상통신업무: 지진·태풍·홍수·해일·**눈피해[雪害]**·화재, 그 밖의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인명구조·재해구호·교통통신의 확보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하는 무선통신업무

(「전파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3호)

제3장

문장편

제1절 | 문장 준비의 원칙

제2절 | 문장 준비의 실제

알기 쉽고 반듯한 법령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법률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제1절 ▶ 문장 준비의 원칙

바른 문장 쓰기

- 어법에 따라 주어, 목적어 등 필요한 문장성분을 갖추어 쓴다.
- 문장의 주어가 잘 드러나도록 쓴다. 특히 복문³⁴⁾에서는 각각의 주어에 맞는 각각의 서술어를 써서 의미를 분명하게 한다.
- 어순을 올바르게 한다. 긴밀한 관계가 있는 구절은 서로 가까이 두고 문장성분 간에 호응이 되도록 한다.

간결한 문장 쓰기

- 법령문의 기본 단위인 조나 항은 한 가지 주제로 구성한다. 문장에 내용이 너무 많으면 문장이 복잡해지므로 조나 항은 되도록 한 문장으로 구성하되, 필요하면 단서나 후단을 활용한다.
- 많은 내용이 열거되는 복잡한 문장은 열거되는 사항을 호와 목으로 구분하여 쓰고, 수식 관계를 단순하게 정리한다.
- 중복되는 표현, 당연한 내용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명확한 문장 쓰기

- ‘또는’, ‘및’에 의한 연결 관계를 분명하게 쓴다. 특히 수식 관계가 중의적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이중 부정문은 긍정문으로 바꾸어 의미를 명확하게 한다.
- 다의적, 중의적인 표현은 지양하고, 지시어는 되도록 쓰지 않으며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 필요한 내용이나 문장성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자연스러운 문장 쓰기

- 되도록 능동문으로 쓴다. 능동문에 비해 피동문은 구조가 복잡하고 행위주체(주어)를 파악하기도 어려우므로 능동문을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4) 단문과 복문 등 문장의 짜임에 관한 것은 제203~204쪽 참조.

- 일본어 투 표현은 우리말 표현으로 바꾼다. 명사가 연속되는 명사구 중심의 문장, 부자연스럽게 쓰인 격조사, 일본어에서 온 관용적 표현, 일본어 직역 투의 피동문은 우리말 어법에 맞는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바꾼다.

한눈에 보이는 문장 쓰기

- 표, 계산식, 그림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법령의 내용을 쉽게 파악하는 데 효과적일 때에는 표, 계산식, 그림 등으로 표현한다.

제2절 ▶ 문장 정비의 실제

1 바른 문장 쓰기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일반적인 글쓰기에서 널리 따르는 어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법 문장을 쓸 때에는 선례나 관행화된 표현 방식에 따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 반면, 어법을 준수하는 것에는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어법은 법 문장이라고 하여 예외로 할 수 없는, 문장을 쓸 때 꼭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다. 따라서 법 문장을 쓸 때에도 어법에 따라야 한다.
- 먼저 문장에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 등의 필수적인 문장성분을 갖추어 써야 한다. 다만, 반복되는 주어 등 없어도 문맥상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생략할 수 있다.
- 우리말은 조사가 명사 등에 붙어 그 말과 다른 말의 관계를 표시하거나 뜻을 더해 주는 기능을 하므로 조사를 잘 활용해야 한다.

가. 주어를 분명히 밝힌다

1) 법령 문장에는 원칙적으로 주어를 쓴다

정비기준

- 우리말에서는 종종 주어를 생략하고 문맥과 정황으로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법 문장에서 주어는 행정권한의 주체를 나타내거나 일정한 행위 또는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자를 정하는 것이므로 중요하다. 행정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는 위법할 뿐만 아니라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법 문장의 주어는 분명히 밝혀 주어야 한다.
- 법 문장의 주어가 의무 이행자인 경우에도 의무 이행자를 정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가) 주어를 바르게 쓴 예시

(1) 행정권한의 주어를 분명하게 하는 경우

- 행정권한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주어를 밝혀 썼다.

예

제11조(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① 행정청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행정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행정기본법」 제11조제1항·제2항)

(2) 복문의 주어가 다른 경우

- 복문에서 두 절의 주어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 주어를 드러내야 한다.
- 다음 예시의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는 주체는 외교부장관이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는 주체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므로 각각 주어를 밝혀 썼다.

예

제11조(외국 현지법령 준수 등) ① (생략)

② 외교부장관은 외국 현지에서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 법, 외국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을 위반한 경우 관련 내용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 다음 예시의 경우 '하수급인이 ~ 준수하도록'은 부사절로서 서술어인 '관리하여야 한다'를 꾸며 주고 있다. 주절의 주어(수급인)와 부사절의 주어(하수급인)가 다르므로 각각 밝혀 썼다.

예

제29조의2(건설공사의 하도급관리) ①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제29조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2제1항)

나) 주어를 찾아 쓴 정비사례

💡 복문의 다른 주어를 찾아 쓴 경우

- 다음 예시는 ‘그 시설·장비등의 이용에 있어서’가 안겨 있는 문장이다. ‘협력하여야 하는’ 주체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주체는 ‘정부와 공공단체’이지만, ‘이용하는’ 주체는 ‘정부와 공공단체’가 아니므로 해당하는 주체를 찾아 밝혀 써야 한다.

예

제8조 (정부등의 지원) **정부와 공공단체는**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그 시설·장비등의 **이용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8조(정부 등의 지원) **정부와 공공단체는**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조합과 중앙회가** 그 시설·장비 등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업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8조)

💡 생략된 주어를 찾아 쓴 경우

- 다음 예시에서 본문의 주어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총격기·석공의 제조업자·판매업자 또는 화약류저장소설치자’이나, 단서의 주어는 그렇지 않다. 그러나 단서의 주어가 생략되어 마치 본문의 주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반드시 서술어(연장하다)의 주체를 찾아 밝혀 써야 한다.

예

제43조(완성검사)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총격기·석공의 제조업자·판매업자 또는 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허가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검사에 합격한 후가 아니면 업무를 개시하거나 시설 또는 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43조(완성검사) **제조업자, 판매업자 또는 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허가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검사에 합격한 후가 아니면 업무를 시작하거나 시설 또는 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허가관청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개정 내용 반영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1
소개2
용어3
문장4
작성례5
어문규정

- 다음 예시는 주어가 생략되어 어색하므로 서술어(~하여야 한다)의 행위 주체인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를 찾아 써야 한다.

예

제10조(징계처분등) ① (생략)

② 징계의결등과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은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제1항 단서에 따른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등을 하여야 한다.

→

②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제1항 단서에 따른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등을 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0조제2항)

- 다음 예시는 누구나 주어를 알 수 있어 생략하는 경우와 다르게 해당 법 조문을 찾아야만 주어를 알 수 있는 문장이다. 주어인 '해양사고관련자나 이해관계인은'을 넣어 주면 법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주어를 알 수 있어 내용을 파악하기 쉽고 문장 구조도 완성된다.

예

제24조(심급과 심판변론인의 선임)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변론인을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심급마다 선임하여야 하며, 심판변론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을 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4조(심급과 심판변론인의 선임) 해양사고관련자나 이해관계인은 법 제27조에 따라 심판변론인을 선임하려면 심급마다 선임하여야 하며, 심판변론인과 연명으로 날인한 서면을 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다) 예외적으로 주어를 생략할 수 있는 예시

(1) 한 문장 안의 주어가 같은 경우

- 법 문장에서는 주어를 밝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문장 내에 동일한 주어가 반복되거나 단서 또는 후단의 주어가 본문 또는 전단의 주어와 같아서 주어를 쓰지 않아도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주어를 생략할 수 있다.
- 주절(외국인은 ~ 취득할 수 있다)과 부사절(외국인은 ~ 허가를 받아)의 주어가 같으므로 부사절의 주어를 생략할 수 있다.

예

제9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國籍回復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국적법」 제9조제1항)

(2) 본문·단서 또는 전단·후단의 주어가 같은 경우

- 다음 예시에서는 전단과 후단의 주어가 '행정청은'으로 같고 후단의 주어를 쓰지 않더라도 예측할 수 있으므로 후단의 주어를 생략할 수 있다.

예

제27조(공법상 계약의 체결) ① 행정청은 법령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계약(이하 "공법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은]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행정기본법」 제27조제1항)

(3) 주어가 일반 국민인 경우

- 주어가 일반 국민이나 국가·정부 등인 경우, 법령 소관 부처의 장이나 집행기관의 장 등으로 계속 반복되는 경우, 가까운 조문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처분 또는 재판의 당사자인 경우 등으로서 주어를 예측 가능하고 법리적으로나 해석상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주어를 생략할 수 있다.
- 법령 적용 대상이 '국민 누구나'임이 충분히 예측되므로 주어를 생략할 수 있다.

예

제51조(출생신고 전에 사망한 때) [누구든지] 출생의 신고 전에 자녀가 사망한 때에는 출생의 신고와 동시에 사망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4) 주어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 등인 경우

- 국가배상 등과 같이 법령의 전체 맥락이나 정책 성격상 국가 등이 행위 주체임이 자명한 경우에는 주어를 생략할 수 있다.

예

제3조(배상기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1항을 적용할 때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타인의 신체에 해를 입혀 그로 인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를 포함한다) 피해자의 상속인(이하 "유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상한다.

(「국가배상법」 제3조제1항)

1 소개

2 용어

3 문장

4 작성례

5 어문규정

(5) 주어가 처분 또는 재판의 당사자인 경우

- 소송법에서 항소 등을 하는 주체는 당사자(대리인 포함)이므로 모든 절차마다 그 주체를 언급할 필요는 없다.

예

제19조(항소) ① **[당사자]** 가정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다만, 판결정본 송달 전에도 항소할 수 있다.

(「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6) 문장에 행위 주체가 내포되어 있는 경우

- 문장 자체가 행위 주체를 예정하고 있어 주어를 쓰면 동어 반복이 되는 경우 주어를 생략할 수 있다. 다음의 「국세기본법」 제18조제1항에서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이라는 조건에 ‘세법을 해석·적용하려는 자는’이라는 행위 주체가 드러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같은 법 제61조의 경우에도 주어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는 자는’이므로 굳이 주어를 쓸 필요가 없다.

예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적용하려는 자는]**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1조(청구기간)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는 자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18조제1항·제61조제2항)

2) 주어가 잘 드러나도록 쓴다

정비기준

- 주어는 문장의 맨 앞에 있는 경우에 대체로 잘 드러난다.
- 그러나 해당 법령 조문의 전개상 목적어 등 다른 문장성분이 화제(또는 주제)가 되어 ‘~는’ 등의 형태로 문장의 맨 앞에 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경우도 있으므로 앞뒤 조문의 흐름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적용한다.

가) 주어를 문장의 맨 앞에 둔 예시

- 다음 예시는 주어가 문장의 맨 앞에 오는 일반적인 문장 형태이다.

예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수도권 과밀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고, 그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건설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실시되는 각종 절차 또는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조제1항·제2항)


- 주어가 절의 수식을 받는 경우 그 전체가 주어가 되어 문장 맨 앞에 올 수 있다. 즉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경우에는’와 같이 ‘누구든지’를 쓰지 않고 수식어가 ‘자’라는 주어를 꾸미는 방식(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으로 규정할 수 있다.

예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법」 제11조제1항)

나) 주어를 문장의 맨 앞으로 옮긴 정비사례

 문장 전체의 주어가 문장의 맨 앞에 오도록 위치를 변경한 경우

- 문장 맨 앞에 목적을 설명하는 부사구가 옴에 따라 문장 전체의 주어(보건복지부장관은)가 문장 한가운데에 있어 얼른 눈에 들어오지 않고 어색하다. ‘보건복지부장관은’을 문장의 맨 앞에 두면 문장이 한결 자연스럽게 명확해진다.

예

제3조(사회보장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16조제1항에 의한 사회보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 작성지침을 정하여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3조(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기본계획 작성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주절의 주어가 문장의 맨 앞에 오도록 위치를 변경한 경우

- 다음 예시는 조건절(각급 학교의 장이 ~ 해당할 때에는)과 주절(관할청은 ~ 요구할 수 있다)로 구성된 복문이다. 주절의 내용이 문장 전체의 주된 내용이므로 조건절이 지나치게 길지 않으면 되도록 주절의 주어를 문장의 맨 앞에 둔다.

예

제54조의2(解任要求) ① 各級學校의 長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管轄聽은 任免權者에게 當해 學校의 長의 解任을 要求할 數 있다.

→

제54조의2(해임 요구) ① **관할청**은 각급 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해당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 제54조의2제1항)

3) 주격 조사와 보조사를 적절하게 사용한다

정비기준

- 주어는 행위의 주체로서 주격 조사 ‘이/가’와 보조사 ‘은/는’을 활용하여 나타낼 수 있다.³⁵⁾
- 주격 조사 ‘이/가’는 주어에 붙어 주어임을 분명히 나타내지만, 주어에는 보조사 ‘은/는’도 많이 사용된다.³⁶⁾ 법 문장, 특히 복문에서 ‘이/가’는 종속절의 주어에 쓰이는 등 제한적으로 사용되며, 주절의 주어에는 보조사 ‘은/는’을 주로 사용한다.

가) 주격 조사와 보조사를 쓴 예시

- 다음 예시는 주절과 조건절로 구성된 복문으로, 주절의 주어와 조건절의 주어가 다른 경우이다. 주절의 주어에는 보조사 ‘은’을 쓰고, 조건절의 주어에는 주격 조사 ‘가’를 썼다.

35) ‘은/는’은 보조사로서 ‘주제’, ‘대조’, ‘강조’ 등의 특별한 의미를 더해 주는 조사이다. 보조사는 주어뿐만 아니라, 목적어 등에도 사용될 수 있으므로 보조사가 붙은 용어가 주어로 사용되었는지, 목적어로 사용되었는지 유의해야 한다.
 - ‘방재작업은 끝났다’와 ‘방재작업은 끝났다’에서 앞의 ‘방재작업은’은 주어이고 뒤의 말은 목적어이다.

36) 그 외에도 ‘이/가’와 ‘은/는’에 대해서는 각각 ‘신정보’와 ‘구정보’를 나타낸다는 등 많은 이론과 주장이 있으나, 여기서는 위의 설명과 같이 학교문법에서 다루는 정도로만 설명하기로 한다.
 - 어떤 마을에 나무꾼이 살고 있었어요(신정보). 그런데 그 나무꾼은 매우 부지런했어요(구정보).

예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① (생략)

②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예치일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2항)

나) 보조사를 활용한 정비사례

(1) 주절의 주어와 조건절의 주어가 반복되는 경우

- 복문 형식의 문장에서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같거나 의미상 동일할 때에는 그중 어느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보통 주절의 주어는 ‘~은/는’으로, 종속절의 주어는 ‘~이/가’의 형태로 쓰인다.
- 복문에서는 문장 전체의 주어로 ‘은/는’을 많이 쓴다. 따라서 주절의 주어(~은/는)를 문장의 맨 앞에 두고, 주절과 같은 조건절의 주어(~이/가)는 생략하도록 한다.

예

제53조(조사·측량 실시) ① 시·도지사가 기본계획 및 권역계획을 수립하거나 관광지등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시·도지사는 해당 지역에 대한 조사와 측량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3조(조사·측량 실시) 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권역계획을 수립하거나 관광지등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에 대한 조사와 측량을 실시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 제53조제1항)

(2) 같은 표현이 중복되는 경우: ~은/는 ~할 때에는

- 주절의 주어에 보조사 ‘은/는’을 쓰면서 종속절의 상황에도 초점을 두게 되면, ‘~는 ~할 때에는’과 같이 동일한 표현 ‘는’이 반복될 수 있다.
- 이를 피하기 위해서 종속절의 주어에 조사 ‘이/가’를 쓰고 주절의 주어를 생략할 수 있다.

예

제26조(질문검사권) ①·② (생략)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질문·검사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③ 세무공무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질문·검사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별소비세법」 제26조제3항)



나. 목적어를 분명히 밝힌다

1) 생략된 목적어를 찾아 쓴다

정비기준

- 목적어는 동작이나 행동의 대상을 나타내는 문장성분으로 ‘무엇을’의 형태를 띤다. 행위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는 주어와 함께 꼭 밝혀 주어야 할 문장성분이므로 찾아서 쓴다.

💡 생략된 목적어를 밝혀 쓴 경우

- 다음 예시는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대상’이 필요한 문장이므로 그 대상(목적어)을 밝혀 주었다.

예

제27조의2(임원의 선거운동 제한) 누구든지 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제27조의2(임원의 선거운동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대상을 명시한 경우

- 과징금, 과태료 등의 부과기준을 쓸 때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대상을 밝힌다.

예

제7조의2(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① (생략)

-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공중위생영업자의 사업규모·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공중위생영업자의 사업규모·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징금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늘리는 때에도 그 총액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

2) 목적어의 형태를 갖춘다

정비기준

- 목적어에는 목적격 조사 외에 ‘은/는’을 사용할 수 있으나, 목적어임을 명확히 하려면 목적격 조사 ‘을/를’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 ~에 위반하다 → ~을 위반하다

- 종종 법 문장에 보이는 ‘~에 위반하다’ 등의 표현은 일본어 문장을 직역한 것으로 자연스럽게 읽히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목적격 조사를 사용하여 목적어와 서술어를 어울리도록 쓴다.

예

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하천법 시행령」 별표 5)

💡 ~에 같음하다 → ~를 같음하다

- ‘같음하다’는 타동사이므로 목적어를 ‘~을/를’의 형태로 고쳐 쓴다.

예

제58조의2(한지 의료인의 의사면허 등의 신청) ① ~ ③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 발급신청을 한 자는 그 신청일부터 면허증을 받는 날까지 제2항의 접수증을 한지 의료인 면허증에 같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면허증 발급신청을 한 자는 그 신청일부터 면허증을 받는 날까지 제3항의 접수증을 한지 의료인 면허증을 같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77조제4항)

3) 목적어를 서술어 앞에 둔다

정비기준

- 서술어가 타동사인 경우 목적어가 있어야 문장이 완전해진다.
- 타동사의 목적어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문장의 의미 파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어순을 바꾸어 목적어를 타동사 바로 앞에 둔다.

1 소개

2 용어

3 문장

4 작성례

5 어문규정

💡 문장 구조를 개선하여 목적어를 서술어 앞에 둔 경우

- 다음 예시는 주어부(법 ~ 권한은)가 너무 길어 어색하다. 중심 내용을 추려서 '주어-목적어-서술어'의 순으로 어순을 재배치한다.

예

제20조(권한의 위탁)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제20조(권한의 위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목적어가 중복 규정된 경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의 규정은 '은 ~은'의 형태로 맨 앞에 있지만 내용상 목적어이다. 이러한 경우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혼동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이'라는 목적어와 중복되므로 목적어의 형태를 갖추어 '이'의 자리에 직접 규정한다.

예

제3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생략)

②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의 규정은 고압가스제조자 및 고압가스판매자가 고압 가스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고압가스제조자와 고압가스판매자가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7조제2항)

4) 목적어를 서술어와 잘 어울리도록 쓴다

정비기준

- 서술어가 '자동사'인데 목적어를 둔 경우에는 동사의 형태를 타동사로 바꾸거나 목적어를 다른 문장성분으로 고친다.
- 서술어가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는 경우에는 동사의 형태를 자동사로 바꾸거나 목적어를 찾아 쓴다.

💡 성질을 변하지 → 성질을 변하게 하지, 성질이 변하지

- ‘변하다’는 자동사이므로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다. 따라서 ‘변하다’를 사동 형태인 ‘변하게 하다’로 고치거나, ‘성질을’을 서술어 ‘변하다’에 맞춰 ‘성질이 변하다’로 고친다.

예

제118조(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생략)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게 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물건이나 권리를 이용하거나 개량하는 행위

(「민법」 제118조) ※2019년 국회제출안

💡 상대방이 확정된 → 상대방이 확정된

- ‘확정하다’는 타동사이므로, 목적어 없이 쓸 수 없다. 따라서 목적어가 필요 없는 자동사 ‘확정되다’로 고친다.

예

제142조(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

제142조(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의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해야 한다.

(「민법」 제142조) ※2019년 국회제출안

다.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명확히 한다

정비기준

- 문장의 기본 단위는 주어-서술어이며, 그 둘이 짝을 이루어 주술관계를 이룬다. 문장에는 하나의 주어에 서술어가 여러 개 나오기도 하고 주술관계가 두 번 이상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 하나의 주어에 서술어를 여러 개 쓰려면 각 행위들이 통일된 주제를 가지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적어도 긴밀한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 주술관계가 두 번 이상 나오는 복문의 경우에도 하나의 행위 주체에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서술어만 쓴다.

1 소개

2 용어

3 문장

4 작성례

5 어문규정

1) 주어와 서술어를 바르게 쓴 예시

가) 주어-서술어가 한 번만 나오는 경우

예
 제26조(복제 및 무기 휴대) ① **경찰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경찰공무원법」 제26조제1항)

나) 하나의 주어에 서술어를 2개 이상 쓰는 경우

- 하나의 주어에 서술어를 여러 개 쓰려면, 각 행위들이 통일된 주제를 가지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적어도 긴밀한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예
 제20조(구조·구급 요청의 거절) ① ~ ③ (생략)
 ④ 구조·구급대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조 또는 구급 요청을 거절한 경우 구조 또는 구급을 요청한 사람이나 목격자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4항)

2) 서술어를 찾아 쓴 정비사례

 대등접속문의 서술어를 찾아 쓴 경우

- 법 문장에서 둘 이상의 절을 대등하게 연결하면서 서술어가 같으면 앞절의 서술어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문장이 길 때에는 서술어를 생략하지 않고 모두 쓴다.

예
 제59조의2(영창의 절차 등) ① ~ ③ (생략)
 ④ 인권담당 군법무관은 국방부와 그 직할 부대 또는 기관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그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각군의 경우에는 참모총장이 그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
 →
 제59조의2(인권담당 군법무관*) ① ~ ③ (생략)
 ④ 인권담당 군법무관은 국방부와 그 직할 부대 또는 기관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그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하고**, 각군의 경우에는 참모총장이 그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
 * 개정 내용 반영
 (「군인사법」 제59조의2제4항)

2 간결한 문장 쓰기

- 구조가 복잡한 긴 문장은 이해하기 힘들다. 한 문장에 여러 주제를 담으려고 하면 주어-서술어가 꼬이거나 수식에 수식을 거듭하게 된다. 법 문장은 하나의 주제를 통일성 있게 규정해야 한다.
- 법령은 일반적인 글쓰기와는 달리 조(條), 항(項) 등을 기본 단위로 한다. 이러한 특징을 잘 활용하면 법 문장을 훨씬 간결하고 명확하게 쓸 수 있다.
- 조나 항은 원칙적으로 한 가지 주제로 구성하도록 한다. 규정할 내용이 길고 복잡할 때에는 항으로 나누어 규정한다.
- 단서나 후단은 조나 항이 주된 내용과 예외적·부수적 사항으로 구분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주된 내용과 함께 규정해야 할 만큼 긴밀한 관계일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한다.
- 한 조에 규정하는 항의 개수는 되도록 5개를 넘지 않도록 한다.

가. 긴 문장은 짧게 나누어 쓴다


1) 항으로 나누어 규정하는 경우

정비기준

- 조나 항에 규정할 내용이 많아 문장이 길고 복잡하면 그 내용을 나누어 별개의 항으로 규정한다.
- 일반적으로 행위 주체별, 세부 주제별로 나누거나 일련의 절차에 따라 나누어 규정할 수 있다.

가) 행위 주체별로 항을 나누어 규정한 정비사례

- 문장 안에 둘 이상의 행위 주체가 등장하고 각 행위 주체별로 의무나 권한이 달리 규정되는 경우에는 행위 주체를 기준으로 항을 나눈다.

 '배출권거래증개회사'와 '주무관청'을 기준으로 항을 나눈 경우

예

제29조(배출권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 ①·② (생략)

③ **배출권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는 주무관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주무관청**은 해당 회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③ **배출권거래증개회사**는 주무관청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업무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주무관청**은 배출권거래증개회사가 제3항에 따른 업무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면 해당 회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종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3항·제4항)

 '임명권자'와 '비서실장'을 기준으로 항을 나눈 경우

- 행위 주체가 뚜렷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임명하고'의 주체는 임명권자이고 '관장한다'의 주체는 비서실장이다. 이렇게 한 문장에 행위 주체가 다른 서술어가 섞여 있는 경우 각각의 행위 주체별로 항을 나눈다.

예

제20조(헌법재판소장 비서실 등) ① (생략)

②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에 비서실장 1명을 두되, 비서실장은 1급 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고**,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②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에 비서실장 1명을 두되, 비서실장은 1급 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③ **비서실장**은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헌법재판소법」 제20조제2항) ※권고안

나) 세부 주제별로 항을 나누어 규정한 정비사례

- 규정할 내용이 각각 다른 주제를 담고 있는 경우 그 세부 내용별로 나누어 규정한다.

 '대행기관의 의무사항'과 '심의기관의 요구사항'으로 항을 나눈 경우

- 다음 예시는 '대행기관의 의무사항'과 '심의기관의 요구사항'이라는 두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으므로 그 내용에 따라 별개의 항으로 나눈다.

예

제4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 ⑤ (생략)

⑥ 대행기관은 해당 현물의 관리·매각 현황 및 계획 등을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공적자금 관리위원회의 심의·조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한국은행총재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공적자금의 조성·운용 및 회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행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담당 직원의 출석 및 의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⑥ 대행기관은 해당 현물의 관리·매각 현황 및 계획 등을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공적자금 관리위원회의 심의·조정을 받아야 한다.

⑦ 한국은행총재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공적자금의 조성·운용 및 회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행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담당 직원의 출석 및 의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제4조제6항·제7항)

💡 '등록'과 '등록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항을 나눈 경우

- 다음 예시는 '등록'과 '등록사항의 변경'이라는 두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으므로 그 내용에 따라 별개의 항으로 구분한다.

예

제32조의2(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 제16조의3 및 제27조에 따른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처리에 관한 영업(이하 "폐가스류처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 밖의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32조의2(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 ①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처리에 관한 영업(이하 "폐가스류처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등 등록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폐가스류처리업자가 그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제1항·제2항)

1 소개

2 용어

3 문장

4 작성례

5 어문규정

 '계획의 공고'와 '서류 열람'에 관한 사항으로 항을 나눈 경우

- 하나의 항에 '풍수해저감종합계획 공고'와 '관계 서류 열람'에 관한 사항이 함께 규정되어 있으므로 내용에 따라 별개의 항으로 나눈다.

예

제4조의4(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세부 수립기준 등) ① (생략)


② 영 제14조제6항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공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공보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며, 이 때 **관계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

② 영 제14조제6항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공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공보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영 제14조제6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의5제2항·제3항)

 '그 밖에 학습보조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다른 항으로 규정한 경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는 상위법 위임에 따라 학습보조비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3항의 '그 밖에 학습보조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제3항에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 학습보조비 지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하여금 정하도록 한 것이므로 별도의 항을 신설하여 규정한다.

예

제41조(학습보조비의 지급 및 절차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31조에 따른 학습보조비는 교육지원 대상자나 그 보호자에게 4월 15일과 10월 15일 연 2회 지급하되, 그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와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하여 지급하며, **그 밖에 학습 보조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

③ 법 제31조에 따른 학습보조비는 교육지원 대상자나 그 보호자에게 4월 15일과 10월 15일 연 2회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와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습보조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3항·제4항)

다) 절차에 따라 항을 나누어 규정한 정비사례

-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일련의 절차를 정할 때에는 업무 순서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항을 나누어 규정한다.

'실태조사 실시'와 '결과 반영' 절차로 항을 나눈 경우

- 하나의 항에서 실태조사 실시와 결과 반영 절차를 모두 규정하고 있어 문장이 길고 복잡하므로 각각의 절차로 항을 나눈다.

예

제6조(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그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중전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출연금 확정 통지'와 '교부 절차'로 항을 나눈 경우

- 하나의 항에서 출연금 확정사실을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과, 이를 교부받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개의 항으로 나눈다.

예

제76조(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 ① ~ ③ (생략)

④ 제3항에 따라 출연금 요구를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출연금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평가원에 통지하여야 하며, 평가원은 확정·통지된 출연금을 교부받고자 때에는 출연금교부신청서에 자금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해당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출연금 요구를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출연금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평가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평가원은 제4항에 따라 확정·통지된 출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출연금교부신청서에 자금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해당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6조제4항·제5항)

1 소개

2 용어

3 문장

4 작성례

5 어문규정

라) 단서나 후단을 다른 향으로 나누어 규정한 정비사례

- 단서나 후단을 규정하려면 주된 내용과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 긴 문장을 본문/단서나 전단/후단으로 규정하면 문장을 한 번 끊어 읽게 될 뿐만 아니라, 내용 간 관계가 명확해지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단서나 후단으로 규정할 내용이 많거나 본문 또는 전단과의 관계가 긴밀하지 않아 별도의 세부 주제나 절차로 구분될 때에는 다른 향으로 규정한다.
- 단서는 주된 내용의 예외를 규정하는 것이므로 후단에 비하여 다른 향으로 규정하는 사례가 적다. 소송 실무에서는 본문인지 단서인지에 따라 입증책임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단서를 다른 향으로 구분할 때에는 본래의 의미가 달라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조문을 세 문장 이상으로 쓰거나 단서와 후단을 같이 규정하면 지나치게 복잡하므로 그 내용을 적절히 나누어 다른 향으로 규정한다.

단서를 다른 향으로 규정한 경우

예

제15조의2(외국인투자옴부즈만 등) ① ~ ④ (생략)

⑤ 제4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외국인투자옴부즈만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이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그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을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처리 결과를 외국인투자옴부즈만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이 제4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을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5조의2제5항·제6항)

💡 후단을 다른 향으로 규정한 경우

예

제9조(교육훈련의 상호 위탁) ① (생략)

② 각급 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탁 교육훈련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급 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위탁기관의 장에게 교과목의 편성, 교수요원의 파견, 교육자료의 제공 및 교육훈련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각급 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위탁교육훈련을 요청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교육훈련을 요청받은 각급 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그 위탁을 한 기관의 장에게 교과목의 편성, 교수요원의 파견, 교육훈련 자료의 제공 및 교육훈련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을 요청할 수 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3항)

💡 세 문장 이상으로 구성된 문장의 후단을 다른 향으로 규정한 경우

- 조나 항을 세 문장 이상으로 구성하여 단서와 후단을 동시에 규정하면 지나치게 복잡하므로 이러한 경우 일부 내용을 다른 조문이나 향으로 규정할 수 있다.
- 이 경우 ‘단서’와 ‘후단’이 앞 문장의 어디에 연결되는지 주의해야 한다.

예

제13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의 겸직) ① 법 제92조 및 제115조제1항에서 준용되는 법 제44조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등은 직원을 겸직하는 임원 수가 임원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이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하여 제8조 각 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조합원”은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총조합원”으로, “협동조합등”을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

제20조(사회적협동조합등 임직원의 겸직) ①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법 제92조 및 제115조제1항에서 준용되는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직원을 겸직하는 임원 수가 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하여 제10조 각 호를 적용할 때 “조합원”은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총조합원”으로,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항)

1
소개2
용어3
문장4
작성례5
어문규정

2) 단서를 두는 경우

정비기준

- 조나 항의 주된 내용에 대한 예외를 정하거나 규율 대상 중 일부만 의무 또는 절차를 달리 정할 때에는 접속사 ‘다만’으로 시작되는 단서를 쓸 수 있다.
- 단서로 구분하는 경우에는 원칙이 되는 내용을 분명히 하고, 주된 내용과 예외적인 사항 간의 관계가 드러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조나 항의 구조가 복잡해질 수도 있으므로 단서는 본문으로 규정될 주된 내용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가) 단서의 예시

(1) 본문의 행위주체 중 일부를 제외한 경우

예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2) 일정한 상황 또는 일정한 대상에 대한 의무나 요건을 완화한 경우

예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①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3) 적용대상을 일부 배제한 경우

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피해”란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악취, 자연생태계 파괴,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 인공 조명에 의한 빛공해,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 하천수위의 변화, 화학물질 유출·노출, 살생물제품 노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인한 건강상·재산상·정신상의 피해를 말한다. **다만,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제외한다.**

(「환경보존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 조나 항의 일부를 단서로 나누어 규정한 정비사례

💡 예외를 단서로 규정한 경우

- 주된 내용을 본문으로 규정하고, 예외적이거나 특별한 사항은 단서로 처리한다.

예

제78조(기간의 계산) ① 일·월 또는 연으로써 하는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법 제38조제1항 단서 및 업무정지기간의 계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78조(기간의 계산) ① 일, 월 또는 연을 단위로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첫날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38조제1항 단서의 경우와 업무정지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첫날을 산입한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제1항)

💡 괄호 안에 규정된 특별한 상황을 단서로 규정한 경우

- 주된 내용에 대한 예외적인 사항을 괄호 안에 길게 서술하고 있는 경우 이를 단서로 구분한다.

예

제14조(배상책임보험 가입) ①·② (생략)

③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으로부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받은 조합은 그 요구받은 날부터 6개월(조합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경우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지는 등 기금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관리기관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③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으로부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받은 조합은 요구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경우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지는 등 기금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2년의 범위에서 관리기관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가입하여야 한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

1 소개

2 용어

3 문장

4 작성례

5 어문규정

3) 후단을 두는 경우

정비기준

- 조나 항의 문장이 주된 내용에 대하여 부수적인 사항 또는 유의사항,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어 길고 복잡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그 관계를 살려 후단으로 규정할 수 있다. 후단은 보통 '이 경우'로 시작한다.
- 주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전단과의 관계가 긴밀하지 않거나 후단으로 규정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항으로 구분한다.

가) 후단의 예시

(1) 부수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우

예

제200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① ~ ③ (생략)

- ④ 검사는 제1항에 따른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체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제4항)

(2) 유의사항이나 요건 등을 보완하여 설명한 경우

예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3) 전단에 대응하는 의무를 규정한 경우

예

제13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 (생략)

-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나) 조나 항의 일부를 후단으로 나누어 규정한 정비사례

💡 **부수적·추가적인 사항을 후단으로 규정한 경우**

- 본인이 서명할 수 없을 때 다른 사람이 대리서명할 수 있다는 내용을 우선 규정하고, 도장을 지니지 않았을 때에 관한 사항을 후단으로 규정한다.

예

제287조(조서의 서명) ① 관세법에 관한 서류에 서명·날인하는 경우 본인이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서하게 하고 **인장을 소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무인을 찍어야 한다.**

→

제287조(조서의 서명) ① 관세법에 관한 서류에 서명·날인하는 경우 본인이 서명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사람에게 대리서명하게 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이 경우 도장을 지니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손도장을 찍어야 한다.**

(「관세법」 제287조제1항)

- 통보하는 경우의 서식을 먼저 규정하고, 통보에 추가할 내용이 있을 경우를 후단으로 규정한다.

예

제7조(풍속영업의 통보) ①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이 경찰서장에게 풍속영업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해당 풍속영업소가 학교보건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안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풍속영업의 통보)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풍속영업을 허가한 자가 경찰서장에게 풍속영업의 허가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풍속영업소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있을 때에는 이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4) 열거된 사항을 호나 목으로 나누어 규정한 정비사례

정비기준

- 한 문장에 일정한 기준에 속하는 여러 사항들을 한꺼번에 나열하면 복잡할 뿐만 아니라 개별 사항을 구분하기 힘들다. 특히 일부가 수식을 받고 있는 경우 수식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생긴다. 이러한 경우 호나 목으로 나누어 규정하면 내용이 한눈에 들어 오고 연결 관계도 명확해진다.
- 이 경우 각 호 간 또는 각 목 간의 관계는 병렬적이고 대등한 관계여야 한다.

1 소개

2 용어

3 문장

4 작성례

5 어문규정

💡 항의 본문 내용 일부를 각 호로 나눈 경우

예

제14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포장하여야 할 청소년유해매체물은 법 제2조제2호사목(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는 제외한다), 아목(전자간행물은 제외한다), 자목(전자출판물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법 제2조제2호차목에 해당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수록·게재, 그 밖의 방법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해당 매체물을 대여하여 반환받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 ① 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포장하여야 할 청소년유해매체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해당 매체물을 대여하여 반환받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2조제2호사목에 해당하는 것(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는 제외한다)
2. 법 제2조제2호아목에 해당하는 것(전자간행물은 제외한다)
3. 법 제2조제2호자목에 해당하는 것(전자출판물은 제외한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 항의 단서 내용 일부를 각 호로 나눈 경우

예

제46조(보수 결정의 원칙) ①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계급별·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한다. 다만,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매우 특수하거나 결원을 보충하는 것이 곤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및 제26조의5에 따른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공무원의 보수는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6조(보수 결정의 원칙) ①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계급별·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보수는 따로 정할 수 있다.

1.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매우 특수하거나 결원을 보충하는 것이 곤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3. 임기제공무원*

* 제26조의5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약칭함

(「국가공무원법」 제46조제1항)

💡 호의 내용을 각 목으로 나눈 경우

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5. "임원"이라 함은 이사·대표이사·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감사나 이에 준하는 자 또는 지배인 등 본점이나 지점의 영업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을 말한다.

→

6. "임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이사
- 나. 대표이사
- 다. 업무를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 라. 감사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람
- 바. 지배인 등 본점이나 지점의 영업 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 하나의 호를 두 개의 호로 나누어 결격사유를 명확히 한 경우

예

제4조(세무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 3. (생략)
4.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이 법·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제명 또는 등록취소를 당한 자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와 정직된 자로서 그 정직기간중에 있는 자

→

4.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으로서 3년(이 법 제12조의4를 위반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정직(停職)된 사람으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권고안)

4.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된 사람으로서 3년(이 법 제12조의4를 위반하여 제7조제1호에 따라 등록취소된 사람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이 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정직(停職)된 사람으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사람

(「세무사법」 제4조)

※ 제4호를 개정(법률 제17339호)하면서 제4호와 제5호, 두 개의 호로 나누었지만 제5호도 문장구조가 복잡하므로 권고안과 같이 각각 나누어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소개

2 용어

3 문장

4 작성례

5 어문규정

나.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한다

정비기준

- 문장은 되도록 단순하고 간결하게 표현한다.
- 같은 의미의 말이 반복되면 문장이 길고 복잡해지므로 원래 의미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중복되거나 필요 없는 부분은 삭제한다.

1) 중복되는 표현

독립공무원위원회의 구성은 ~로 구성한다 → 독립공무원위원회는 ~로 구성한다

- 독립공무원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문장의 앞뒤로 중복되고 있다.

예

제7조(독립공무원위원회·광역시립공무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독립공무원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독립공무원위원회·광역시립공무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독립공무원위원회 및 광역시립공무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 개정 내용 반영

(「자연공무원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중복되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삭제

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에 소속된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그 단체에 소속되었던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에 현재 소속되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중전의 「여성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8제3항제2호)

💡 중복되는 '위임·위탁' 삭제

예

제46조의2(제작차배출허용기준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한 지원) ① (생략)

1. 제48조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가 제87조에 따라 위임·위탁된 경우 그 위임·위탁받은 자

→

제46조의2(제작차배출허용기준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한 지원) ① (생략)

1. 제48조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를 제87조에 따라 위임·위탁받은 자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의2제1항제1호)

💡 잉여 표현의 삭제

- '하다'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전달이 될 경우 '실시'를 삭제한다.

예

제13조(검사 등) ①·② (생략)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제제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효과를 증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혈액원의 혈액관리업무에 대한 심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제제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혈액원의 혈액관리업무에 대한 심사평가를 할 수 있다.

(「혈액관리법」 제13조제3항)

💡 과반수(過半數) 이상 → 과반수

- '이상'은 '수량이나 정도가 일정한 기준보다 더 많거나 나음'이란 뜻인데 '과반수'에는 '이상'의 의미가 들어 있다. '과반수'로 간결하게 표현한다.

예

제17조의3(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기준) ① (생략)

- ②법무부장관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초청 외국인을 사용하려는 사용사업주 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을 초청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초청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5. 신청일부터 최근 1년간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10인 이상의 외국인을 초청한 자로서 피초청 외국인의 과반수 이상이 불법체류 중인 사람

→

5. 신청일부터 최근 1년간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10인 이상의 외국인을 초청한 자로서 피초청 외국인의 과반수가 불법체류 중인 사람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2항제5호)

1 소개

2 용어

3 문장

4 작성례

5 어문규정

2) 당연한 내용

💡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에 대한 부연 설명을 삭제한 경우

-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시킬 때 ‘취업지원대상자가 아닌 자에 우선’하는 것은 당연하므로 삭제한다.

예

제22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① ~ ③ (생략)

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고 동점자중 **취업지원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취업지원대상자가 아닌 자에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

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 투표소에서 대기하고 있는

예

제44조(투표시간) ① (생략)

② 투표를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에 달아야 한다.

→

② 투표를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에 달아야 한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권고안

3) 불필요한 내용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각 호의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은 각 호 중에서 하나에만 해당하더라도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주로 사용한다. 다음 예시에서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쓰지 않더라도 뒤의 ‘~중에서’가 그 의미를 대신해 주므로 삭제할 수 있다.

예

제7조(임용자격)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

제7조(임용자격)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감사원법」 제7조) ※권고안

💡 ~에 대하여 이를 → ~를

- ‘~에 대하여 이를’은 일본어 직역 투로 어색한 표현이므로,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도록 간결하게 쓴다.

예

제5조(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 ①~③ (생략)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체육행사에 대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체육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중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5조제4항)

💡 ~에 해당하는 금액

- ‘해당하다’는 어떤 범위에 있음을 가리키는 말이므로 수치가 분명할 때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총액의 100분의 10 자체가 ‘금액’이므로, ‘해당하는 금액’은 불필요하다.

예

나. 다음의 경우(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는 제외한다)에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

나. 다음의 경우(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는 제외한다)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미만의 단수 → 미만의 기간은/미만은

- 불필요한 단수(端數)에 관한 설명을 삭제하면 중요한 내용만 남게 되어 간결하며 이해하기 쉽다.

예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①·② (생략)

③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년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

③ 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제3항)

예

제130조의7(과세표준의 계산방법) 법 제176조의3에 따른 재산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 중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제82조(과세표준의 계산방법) 법 제80조에 따른 사업소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 중 **1제곱미터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

3 명확한 문장 쓰기

- 법 문장은 그 내용이 혼동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뜻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문장, 수식에 수식을 거듭하여 구조가 복잡한 문장, 여러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있는 문장 등은 이해하기 어렵고 해석할 때 혼란을 줄 수 있다.
- 특히 연결 관계나 수식 관계가 모호한 경우에는 끊어 읽을 수 있도록 문장 구조를 개선하고, 모호한 지시어는 지시하는 대상을 밝혀 쓰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 데 혼선을 주는 이중 부정문을 긍정문으로 바꾸어 주면 법 문장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한결 쉬워진다.

가. ‘또는’, ‘및’의 접속 관계를 분명하게 쓴다

정비기준

- ‘또는’, ‘및’은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이지 않지만 법 문장에는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 법 문장을 딱딱하고 부자연스럽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 나열된 둘 이상의 명사가 앞에서 수식하는 말을 동시에 받거나, 뒤에 나오는 말을 동시에 수식할 때에는 ‘또는’이나 ‘및’으로 연결할 수 있다.
- ‘또는’, ‘및’을 사용하면 해석이 달라질 수 있거나 문장이 어색한 경우에는 문장 전체를 풀어 쓰거나 문장 구조를 바꾼다.

1) ‘또는’을 사용하는 경우

- ‘또는’은 ‘그렇지 않으면’의 뜻으로, 어느 것을 선택해도 될 때에 쓴다.

예

물건 제조 또는 수입 허용 → 물건 제조 또는 수입 허용(○)
 물건 제조나 물건 수입의 허용(○)
 물건 제조 허용이나 물건 수입 허용(○)

- 두 개의 사항만을 단순히 나열하는 경우, ‘또는’을 사용하면 해석이 달라질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이나/~거나’로 연결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경우에는 ‘~나/~이나/~거나’를 사용할 수 있다.

예
 이 법에 따라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
 이 법에 따라 선임되었거나 임명된 것으로 본다.

- 다음 예시의 경우 개정 전에는 ‘및’으로 연결되어 ‘분쟁조정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둘 다에 공고해야 하지만, ‘또는’으로 개정됨으로써 둘 중 하나의 의미로 바뀌었다.

예
 제53조(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① (생략)
 ② 법 제49조제2항 후단에 따른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공고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② 법 제49조제2항 후단에 따른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공고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2) ‘및’을 사용하는 경우

- ‘및’은 ‘그리고’, ‘그 밖에’, ‘또’의 뜻으로, 문장에서 같은 종류의 성분을 나열할 때 쓴다.

예
 지방 채무 및 채권 관리 → 지방 채무 및 채권 관리(○)
 지방 채무와 지방 채권의 관리(○)
 지방 채무 관리와 지방 채권 관리(○)

- 두 개의 사항만을 단순히 나열하는 경우, ‘및’을 사용하면 해석이 달라질 우려가 있는 경우, ‘~와/과’로 연결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경우에는 ‘~와/과’를 사용할 수 있다.

예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 다음 예시의 경우 개정 전에는 ‘또는’으로 연결되어 서면조사나 방문조사 중 하나만 실시해도 평가가 이루어지지만, ‘및’으로 개정됨으로써 평가 시 서면조사와 방문조사를 모두 하도록 바뀌었다.

예

제8조(검진기관의 평가시기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연간 검진 건수, 의사 1명당 분야별 검진 건수, 모범 검진기관 사례 등 위원회에서 결정한 평가대상 기준에 맞는 검진기관 중에서 선별하여 서면조사 **또는** 방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연간 검진 건수, 의사 1명당 분야별 검진 건수, 모범 검진기관 사례 등 위원회에서 결정한 평가대상 기준에 맞는 검진기관 중에서 선별하여 서면조사 **및** 방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3) ‘또는’이나 ‘및’을 사용할 때의 유의사항

‘또는’으로 연결된 명사구를 수식하는 경우 수식 범위를 명확히 한다

- ‘또는’으로 이어진 명사구(A 또는 B) 앞에 긴 수식어가 붙으면, 그 수식어가 ‘또는’으로 연결된 명사 모두를 수식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앞쪽 명사(A)만 수식하는 것으로 보이기 쉽다. 이러한 경우에는 긴 수식어를 ‘또는’으로 이어진 명사구(A 또는 B) 뒤에 풀어 쓰는 등 문장 구조 자체를 바꾸어 그 의미에 혼란을 가져오지 않도록 규정한다.

예

「어선법」 또는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총톤수 10톤 미만의 어선 또는 선박**일 것

→

「어선법」 또는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어선 또는 선박**으로서 **총톤수 10톤 미만일 것**³⁷⁾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2) ※권고안

‘또는’이 ‘해당하는 것 모두’를 의미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쓴다

- 다음 예시와 관련하여 용도변경에 따라 내화·방화·피난에 관한 사항(A)과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B)이 모두 변경되더라도 A나 B 중 하나만 표시해 주면 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³⁸⁾

37) 같은 영 제16조제1항제1호에도 권고안과 같은 방식으로 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을 정하고 있다.

1. 낚시어선이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으로서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 어선일 것

38) 법제처 2012. 4. 27. 회신 12-0226 해석례: 『국토해양부 -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내화·방화·피난에 관한 사항과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이 모두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에 관한 사항과 변경되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모두 표시한 도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제2호 관련)』, 법제처 홈페이지(<https://www.moleg.go.kr>) 법령해석례 참조.

이와 같이 ‘또는’이라고 표시하면서도 ‘해당하는 것은 모두 다’의 의미로 쓰일 때에는 적용 대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더 구체적으로 써 준다.

예

제12조의2(용도변경)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용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생략)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

2. **내화·방화·피난 및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 중에서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모두 표시한 도서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제2호) ※권고안

💡 ‘~나(~거나)’와 ‘또는’을 함께 쓰지 않는다

- ‘~나(~거나)’와 ‘또는’의 연결은 적절하지 않다. 둘의 의미가 중복되므로 불필요한 요소인 부사 ‘또는’을 삭제한다.

예

제1조(목적) 본법은 국가보안법의 정한 죄를 범한 자로부터 **몰수하거나 또는** 국고귀속명령된 금품을 타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신속하고 유효적절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보안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자로부터 **몰수하거나** 국고귀속명령된 금품을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신속하고 유효적절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 제1조)

예

제21조 귀속재산의 매수자가 지정기일내에 매각대금 또는 그 분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정의 과태금을 **징수하거나 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제21조 귀속재산의 매수자가 지정기일 내에 매각대금 또는 그 분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과태금을 **징수하거나**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귀속재산처리법」 제21조) ※권고안

1 소개

2 용어

3 문장

4 작성력

5 어문규정

나. 의미가 불명확한 수식어를 쓰지 않는다

정비기준

- 법 문장에 추상적이고 모호한 수식어를 쓰게 되면 그 수식을 받는 대상이나 범위에 혼동이 생기거나, 수식어의 의미 자체를 알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한다.
- 특히 과태료나 벌칙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규정할 때에는 이해하는 데 혼선을 일으키는 수식어를 삭제한다.

의미를 알 수 없는 수식어를 삭제한 경우

- 다음 예시는 「자연공원법」 제29조에 따라 공원구역에서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행위를 규정한 것이다. ‘자연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이라는 수식어를 씌으로써 수식 대상이 ‘계곡’인지 ‘목욕·세탁 행위’인지 혼란스럽고, 수식 대상이 ‘목욕·세탁 행위’라면 ‘자연 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목욕·세탁 행위’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더욱이 아래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만 명확히 규정하고 그 의미를 흐리는 수식어는 삭제한다.

예

제26조(영업의 제한 등)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공원구역에서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영업 또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6. 자연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계곡에서 목욕 또는 세탁을 하는 행위



제26조(영업의 제한 등)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공원구역에서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영업 또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6. 계곡에서 목욕 또는 세탁을 하는 행위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6조제6호) ※권고안

다. 중의적, 다의적 표현은 정확한 표현으로 고쳐 쓴다

정비기준

- 두 가지 이상의 뜻으로 읽히거나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는 표현은 정확한 의미로 바꾼다.

💡 기피신청을 받은 자 →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

- 다음 예시에서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사람’의 의미로 쓴 것이나, ‘기피 신청을 접수한 사람’으로 이해할 여지도 있으므로 기피신청의 대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낸다.

예

제38조(제척 및 기피) ①·② (생략)

- ③ 징계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징계 위원회의 의결로 징계 심사전에 그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 ③ 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징계심사 전에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라. 이중 부정문은 되도록 긍정문으로 쓴다

정비기준

- 이중 부정문은 부정 표현이 중복되어 그 의미를 이해하는 데 혼선을 줄 수 있고 문장도 길어진다.
- 내용을 의도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거나 부득이하게 이중 부정을 써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해하기 쉬운 긍정문으로 쓴다.

 ~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다 → ~된 후에 ~할 수 있다, ~되기 전에는 할 수 없다

예

제37조(보상금)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권은 해당 배치설계가 **설정등록된 후가 아니면 행사할 수 없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권은 해당 배치설계가 **설정등록된 후에(만) 행사할 수 있다.**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 ※권고안

 ~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다 → ~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예

제13조(신청주의) ① 등록은 법령에 따라 소장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 외에는 **신청 또는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다.**

→

제13조(신청주의) ① 등록은 법령에 따라 소장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면 **신청이나 촉탁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광업등록령」 제13조) ※권고안

 ~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는 제외한다 → ~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예

제4조(신청인 등의 신분 확인) ① (생 략)

1.·2. (생 략)

3.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장애인등록증은 제외한다**)

→

3.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

마. 지시어의 내용을 직접 쓴다

정비기준

- 법 문장에서는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규정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와 같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등의 표현을 흔히 쓰고 있다. 그러나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거나 해석상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쓸 필요가 있다. 다만, 가리키는 내용을 직접 쓸 경우에는 문장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 호나 목에서 명사로 끝난 말 다음에 단서를 둘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표현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제외한다’나 ‘예외로 한다’ 등으로 바꾼다.
- 특히 앞 문장에서 부정문을 쓴 경우 단서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쓰면 부정에 대한 부정이 되어 어색하다. 문맥에 맞게 풀어 쓰거나 ‘예외로 한다’, ‘제외한다’ 등으로 고쳐 쓴다.

💡 ‘같다’가 가리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쓴 경우

예

第536條(同時履行의 抗辯權) ①雙務契約의 當事者 一方은 相對方이 그 債務履行을 提供할 때까지 自己의 債務履行을 拒絶할 수 있다. (단서 생략)

②當事者 一方이 相對方에게 먼저 履行하여야 할 境遇에 相對方의 履行이 困難할 顯著한 事由가 있는 때에는 前項 本文과 같다.

→

②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채무를 먼저 이행해야 할 경우에 상대방이 그의 채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민법」 제536조제2항) ※권고안

예

제5조(벌칙) ①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제4조제3항의 서면을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허위로 작성된 문서를 그 정을 알고 행사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

② 제1항의 거짓으로 작성된 문서를 그 정황을 알고 행사한 사람도 제1항의 형과 **같은 형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5조제2항)


1 소개

2 용어

3 문장

4 작성례

5 어문규정

 '이'가 가리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쓴 경우


예

제9조(생계급여의 방법) ①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이에 의할 수 없거나 이에 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함으로써 행할 수 있다.**

→

제9조(생계급여의 방법) ①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1항)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내용을 직접 서술한 경우

- 다음 예시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문자 그대로는 '등본을 열람 또는 등사하게 할 수 없다'이다. 그러나 입안 의도는 소송기록의 원본을 보존하기 위해 등본으로 열람/등사(복사)하게 할 수 있는데, 원본의 열람/등사(복사)가 필요할 때에는 원본을 열람/등사(복사)할 수 있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이렇게 다르게 해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리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써 주어야 한다.

예

제59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① ~ ③ (생략)

④ 검사는 소송기록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기록의 등본을 열람 또는 등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원본의 열람 또는 등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검사는 소송기록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기록의 등본을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원본의 열람 또는 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원본을 열람하거나 복사하게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제4항) ※권고안

예

제12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법 제5조제5항에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상속세법 제8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공무원 기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법 제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공무원, 그 밖에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특수관계자로 보지 아니한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제외한다', '예외로 한다'로 바꾼 경우

- 호, 목 부분에서 서술어 없이 명사로 끝나는 말 다음의 단서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쓰는 것은 문법적으로 호응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 '제외한다', '예외로 한다' 등으로 바꾼다.

예

○○○한 법인. 다만, ○○○한 비영리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한 법인. 다만, ○○○한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

○○○한 법인(○○○한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

-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앞 문장의 긍정 내용을 부정할 때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앞 문장이 부정문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외한다' 등으로 고쳐 쓴다.

예

제26조(청소년유해약물등으로부터 청소년보호)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에 의하여 판매·대여·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학습용·공업용 또는 치료용으로 판매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³⁹⁾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

39) '경우는' 과 '경우에는'을 구별하여 쓴다.

(경우는) 예외로 한다(○)/경우에는(×)

- '예외로 한다' 앞에는 '경우에는'이 아니라 '경우는'을 써야 한다. '(~ 경우)를 예외로 (처리)한다'의 의미이므로 목적어 '경우를'에 보조사가 붙은 형태인 '경우는'이 자연스럽다.

- '경우에는' 다음에는 구체적인 서술어가 와야 한다. '~ 경우에는'은 부사절의 일종인 조건절이므로 다음에는 부사절의 수식을 받는 서술절이 와야 한다.

바. 문맥상 필요한 내용을 생략하지 않는다

정비기준

- 문장에서 필요한 문장성분이 빠져 있으면 그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다. 문장의 의미가 의도와 다르게 전달되거나 부자연스러운 문장이 되기도 한다. 이 경우 문장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거나 설명을 보충해 주어야 한다.

1) 명사가 생략된 경우

'피후견인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 → '미성년자를 감화기관이나 교정기관에 위탁'

- 다음 예시는 '피후견인을 감화기관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하거나'라는 의미로 쓴 것이나, '피후견인을 감화하거나 교정기관에 위탁하거나'의 의미로 오인될 수 있다. '감화기관'을 '감화'로 줄여 쓰기보다는 '기관'까지 쓰게 되면 그 의미가 더욱 명확해진다.

예

제945조(미성년자의 신분에 관한 후견인의 권리의무) 미성년자의 후견인은 제913조 내지 제915조에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친권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그러나 친권자가 정한 교양방법 또는 거소를 변경하거나 **피후견인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하거나 친권자가 허락한 영업을 취소 또는 제한함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945조(미성년자의 신분에 관한 후견인의 권리·의무) 미성년후견인은 제913조부터 제915조까지에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친권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친권자가 정한 교육방법, 양육방법 또는 거소를 변경하는 경우
2. **미성년자를 감화기관이나 교정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3. 친권자가 허락한 영업을 취소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중전의 「민법」 제945조)

💡 ‘조성사업’ → ‘교육 여건(환경) 조성사업’

- ‘조성’은 서술어 성격을 가진 명사로서 ‘분위기 조성’처럼 앞말에 목적어 성격의 대상을 필요로 하므로 법령 전체의 맥락을 보아 앞부분에 적절한 내용이나 설명을 보충한다.

예

제4조(보조의 사업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① (생략)

② 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교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생략)

2. **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폐지한 때

3. **조성**을 위한 감독청의 예산변경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때

→

2. **교육 여건(또는 환경) 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폐지하였을 때

3. **교육 여건(또는 환경) 조성**을 위한 감독청의 예산변경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때

(「사립학교 보조와 원조에 관한 건」 제4조제2항제2호·제3호) ※권고안

2) 부사어가 생략된 경우

💡 통보의 대상 명시하기

- 다음 예시는 서술어 ‘통보하는’에 호응하는 부사어 ‘누구에게’가 생략되어 있으므로 그 내용을 찾아 적어 준다.

예

제42조(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이 위반 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 또는 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이하 “통보대상 청소년”이라 한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법 제50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이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 또는 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이하 “통보대상 청소년”이라 한다)을 **친권자등이나 소속 학교의 장(학생인 경우만 해당한다)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1 소개


2 용어

3 문장

4 작성례

5 어문규정

3) 형용사의 어미 등이 생략된 경우

 필요 또는 유익한 → 필요하거나 유익한

- ‘또는’이나 ‘및’은 동일한 자격의 단어나 어구를 연결해야 문장이 자연스러워진다. 따라서 다음 예시에서 ‘필요 또는 유익한’을 ‘필요한 또는 유익한’으로 고치거나 ‘또는’을 빼고 ‘필요하거나 유익한’으로 고치면 문장이 자연스러워진다.

예


제739조(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 ① (생략)

② 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제68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유익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제688조제2항을 준용한다.

(「민법」 제739조제2항) ※ 2019년 국회제출안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로

-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라는 표현은 ‘선의, 평온’에서 ‘하게’가 생략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선의하다’란 말은 없으므로 ‘선의’에 ‘하게’를 붙이면 어색하다. ‘선의’에는 조사 ‘로’를 붙이고 ‘평온 및 공연하게’는 ‘평온하고 공연하게’로 풀어 쓰면 문장이 보다 자연스러워진다.

예

제197조(점유의 태양) 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제197조(점유의 태양) 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公然)하게 선의로** 물건을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197조제1항) ※ 2019년 국회제출안

4) 필요한 내용이 생략된 경우

💡 '장래를 훈계함' → '앞으로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훈계하는 것'

- 생략된 훈계의 대상과 내용을 적어 줌으로써 그 뜻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다.

예

제57조(징계의 종류) ① (생략)

1. ~ 5. (생략)
6. 견책은 **비행을 규명하여 장래를 훈계함**을 말한다.

→

6. 견책은 **비행을 규명하여 앞으로 비행을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훈계하는 것**을 말한다.

(「군인사법」 제57조제1항제6호)

- '징집·소집'이 '지원하여'와 연결되어 읽힐 우려가 있는 문장이므로 '입영하거나 귀가하는'과 연결되는 관계임이 드러나게 한다.

예

제79조(여비 등의 국고부담) 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1. 2. (생략)
3. **징집·소집** 또는 현역병으로 지원하여 입영하거나 귀가하는 사람의 여비

→

* 개정 내용 반영

4. **징집·소집에 의하여** 또는 현역병으로 지원하여 입영하거나 귀가하는 사람의 여비

→

(※권고안)

4. **징집·소집에 의하여** 또는 현역병으로 지원하여 **입영하거나**, 귀가하는 사람의 여비

(「병역법」 제79조제1항제4호)

※ '귀가하는 사람'은 앞말(징집·소집에 ~ 지원하여)의 수식을 받지 않으므로 '입영하거나' 뒤에 쉼표(,)를 사용하여 수식이 미치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1 소개

2 용어

3 문장

4 작성례

5 어문규정

4 자연스러운 문장 쓰기

가. 되도록 능동문으로 쓴다

1) 피동문의 주어를 찾아 쓴 경우

정비기준

- 우리말은 일반적으로 사람을 주어로 하기 때문에 영어나 일본어 등 외국어에 비해 피동문(被動文)을 잘 쓰지 않는다.
- 법 문장에서 주체가 사람인데도 피동문을 쓰는 경우가 있다. 이런 피동문은 자연스러운 문장이 아니므로 주체를 드러내어 능동문으로 고쳐 쓰는 것이 좋다. 능동문은 의미나 행위 주체가 얼른 파악되는 반면, 피동문은 그렇지 않다. 또한 피동문은 '~에 의하여' 등의 부사구가 추가되어 문장이 복잡하므로 되도록 피동문은 능동문으로 고친다.

의견이 구두로 제출된 → 당사자가 말로 의견을 진술한

예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①·② (생략)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른 의견이 구두로 제출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항에 따라 말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

학교법인으로부터 제출된 → 학교 법인이 제출한

예

제2조(보조와 결정) ① (생략)

② 교육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으로부터 제출된 보조신청서에 대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관계학교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학교 법인이 제출한 보조신청서에 대하여 그 보조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관계학교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사립학교 보조와 원조에 관한 건」 제2조제2항) ※권고안

2) 이중 피동문을 고쳐 쓴 경우

정비기준

- 피동 접미사(-이-, -히-, -리-, -기-), ‘-되다’, ‘-어지다’는 동사와 결합하여 피동의 의미를 나타낸다.
- 피동 접미사와 ‘-어지다’를 결합한 형태, 그리고 ‘-되어지다’는 피동의 의미가 중첩되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 쓰여진 → 쓰인

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고전문헌”이란 1909년 이전에 한자 또는 한글 등의 문자로 **쓰여진** 학술연구 가치가 있는 문서·도서와 그 밖의 기록물을 말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고전문헌”이란 1909년 이전에 한자 또는 한글 등의 문자로 **쓰인** 학술연구 가치가 있는 문서·도서와 그 밖의 기록물을 말한다.

(「한국고전번역원법」 제2조) ※권고안

💡 담겨진 → 담긴

예

석면(뿔칠로 사용된 것은 제외한다)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 중 바닥용으로 사용된 것이 아닌 것은 포대에 **담겨진** 상태로 소각하여야 한다.

→

석면(뿔칠로 사용된 것은 제외한다)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 중 바닥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 것은 포대에 **담은** 상태로 소각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권고안


1 소개

2 용어

3 문장

4 작성례

5 어문규정

 **구획되어진 → 구획된**

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5. “방사선 구역”이란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한 장소 중 외부방사선량이 주당(適當) 0.4mSv(40mrem) 이상인 곳으로서 벽, 방여칸막이 등의 구획물로 **구획되어진** 곳을 말한다.

→

5. “방사선 구역”이란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한 장소 중 외부방사선량이 주당(適當) 0.4mSv(40mrem) 이상인 곳으로서 벽, 방여칸막이 등의 구획물로 **구획된** 곳을 말한다.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5호) ※권고안

※ 이 조문은 ‘구획되어진’ 앞에 ‘구획물’이 나오므로, ‘방여칸막이 등으로 구획된’이나 ‘~ 등의 구획물로 구분된/나누어진/나뉜’ 등으로 써도 자연스럽다.

3) 피동문으로 쓰는 경우

정비기준

- 동작이나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무생물이 주어가 되는 경우가 있다. 주어가 무생물인 경우 주체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서술어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피동문으로 쓴다.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 무생물 주어인 ‘소멸시효’는 타동사인 서술어 ‘완성하다’의 주어가 될 수 없으므로 피동문으로 쓰는 게 자연스럽다.

예

제99조(연금보험료 등의 징수권 소멸)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및 연체금을 징수할 권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1. ~ 3. (생략)
4. 제95조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

- 3.* 제115조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 개정 내용 반영

(「국민연금법」 제99조제4호)

💡 계획은 ~을 포함하여야 한다 → 계획에는 ~이 포함되어야 한다

- 무생물 주어의 '기본계획은'인 현재 문장보다, 계획에 포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어로 하고 서술어를 피동 형태로 쓰는 게 자연스럽다.

예

제5조(노후준비 지원 계획의 수립) ① (생략)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노후준비 지원법」 제5조제2항) ※권고안

나. 일본어 투 표현을 쓰지 않는다⁴⁰⁾

- 일본어 투 표현이란 일본어의 문장을 그대로 우리말로 옮겨 적어 우리 어법과는 다른 문장 표현을 말한다. 우리 법령에서 일본식 한자어나 일본어 투 표현이 많이 보이는 것은 일본의 법령을 가져다가 문자적 의미에 충실하게 직역했기 때문이다.
- 일본어의 통사적 특징인 명사구 중심의 문장은 딱딱하고 무거운 느낌을 준다. 조사와 보조사를 활용하여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고쳐 쓴다.
- 명사구 위주의 표현은 '명사+'의 문장구조를 낳는데, '명사+'로써 이루어지는 관형구조가 많아지면 짜임새 있는 문장이 되지 못한다. 압축적인 한자어 명사 표현은 풀어 씀으로서 우리말의 서술성이 살아나도록 한다.
- 일본어의 통사구조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관용어나 형식적인 목적어 등을 정비한다.
- 일본어 직역 투의 피동문은 우리 문법에 따라 다듬는다.

40) 일본어 투 관련 정비원칙이나 정비기준 등은 『쉽게 고쳐 쓴 우리 민법』(2003, 국립국어연구원)의 내용을 주로 참고하였다.

1) 일본어 투 정비 대상 목록


일본어 투 표현	정비안
명사 나열형	조사나 보조사를 추가한다. 명사를 형용사나 동사로 바꾼다.
에	과, 로, 를, 보다, 에게, 에서, 에도
으로써	어(어서), 여(여서), 으로서
의	이/가, 을/를, 인. '의'를 생략할 수 있다
관하여	을/를, 은/는, ~에 관하여. 문맥에 따라 '관하여'를 생략할 수 있다
대하여	을/를, 은/는, 에/에게, 로 하여금, ~에 대하여
요하는, 필요로 하는	~이 필요한
요하지 아니하다	필요로 하지 아니하다, 필요하지 아니하다, ~하지 않아도 되다
~에 있어, 있어서	에서, 경우, 할 때, 하여, ~는 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하지 아니하는 한	경우 외에는, 경우가 아니면, 경우를 제외하고는
~에 한하여 · 1회에 한하여 · 2회에 한하여	~에서만, ~에 한정하여, ~으로만, ~에만 · 한 차례만, 한 번만, 한 차례에 한정하여 · 두 차례만, 두 번까지만, 두 차례에 한정하여, 두 번만
~에 한하다	~에 한정하다, ~로 한정하다, ~만 해당하다, ~만을 말하다, ~만(을) 할 수 있다

2) 일본어 투 표현의 정비

가) 명사 연속 어구의 정비

정비기준

- 문장에 명사가 나열되어 있거나 명사구를 지나치게 사용하면 문장이 딱딱해 보일 뿐 아니라 이해하기 어려워진다. 나열된 명사 사이에 조사를 적절히 넣어 명사 간의 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나열된 명사 중 일부를 형용사 또는 동사로 바꾸어 사용하면 훨씬 자연스럽게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 된다.

 명사 연속 어구를 풀어 쓴 경우

- 문장에 명사나 명사구가 나열되어 있으면 형식면에서 부자연스럽고 내용면에서도 불충분해지기 쉽다.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빠진 내용을 추가하고 조사나 서술어 등을 사용하여 알기 쉽게 풀어 쓴다.

예

부품의 호환성 제고를 위하여 → 부품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하여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피난장소 도착시의 조치 → 피난 장소에 도착했을 때의 조치

예

“사유명”란에는 다른 공사의 지연등 사유의 요약을 적는다.

→

“사유명”란에는 다른 공사의 지연 등 해당 지연 사유를 요약하여 적는다.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4서식)

💡 명사가 연속된 문장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 명사가 연속된 문장이더라도 문장이 어렵지 않거나 자연스러우면 장황하게 풀어 쓰지 않는다. 다음 예시는 ‘위하여’와 연결되는 부분, 즉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의 문장구조가 잘 드러나는 효과가 있다.

현행 유지

제24조(정원의 관리) ①·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제3항)

나) 부적절한 조사의 정비

정비기준

- 법령문에서 조사 ‘에’가 자연스럽게 않게 사용된 예가 많은데, 일본어 격조사 ‘に’를 직역한 데서 생긴 오류로 보인다. 이는 일본어 격조사와 우리말 조사가 일대일로 대응하지 않는 데도 기계적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생긴 오류이다.
- 일본어 ‘に’에 대응되는 우리말 조사는 ‘에’뿐만 아니라 ‘를, 에서, 에게, 로, 과, 보다, 로서, 에도’ 등 다양하므로 ‘에’ 다음에 오는 서술어에 따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조사로 고쳐 쓴다.

1 소개

2 용어

3 문장

4 작성례

5 어문규정

(1) 에 → 과, 로, 를, 보다, 에게, 에서, 에도

 과

- 보험에 관계있는 → 보험과 관계있는
- 내용에 관계있는 → 내용과 관계있는

예

제59조(급여원부의 작성) ① (생략)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보험에 관계있는**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원부를 열람시키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보험과 관계있는** 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급여원부를 열람시키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예

제88조(불출석한 자등에 대한 고지) 가정법원이 유언증서의 개봉과 검인을 한 때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상속인 기타 유언의 **내용에 관계있는** 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

제88조(불출석한 자등에 대한 고지) 가정법원이 유언증서의 개봉과 검인을 하였을 때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상속인과 그 밖에 유언의 **내용과 관계있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가사소송규칙」 제88조) ※권고안

 로, 으로

- 시기에 소급하여 → 시기로 소급하여
-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 원상에 회복하여야 → 원래 상태/원상태로 돌려놓아야

예

제11조(자격취득 등의 확인) ① 가입자의 자격의 취득·변동 및 상실은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의 취득·변동 및 상실의 **시기에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

제11조(자격취득 등의 확인) ① 가입자 자격의 취득·변동 및 상실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의 취득·변동 및 상실의 **시기로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제1항)

예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자동차외의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는 유상(자동차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아니 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

예

제316조(원상회복의무, 매수청구권) ① 전세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야** 하며 그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은 수거할 수 있다. 그러나 전세권설정자가 그 부속물건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

제316조(원상회복의무, 매수청구권) ① 존속기간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전세물을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야** 하며, 전세물에 부속시킨 물건은 수거할 수 있다. 다만, 전세권설정자가 그 부속 물건의 매수를 청구한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민법」 제316조제1항) ※2019년 국회제출안



를

- 신의에 좇아 → 신의에 따라, 신의를 지켜

예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관세법」 제6조)

1 소개

2 용어

3 문장

4 작성례

5 어문규정

 **보다**

- 체납액에 부족한 때 → 체납액보다 적을 때, 체납액에 미치지 못할 때
- 결원 수에 부족하고 → 결원보다 적고, 결원 수보다 적고
- 다만, '미치다'의 경우 우리말에도 '~에 미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에'를 그대로 쓴다.

예

제16조(급여의 환수 등) ① ~ ③ (생략)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급여를 환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총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총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군인연금법」 제16조제4항제1호)

예

제12조(채용후보자 명부 등) ① ~ ⑥ (생략)

⑦ 임용권자는 경찰공무원의 결원보충에 있어서 채용후보자명부 또는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후보자 수가 **결원수에 부족하고**, 인사행정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결원된 계급에 관하여 다른 임용권자가 작성한 자치경찰공무원의 신규임용후보자명부 또는 승진후보자명부를 해당 기관의 채용후보자명부 또는 승진후보자명부로 보아 해당 자치경찰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

⑦ 임용권자는 경찰공무원의 결원을 보충할 때 채용후보자 명부 또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후보자 수가 **결원 수보다 적고**, 인사행정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결원된 계급에 관하여 다른 임용권자가 작성한 자치경찰공무원의 신규임용후보자 명부 또는 승진후보자 명부를 해당 기관의 채용후보자 명부 또는 승진후보자 명부로 보아 해당 자치경찰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법」 제12조제7항)

예: '에'를 쓸 수 있는 경우

제31조의2(가맹사업거래에 대한 교육 등) ① ~ ③ (생략)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교육기관 등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4항)

💡 예(41)

- 소유자에 속한 경우 → 소유자에게 속했을 때, (사람)의 소유인 경우

예

제305조(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①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제305조(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① 대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인 경우에**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305조제1항) ※2019년 국회제출안

💡 에서

- 이 법에 규정한, 이 법이 규정한, 이 법으로 규정한 → 이 법에서 규정한

- ○○법에 정한, ○○법이 정한, ○○으로 정한 → ○○법에서 정한

~에서 규정한

제33조(대한체육회) ① ~ ⑦ (생략)

⑧ 체육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 체육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제8항)

~에서 정한

제354조(동전) 질권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민사집행법에 정한** 집행방법에 의하여 질권을 실행할 수 있다.



제354조(「민사집행법」에 따른 질권의 실행) 질권자는 제353조에 따른 방법 외에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집행방법에 따라 질권을 실행할 수 있다.

(「민법」 제354조) ※2019년 국회제출안

41) '예'와 '예(41)'의 구별은 제82쪽 참조.

💡 예도

- 규정에 불구하고 → 규정에도 불구하고
- 보조사 ‘도’는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낸다. ‘도’가 첨가되면 문장의 의미가 더욱 명확히 드러나는 강조의 의미가 있다.
- 우리말에서 ‘~에도 불구하고’는 관용적인 표현인데, 여기에서 ‘도’를 뺀 ‘에 불구하고’는 어색하다. 굳어진 표현은 그대로 써야 자연스럽다.

예

제4조(개방형 직위의 총원시기) ① ~ ③ (생략)

④ 원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용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

(2) 으로써 → 여, 여서, 으로써

- 도구나 방법·수단을 나타내는 ‘으로써’는 한문 ‘이(以)’와 일본어에서 온 표현이다.

💡 나눔으로써 → 나누어서

- ‘으로써’가 수단이나 방법의 의미보다는 시간적 선후 관계를 연결하는 의미가 더 큰 경우에는 ‘어/(하)여’, ‘어서/(하)여서’로 고치는 것이 자연스럽다.

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0. (생략)

11. 이 법에서 “조제”라 함은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가지의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눔으로써**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11. “조제”란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어서**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약사법」 제2조제11호)

💡 ‘오로씨’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 ‘오로씨’ 다음에 ‘하여’가 이미 있는 경우 ‘오로씨’를 ‘여’나 ‘여서’로 바꾸면 ‘여’가 반복되는 어색한 문장이 될 수 있으므로 ‘오로씨’를 고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다.

예

제9조(폭행·협박 등의 금지)

1. ~ 5. (생략)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호)

- ‘오로씨’가 도구나 수단·방법 등의 의미로 쓰인 경우 ‘오로씨’를 ‘여’나 ‘여서’로 바꾸면 그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게 되므로 ‘여’나 ‘여서’로 고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다.

예

제36조(청구의 방식) ① 가사비송사건의 청구는 가정법원에 심판청구를 **함오로씨** 한다.

(「가사소송법」 제36조제1항)

(3) 의 → 이/가, 을/를, ~인, 생략

- 조사 ‘의’를 남용하는 것은 일본어 ‘の’의 영향이므로, 생략하거나 문맥에 맞게 바꾼다.

💡 주격 조사 자리에 ‘의’를 사용한 경우: 의 → 이/가

- 주어의 위치에 주격 조사가 아닌 관형격 조사 ‘의’를 사용해서 어색한 문장이 된 경우, ‘의’를 주격 조사인 ‘이, 가’로 고치면 문장이 쉬워진다.

예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 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 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 개정 내용 반영

(「저작권법」 제39조제1항)

1 소개

2 용어

3 문장

4 작성례

5 어문규정

예


제180조(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 ① (생략)

② 부부의 일방의 타방에 대한 권리는 **혼인관계의 종료한 때로부터** 6월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

②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민법」 제180조제2항)

 **목적격 조사 자리에 ‘의’를 사용한 경우: 의 → 을/를**

- 다음 예시는 목적어의 위치에 목적격 조사가 아닌 관형격 조사 ‘의’를 사용하여 문장이 어색해진 경우이다. ‘의’를 목적격 조사 ‘을, 를’로 고치면 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

예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예

제95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생략)

1. 「국가보안법」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5조제1항제1호)

예

제5조(근로자 및 사업주 등의 책임과 의무) ① 근로자는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여 **직업생활의 전기간에 걸쳐** 끊임없이 직업에 필요한 능력을 개발하고, 직업을 통하여 자기발전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근로자 및 사업주 등의 책임과 의무) ① 근로자는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여 **직업 생활을 하는 기간 동안** 끊임없이 직업에 필요한 능력을 개발하고, 직업을 통하여 자기발전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용정책 기본법」 제5조제1항)

- 그 해답의 제시 또는 적중을 → 그 답을 제시하거나 예측이 적중하면 이익을 준다는

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사행행위영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가. (생략)

나. 현상업: 특정한 설문 또는 예측에 대하여 **그 해답의 제시 또는 적중을**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재물등을 모아 그 설문에 대한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

나. 현상업(懸賞業): 특정한 설문 또는 예측에 대하여 **그 답을 제시하거나 예측이 적중하면 이익을 준다는**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재물등을 모아 그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 그 밖의 잠재적 원인의 분석·연구 분야 → 그 밖의 잠재적 원인을 분석·연구하는 분야

예

제4조(특별조사부의 구성 및 운영) ① (생략)

② 법 제18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해양사고 관련 전문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해양사고 조사대상자에 대한 **심리적·의학적 또는 그 밖의 잠재적 원인의 분석·연구 분야**의 전문가

→

2. 해양사고 조사대상자에 대한 **심리적·의학적 또는 그 밖의 잠재적 원인을 분석·연구하는 분야**의 전문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2호)

💡 '의'를 문맥에 맞게 풀어 쓰는 경우

- '의'를 다른 조사나 어미, 서술어를 활용하여 풀어 쓰면 간결하면서도 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

예

횡단면이 **직사각형의 것**

→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

두께가 4.5밀리미터 **이상의 것**

→

두께가 4.5밀리미터 **이상인 것**

수탁자 중 **법인의 경우에는**

→

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신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

신고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외부로부터의 강력한 충격으로 인하여

→

외부의 강력한 충격으로 인하여

1 소개

2 용어

3 문장

4 작성례

5 어문규정

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


4.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 (※권고안)

4.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 ‘자(者)’가 ‘사람’만을 가리키는 경우 ‘사람’으로 바꾼다.

 ‘~의’를 반복해서 쓰거나 부적절하게 쓴 경우

- ‘의’는 문장을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핵심어 중심으로 쓰다 보면 오히려 ‘~의 ~의 ~의’식의 복잡한 문장이 되거나 부자연스럽고 딱딱한 문장이 될 수 있다. 이런 경우 ‘의’를 생략하거나 ‘에게’ 등 적절한 표현으로 고친다.
- 필요한 경우 조사나 동사를 활용하여 바꾸어 쓸 수 있다.

예	
건축물의 건축의 금지	→ 건축물의 건축 √ 금지
임대주택의 건설에	→ 임대주택 √ 건설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의 위반여부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위반 √ 여부
수사의 주재자로서의 품위	→ 수사 √ 주재자로서 √ 지녀야 할 품위
변제 로서 의 타인의 물건의 인도	→ 변제 로서 √ 타인의 물건을 인도하는 경우
시행 과정 에서의 문제점의 분석이 필요하다.	→ 시행 과정 의 문제점을 분석해야 한다.

예

제362조(저당물의 보충) 저당권설정**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때에는 저당권자는 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

제362조(저당물의 보충) 저당권설정**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저당권 대상물의 가액이 현저히 줄어든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저당권설정**자에게** 원상회복이나 적절한 담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362조) ※2019년 국회제출안

예

제5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한 이식의 목적으로 살아 있는 자 등으로부터 적출 및 이식되는 장기등에 적용한다.



제5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이식할 목적으로 살아있는 사람 등으로부터 적출·이식되는 장기등에 적용한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5조)

예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① ~ ④ (생략)

⑤ 제1항의 책임보험등과 제2항 및 제3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은 각 자동차별로 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① ~ ④ (생략)

⑤ 제1항의 책임보험등과 제2항 및 제3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는 각 자동차별로 가입하여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5항)

※ 조 제목 '보험 등의 가입 의무'도 '보험 등에의 가입 의무'로 고쳐 써야 한다.

다) 불필요한 '관하여/대하여'의 정비

정비기준

- '~에 관하여/대하여'는 일본어를 직역한 어형(語形)이 그대로 정착되어 우리말처럼 쓰이는 대표적인 표현이다. 법령문뿐만 아니라 일상 언어에도 깊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일본어 투 표현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기 어렵다.
- 하지만 '관하여/대하여'를 사용하지 않고도 대부분의 문장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거나 간단한 조사를 써서 대체할 수 있으므로 '~에 관하여/대하여'를 남용하지 않도록 한다.
- '관하여/대하여'가 문장에서 사전상 의미대로 쓰일 때에는 살려 쓴다.

(1) ~에 관하여 → 이, 가, 을, 를, ~인, 생략

- ‘~에 관하여’는 문맥에 따라 ‘~에 관하여’를 삭제하거나 ‘~는’, ‘~를’, ‘~에’ 등으로 바꾸어 쓴다.

 ~를

예
제145조(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
제145조(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제144조에 따라 추인할 수 있게 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45조) ※2019년 국회제출안


 ~에

- ‘운영’과 같이 ‘동작을 의미하는 단어’(서술성 명사) 다음에 ‘관하여 필요한’이 오면 ‘관하여’를 삭제해도 자연스럽게 문장이 이어지므로 ‘관하여’를 삭제한다.

예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에 관하여’를 그대로 쓰는 경우

- 다음 예시의 ‘장비’와 같이 서술성 명사가 아닌 단어와 ‘필요한 사항’을 바로 연결하면 문장이 어색해진다. 이런 경우에는 ‘관하여’를 살려 쓴다.

예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조대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2) ~에 대하여 → ~를, ~에게, ~는, ~로 하여금, ~에 대하여

- ‘~에 대하여’는 문맥에 따라 ‘~에 대하여’를 삭제하거나 ‘~를’, ‘~에게’, ‘~로 하여금’ 등으로 바꾸어 쓴다.

💡 ~를

예

제16조(외국인유치원) ① “외국인유치원”이라 함은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의 **자녀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유치원을 말하며, 외국인유치원에 대하여는 제11조 내지 제14조·제17조·제18조제2항·제19조·제22조·제24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6조(외국인유치원) ① “외국인유치원”이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유치원을 말하며, 외국인유치원에 대하여는 제11조제1항·제2항 단서·제3항,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 제18조제2항, 제19조,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8까지,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유아교육법」 제16조제1항)

💡 ~에게

예

제11조(별정우체국의 지정취소에 따른 조치) ① (생략)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한 날부터 업무인계가 끝날 때까지 근무하는 당해 별정우체국의 **직원에 대하여는** 그 근무기간에 취소당시의 직종 및 급별보수에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한 날부터 업무인계가 끝날 때까지 근무하는 당해 별정우체국의 **직원에게는** 그 근무기간에 취소 당시의 직종 및 직급별 보수에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 ~로 하여금

- ‘단체의 장에 대하여’를 ‘단체의 장에게’로 바꿀 수도 있다.
- 이때 ‘단체의 장에게’로 쓰면 ‘단체의 장이’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로 하여금’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예

제17조(보고 및 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낙농진흥법」 제17조제1항)


1 소개

2 용어

3 문장

4 작성례

5 어문규정

 ‘~에 대하여’를 살려 쓰는 경우42)

- 서술어의 대상이나 목적임을 나타낼 때는 ‘대하여’를 그대로 쓴다.
- 지원하는 대상이 ‘보건의료’이므로 ‘대하여’를 살려 쓴다.
- ‘~에게’와 ‘~에 대하여’가 한 문장에 같이 쓰이는 경우 ‘서술어의 대상’이 되는 명사에는 ‘~에 대하여’를 그대로 쓴다.

예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 ③ (생략)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제4항)

예

제19조(신기술의 사업화 또는 제품화 지원 등) ① ~ ③ (생략)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금 및 자금 등을 관리하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생산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 제20조에 따라 자금 지원 또는 보증을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라) 직역 투 서술어의 정비

정비기준

- 앞서 말한 대로 우리 법령문에 ‘일본식 한자어’나 ‘일본어 투 표현’이 많이 사용된 것은 일본의 법령문을 문자 그대로 직역한 데서 비롯되었다.
- 특히 서술어에서 다양한 형태의 일본어 투 표현들이 나타나는데 이는 일본의 법령 조문에 많이 등장하는 어구를 그대로 가져와 직역했기 때문이다.
- 이러한 직역 투 서술어는 자연스러운 우리말 표현으로 고쳐 쓴다.

42) ‘관하여’와 ‘대하여’

- ‘관하여’와 ‘대하여’는 사전상 서로 유사한 의미로 풀이되지만 ‘대하다’는 ‘대상이나 상대로 삼다’로, ‘관하다’는 ‘말하거나 생각하는 대상으로 하다’로 약간 차이가 있다.
- ‘국기에 관한 규정’과 ‘국기에 대한 규정’의 경우 ‘관하여’나 ‘대하여’ 둘 다 쓸 수 있지만 미세한 차이가 느껴진다. ‘국기에 대한’이라고 하면 국기의 모양, 크기 등 국기 그 자체와 관련된 내용(대상)에 주안점을 두는 것으로 보이나, ‘국기에 관한’이라고 하면 국기 그 자체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국기 사용법, 보관법 등 그 밖의 내용(외연)까지 관심의 범위를 넓히는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대상 자체에 집중하는 내용에는 ‘대하여’가 자연스럽고, 대상의 주변까지 확장하는 내용에는 ‘관한’이 자연스럽다.

(1) 요하는, 필요로 하는 → ~이 필요한, ~할 필요가 있는

- ‘~을 요하다’는 일본어를 직역하면서 생긴 표현으로, ‘~이 필요한’, ‘~을 ~할 필요가 있는’ 등으로 자연스럽게 고쳐 쓴다.
- ‘다음절 한자어+する’ 형태의 용언은 일본어에서 많이 만들어지고 사용되면서 우리말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다음절 한자어+-하다’와 같은 표현은 일상어에서 자주 쓰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권위적으로 느껴지므로 자연스럽게 풀어서 사용한다.

💡 ~를 요하다 → ~가(이) 필요하다

예

제4조(보호조치 등) ①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하 “구호대상자”라 한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 2. (생략)

3. 미아·병자·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자. 다만 당해 인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3. 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만,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1항제3호)


1 소개


2 용어

3 문장

4 작성례

5 어문규정

 **긴급을 요할 때** → 긴급한 경우,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때

 **긴급을 요하거나** → 긴급한 경우이거나

예

제26조(보고 및 조사) ① ~ ② (생략)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받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를 하면 관련 자료 등을 파기할 우려가 있는 등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 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를 받을 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전에 알리면 관련 자료 등을 파기할 우려가 있는 등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6조제3항)

(2) **요하지 아니하다** → 필요로 하지 아니하다, 필요하지 아니하다,
~하지 않아도 되다

- ‘요하지 아니하다’는 문맥에 맞게 순화하여 쓸 수 있다. 그러나 ‘필요가 없다’는 ‘요하지 아니하다’보다 더 강한 표현으로서 의미가 서로 다르므로 ‘요하지 아니하다’를 ‘필요가 없다’로는 순화하지 않는다.

예

제277조(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

제277조(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이 **필요하지 않다**. 이 경우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77조) ※권고안

예

제77조(신원보증) ① ~ ⑧ (생략)

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서를 제출한 자가 그 신원보증서의 보증기간의 범위내에서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신원보증서의 **추가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

⑨ 제1항에 따른 신원보증서를 제출한 사람이 그 신원보증서의 보증기간의 범위에서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신원보증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제9항) ※권고안

(3) ~에 있어, ~에 있어서 → ~에서, ~할 때, ~하는 경우, ~할 경우, ~하는 데에

- ‘에 있어(서)’나 ‘에 있어서의’는 일본어를 직역하면서 생긴 표현으로, 동사나 형용사로서의 ‘있다’의 의미가 없다. 따라서 ‘에서’나 ‘할 때’, ‘하는 경우’, ‘할 경우’, ‘하는 데에’ 등으로 고쳐 쓴다.

💡 에서

- 승진에 있어서 → 승진에서

예

제10조(교육·배치 및 승진)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교육·배치 및 승진)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 경우, 때

- 도급계약에 있어서 → 도급계약의 경우, 도급계약을 하는 경우, 도급계약을 할 때, 도급계약을 맺을 때

예

제18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공사의 하자보수(瑕疵補修)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공사의 하자보수(瑕疵補修) 보증을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경우**

- 등에 있어서는 → 등의 경우에는


예

제50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① 지역농협의 임원선거의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해당 선거일까지 조합원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제50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① 지역농협의 임원 선거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그 선거일까지 조합원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의2제1항)

 **시, 할 때**

- 업무에 있어서 → 업무 수행 시, 업무를 수행할 때


예

제5조(최대 봉사의 원칙) ① 조합과 중앙회는 그 **업무에 있어서** 조합원 또는 회원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 한다.

→

제5조(최대 봉사의 원칙) ① 조합과 중앙회는 그 **사업 수행 시** 조합원이나 회원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 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제5조제1항)

 **하는 경우, 하여, 할 때**

- 적용함에 있어서 → 적용하는 경우, 적용하여, 적용할 때

예

제102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101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

제102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101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제82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식품위생법」 제102조)

💡 하는 데, 하는 데에

- 제공함에 있어 → 제공하는 데, 제공하는 데에

예

제35조(설비등의 제공)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정을 체결하여 설비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관리기관의 사용계획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함에 있어**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

→

1.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데에**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제2항제1호)

💡 로, 로 인하여, 가 발생하여(문맥에 따라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바꿀 수 있다)

- 위기에 있어서 → 위기로, 위기로 인하여, 위기가 발생하여

예

제14조(긴급조치) ① 위원장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금융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권한범위안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4조(긴급조치) ① 위원장은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로**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권한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1 소개

2 용어

3 문장

4 작성례

5 어문규정

(4) 없는 한 → 없으면

- ‘없는 한’은 앞에 오는 말이 뒤의 상태에 대해 전제나 조건이 됨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일본어를 직역하면서 생긴 것이다. ‘없으면’이라는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바꾸어 쓴다.

예

제5조(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 ④ (생략)

⑤ 소방방재청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의 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⑤ 소방청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5항)

(5) ~하지 아니하는 한 →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아니하였으면

→ ~한 경우 외에는, ~한 경우가 아니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 ‘~하지 아니하는 한’을 문맥에 어울리는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고쳐 쓴다.

예

제848조(법적 성질) ① 선채용선계약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848조(법적 성질) ① 선채용선계약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상법」 제848조제1항) ※권고안

(6) ~에 한하여 → ~에서만, ~에 한정하여, ~으로만

- ‘~에 한하다’는 일본어를 우리말로 직역하면서 생긴 표현이다.
- ‘~에 한하여’ 대신 ‘~에 한정하여’, ‘~에서만’, ‘~으로만’ 등의 자연스러운 우리말 표현으로 고쳐 쓴다.

💡 ~에 한정하여

예

제12조(경매의 청구) ① (생략)

② 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기간내에 한정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전이라도 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기간에 한정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담보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 ~에서만

예

제11조(특별채용)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계획에 따라 특별채용을 할 때에는 공무원임용관계규정에서 공무원 퇴직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자를 특별채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정과 일정계급이하의 **계급에 한정하여**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1조(특별채용)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계획에 따라 특별채용을 할 때에는 공무원 임용 관계 규정에서 공무원 퇴직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사람을 특별채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정과 일정계급 이하의 **계급에서만** 특별 채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980년 해직공무원의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권고안

💡 ~으로만

예

제43조(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전기통신사업자는 제3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은 정보를 제공 받은 **목적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에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3조(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전기통신사업자는 제4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기술적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에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43조)


1 소개

2 용어

3 문장

4 작성례

5 어문규정

 1회에 한하여 → 한 차례만, 한 번만, 한 차례에 한정하여

예

제13조(임원의 선임 등) ①·② (생략)


③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사장 및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③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이사장과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경찰공제회법」 제13조제3항)

(7) ~에 한한다 → ~에/로 한정한다, ~만 해당한다, ~만을 말한다,
~만(을) 할 수 있다

 ~만 해당한다, ~로 한정한다, ~만을 말한다


예

제6조(등록의 말소 등) ① 시·도지사는 등록된 건설기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유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9호(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한 때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제6조(등록의 말소 등) ① 시·도지사는 등록된 건설기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신청이나 시·도지사의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5호, 제8호(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폐기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1항)

 ~만 할 수 있다, ~만을 할 수 있다

예

제10조의2(업무의 위탁)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관리기관에 같음하여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용정보업자의 경우에는 재판외의 **행위에 한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관리기관에 같음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채권추심회사의 경우에는 재판 외의 **행위만 할 수 있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10조의2제2항)

마) 직역 투 피동문의 정비

정비기준

- 법령문에는 일본어를 직역하면서 생긴 표현인 ‘~에 의하여’, ‘의한’과 같은 피동문이 많이 등장한다. 이는 일상적인 우리말 표현이 아니므로 표현과 어순을 조정하여 능동문의 형태로 고쳐 쓴다.
- ‘~에 의하여’가 수단이나 방법의 의미로 쓰였을 때에는 ‘~으로’ 등으로 바꾼다.
- ‘~에 의하여’를 ‘~으로’로 바꾸어서 수단이나 방법의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에는 바꾸지 않고 그대로 쓴다.

💡 ~에 의하여 → ~가,

예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작물과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상품으로서 사업자가 당해상품에 대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미리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당해상품이 일반소비자에 **의하여** 일상 사용되는 것일 것



2. 해당 상품이 일반 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일 것

(중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제2호) ※권고안

💡 ~에 의한 → ~이 실시하는, ~에 의하여 실시된, → ~이 실시한

- ‘외국인 또는 국제조직’과 ‘대한민국 국민’이 해양과학조사의 주체이므로, 이들을 주어로 하여 능동문으로 쓰면 복잡하고 어색한 표현을 쉽고 단순하게 바꿀 수 있다.

예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인 또는 국제조직에 의한 해양과학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고, **대한민국 국민에 의하여 실시된 해양과학조사**의 결과물인 조사자료의 효율적 관리 및 공개를 통하여 해양과학기술의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가 실시하는 해양과학조사**의 절차를 정하고,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가 실시한 해양과학조사**의 결과물인 조사자료의 효율적 관리 및 공개를 통하여 해양과학기술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내용 반영

(「해양과학조사법」 제1조)

 ~에 의하여 → ‘의하여’의 의미를 풀어 쓴 경우

- 다음 예시에서는 ‘의하여’가 의미하는 내용을 문맥에 맞게 풀이하여 적고 어순도 자연스럽게 조정한다.

예

제5조(적용 대상 등) ① (생략)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말한다.

→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

 방법에 의하여 → 방법으로

- ‘~에 의하여’가 수단이나 방법의 의미로 쓰였으므로 ‘~으로’, ‘~로도’ 등으로 바꾼다.

예

제2조(기본이념) ① ~ ③ (생략)

④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은 윤리적으로 타당하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

④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은 윤리적으로 타당하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항)

예

제19조의3(공직후보자 등의 관리) ① (생략)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서면 또는 **전자매체에 의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본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하는 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제공한 기관 외의 다른 기관에의 제공을 동의한 정보와 공공기록물·출판물·인터넷 및 **언론보도 등에 의하여** 일반에게 공개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구입·열람할 수 있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라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경우 미리 서면이나 **전자매체로**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본인이 요구하면 관리하는 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제공한 기관 외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한 정보와 공공 기록물, 출판물, 인터넷 및 **언론보도 등으로** 일반에게 공개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구입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2항)

예

제25조(임의 중재)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의하여** 협의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노동위원회 기타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

→

제25조(임의 중재)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로** 협의회에 중재기구(仲裁機構)를 두어 해결하거나 노동위원회나 그 밖의 제삼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예

제4조(임의 중재) ① (생략)

② 국가보훈처장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국방부장관에게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등록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해당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나 제5항 후단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국방부장관에게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등록신청 시 제출한 **서류로도** 해당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 시험에 의한다 → 시험으로 채용한다

- ‘의하다’는 문장의 종결 서술어로 잘 쓰이지 않는다. 다음 예시에서 ‘시험’은 공무원을 채용하는 수단이므로 ‘~시험으로 채용한다’로 표현을 바꾼다.

예

제28조(신규채용) ① **공무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

→

제28조(신규채용) ① **공무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채용한다.**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1항)

1 소개

2 용어

3 문장

4 작성례

5 어문규정

💬 ‘~에 의하여’를 유지하는 경우

- ‘~에 의하여’를 ‘~에 따라’, ‘~로’ 등으로 정비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으면 ‘~에 의하여’를 그대로 사용한다.
- ‘의하여’가 질병이 발생한 ‘원인’ 등을 나타낼 때에는 ‘의하여’를 사용하여 그 뜻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예

제5조(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결정기준) ①~③(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고엽제후유증·고엽제후유증의 질병으로 보지 아니하고,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질병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질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1.·2. (생략)

3. **외상(外傷)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3호)

예

제42조(진료) ①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그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걸린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시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한다. 다만,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다. 어순을 자연스럽게 한다

정비기준

- 어순이 올바르지 않으면 의미를 파악하는 데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들 수 있고, 나아가 의미 자체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
- 수식하는 말(수식어)은 수식을 받는 말(피수식어) 앞에 두는 것이 기본 어순이다. 수식어는 뒤에 오는 말을 꾸미거나 한정하는 문장성분이기 때문이다. 수식 관계가 쉽게 드러나도록 어순을 바로잡는다.
- 복문에서는 각각의 주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되도록 주어와 서술어를 가까이 둔다.

1) 관형절(구) 어순 정비사례

- 관형어는 뒤에 오는 명사, 대명사 등을 수식하는 문장성분을 말한다. 수식어가 피수식어 앞에 놓이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수식 대상을 혼동하기 쉬우므로 수식어의 위치를 주의해서 쓴다.

관형절(구)이 연이어 나오는 경우

- 다음 예시에서 관형절(구) ‘여단급 이상의’와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이 ‘부대’를 수식하고 있다. 그런데 ‘여단급(旅團級) 이상의’가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의 앞에 있으면 ‘여단급 이상의 전투’라는 말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두 관형절(구)의 위치를 조정한다.

예

제16조(보직) ① (생략)

② **旅團級 이상의 戰鬪를 主任務로 하는 部隊**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1項에 規定된 補職上의 資格을 具備한 戰鬪兵科出身將校로써 補한다.

→

②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여단급(旅團級) 이상 부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직상의 자격을 갖춘 전투병과(戰鬪兵科) 출신 장교로 임명한다.

(「군인사법」 제16조제2항)

2) 부사절(구) 어순 정비사례

- 부사절(구)은 동사·형용사나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 따라서 수식을 받는 동사·형용사나 문장 앞에 두어야 한다.
- 하나의 주어에 서술어를 여러 개 쓰려면 각 행위들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적어도 긴밀한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둘 이상의 부사절(구)에 대한 수식 관계를 각각 명확히 한 경우

- 다음 예시에서 ‘공단이 제39조제2항에 따라’하는 것은 ‘사용자와 보수월액보험료를 다시 정산하여 반환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정되기 전의 조문은 ‘제39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사용·임용·채용 관계가 끝난’ 것으로 읽힐 수 있다. 이러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제39조제2항에 따라’를 ‘사용자와 보수월액보험료를 다시 정산하여’ 앞에 두었다.

1 소개

2 용어

3 문장

4 작성례

5 어문규정

- 또한 '직장가입자의 사용·임용·채용관계가 끝나'는 문장 전체(공단이 ~ 반환하는 경우에는)를 수식하므로 문장의 맨 앞에 두었다. 수식어는 피수식어 앞에 두어야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다.

예

공단이 제39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사용·임용·채용 관계가 끝나 사용자와 보수월액 보험료를 다시 정산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

직장가입자의 사용·임용·채용 관계가 끝나 공단이 제39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와 보수월액 보험료를 다시 정산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부사어를 서술어 가까이 옮긴 경우**

- 다음 예시에서 중심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에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한다는 것이다. 서술어(권장할 수 있다)와 그 대상(가맹본부에) 사이에 긴 부사구(건전한 ~ 방지하기 위하여)가 있어 그 관계가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따라서 권장하는 대상을 서술어 가까이에 둔다.

예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③(생략)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에게 건전한 가맹사업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가맹계약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가맹사업거래에서 표준이 되는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전한 가맹사업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가맹계약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일정한 가맹사업거래에서 표준이 되는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중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 부사절의 주어와 서술어를 가까이 둔 경우

- 주어인 ‘국민이’는 서술어 ‘접근할’과 호응한다. 그런데 그 사이에 ‘정보’를 설명하는 내용이 많아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주어 ‘국민이’를 서술어 ‘접근할’ 가까이로 옮겨 수식 관계를 분명하게 한다.

예

제5조(정보의 제공) 환경부장관은 국민이 제9조에 따른 상시측정 및 조사결과,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원조사결과,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오염도 및 배출량,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산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물환경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수질의 상시측정(常時測定) 결과, 제9조의3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결과, 제23조에 따른 오염원 조사 결과,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오염도 및 배출량,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국가 물환경종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물환경보전법」 제5조제1항)

💡 수식 대상을 오해하지 않도록 부사어의 위치를 옮긴 경우

- ‘제3항의 범위 내에서’가 ‘공표된’을 수식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의도는 제3항의 범위에서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어순을 바꾸어 수식어를 피수식이 가까이 두어야 한다.

예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의 이용) ① ~ ④ (생략)

⑤ 제3항 각 호의 학교·교육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공중송신할 수 있다.

→

⑤ 제3항 각 호의 학교·교육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은 수업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제3항의 범위에서 복제하거나 공중송신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25조제5항) ※권고안

1 소개

2 용어

3 문장

4 작성례

5 어문규정

5 한눈에 보이는 문장 쓰기

- 법령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령에 표·계산식·그림 등 시각적인 기법을 활용한다. 서술 중심의 체계로는 복잡한 내용을 전달하기 쉽지 않다. 수학적 내용이나 사물의 형상, 추상적인 개념·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표·계산식·그림 등을 활용하여 시각화한다. 또 법령상 별표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표·도표 등이 너무 길거나 복잡하지 않은 경우에는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조문에 직접 규정한다.

가. 표를 활용한다

-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관련 사항들을 구분한 경우에는 표를 활용할 수 있다.

예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年稅額)으로 한다.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시시 이하	18원	1,000시시 이하	80원
1,600시시 이하	18원	1,600시시 이하	140원
2,000시시 이하	19원	1,600시시 초과	200원
2,500시시 이하	19원		
2,500시시 초과	24원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나. 계산식을 활용한다

- 계산식을 서술하는 경우에는 직접 계산식을 쓸 수 있다.

예

제6조(보험료의 납입) ① ~ ③ (생 략)

④ 조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납입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입하지 아니한 보험료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입일까지의 일수에 전체 조합의 상호금 융일반자금대출시의 평균연체이자율을 기준으로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

④ 조항은 제1항에 따른 보험료를 납입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기금에 내야 한다.**

연체료 = 미납입 보험료 × 보험료 납입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입일까지의 일수 × 전체 조합의 상호금융 일반자금대출 시의 평균 연체이자율을 기준으로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

예

제43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등) ① ~ ④ (생 략)

⑤ 제3항의 퇴직연금일시금의 금액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의 1천분의 975에 상당하는 금액에다 재직연수에서 5년을 뺀 연수의 매 1년에 대하여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의 1만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⑤ 제3항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재직연수에서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하고, 36년이 넘는 기간은 36년으로 계산한다.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 × 재직연수 × [975/1000 + 65/10000 (재직 연수 - 5)]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5항)

1 소개

2 용어

3 문장

4 작성례

5 어문규정

다. 그림을 활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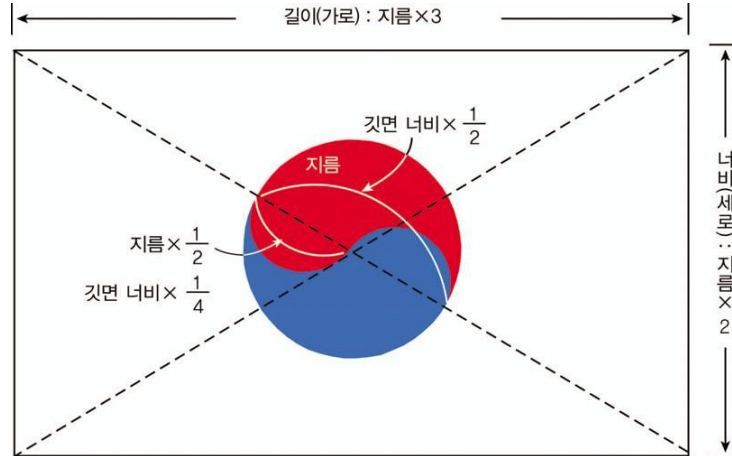
- 대상을 묘사하는 경우 그림으로 정확히 예시한다.

예

제6조(국기의 깃면을 그리는 방법) ① (생략)

② 태극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아래의 그림과 같이 그린다.

1. 깃면의 두 대각선이 서로 교차하는 점을 중심으로 깃면 너비의 2분의 1을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린다.
2. 두 대각선 중 왼쪽 윗 모서리에서 오른쪽 아랫 모서리로 그어진 대각선상의 원의 지름을 2등분하여, 왼쪽 부분에 원의 지름의 2분의 1(깃면 너비의 4분의 1)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대각선의 아랫부분에 그리고, 그 오른쪽 부분에 원의 지름의 2분의 1(깃면 너비의 4분의 1)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대각선의 윗부분에 그린다.
3. 반원으로 연결된 원의 윗부분은 빨간색으로, 그 아랫부분은 파란색으로 한다.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문장의 짜임



1. 문장의 단위

‘문장’이란 생각이나 감정을 말과 글로 표현할 때 완결된 내용을 나타내는 최소의 단위를 말한다. 문장의 형식으로 ‘주어와 서술어를 갖추고 있는 것이 원칙’이나 때때로 이런 성분이 생략될 수도 있다.

2. 문장의 구분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몇 번 나타나느냐에 따라 단문(單文)과 복문(複文)으로 나뉜다.

가. 단문

주어와 서술어가 각각 하나씩 있어서 둘 사이의 관계가 한 번만 이루어지는 문장을 말한다.

산이 높다
(주어)+(서술어)

나. 복문

두 개 이상의 절(節: 주어와 서술어를 갖고 있지만 독립적으로 쓰이지 못하고 문장의 한 성분으로 사용되는 단위)로 된 문장을 말한다. 한 개의 절이 다른 문장 속에 한 성분으로 들어가 있거나, 둘 이상의 절이 서로 이어지거나 하여 여러 겹으로 된 문장이다.

복문은 다시 안은문장과 이어진문장으로 나뉜다.

1) 안은문장: 하나의 절을 하나의 문장의 한 성분으로 포함하고 있는 문장. 이 때 포함되어 있는 절을 ‘안긴문장’이라 한다.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주어)]+[[(주어)]+(서술어)]+(서술어)]]

▶ ‘이것이 일이다’라는 큰 문장 속에 ‘내가 해야 하다’라는 관형절이 안긴문장. ‘내가 해야 할’이 뒤에 나오는 ‘일’을 수식하는 관형어 구실을 한다.

길이 눈이 와서 미끄럽다.
[[(주어)]+[[(주어)]+(서술어)]+(서술어)]]

▶ ‘길이 미끄럽다’라는 큰 문장 속에 ‘눈이 오다’라는 부사절이 안긴문장. ‘눈이 와서’가 뒤에 나오는 ‘미끄럽다’를 수식하는 부사어 구실을 한다.

1 소개

2 용어

3 문장

4 작성례

5 어문규정

2) 이어진문장: 둘 이상의 절이 연결어미에 의하여 결합된 문장. '대등접속문'과 '종속접속문'으로 나뉜다.

(1) 대등접속문: 둘 혹은 그 이상의 절이 동등한 자격으로 접속된 문장. 연결어미 '-고', '-(으)며' 등으로 이어진다.

산이 높고 물이 맑다

[(주어)+(서술어)]고 [(주어)+(서술어)]

▶ 대등적 연결어미 '-고'로 앞뒤 절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2) 종속접속문: 두 개 이상의 절이 동등하지 않은 자격으로 접속된 문장. 연결어미 '-는데', '-(으)면' 등으로 이어진다.

산이 높으면 물이 맑다

[(주어)+(서술어)]면 [(주어)+(서술어)]

▶ 조건의 뜻이 담긴 종속적 연결어미 '-(으)면'으로 이어진 문장

제4장

법령 유형별 작성례

1. 법률 작성례
2. 대통령령 작성례
3. 부령 작성례

알기 쉽고 반듯한 법령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법률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1 법률 작성례

- 기본 조
- ◇ 선택 조 ◎ 선택 항, 선택 호 / 선택 단어, 구, 절
- <> 생략할 수 있는 부분

• 법률 작성례는 현행 법률과 『법령 입안·심사 기준』의 입법례를 기본으로 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작성한 사례로, 반드시 작성례에 맞춰서 법률안을 정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률 제 호

○○○법/○○○에 관한 법률

목적

제○조(목적) 이 법은 ~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규정하여 ~에 ~하는 것을/이바지하는 것을/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목적) 이 법은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이란 ~를 위하여 ~를 제공하거나/갖추어 ~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2. “~업”이란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를 말한다.
3. “문화예술”이란 문학, 예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과 출판을 말한다.

제○조(정의) 이 법에서 “~업”이란 ~것을 말한다.

계획

제○조(★★종합계획) ① ★★장관은 ~을 위하여 ~년마다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 관한 사항
2. ~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에 필요한/관한/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면/수립할 때에는 미리/수립할 때에는 사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종합계획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위원회가 심의한 후 확정된다. 이 경우 ★★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⑤ ★★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필요하다고 인정하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관계 기관에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

제○조(★★위원회) ① ~을 심의하기/수행하기 위하여 ~부장관 소속으로/~부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에 관하여 ~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응하게 하기 위하여 ~부장관 소속으로/~부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로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관한(○)/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조(이사회)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허가

제○조(★★업의 허가) ① ★★업을 하려는/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과 ★★를 갖추어 ★★장관/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을 하려는/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과 ★★를 갖추어 ★★장관/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받아야 한다. 다만, ~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면/할 때에는 미리/할 때에는 사전에 제○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검토를 거쳐야 한다.

④ ~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조건, 기한이나 ☆☆를 붙일 수 있다.

⑤ ★★장관/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일 이내에 그 사실을 ~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과 ★★ 등의 허가 세부기준과 <그 밖의> 허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조(허가를 받지 아니한/않은 영업 등의 금지) ★★업자가 아닌 자는 ★★를 업(業)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하면 안 된다.

제○조(허가 요건) ① ★★장관/시·도지사는 제○조에 따라 허가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 내용이/

1 소개

2 용어

3 문장

4 작성례

5 어문규정

제○조에 따른 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조(허가 제한) **★★**장관은/시·도지사는 제○조에 따른 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각 호 내용 생략)

제○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자연인만 있는 경우에는 ‘사람’)
3. 이 법, 「~법」 또는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법」 또는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제○조(조건부 영업허가) ① **★★**장관은/시·도지사는 제○조제○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조에 따른 시설과 ☆☆ 등을 갖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 **★★**장관은/시·도지사는 제○조제○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② **★★**장관은/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에 시설과 ☆☆ 등을 갖추지 아니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장관은/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에 **★★**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조(~허가의 유효기간) ① 제○조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년으로 한다.

② **★★**장관은/시·도지사는 ~허가를 받은 자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 **★★**장관은/시·도지사는 ~허가를 받은 자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연장 신청의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령으로 정한다.

제○조(허가증의 발급 등) ① **★★**장관은/시·도지사는 제○조에 따른 허가를 하면/할 때/하였으면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기록한 후 허가증을 발급하여야/내주어야 한다.

② ~는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허가증에 기재된 내용이 변경되면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재발급받을 수 있다.

③ 허가증은 타인/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제○조(영업자의 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업자/종전 사업자/종전

영업자의 지위/허가 등에 따른 종전 사업자의 권리·의무/허가 등에 따른 종전 영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1. ★★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업자가 영업을 <전부> 양도한 경우 양수인
 3. 법인인 ★★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 되는 법인
- ◎ ★★업자가 사망하거나 영업을/영업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법인인 ★★업자가 합병하였을 때에는 그 상속인이나 영업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업자/종전 사업자/종전 영업자의 지위//허가 등에 따른 종전 사업자의 권리·의무//허가 등에 따른 종전 영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용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업자/종전 사업자/종전 영업자의 지위//허가 등에 따른 종전 사업자의 권리·의무//허가 등에 따른 종전 영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업자에 대한 허가는 그 효력을 잃는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자/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일 이내에 그 사실을 ★★장관/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항/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승계에 관하여는 제○조제○항제○호부터 제○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제○조제○항에 따라 영업이 승계되면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제○조제○항에 따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년간 새로운 ★★영업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새로운 ★★영업자에 대해서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영업자(상속으로 승계 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영업을 승계할 때 그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조(영업의 개시) ① 제○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일/★★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② ★★장관/시·도지사는 ★★업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영업을 시작할 수 없으면 그 ★★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아/★★업자의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업자는 영업을 시작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장관/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조(휴업, 재개업 및 폐업의 신고) ① 제○조에 따른 ★★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장관/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 기간 중단한/휴업한 경우
- ◎ ★★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 기간 중단하려는/휴업하려는 경우
2. ★★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만둔/폐업한 경우
- ◎ ★★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만두려는/폐업하려는 경우

1 소개

2 용어

3 문장

4 작성례

5 어문규정

3. 일정 기간 중단한 ★★업을 다시 시작한 경우

◎ 일정 기간 중단한 ★★업을 다시 시작하려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중단 기간/휴업 기간은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장관으로부터/시·도지사로부터 그 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조(영업자 준수사항) ★★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준수하여야 한다.

제◇조(영업자 준수사항) ★★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조(영업 제한) ★★장관은/시·도지사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유지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의 영업 시간, 영업소의 관리·운영, 그 밖에 영업에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제○조(허가취소 등) ① ★★장관은/시·도지사는 ★★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조에 따른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2. 제○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조제○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으로 교체 임명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4. 제○조에 따른 기간(제○조에 따라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이 지날 때까지 ~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5.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년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6. 제○조제○항에 따른 허가기준/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미달하게 된 경우
7. 제○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8. 제○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9. 제○조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조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11. 제○조에 따른 출입·검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부령으로 정한다.

◎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등록취소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부령으로 정한다.

신고

제○조(★★ 등의 신고 등) ① ★★하려는 자는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관/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제○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장관/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장관은/시·도지사는//★★장관은/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바로/지체 없이 발급해야/내주어야 한다.

등록

제○조(★★업의 등록 등) ① ★★사업을 하려는/★★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장관/시·도지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조(★★업의 등록 등) ① ★★을 개설하려는 자는 그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별로> ★★장관/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된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관/시·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0퍼센트/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비영리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0퍼센트/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비영리법인

④ 제1항에 따라 ★★업의 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별로 ★★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날 때마다 ★★장관/시·도지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을 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에게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조(★★업의 등록기준) 제○조제○항에 따른 ★★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시설과 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조(등록증의 발급 등) ① ★★장관/시·도지사는 ★★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업의 등록을 하면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 등록증과 ★★업 등록수첩을 발급하여야/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받은 자는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에 적힌/기재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면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날부터 ★★일 이내에 ★★장관/시·도지사에게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받은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면 ~부령에 따라 재발급받을 수 있다.

1 소개

2 용어

3 문장

4 작성례

5 어문규정

과징금

제○조(과징금처분) ① **★★장관**은/시·도지사는 <**★★사업자**> 제○조제○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영업정지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로서 **사업정지/영업정지**를 하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을 갈음하여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장관**은/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항과 제○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령으로 정한다.

제○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① **★★장관**은/시·도지사는 제○조에 따라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1.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경우
- 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②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분할납부와 담보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행강제금

제○조(이행강제금) ① **★★장관**은/시·도지사는 제○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장관**은/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불복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장관**은/시·도지사는 최초의 시정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그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 **★★장관**은/시·도지사는 최초의 시정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그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는 ○회를 초과할 수 없다./**이행강제금**은 ○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할 수 없다.

⑥ **★★장관**은/시·도지사는 제○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⑦ **★★장관**은/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수료

제○조(허가 등의 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조(허가 등의 수수료) 제○조제○항에 따른 허가를/허가 또는 ★★를 받으려는 자는 ~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특수법인

제○조(사업) 공사는/공단은 <제○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각 호 생략)

제○조(임원) ① 공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 공단에 이사장 1명과 상임이사 ○명을 포함하여 ○명 이내의 이사를 두고,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과 감사는 ★★장관이 임명한다.

◎ 이사장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이사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조(대리인의 선임 등) 법인의 대표는 직원 중에서 법인의 소송업무를 담당할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선임된 대리인인 직원은 법인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및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제◇조(대리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지정한 공단의 직원은 이사장을 갈음하여 공단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보고·검사

제○조(★★업자의 보고) ① ★★장관은/시·도지사는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총리령으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자로 하여금/★★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조(보고·검사 등) ① ★★장관은/시·도지사는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업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자의 사무실, 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려면 검사를 하기 ★★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목적, 검사내용 등의 검사 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검사를 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령으로 정한다.

행정지도

제○조(행정지도 및 개선명령 등) ① **★★장관은/시·도지사는** ~을 위하여 **★★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 **★★장관은/시·도지사는**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을** 하는 자에게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장관은/시·도지사는** 영업시설 등이 제○조제○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업자가** 제○조제○항의 위반행위를 하면/제○조제○항을 위반하면 즉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 등을 고치거나 개선 또는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폐쇄조치

제○조(폐쇄조치) ① **★★장관은/시·도지사는** 제○조제○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제○조제○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에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가 있으면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영업소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
 2.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안내문 등의 게시
 3. 해당 영업소의 시설물이나 그 밖에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 ② **★★장관은/시·도지사는** 제1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에 따라 게시를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인정하는 경우
 2. 해당 영업을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그 영업소를 폐쇄할 것을 약속하거나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 ③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영업소를 폐쇄하려면 미리 그 사실을 해당 영업자나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제1항에 따라 영업소를 폐쇄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공표

제○조(☆☆의 공표) ① **★★장관은/시·도지사는** ○○한 경우 대통령령/~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을 공표할 수 있다./공표하여야 한다.

청문

제○조(청문) **★★장관은/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할 때에는 미리/할 때에는 사전에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조에 따른 허가취소
2. 제○조에 따른 등록취소

제◇조(청문) 제○조에 따라 ★★의 허가를 취소하려면/취소할 때에는 미리/취소할 때에는 사전에 청문을 하여야 한다.

준용

제○조(준용규정) ☆☆☆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에 관하여는 「~법」 중 ★★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위임·위탁

제○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호의 위탁 관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각 호 내용 생략)

제◇조(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기관이나 ~단체/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조부터 제○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벌칙

제○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併科)할 수 있다.>

1. 제○조제○항을 위반하여 ~를 한 자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조제○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제○조(양벌 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조부터 제○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제○조, 제○조 또는 제○조의 위반행위를 하면/제○조 또는 제○조의 위반행위를 하면/제○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조(양벌 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조부터 제○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1 소개

2 용어

3 문장

4 작성례

5 어문규정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제△조의 위반 행위를 하면 그 법인 또는 개인을 ★★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조제○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거짓 신고를 한 자
 3. 제○조제○항에 따른 ★★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4. 제○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
 5. 제○조를 위반하여 ★★장관/시·도지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조에 따른 ★★장관/시·도지사의 명령·검사·요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조(유효기간) 제○조의 개정규정은 ○○○○년 ○월 ○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조(다른 법률의 폐지) 「~법」은 폐지한다.

제○조(다른 법률의 폐지) 법률 제○호 ~법은 폐지한다.

제○조(◆◆에 관한 적용례) 제○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조(★★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의 규정에 따라 ★★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조(★★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년 까지는/★★개월까지는 제○조에도 불구하고 ★★업을 할 수 있다.

제○조(★★관청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관이 한 허가는 이 법에 따라 ★★장관이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관에게 한 허가 신청에 관하여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조(종전의 「~법」에 따른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법」에 따라 한 고시, 행정처분, 행정기관의 그 밖의 행위, 각종 신청·신고나 행정기관에 대한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조(★★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업자 등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까지는 제○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조(★★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와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위원회와 ♥♥위원회로 본다.

제○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6항 중 “제24조제3항”을 “제24조제2항”으로 한다.

② ~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24조제4항”을 “제24조제3항”으로 한다.

③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중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한다.

제○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1 소개

2 용어

3 문장

4 작성례

5 어문규정

2 대통령령 작성례

- 기본 조
- ◇ 선택 조 ⊙ 선택 항, 선택 호 / 선택 단어, 구, 절
- <> 생략할 수 있는 부분

• 대통령령 작성례는 현행 시행령과 『법령 입안·심사 기준』의 입법례를 기본으로 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작성한 사례로, 반드시 작성례에 맞춰서 대통령령안을 정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목적

제○조(목적) 이 영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목적) 시민의 삶과 도시환경에 문화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문화중심도시를 효율적으로 조성하고, 민족 문화와 세계문화의 핵심 축으로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를 둔다.

적용범위

제○조(적용 범위) 일반직국가공무원 및 기능직국가공무원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한다.

예비허가

제◇조(예비허가 등) ① 법 제○조제○항에 따라 예비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조제○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예비허가신청서에 제○조제○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장관/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조제○항제○호 및 제○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예비허가를 신청하려면 법 제○조 및 이 영 제○조에 따른 허가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이행계획이 타당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③ 예비허가를 받은 자는 예비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허가의 내용 및 조건을 이행한 후 정식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장관/시·도지사가 예비허가를 할 당시 정식허가 신청기한을 따로 정했거나, 예비허가를 받은 후에 ★★장관/시·도지사(으)로부터 정식 허가 신청기한의 연장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그 기한까지 정식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예비허가신청이나 정식허가신청에 대한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 공고, 허가 심사절차, 그 밖에 허가에 필요한/허가에 관한 사항은 ~부령으로 정한다.

등록기준

제○조(★★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조에 따른 일반★★업 또는 전문★★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

2. ★★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1호에 따른 자본금의 기준 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법 제○조제○항제○호에 규정된 보증(입찰보증은 제외한다)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할 것
(각 목 생략)
3. 일반★★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것

과징금

제○조(과징금 부과기준) ① 법 제○조의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는 별표와 같다.

②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횡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징금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할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부과권자는 법 제○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부과권자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사람에게/과징금을 낸 자에게/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부과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① 법 제○조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과징금을>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그 사유와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청에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해야 한다.

② 법 제○조제○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원을 말한다.

③ 법 제○조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법 제○조에 따라 분할납부를 하게 될 때에는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횡수는 ~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⑤ 행정청은 법 제○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한꺼번에 <과징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하기로 결정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았을 때
2. 담보 변경 명령이나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행정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3. 강제집행이나 경매가 개시된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법인이 해산된 경우, 국제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나머지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독촉

제○조(독촉) ① 납부의무자가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完納)하지 않으면 부과권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부과권자는 독촉장을 발급할 때 납부기한을 독촉장 발급일부터 ~일 이내로 한다.

1 소개

2 용어

3 문장

4 작성례

5 어문규정

연체금

제○조(연체금) ① 공단은 법 제○조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금액의 1천분의 30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의 합계는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분의 90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제○조(연체금 징수의 예외) 법 제○조제○항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
2. 사업장의 폐쇄로 체납한 경우(사업장 가입자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장관이 연체금을 징수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조(연체금의 징수) ① 법 제○조에 따른 연체금은 연체된 기간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현재 전국 은행이 적용하는 대출 연체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납기 초과일수에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휴직 외의 사유로 보수의 전액을 받지 못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임용신고가 지연되어 개인부담금을 내지 못하였을 때에는 연체금을 납부하는 달의 개인부담금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미납된 기간에 대한 개인부담금을 따로 납부함으로써 그 미납된 개인부담금 및 연체금의 납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가산금

제○조(가산금 징수의 예외) 법 제○조제○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
2. 가산금 액수가 공단의 정관에서 정한 금액 이하인 경우
3. 사업장 또는 사립학교의 폐업·폐쇄 또는 폐교로 인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장관이 가산금을 징수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 공유재산

제○조(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법 제○조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무상 사용·수익의 조건 및 절차 등은 그 국유재산·공유재산의 관리청과 재단 간의 계약에 따른다.

② 법 제○조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무상 사용·수익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는 「국유재산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제○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① 법 제○조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 대부, 무상 양여 또는 사용·수익은 그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청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 또는 연구회의 계약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기간은 2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위탁

제○조(용자사업 취급사무의 위탁) ① ★★장관은 제○조 및 제○조에 따른 용자사무를 「은행법」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의 일부를 ★★장관이 지정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조 및 제○조에 따른 용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 및 그에 따른 회계와 재산관리 등 용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
2. 이 회계의 재산의 매각·관리 및 그에 따른 세입·세출에 관한 사무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탁사무의 회계처리

③ ★★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용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급수수료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용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법인의 임직원 중에서 그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 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설비기준

제○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등) ① 법 제○조제○항에 따른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 관리기준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

정보공개청구

제○조(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 법 제○조제○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자
2.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위원회 - 설치

제○조(설치) …에 관하여 ★★장관/도지사/시장의 자문에 조연하게 하기 위하여 ★★장관/도지사/시장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 - 기능

제○조(기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심의·의결한다.

1. 빈부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복지·고용 등 주요정책의 개발·기획 및 조정
2. 빈부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위원회 - 구성

제○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명 이상>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명 이상>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가 되고, 부위원장은 ○○가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외교부차관,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국무차장, 공정거래위원회의 부위원장
2. ...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위원회 - 임기

제○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위촉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한다.

◎ 위원/위촉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 - 신분

제○조(위원의 신분 보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解囑)되지 않는다.

1. 제○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장관이 인정한 경우
3. (이하 다른 사유 추가)

제◇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척사유가 있으면 위원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둔다.]

5. (개별 위원회 특성에 따라 해촉사유 추가 가능)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 - 위원의 결격사유

제○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이하 다른 사유 추가)

위원회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위원회 - 위원장

제○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 - 운영

제○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 소위원회

제○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 - 분과위원회

제○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개 이내의/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의 심의는/의결은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본다.
-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 - 간사

제○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 ② 간사는 ~부 소속 ~급 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
- ③ 간사는 ~부 △△과장이 된다.

위원회 - 위원 수당

제○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그렇지 않다.

위원회 - 운영 세칙

제○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공표

제○조(☆☆의 공표) ① **★★장관은/시·도지사는** 법 제○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시·도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 공표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의 내용
2. 위반행위를 한 자
3. 행정처분의 내용 및 결과

② **★★장관은/시·도지사는** 법 제○조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

과태료 - 부과·징수절차

제○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조○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와 같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그 법령에서 과태료 부과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다른 법령은 그 법령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각 법령에 규정된 부과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다만, 그 법령에 없는 부과절차에 관한 규정은 그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 법령에서 정할 수 있음.

부칙 - 특례

제○조(오염방지 등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 있는 자가 해당 지하수의 오염 방지시설 등에 대하여 제○조에 따른 전문기관으로부터 제○조제○항에 따른 오염방지조치 이상의 조치가 되어 있다고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제○항에 따른 오염방지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

제◇조(하수처리구역의 사업장에 대한 기본부과금의 감경에 관한 특례) ① 하수종말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에게 기본부과금을 부과할 때 별표 1에 따른 1종 및 2종사업장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2000년에는 부과금액의 50퍼센트를, 2001년에는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2002년에는 부과금액의 10퍼센트를 각각 감면하고, 3종 및 4종사업장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2000년에는 부과금액의 70퍼센트를, 2001년에는 부과금액의 50퍼센트를, 2002년에는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각각 감경한다.

② 제1항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기본부과금부터 적용한다.

[※ 제1항은 특례이고, 제2항은 적용례에 해당함]

부칙 - 경과조치

제○조(시험과목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시험의 시험과목에 관하여는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제○조제○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조(기존의 ★★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영에 따른 ★★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되, 1991년 6월 30일까지 이 영에 따른 ★★업의 면허기준에 맞는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조(업종 변경 및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이 영 시행으로 인하여 그 업종이 변경되는 영업자는 이 영에 따라 변경된 업종의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업종이 변경됨에 따라 ~부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시설기준에 맞지 않은/적합하지 않은 영업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는 자는 이 영 시행 이후 1년 6개월 이내에 해당 업종별로 ~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조(영업허가관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시·도지사로부터 ★★업허가나 ★★업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해당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 직제

제○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민방위·재난관리 집행기능이 ★★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부 소속 공무원 정원 중 310명(1급 1명, 2·3급 1명, 3·4급 1명, 4급 4명, 4·5급 7명, 5급 31명, 6급 34명, 7급 14명, 연구관 10명, 연구사 4명, 소방총감 또는 소방정감 1명, 소방정감 1명, 소방감 4명, 소방정 13명, 소방령 15명, 소방경 29명, 소방위 34명, 소방장 27명, 소방교 34명, 소방사 8명, 기능7급 3명, 기능8급 3명, 기능9급 2명, 기능10급 19명, 4급상당 1명, 5급상당 4명, 6급상당 3명, 7급상당 2명)을 ★★부에서 이체받는다.

부칙 - 서식 경과조치

제○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조에 따른 개인별 주민등록표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서식은 부칙 제○조제○호에 따라 폐기될 때까지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② 제○항에 따른 서식을 제외한 서식 중 그 서식을 사용하려면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전산프로그램의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부칙 - 경과조치

제○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투모는 1987년 12월 31일까지, 일반외투(육군장병 공용) 및 여군 일반외투(육군장병 공용)는 1989년 12월 31일까지 착용할 수 있다.

부칙 - 벌칙 경과조치

제○조(벌칙 적용 시의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 과태료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0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조제○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조제○항 및 제○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열람을 거부 또는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법 제○조 제○항제○호	000	000	000
나. 법 제○조제○항을 위반하여 법 제○조제○항에 따른 환경책임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업자와의 계약 체결을 거부한 경우	법 제○조 제○항제○호	000	000	000

별표 - 인가·허가·등록 기준

[별표 ○]

★★업의 등록기준(제○조 관련)

업종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의 평가액)		시설·장비·사무실
★★공사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6명 이상	법인	7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14억원 이상	
★★공사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	법인	5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10억원 이상	

3 부령 작성례

- 기본 조
- ◇ 선택 조 ◎ 선택 항, 선택 호 / 선택 단어, 구, 절
- <> 생략할 수 있는 부분

- 부령 작성례는 현행 부령과 『법령 입안·심사 기준』의 입법례를 기본으로 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작성한 사례로, 반드시 작성례에 맞춰서 부령안을 정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목적

제○조(목적) 이 규칙은 「~법」 및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어선과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에/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정부 소유 또는 공공단체 소유의 선박
2. 원양어업에 사용되는 어선
3. 여객선
4. 국외에 취항하는 선박

허가 신청

제○조(영업허가의 신청) ① 법 제○조제○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영업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조에 따른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1. 제조할/제조하려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제조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영 제○조제○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营业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조제○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교육확인서(법 제○조제○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4. 유선 또는 도선사업면허증 또는 신고확인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조제○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소방시설등완비증명서(영 제○조제○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营业을 하려는

1 소개

2 용어

3 문장

4 작성례

5 어문규정

경우만 해당한다)

- ② 허가관청은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법 제○조제○항제○호 또는 제○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의 신원 확인에 필요한 자료
 2. 도시계획 및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
- ③ 허가관청이 영업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영업허가증을 발급하고 영업허가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거나 그 영업허가관리대장 서식에 따른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영 제○조제○호 및 제○호가목의 영업의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영업허가증과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영업허가관리대장
 2. 영 제○조제○호다목 및 라목의 영업의 경우: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영업허가증과 별지 제14호의4서식의 영업허가관리대장
- ④ 영업자는 허가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쓸 수 없게 되어 <허가증>을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19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1. 허가증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 사유서
 2. 허가증이 헐어서 쓸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허가증

시설기준

제○조(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처분기준 - 정지, 취소

- 제○조(처분의 기준) ① 이 규칙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 ② 동일한 대행자·사업자 또는 기술종사원이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1. 위반행위에 대한 가장 무거운 처분의 기준이 등록 등의 취소 또는 해임명령일 때에는 등록 등의 취소 또는 해임명령을 한다.
 2. 위반행위에 대한 가장 무거운 처분의 기준이 사업등의 정지일 때에는 사업등의 정지를 하되, 둘 이상의 사업등의 정지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기간을 합산한다.

등록신청

- 제○조(★★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①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조제○항에 따른 ★★업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② 제1항에 따른 ★★업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2호의2의 서류는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에 따른 ★★업의 등록기준에서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보유하게 하는 업종인 경우에만 첨부하며, 제3호의 서류는 영 별표 2에 따른 ★★업의 등록기준에서 시설·장비를 보유하게 하는 업종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1.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2. 영 제○조제○항제○호에 따른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3. 영 별표 2의 시설·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영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만 해당한다)
 - 나. 영 별표 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적은/기재한 서류(공장등록원부 등본은 제외한다)

다. 영 별표 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종류·성능 및 수량을 말한다)을 적은/기재한 서류.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을 제외한 다른 법령을 적용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등록원부 등본을 포함한다.

4.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5. 일반★★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조제○항제○호 각 목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등록증 사본 등을 말한다)
6.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법 제○조제○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이 확인한 확인서
 - ③ 제2항 각 호의 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않은 것으로서 제출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 ④ 법 제○조제○항에 따라 건설업등록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않을 때에는 해당 서류(제4호의 건설기계등록원부의 경우에는 그 등본을 말하며, 제5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를 첨부하게/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영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영 별표 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시설인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부 등본
 4. 영 별표 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에 「건설기계관리법」을 적용받는 장비가 포함된 경우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
 5. 외국인이 ★★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 제○조제○항제○호 및 제○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6. 외국법인이 ★★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 제○조제○항제○호 및 제○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영업소 법인등기사항증명서
 7. 영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공장등록원부 등본

신고

제○조(★★업의 신고) ① 법 제○조제○항에 따라 ★★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2조에 따른 ★★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을 함으로써/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2. 교육확인서(법 제○조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3. 면허증 원본(이용업·미용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영업신고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신고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은 자가 영업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쓸 수 없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영업신고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신고증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 사유서
 2. 신고증이 헐어서 쓸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신고증

1 소개

2 용어

3 문장

4 작성례

5 어문규정

시설·설비기준

제○조(시설 및 설비기준)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조제○항에 따른 ★★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과징금

제○조(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영 제○조제○항 및 제○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 및 영수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연체금

제○조(연체금 징수의 예외) 영 제○조제○항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
2. 사업장의 폐쇄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사업장가입자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장관이 연체금을 징수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산금

제○조(가산금 징수의 예외) 법 제○조제○항에서 “~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
2. 가산금 액수가/가산금이 공단의 정관에서 정한 금액 이하인 경우
3. 사업장 또는 사립학교의 폐업·폐쇄 또는 폐교로 인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장관이 가산금을 징수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제○조(설치) …에 관하여 ★★장관/도지사/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장관/도지사/시장 소속으로 ~ 위원회를 둔다.

부칙 - 행정처분기준 경과조치

제○조(행정처분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별표 13 ★★업자 및 ★★업자의 준수사항 제9호를 1차 위반하거나 제32호를 1차 또는 2차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1차 위반한 것으로 보며, 제9호를 2차 위반하거나, 제32호를 3차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제◇조(종전의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수산 관계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조(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진행되고 있는 자에 대한 행정처분 중 이 규칙에 따라 그 기준이 강화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 서식 경과조치

제○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난은 수정하여 사용하고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않는다.

제◇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따라 사용하던 서식은 20XX년 7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 제복 경과조치

제○조(제복의 착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제복은 이 규칙에 따른 제복이 지급될 때까지 착용할 수 있다.

부칙 - 면허증 경과조치

제○조(운전면허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급된 운전면허증은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보며, 운전면허증 기재사항 중 “유효기간”은 “적성검사기간”으로 본다.

부칙 - 각종 경과조치

제◇조(안전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설치된 안전표지는 이 규칙에 따른 안전표지로 교체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별표 - 처분기준 중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그 위반행위가 등록취소에 해당하면 등록취소를 하고, 위반행위가 모두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에 해당하면 가장 무거운 처분(처분기준이 같을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나머지 각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업무정지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한 기간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별표 - 시설기준 중

[별표 ○]

업종별 시설기준(제○조 관련)

1. ★★업의 시설기준

- 가.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다)의 위치 등
- 1) 건물은 축산폐수, 화학물질, 그 밖의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이 나쁜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떨어진 거리에 위치해야 한다.
 - 2) 건물의 구조는 제조하려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건물 안의 온도가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한다.
 - 3)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별표 - 시설·설비기준 중

[별표 ○]

★★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제○조 관련)

1. ★★업

- 가. 탈의실, 욕실, 욕조 및 샤워기를 설치해야 한다.
- 나. 발한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실내가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 다. 탈의실, 욕실 및 휴식실(설치하는 경우만 해당된다)은 그 설치 여부 또는 구조를 쉽게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공간을 나누어서는 안 된다.
- 라. 욕조의 물을 순환하여 여과시키는 경우에는 자동유입기로 하는 염소소독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1 소개

2 용어

3 문장

4 작성례

5 어문규정

제5장

어문 규정

1. 한글 맞춤법
2. 외래어 표기법

알기 쉽고 반듯한 법령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법률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1. 이 규정집은 그동안 정부가 고시한 어문 규정(이하 “고시본”이라 부른다)을 한데 묶은 것으로, 국민의 어문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것이다.

2. 이 규정집에 수록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한글 맞춤법’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7-12호(2017년 3월 28일)

나. ‘표준어 규정’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7-13호(2017년 3월 28일)

다. ‘외래어 표기법’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7-14호(2017년 3월 28일)

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4-42호(2014년 12월 5일)

* 국립국어원 누리집 참조

3. 각각의 규정들이 전체적으로 체재를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고시본에서 보인 설명 방식과 용어 등을 다음과 같이 통일하였다.

가. 띄어쓰기는 현행 규정에 따랐다. 띄어쓰기에 원칙 규정과 허용 규정이 있을 경우, 될 수 있으면 원칙 쪽을 따르되, 편(編)·부(部)·장(章)·절(節)·항(項)이 아라비아 숫자와 결합하여 쓰이는 경우 등에는 편의상 허용 쪽을 따랐다.

예: 제1편, 제2부, 제5장, 제3절, 제6항.

(원칙: 제1 편, 제2 부, 제5 장, 제3 절, 제6 항)

나. 문장 부호의 이름과 용법도 현행 규정에 따랐다.

예: 짧은 줄표(-) → 붙임표

다. 규정문에 따른 용례임을 나타내는 ‘보기’ 표시를 삭제하였다.

예: 보기 stamp[stæmp] 스탬프 → stamp[stæmp] 스탬프

4.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주에서 처리하였다.

예: 쏘-살-같이²⁾

5. 여기에서 사용된 부호는 다음과 같다.

- ← 원말 앞에 씬.
- ~ 어떤 말의 앞이나 뒤에 들어갈 말 대신 씬.
- 복합어의 결합 단위 사이에 씬.
접사나 어미임을 나타낼 때 씬.
- / 앞의 말과 뒤의 말이 복수 표준어임을 나타낼 때 씬.

“ 이 책에는 어문 규정 중에서 법령을 작성할 때 주로 참고하는 ‘한글 맞춤법’과 ‘외래어 표기법’만 수록합니다. ‘표준어 규정’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국립국어원 누리집(www.korean.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 한글 맞춤법

제1장 총칙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제3항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는다.

제2장 자모

제4항 한글 자모의 수는 스물네 자로 하고, 그 순서와 이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ㄱ(기역)	ㄴ(니은)	ㄷ(디귤)	ㄹ(리을)	ㅁ(미음)	ㅂ(비읍)
ㅅ(시옷)	ㅇ(이응)	ㅈ(지읒)	ㅊ(치읓)	ㅋ(키읔)	ㅌ(티읕)
ㅍ(피읍)	ㅎ(히읇)				
ㅏ(아)	ㅑ(야)	ㅓ(어)	ㅕ(여)	ㅗ(오)	ㅛ(요)
ㅜ(우)	ㅠ(유)	ㅡ(으)	ㅣ(이)		

[붙임 1] 위의 자모로써 적을 수 없는 소리는 두 개 이상의 자모를 어울려서 적되, 그 순서와 이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ㅃ(쌍기역)	ㅆ(쌍디귤)	ㅄ(쌍비읍)	ㅈㅊ(쌍시읏)	ㅉ(쌍지읒)	
ㅅㅅ(애)	ㅆ(애)	ㅈㅊ(예)	ㅈㅊ(예)	ㅊㅅ(와)	ㅅㅅ(왜)
ㅅㅌ(외)	ㅌㅌ(워)	ㅌㅌ(웨)	ㅌㅌ(위)	ㅌㅌ(의)	

[붙임 2] 사전에 올릴 적의 자모 순서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자음 :	ㄱ	ㅋ	ㄴ	ㄷ	ㅌ
	ㄹ	ㅃ	ㅂ	ㅆ	ㅅ
	ㅈ	ㅆ	ㅊ	ㅉ	ㅊ
모음 :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ㅝ	ㅞ	ㅟ	ㅠ	ㅡ
	ㅢ	ㅣ	ㅤ	ㅥ	ㅦ
	ㅧ	ㅨ	ㅩ	ㅪ	ㅫ
	ㅬ	ㅭ	ㅮ	ㅯ	ㅰ
	ㅱ	ㅲ	ㅳ	ㅴ	ㅵ
	ㅶ	ㅷ	ㅸ	ㅹ	ㅺ
	ㅻ	ㅼ	ㅽ	ㅾ	ㅿ
	ㅿ	ㅿ	ㅿ	ㅿ	ㅿ

제3장 소리에 관한 것

제1절 된소리

제5항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1.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

소쩍새	어깨	오빠	으뜸	아끼다	기쁘다
깨끗하다	어떠하다	해쓱하다	가끔	거꾸로	부씩
어찌	이따금				

2. ‘ㄴ, ㄹ, ㅁ, ㅇ’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

산뜻하다	잔뜩	살짝	훨씬	담뱃	움짤
몽땅	엉뚱하다				

다만,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국수	깎두기	딱지	색시	쌉둑(~쌉둑)	법석
갑자기	몹시				

제2절 구개음화

제6항 ‘ㄷ, ㅌ’ 받침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 ‘-히-’가 올 적에는 그 ‘ㄷ, ㅌ’이 ‘ㅈ, ㅊ’으로 소리 나더라도 ‘ㄷ, ㅌ’으로 적는다.

(○)	(×)	(○)	(×)
말이	마지	할이다	할치다
해돋이	해도지	걸히다	거치다
굳이	구지	달히다	다치다
같이	가치	묻히다	무치다
끝이	끄치		

제3절 ‘ㄷ’ 소리 받침

제7항 ‘ㄷ’ 소리로 나는 받침 중에서 ‘ㄷ’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것은 ‘ㅌ’으로 적는다.

덧저고리	덧자리	엇셈	웃어른	햇웃
무릇	사뭇	얼핏	자칫하면	뭇[衆]
옛	첫	헛		

제4절 모음

제8항 ‘계, 례, 메, 폐, 혜’의 ‘ㅈ’은 ‘ㅊ’으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ㅈ’으로 적는다.

(○)	(×)	(○)	(×)
계수(桂樹)	계수	혜택(惠澤)	혜택
사례(謝禮)	사례	계집	계집
연매(連袂)	연매	핑계	핑계
폐품(廢品)	폐품	계시다	계시다



다만, 다음 말은 본음대로 적는다.

게송(偈頌)	게시판(揭示板)	휴게실(休憩室)
--------	----------	----------

제9항 ‘의’ 나,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ㄴ’은 ‘ㄷ’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ㄴ’로 적는다.

(○)	(×)	(○)	(×)
의의(意義)	의이	닝큼	닝큼
본의(本義)	본이	띄어쓰기	띠어쓰기
무늬[紋]	무니	씩어	씨어
보늬	보니	띄어	티어
오늬	오니	희망(希望)	히망
하늬바람	하니바람	희다	히다
날리리	날리리	유희(遊戲)	유히

제5절 두음 법칙

제10항 한자음 ‘녀, 뇨, 뉴, 니’가 단어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여, 요, 유, 이’로 적는다.

(○)	(×)	(○)	(×)
여자(女子)	녀자	유대(紐帶)	뉴대
연세(年歲)	년세	이토(泥土)	니토
요소(尿素)	뇨소	익명(匿名)	닉명

다만, 다음과 같은 의존 명사에서는 ‘냐, 녀’ 음을 인정한다.

냥(兩)	냥쫘(兩-)	년(年)(몇 년)
------	--------	-----------

[붙임 1]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남녀(男女)	당뇨(糖尿)	결뉴(結紐)	은닉(隱匿)
--------	--------	--------	--------

[붙임 2]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ㄴ’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신여성(新女性)	공염불(空念佛)	남존여비(男尊女卑)
----------	----------	------------

[붙임 3]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 명사를 붙여 쓰는 경우에도 붙임 2에 준하여 적는다.

한국여자대학	대한요소비료회사
--------	----------

제11항 한자음 ‘랴, 려, 례,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다.

(○)	(×)	(○)	(×)
양심(良心)	랑심	용궁(龍宮)	룽궁
역사(歷史)	력사	유행(流行)	류행
예의(禮儀)	례의	이발(理髮)	리발

다만, 다음과 같은 의존 명사는 본음대로 적는다.

리(里) : 몇 리냐?	리(理) : 그럴 리가 없다.
--------------	------------------

[붙임 1]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개량(改良)	선량(善良)	수력(水力)	협력(協力)	사례(謝禮)	혼례(婚禮)
와룡(臥龍)	쌍룡(雙龍)	하류(下流)	급류(急流)	도리(道理)	진리(真理)

다만,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열, 룰’은 ‘열, 울’로 적는다.

(○)	(×)	(○)	(×)
나열(羅列)	나렬	분열(分裂)	분렬
치열(齒列)	치렬	선열(先烈)	선렬
비열(卑劣)	비렬	진열(陳列)	진렬
규율(規律)	규룰	선율(旋律)	선룰
비율(比率)	비룰	전율(戰慄)	전룰
실패율(失敗率)	실패룰	백분율(百分率)	백분룰

[붙임 2] 외자로 된 이름을 성에 붙여 쓸 경우에도 본음대로 적을 수 있다.

신립(申屹)	최린(崔麟)	채륜(蔡倫)	하륜(河崙)
--------	--------	--------	--------

[붙임 3] 준말에서 본음으로 소리 나는 것은 본음대로 적는다.

국련(국제 연합)	한시련(한국 시각 장애인 연합회)
-----------	--------------------

[붙임 4]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ㄴ’ 또는 ‘ㄹ’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역이용(逆利用)	연이율(年利率)	열역학(熱力學)	해외여행(海外旅行)
----------	----------	----------	------------

[붙임 5]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 명사를 붙여 쓰는 경우나 십진법에 따라 쓰는 수(數)도 붙임 4에 준하여 적는다.

서울여관	신흥이발관	육천육백육십육(六千六百六十六)
------	-------	------------------

제12항 한자음 ‘라, 래, 로, 뢰, 루, 르’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나, 내, 노, 뇌, 누, 느’로 적는다.

(○)	(×)	(○)	(×)
낙원(樂園)	락원	뇌성(雷聲)	뢰성
내일(來日)	래일	누각(樓閣)	루각
노인(老人)	로인	능묘(陵墓)	릉묘

[붙임 1]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쾌락(快樂)	극락(極樂)	거래(去來)	왕래(往來)	부로(父老)	연로(年老)
지뢰(地雷)	낙뢰(落雷)	고루(高樓)	광한루(廣寒樓)	동구릉(東九陵)	가정란(家庭欄)



[붙임 2]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단어는 뒷말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내내월(來來月)	상노인(上老人)	중노동(重勞動)	비논리적(非論理的)
----------	----------	----------	------------

제6절 겹쳐 나는 소리

제13항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

(○)	(×)	(○)	(×)
딱딱	딱닥	꽃꽃하다	꽃곳하다
쌩쌩	쌩색	놀놀하다	놀롤하다
씩씩	씩식	눅눅하다	눅눅하다
똑똑똑딱	똑닥똑닥	밋밋하다	민밋하다
쓱쓱쓱	쓱삭쓱삭	쌩쌩하다	쌩삭하다
연연불망(戀戀不忘)	연련불망	쌉쌉하다	쌉살하다
유유상종(類類相從)	유류상종	쓱쓱하다	쓱슬하다
누누이(屢屢-)	누루이	짹짹하다	짹잘하다

제4장 형태에 관한 것

제1절 체언과 조사

제14항 체언은 조사와 구별하여 적는다.

떡이	떡을	떡에	떡도	떡만
손이	손을	손에	손도	손만
팔이	팔을	팔에	팔도	팔만
밤이	밤을	밤에	밤도	밤만
집이	집을	집에	집도	집만
옷이	옷을	옷에	옷도	옷만
콩이	콩을	콩에	콩도	콩만
낮이	낮을	낮에	낮도	낮만
꽃이	꽃을	꽃에	꽃도	꽃만
발이	발을	발에	발도	발만
앞이	앞을	앞에	앞도	앞만
밖이	밖을	밖에	밖도	밖만
넋이	넋을	넋에	넋도	넋만
흙이	흙을	흙에	흙도	흙만
삶이	삶을	삶에	삶도	삶만
여덟이	여덟을	여덟에	여덟도	여덟만
끓이	끓을	끓에	끓도	끓만
값이	값을	값에	값도	값만

제2절 어간과 어미

제15항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먹다	먹고	먹어	먹으니
신다	신고	신어	신으니
믿다	믿고	믿어	믿으니
올다	올고	올어	(우니)
넘다	넘고	넘어	넘으니
입다	입고	입어	입으니
웃다	웃고	웃어	웃으니
찾다	찾고	찾아	찾으니
쫓다	쫓고	쫓아	쫓으니
같다	같고	같아	같으니
높다	높고	높아	높으니
좋다	좋고	좋아	좋으니
깎다	깎고	깎아	깎으니
앉다	앉고	앉아	앉으니
많다	많고	많아	많으니
늡다	늡고	늡어	늡으니
점다	점고	점어	점으니
넓다	넓고	넓어	넓으니
훤다	훤고	훤어	훤으니
웁다	웁고	웁어	웁으니
웁다	웁고	웁어	웁으니
없다	없고	없어	없으니
있다	있고	있어	있으니

[붙임 1]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될 적에,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고, 그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1)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

넘어지다	늘어나다	늘어지다	돌아가다	되짚어가다
들어가다	떨어지다	벌어지다	엮어지다	접어들다
틀어지다	흠어지다			

(2) 본뜻에서 멀어진 것

드러나다	사라지다	쓰러지다
------	------	------

[붙임 2] 종결형에서 사용되는 어미 '-오'는 '요'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원형을 밝혀 '오'로 적는다.

(○) 이것은 책이오. 이리로 오시오. 이것은 책이 아니오.	(×) 이것은 책이요. 이리로 오시오. 이것은 책이 아니요.
--	--



[붙임 3] 연결형에서 사용되는 ‘이요’는 ‘이요’로 적는다.

(○) 이것은 책이요, 저것은 붓이요, 또 저것은 먹이다.	(×) 이것은 책이요, 저것은 붓이요, 또 저것은 먹이다.
--	--

제16항 어간의 끝음절 모음이 ‘ㅏ, ㅑ’일 때에는 어미를 ‘-아’로 적고, 그 밖의 모음일 때에는 ‘-어’로 적는다.

1. ‘-아’로 적는 경우

나아	나아도	나아서	막아	막아도	막아서
얹아	얹아도	얹아서	돌아	돌아도	돌아서
보아	보아도	보아서			

2. ‘-어’로 적는 경우

개어	개어도	개어서	겪어	겪어도	겪어서
되어	되어도	되어서	베어	베어도	베어서
쉬어	쉬어도	쉬어서	저어	저어도	저어서
주어	주어도	주어서	피어	피어도	피어서
희어	희어도	희어서			

제17항 어미 뒤에 덧붙는 조사 ‘요’는 ‘요’로 적는다.

읽어	읽어요	참으리	참으리요	좋지	좋지요
----	-----	-----	------	----	-----

제18항 다음과 같은 용언들은 어미가 바뀔 경우, 그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 벗어나면 벗어나는 대로 적는다.

1. 어간의 끝 ‘ㄹ’이 줄어들 적

갈다 :	가니	간	갑니다	가시다	가오
놀다 :	노니	논	놀니다	노시다	노오
볼다 :	부니	분	봅니다	부시다	부오
등글다 :	등그니	등근	등글니다	등그시다	등그오
어질다 :	어지니	어진	어칩니다	어지시다	어지오

[붙임] 다음과 같은 말에서도 ‘ㄹ’이 준 대로 적는다.

마지못하다	마지않다	(하)다마다	(하)자마자	(하)지 마라	(하)지 마(아)
-------	------	--------	--------	---------	-----------

2. 어간의 끝 ‘ㅅ’이 줄어들 적

굿다 :	그어	그으니	그었다
낫다 :	나아	나으니	나았다
잇다 :	이어	이으니	이었다
짓다 :	지어	지으니	지었다

3. 어간의 끝 ‘ㅎ’이 줄어질 적

그렇다 :	그러니	그럴	그러면	그러오
까맣다 :	까마니	까말	까마면	까마오
동그랗다 :	동그라니	동그랄	동그라면	동그라오
퍼렇다 :	퍼러니	퍼럴	퍼러면	퍼러오
하얗다 :	하야니	하얗	하야면	하야오

4. 어간의 끝 ‘ㄱ, ㅡ’가 줄어질 적

푸다 :	퍼	폄다	뜨다 :	떠	뒸다
끄다 :	꺼	켰다	크다 :	커	켰다
담그다 :	담가	담갔다	고뜨다 :	고파	고팠다
따르다 :	따라	따랐다	바쁘다 :	바빠	바빴다

5. 어간의 끝 ‘ㄷ’이 ‘ㄹ’로 바뀔 적

걷다[步] :	걸어	걸으니	걸었다
듣다[聽] :	들어	들으니	들었다
묻다[問] :	물어	물으니	물었다
싣다[載] :	실어	실으니	실었다

6. 어간의 끝 ‘ㅂ’이 ‘ㄴ’로 바뀔 적

깎다 :	기워	기우니	기웠다
굽다[炙] :	구워	구우니	구웠다
가깝다 :	가까워	가까우니	가까웠다
괴롭다 :	괴로워	괴로우니	괴로웠다
맵다 :	매워	매우니	매웠다
무겁다 :	무거워	무거우니	무거웠다
밉다 :	미워	미우니	미웠다
쉽다 :	쉬워	쉬우니	쉬웠다

다만, ‘돕-, 곱-’과 같은 단음절 어간에 어미 ‘-아’가 결합되어 ‘와’로 소리 나는 것은 ‘-와’로 적는다.

돕다[助] :	도와	도와서	도와도	도왔다
곱다[麗] :	고와	고와서	고와도	고왔다

7. ‘하다’의 활용에서 어미 ‘-아’가 ‘-여’로 바뀔 적

하다 :	하여	하여서	하여도	하여라	하였다
------	----	-----	-----	-----	-----

8. 어간의 끝음절 ‘ㄹ’ 뒤에 오는 어미 ‘-어’가 ‘-러’로 바뀔 적

이르다[至] :	이르러	이르렀다	노르다 :	노르러	노르렀다
누르다 :	누르러	누르렀다	푸르다 :	푸르러	푸르렀다



9. 어간의 끝음절 ‘르’의 ‘ㄹ’가 줄고, 그 뒤에 오는 어미 ‘-아/-어’가 ‘-라/-러’로 바뀔 적

가르다 :	갈라	갈랐다	부르다 :	불러	불렀다
거르다 :	걸러	걸렸다	오르다 :	올라	올랐다
구르다 :	굴러	굴렀다	이르다 :	일러	일렀다
벼르다 :	벌러	벌렀다	지르다 :	질러	질렀다

제3절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

제19항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1. ‘-이’가 붙어서 명사로 된 것

길이	깊이	높이	다듬이	땀받이	달맞이
먹이	미담이	별이	벼훤이	살림살이	쇠붙이

2.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

걸음	뉘음	민음	얼음	역음	울음
웃음	졸음	죽음	얹		

3. ‘-이’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

같이	굳이	길이	높이	많이	실없이
좋이	짓곳이				

4.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

밝히	익히	작히
----	----	----

다만,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것이라도 그 어간의 뜻과 멀어진 것은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굽도리	다리[鬍]	목거리(목병)	무녀리	코끼리	거름(비료)
고름[膿]	노름(도박)				

[붙임] 어간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1) 명사로 바뀐 것

귀머거리	까마귀	너머	뜨더귀	마감	마개
마중	무덤	비렁뱅이	쓰레기	울가미	주검

(2) 부사로 바뀐 것

거뿔거뿔	너무	도로	뜨덤뜨덤	바투	불긔불긔
비로소	오곳오곳	자주	차마		

(3) 조사로 바뀌어 뜻이 달라진 것

나마	부터	조차
----	----	----

제20항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1. 부사로 된 것

곳곳이	날날이	뭉뭉이	살살이	앞앞이	집집이
-----	-----	-----	-----	-----	-----

2. 명사로 된 것

곰배पाल이	바둑이	삼발이	애꾸눈이	육손이	절뚝발이/절름발이
--------	-----	-----	------	-----	-----------

[붙임]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꼬락서니	꼬트머리	모가치	바가지	바깥	사타구니
싸라기	이파리	지붕	지푸라기	짜개	

제21항 명사나 혹은 용언의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나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1. 명사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것

값지다	홀지다	넋두리	빛깔	옆댕이	임사귀
-----	-----	-----	----	-----	-----

2.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것

낙시	늑정이	뎡개	뜯게질	값작값작하다	값작거리다
뜯적거리다	뜯적뜯적하다	굶다랄다	굶직하다	깊숙하다	넓적하다
높다랄다	늑수그레하다	엷죽엷죽하다			

다만, 다음과 같은 말은 소리대로 적는다.

(1) 겹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아니하는 것

할짝거리다	널따랄다	널찍하다	말끔하다	말숙하다	말짱하다
실쭉하다	실큼하다	알따랄다	알팍하다	짤따랄다	짤막하다
실컷					



(2) 어원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본뜻에서 멀어진 것

넙치	올무	골막하다	납작하다
----	----	------	------

제22항 용언의 어간에 다음과 같은 접미사들이 붙어서 이루어진 말들은 그 어간을 밝히어 적는다.

1. '-기-, -리-, -이-, -히-, -구-, -우-, -추-, -으키-, -이키-, -애-'가 붙는 것

말기다	웁기다	웃기다	쫓기다	똥리다	올리다
낙이다	쌍이다	핥이다	굳히다	굽히다	넙히다
앉히다	엷히다	잡히다	돋구다	숫구다	돋우다
갖추다	곧추다	맞추다	일으키다	돌이키다	없애다

다만, '-이-, -히-, -우-'가 붙어서 된 말이라도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

도리다(칼로 ~)	드리다(용돈을 ~)	고치다
바치다(세금을 ~)	부치다(편지를 ~)	거두다
미루다	이루다	

2. '-치-, -뜨리-, -트리-'가 붙는 것

놓치다	덤치다	떠받치다	받치다	발치다	부딪치다
뺏치다	엮치다	부딪뜨리다/부딪트리다		쏟뜨리다/쏟트리다	
젓뜨리다/젓트리다		찢뜨리다/찢트리다		흠뜨리다/흠트리다	

[붙임] '-업-, -읍-, -브-'가 붙어서 된 말은 소리대로 적는다.

미덥다	우습다	미쁘다
-----	-----	-----

제23항 '-하다'나 '-거리다'가 붙는 어근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	(×)	(○)	(×)
갈쭉이	갈쭉기	살살이	살사리
꿀꿀이	꿀꾸리	쌩쌩이	쌩쌩기
눈깜짝이	눈깜짜기	오뚝이	오뚜기
더떨이	더퍼리	코납작이	코납자기
배불뚝이	배불뚜기	푸석이	푸서기
베죽이	베주기	흠쭉이	흠쭉기

[붙임]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없는 어근에 '-이'나 또는 다른 모음으로 시작되는 접미사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개구리	귀뚜라미	기러기	깍두기	괭과리	날라리
누더기	동그라미	두드러기	딱따구리	매미	부스러기
베꾸기	얼루기	칼썩두기			

제24항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시동말 어근에 ‘-이다’가 붙어서 된 용언은 그 어근을 밝히어 적는다.

(○)	(×)	(○)	(×)
깜짝이다	깜짜기다	속삭이다	속사기다
꾸벅이다	꾸버기다	속덕이다	속더기다
끄덕이다	끄더기다	울먹이다	울머기다
뒤척이다	뒤쳐기다	움직이다	움지기다
들먹이다	들머기다	지껄이다	지꺼리다
망설이다	망서리다	퍼덕이다	퍼더기다
번득이다	번드기다	허덕이다	허더기다
번쩍이다	번쩌기다	헐떡이다	헐떠기다

제25항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거나, 부사에 ‘-이’가 붙어서 뜻을 더하는 경우에는 그 어근이나 부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1.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는 경우

급히	꾸준히	도저히	딱히	어렴풋이	깨끗이
----	-----	-----	----	------	-----

[붙임] ‘-하다’가 붙지 않는 경우에는 소리대로 적는다.

갑자기	반드시(꼭)	슬며시
-----	--------	-----

2. 부사에 ‘-이’가 붙어서 역시 부사가 되는 경우

곰곰이	더욱이	생긋이	오뎅이	일찍이	해죽이
-----	-----	-----	-----	-----	-----

제26항 ‘-하다’나 ‘-없다’가 붙어서 된 용언은 그 ‘-하다’나 ‘-없다’를 밝히어 적는다.

1. ‘-하다’가 붙어서 용언이 된 것

딱하다	술하다	착하다	텃텃하다	폭하다
-----	-----	-----	------	-----

2. ‘-없다’가 붙어서 용언이 된 것

부질없다	상없다	시름없다	열없다	하염없다
------	-----	------	-----	------

제4절 합성어 및 접두사가 붙은 말

제27항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거나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각각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국말이	꾸꿍이	꽃잎	끝장	물난리	밑천
부역일	싫증	웃안	웃웃	젓몸살	첫아들
칼날	팔알	헛웃음	홀아비	홀몸	흄내
값없다	겉늬다	꿍주리다	낮잡다	맛먹다	반내다
반놓다	빛나가다	빛나다	새파랗다	셋노랗다	시꺼멓다
싹누르다	엇나가다	엮누르다	엮든다	옷오르다	짓이기다
헛되다					

[붙임 1] 어원은 분명하나 소리만 특이하게 변한 것은 변한 대로 적는다.

할아버지	할아범
------	-----

[붙임 2] 어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골병	골탕	골탕	며칠	아재비	오라비
업신여기다	부리나케				

[붙임 3] ‘이[齒, 虱]’가 합성어나 이에 준하는 말에서 ‘니’ 또는 ‘리’로 소리 날 때에는 ‘니’로 적는다.

간니	덧니	사랑니	송곳니	앞니	어금니
윗니	젓니	톱니	틀니	가랑니	머릿니

제28항 끝소리가 ‘ㄹ’인 말과 딱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 나는 대로 적는다.

다달이(달-달-이)	따님(딸-님)	마되(말-되)
마소(말-소)	무자위(물-자위)	바느질(바늘-질)
부삽(불-삽)	부손(불-손)	싸전(쌀-전)
여달이(열-달이)	우짚다(울-짚다)	화살(활-살)

제29항 끝소리가 ‘ㄹ’인 말과 딱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ㄷ’ 소리로 나는 것은 ‘ㄷ’으로 적는다.

반짚고리(바느질~)	사흘날(사흘~)	삼짇날(삼짇~)
선달(설~)	손가락(술~)	이튿날(이튿~)
잔주름(잘~)	풀소(풀~)	선부르다(설~)
잔다듬대(잘~)	잔다랗대(잘~)	

제30항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

1.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고랫재	긋밥	나룻배	나뭇가지	넋가	뎡가지
뒷갈망	맷돌	머릿기름	모깃불	못자리	바닷가
뱃길	벧가리	부싷돌	선짓국	씻조각	아랫집
우렁잇속	잇자국	챗더미	조갯살	찢집	챗바퀴
킷값	핏대	햇별	햇바늘		

(2)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멧나물	아랫니	텃마당	아랫마을	뒷머리	잇몸
깻묵	넛물	빻물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도리깻열	뒷웃	두렛일	뒷일	뒷입맛	베깻잎
웃잎	깻잎	나뭇잎	뎡잎		

2.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긋병	머릿방	뱃병	붓독	사자밥
셋강	아랫방	자릿세	전셋집	찢잔
찢종	춧국	긋병	뎡줄	뎡세
핏기	햇수	훗가루	훗배	

(2)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깻날	제삿날	훗날	뎡마루	양칫물
----	-----	----	-----	-----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가윗일	사삿일	예삿일	훗일
-----	-----	-----	----

3. 두 음절로 된 다음 한자어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차간(車間)	뎡간(退間)	훗수(回数)
--------	--------	--------	--------	--------	--------

제31항 두 말이 어울릴 적에 ‘ㅂ’ 소리나 ‘ㅎ’ 소리가 덧나는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

1. ‘ㅂ’ 소리가 덧나는 것

뎡싸리(대ㅂ싸리)	멧쌀(메ㅂ쌀)	뎡씨(벼ㅂ씨)	입때(이ㅂ때)	입쌀(이ㅂ쌀)
쩍때(저ㅂ때)	좁쌀(조ㅂ쌀)	햅쌀(해ㅂ쌀)		



2. ‘ㅎ’ 소리가 덧나는 것

머리카락(머리ㅎ가락)	살코기(살ㅎ고기)	수캐(수ㅎ개)
수컷(수ㅎ컷)	수탉(수ㅎ닭)	안팍(안ㅎ밖)
	암캐(암ㅎ개)	암컷(암ㅎ컷)
		암탉(암ㅎ닭)

제5절 준말

제32항 단어의 끝모음이 줄어지고 자음만 남은 것은 그 앞의 음절에 받침으로 적는다.

(본말)	(준말)
기러기야	기력야
어제그저께	엇그저께
어제저녁	엇저녁
가지고, 가지지	갖고, 갖지
디디고, 디디지	딛고, 딛지

제33항 체언과 조사가 어울려 줄어지는 경우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그것은	그건
그것이	그게
그것으로	그걸로
나는	난
나를	날
너는	넌
너를	널
무엇을	뭇을/무얼/뭇
무엇이	뭇이/무에

제34항 모음 ‘ㅏ, ㅑ’로 끝난 어간에 ‘-아/-어, -았-/-었-’이 어울릴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본말)	(준말)
가아	가	가았다	갔다
나아	나	나았다	났다
타아	타	타았다	탸다
서어	서	서었다	섰다
켜어	켜	켜었다	켰다
펴어	펴	펴었다	폈다

[붙임 1] ‘ㅐ, ㅑ’ 뒤에 ‘-어, -었-’이 어울려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본말)	(준말)
개어	개	개었다	갸다
내어	내	내었다	노다
베어	베	베었다	뵸다
세어	세	세었다	쌌다

[붙임 2] '하어'가 한 음절로 줄어서 '해'로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본말)	(준말)
하어	해	하였다	했다
더하어	더해	더하였다	더했다
흔하어	흔해	흔하였다	흔했다

제35항 모음 'ㅁ, ㅂ'로 끝난 어간에 '-아/-어, -았-/~었-'이 어울려 'ㅍ/ㅂ, ㅅ/ㅆ'으로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본말)	(준말)
꼬아	꽂	꼬았다	꽂다
보아	봱	보았다	봱다
쏘아	쌌	쏘았다	쌌다
두어	뒤	두었다	뒤다
쑤어	쑤	쑤었다	쑤다
주어	쑤	주었다	쑤다

[붙임 1] '놀아'가 '뉵'로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붙임 2] '괴' 뒤에 '-어, -었-'이 어울려 '괘, ㅅ'으로 될 적에도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본말)	(준말)
괴어	괘	괴었다	괘다
되어	뉵	되었다	뉵다
뵤어	뵤	뵤었다	뵤다
쇠어	쇄	쇠었다	쇄다
씩어	씩	씩었다	씩다

제36항 'ㅣ' 뒤에 '-어'가 와서 'ㅊ'로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본말)	(준말)
가지어	가져	가지었다	가졌다
견디어	견뎌	견디었다	견뎠다
다니어	다녌	다니었다	다녠다
막히어	막혀	막히었다	막혔다
버티어	버텨	버티었다	버텠다
치어	치여	치이었다	치였다

제37항 'ㅏ, ㅑ, ㅓ, ㅕ, ㅗ'로 끝난 어간에 '-이-'가 와서 각각 'ㅞ, ㅟ, ㅛ, ㅜ, ㅠ'로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본말)	(준말)
싸이다	쌌다	누이다	뉵다
펼이다	펼다	뜨이다	띄다
보이다	봱다	쓰이다	쑤다



제38항 ‘ㅏ, ㅑ, ㅓ, ㅕ’ 뒤에 ‘-이어’가 어울려 줄어질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본말)	(준말)
싸이어	싸어 싸여	뜨이어	띄어
보이어	뵤어 보여	쓰이어	씩어 쓰여
쏘이어	씩어 쓰여	트이어	띄어 트여
누이어	누어 누여		

제39항 어미 ‘-지’ 뒤에 ‘않-’이 어울려 ‘-잖-’이 될 적과 ‘-하지’ 뒤에 ‘않-’이 어울려 ‘-찮-’이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본말)	(준말)
그렇지 않은	그렇잖은	만만하지 않다	만만찮다
적지 않은	적잖은	변변하지 않다	변변찮다

제40항 어간의 끝음절 ‘하’의 ‘ㅏ’가 줄고 ‘ㅎ’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어울려 거센소리로 될 적에는 거센소리로 적는다.

(본말)	(준말)	(본말)	(준말)
간편하게	간편케	다정하다	다정타
연구하도록	연구토록	정결하다	정결타
가하다	가타	흔하다	흔타

[붙임 1] ‘ㅎ’이 어간의 끝소리로 굳어진 것은 받침으로 적는다.

않다	않고	않지	않든지
그렇다	그렇고	그렇지	그렇든지
아무렇다	아무렇고	아무렇지	아무렇든지
어떻다	어떻고	어떻지	어떻든지
이렇다	이렇고	이렇지	이렇든지
저렇다	저렇고	저렇지	저렇든지

[붙임 2] 어간의 끝음절 ‘하’가 아주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본말)	(준말)
거북하지	거북지	넉넉하지 않다	넉넉지 않다
생각하건대	생각건대	못하지 않다	못지 않다
생각하다 못해	생각다 못해	섭섭하지 않다	섭섭지 않다
깨끗하지 않다	깨끗지 않다	익숙하지 않다	익숙지 않다

[붙임 3] 다음과 같은 부사는 소리대로 적는다.

결단코	결코	기필코	무심코	아무튼	요컨대
정녕코	필연코	하마터면	하여튼	한사코	

제5장 띄어쓰기

제1절 조사

제41항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꽃이	꽃마저	꽃밖에	꽃에서부터	꽃으로만	꽃이나마
꽃이다	꽃입니다	꽃처럼	어디까지나	거기도	멀리는
웃고만					

제2절 의존 명사,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및 열거하는 말 등

제42항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아는 것이 힘이다.	나도 할 수 있다.	먹을 만큼 먹어라.
아는 이를 만났다.	네가 뜻한 바를 알겠다.	그가 떠난 지가 오래다.

제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한 개	차 한 대	금 서 돈	소 한 마리	옷 한 벌	열 살
조기 한 손	연필 한 자루	버선 한 죽	집 한 채	신 두 켤레	북어 한 개

다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두시 삼십분 오초	제일과	삼학년	육층	1446년 10월 9일
2대대	16동 502호	제1실습실	80원	10개
				7미터

제44항 수를 적을 적에는 ‘만(萬)’ 단위로 띄어 쓴다.

십이억 삼천사백오십육만 칠천팔백구십팔	12억 3456만 7898
----------------------	----------------

제45항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다음의 말들은 띄어 쓴다.

국장 겸 과장	열 내지 스물	청군 대 백군	책상, 결상 등이 있다
이사장 및 이사들	사과, 배, 귤 등등	사과, 배 등속	부산, 광주 등지

제46항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적에는 붙여 쓸 수 있다.

좀더 큰것	이말 저말	한잎 두잎
-------	-------	-------

제3절 보조 용언

제47항 보조 용언은 띄어 쓰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쓰도 허용한다.(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을 허용함.)

ㄱ	ㄴ
불이 꺼져 간다 .	불이 꺼져 간다 .
내 힘으로 막아 낸다 .	내 힘으로 막아 낸다 .
어머니를 도와 드린다 . ⁴³⁾	어머니를 도와 드린다 .
그릇을 깨뜨려 버렸다 .	그릇을 깨뜨려 버렸다 .
비가 올 듯하다 .	비가 올 듯하다 .
그 일은 할 만하다 .	그 일은 할 만하다 .
일이 될 법하다 .	일이 될 법하다 .
비가 올 성싶다 .	비가 올 성싶다 .
잘 아는 척한다 .	잘 아는 척한다 .

다만,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 용언인 경우,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에는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은 띄어 쓴다.

잘도 놀아만 나는구나!	책을 읽어도 보고…….
네가 덤벼들어 보아라 .	이런 기회는 다시없을 듯하다 .
그가 올 듯도 하다 .	잘난 체를 한다 .

제4절 고유 명사 및 전문 용어

제48항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쓴다.

김양수(金良洙)	서화담(徐花潭)	채영신 씨	최치원 선생
박동식 박사	총무공 이순신 장군		

다만, 성과 이름, 성과 호를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띄어 쓸 수 있다.

남궁역/남궁 역	독고준/독고 준	황보지봉(皇甫芝峰)/황보 지봉
----------	----------	------------------

제49항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쓰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다.
(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을 허용함.)

ㄱ	ㄴ
대한 중학교	대한중학교
한국 대학교 사범 대학	한국대학교 사범대학

제50항 전문 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쓰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다.
(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을 허용함.)

ㄱ	ㄴ
만성 골수성 백혈병	만성골수성백혈병
중거리 탄도 유도탄	중거리탄도유도탄

43) '도와 드리다'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도와드리다'로 붙여서 써야 한다. 이는 '도와주다'를 한 단어로 처리한 것에 맞추어 동일하게 처리하고자 함이다.

제6장 그 밖의 것

제51항 부사의 끝음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만 나가거나 ‘이’나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는다.

1. ‘이’로만 나는 것

가בות이	깨끗이	나בות이	느긋이	등긋이	따뜻이
반듯이	버젓이	산뜻이	의젓이	가까이	고이
날카로이	대수로이	번거로이	많이	적이	헛되이
겉겹이	번번이	일일이	집집이	틈틈이	

2. ‘히’로만 나는 것

극히	급히	딱히	속히	작히	족히
특히	엄격히	정확히			

3. ‘이, 히’로 나는 것

솔직히	가만히	간편히	나른히	무단히	각별히
소홀히	쉴쉴히	정결히	과감히	꼼꼼히	심히
열심히	급급히	답답히	섭섭히	공평히	능히
당당히	분명히	상당히	조용히	간소히	고요히
도저히					

제52항 한자어에서 본음으로도 나고 속음으로도 나는 것은 각각 그 소리에 따라 적는다.

(본음으로 나는 것)	(속음으로 나는 것)
승낙(承諾)	수락(受諾), 쾌락(快諾), 허락(許諾)
만난(萬難)	곤란(困難), 논란(論難)
안녕(安寧)	의령(宜寧), 회령(會寧)
분노(忿怒)	대노(大怒), 희로애락(喜怒哀樂)
토론(討論)	의논(議論)
오륙십(五六十)	오뉴월, 유월(六月)
목재(木材)	모과(木瓜)
십일(十日)	시방정토(十方淨土), 시왕(十王), 시월(十月)
팔일(八日)	초파일(初八日)

제53항 다음과 같은 어미는 예사소리로 적는다.

(○)	(×)	(○)	(×)
-(-)르거나	-(-)르꺼나	-(-)르걸	-(-)르겔
-(-)르게	-(-)르께	-(-)르세	-(-)르쎄
-(-)르세라	-(-)르쎄라	-(-)르수룩	-(-)르쑤룩
-(-)르시	-(-)르씨	-(-)르지	-(-)르찌
-(-)르지니라	-(-)르찌니라	-(-)르지라도	-(-)르찌라도
-(-)르지어다	-(-)르찌어다	-(-)르지언정	-(-)르찌언정
-(-)르진대	-(-)르찐대	-(-)르진저	-(-)르찐저
-올시다	-올씨다		



다만, 의문을 나타내는 다음 어미들은 된소리로 적는다.

-(-)ㄹ까? -(-)ㄹ꼬? -(스)ㄴ니까? -(으)리까? -(으)ㄹ쏘냐?

제54항 다음과 같은 접미사는 된소리로 적는다.

(○) 심부름꾼 익살꾼 일꾼 장꾼 장난꾼 지게꾼 때갈 빛갈 성갈	(×) 심부름군 익살군 일군 장군 장난군 지곶군 땃갈 빛갈 성갈	(○) 귀때기 볼때기 판자때기 뒤꿈치 팔꿈치 이마뼈기 코뼈기 객쩍다 겸연쩍다	(×) 귀대기 볼대기 판잣대기 뒷꿈치 팔꿈치 이맛배기 콧배기 객적다 겸연적다
--	--	---	---

제55항 두 가지로 구별하여 적던 다음 말들은 한 가지로 적는다.

(○) 맞추다(입을 맞춘다. 양복을 맞춘다.) 뺨치다(다리를 뺨친다. 멀리 뺨친다.)	(×) 맞추다 뺨치다
---	-------------------

제56항 ‘-더라, -던’과 ‘-든지’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1. 지난 일을 나타내는 어미는 ‘-더라, -던’으로 적는다.

(○) 지난겨울은 몹시 춥더라. 깊던 물이 얕아졌다. 그렇게 좋던가? 그 사람 말 잘하던데! 얼마나 놀랐던지 몰라.	(×) 지난겨울은 몹시 춥드라. 깊은 물이 얕아졌다. 그렇게 좋든가? 그 사람 말 잘하든데! 얼마나 놀랐든지 몰라.
---	---

2. 물건이나 일의 내용을 가리지 아니하는 뜻을 나타내는 조사와 어미는 ‘(-)든지’로 적는다.

(○) 배든지 사과든지 마음대로 먹어라. 가든지 오든지 마음대로 해라.	(×) 배던지 사과던지 마음대로 먹어라. 가던지 오던지 마음대로 해라.
---	---

제57항 다음 말들은 각각 구별하여 적는다.

가름	둘로 가름.
갈음	새 책상으로 갈음하였다.
거름	풀을 썩힌 거름.
걸음	빠른 걸음.
거치다	영월을 거쳐 왔다.
견히다	외상값이 잘 견히다.

견잡다 겉잡다	견잡을 수 없는 상태. 겉잡아서 이틀 걸릴 일.
그러므로(그러니까) 그럼으로(써)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는 부지런하다. 그러므로 잘 산다. 그는 열심히 공부한다. 그럼으로(써) 은혜에 보답한다.
노름 놀음(놀이)	노름판이 벌어졌다. 즐거운 놀음.
느리다 늘이다 늘리다	진도가 너무 느리다. 고무줄을 늘인다. 수출량을 더 늘린다.
다리다 달이다	옷을 다리다. 약을 달인다.
다치다 달히다 달치다	부주의로 손을 다쳤다. 문이 저절로 달혔다. 문을 힘껏 달쳤다.
마치다 맞히다	벌써 일을 마쳤다. 여러 문제를 더 맞혔다.
목거리 목걸이	목거리가 덧났다. 금 목걸이, 은 목걸이.
바치다 받치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 우산을 받치고 간다. 책받침을 받친다.
받히다 받치다	쇠뿔에 받혔다. 술을 체에 받친다.
반드시 반듯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라. 고개를 반듯이 들어라.
부딪치다 부딪히다	차와 차가 마주 부딪쳤다. 마차가 화물차에 부딪혔다.
부치다	힘이 부치는 일이다. 편지를 부친다. 논발을 부친다. 빈대떡을 부친다. 식목일에 부치는 글. 회의에 부치는 안건. 인쇄에 부치는 원고. 삼촌 집에 숙식을 부친다.

붙이다	우표를 붙인다. 책상을 벽에 붙였다. 흥정을 붙인다. 불을 붙인다. 감시원을 붙인다. 조건을 붙인다. 취미를 붙인다. 별명을 붙인다.
시키다	일을 시킨다.
식히다	끓인 물을 식힌다.
아름	세 아름 되는 돌레.
알음	전부터 알음이 있는 사이.
얇	얇이 힘이다.
안치다	밥을 안친다.
앉히다	윗자리에 앉힌다.
어름	두 물건의 어름에서 일어난 현상.
얼음	얼음이 얼었다.
이따가	이따가 오너라.
있다가	돈은 있다가도 없다.
저리다	다친 다리가 저린다.
절이다	김장 배추를 절인다.
조리다	생선을 조리다. 통조림, 병조림.
줄이다	마음을 줄인다.
주리다	여러 날을 주렸다.
줄이다	비용을 줄인다.
하노라고	하노라고 한 것이 이 모양이다.
하느라고	공부하느라고 밤을 새웠다.
-느니보다(어미)	나를 찾아오느니보다 집에 있거라.
-는 이보다(의존 명사)	오는 이가 가는 이보다 많다.
-(으)리만큼(어미)	나를 미워하리만큼 그에게 잘못된 일이 없다.
-(으)ㄹ 이만큼(의존 명사)	찬성할 이도 반대할 이만큼이나 많을 것이다.
-(으)러(목적)	공부하러 간다.
-(으)려(의도)	서울 가려 한다.
(으)로서(자격)	사람으로서 그럴 수는 없다.
(으)로써(수단)	닭으로써 꿩을 대신했다.
-(으)므로(어미)	그가 나를 믿으므로 나도 그를 믿는다.
(-ㅁ, -음)으로(씨)(조사)	그는 믿음으로(씨) 산 보람을 느꼈다.

[붙임] 이때는 마침표 대신 가운뎃점을 쓸 수 있다.

3·1 운동	8·15 광복
--------	---------

(4) 장, 절, 항 등을 표시하는 문자나 숫자 다음에 쓴다.

가. 인명 1. 서론	ㄱ. 머리말 1. 연구 목적
----------------	--------------------

[붙임] ‘마침표’ 대신 ‘은점’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다.

2. 물음표(?)

(1) 의문문이나 의문을 나타내는 어구의 끝에 쓴다.

점심 먹었어? 제가 부모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남북이 통일되면 얼마나 좋을까? 다섯 살짜리 꼬마가 이 멀고 험한 곳까지 혼자 왔다? 지금?	이번에 가시면 언제 돌아오세요? 뭐라고? 네?
---	---

[붙임 1] 한 문장 안에 몇 개의 선택적인 물음이 이어질 때는 맨 끝의 물음에만 쓰고, 각 물음이 독립적일 때는 각 물음의 뒤에 쓴다.

너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너는 여기에 언제 왔니? 어디서 왔니? 무엇 하러 왔니?
--

[붙임 2] 의문의 정도가 약할 때는 물음표 대신 마침표를 쓸 수 있다.

도대체 이 일을 어쩐단 말이나. 이것이 과연 내가 찾던 행복일까.

다만, 제목이나 표어에는 쓰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역사란 무엇인가 아직도 담배를 피우십니까

(2) 특정한 어구의 내용에 대하여 의심, 빈정거림 등을 표시할 때, 또는 적절한 말을 쓰기 어려울 때 소괄호 안에 쓴다.

우리와 의견을 같이할 사람은 최 선생(?) 정도인 것 같다. 30점이라, 거참 훌륭한(?) 성적이군. 우리 집 강아지가 가출(?)을 했어요.
--

(3) 모르거나 불확실한 내용임을 나타낼 때 쓴다.

최치원(857~?)은 통일 신라 말기에 이름을 떨쳤던 학자이자 문장가이다. 조선 시대의 시인 강백(1690?~1777?)의 자는 자청이고, 호는 우곡이다.

(11) 도치문에서 도치된 어구들 사이에 쓴다.

이리 오세요, 어머니.
다시 보자, 한강수야.

(12) 바로 다음 말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지 않음을 나타낼 때 쓴다.

갑돌이는, 울면서 떠나는 갑순이를 배웅했다.
철원과, 대관령을 중심으로 한 강원도 산간 지대에 예년보다 일찍 첫눈이 내렸습니다.

(13) 문장 중간에 끼어든 어구의 앞뒤에 쓴다.

나는, 솔직히 말하면, 그 말이 별로 탐탁지 않아.
영호는 미소를 띠고, 속으로는 화가 치밀어 올라 잠시라도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로웠지만, 그들을 맞았다.

[붙임 1] 이때는 쉼표 대신 줄표를 쓸 수 있다.

나는 — 솔직히 말하면 — 그 말이 별로 탐탁지 않아.
영호는 미소를 띠고 — 속으로는 화가 치밀어 올라 잠시라도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로웠지만 — 그들을 맞았다.

[붙임 2] 끼어든 어구 안에 다른 쉼표가 들어 있을 때는 쉼표 대신 줄표를 쓴다.

이건 내 것이니까 — 아니, 내가 처음 발견한 것이니까 —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14) 특별한 효과를 위해 끊어 읽는 곳을 나타낼 때 쓴다.

내가, 정말 그 일을 오늘 안에 해낼 수 있을까?
이 전투는 바로 우리가, 우리만이, 승리로 이끌 수 있다.

(15) 짧게 더듬는 말을 표시할 때 쓴다.

선생님, 부, 부정행위라니요? 그런 건 새,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붙임] ‘쉼표’ 대신 ‘반점’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다.

5. 가운뎃점(·)

(1) 열거할 어구들을 일정한 기준으로 묶어서 나타낼 때 쓴다.

민수·영희, 선미·준호가 서로 짝이 되어 윗놀이를 하였다.
지금의 경상남도·경상북도, 전라남도·전라북도, 충청남도·충청북도 지역을 예부터 삼남이라 일러 왔다.

(2) 짝을 이루는 어구들 사이에 쓴다.

한(韓)·이(伊) 양국 간의 무역량이 늘고 있다.
우리는 그 일의 참·거짓을 따질 겨를도 없었다.
하천 수질의 조사·분석
빨강·초록·파랑이 빛의 삼원색이다.

다만, 이때는 가운뎃점을 쓰지 않거나 쉼표를 쓸 수도 있다.

한(韓) 이(伊) 양국 간의 무역량이 늘고 있다.
우리는 그 일의 참 거짓을 따질 겨를도 없었다.
하천 수질의 조사, 분석
빨강, 초록, 파랑이 빛의 삼원색이다.

(3) 공통 성분을 줄여서 하나의 어구로 묶을 때 쓴다.

상·중·하위권 금·은·동메달 통권 제54·55·56호

[붙임] 이때는 가운뎃점 대신 쉼표를 쓸 수 있다.

상, 중, 하위권 금, 은, 동메달 통권 제54, 55, 56호

6. 쌍점(:)

(1) 표제 다음에 해당 항목을 들거나 설명을 붙일 때 쓴다.

문방사우: 종이, 붓, 먹, 벼루
일시: 2014년 10월 9일 10시
흔하진 않지만 두 자로 된 성씨도 있다.(예: 남궁, 선우, 황보)
올림표(#): 음의 높이를 반음 올릴 것을 지시한다.

(2) 희곡 등에서 대화 내용을 제시할 때 말하는 이와 말한 내용 사이에 쓴다.

김 과장: 난 못 참겠다.
아들: 아버지, 제발 제 말씀 좀 들어 보세요.

(3) 시와 분, 장과 절 등을 구별할 때 쓴다.

오전 10:20(오전 10시 20분)
두시연해 6:15(두시연해 제6권 제15장)

(4) 의존명사 '대'가 쓰일 자리에 쓴다.

65:60(65 대 60)
청군:백군(청군 대 백군)

[붙임] 쌍점의 앞은 붙여 쓰고 뒤는 띄어 쓴다. 다만, (3)과 (4)에서는 쌍점의 앞뒤를 붙여 쓴다.

7. 빗금(/)

(1) 대비되는 두 개 이상의 어구를 묶어 나타낼 때 그 사이에 쓴다.

먹이다/먹히다
남반구/북반구
금메달/은메달/동메달
()이/가 우리나라의 보물 제1호이다.

(2) 기준 단위당 수량을 표시할 때 해당 수량과 기준 단위 사이에 쓴다.

100미터/초 1,000원/개

(3) 시의 행이 바뀌는 부분임을 나타낼 때 쓴다.

산에 / 산에 / 피는 꽃은 /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

다만, 연이 바뀔 때 나타낼 때는 두 번 겹쳐 쓴다.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갈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 산에 / 산에 / 피는 꽃은 /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

[붙임] 빗금의 앞뒤는 (1)과 (2)에서는 붙여 쓰며, (3)에서는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한다. 단, (1)에서 대비되는 어구가 두 어절 이상인 경우에는 빗금의 앞뒤를 띄어 쓸 수 있다.

8. 큰따옴표(“ ”)

(1) 글 가운데에서 직접 대화를 표시할 때 쓴다.

“어머니, 제가 가겠어요.”
“아니다. 내가 다녀오마.”

(2) 말이나 글을 직접 인용할 때 쓴다.

나는 “어, 광훈이 아니냐?” 하는 소리에 깜짝 놀랐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보면서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헬 듯 합니다.”라는 시구를 떠올렸다.
편지의 끝머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할머니, 편지에 사진을 동봉했다고 하셨지만 봉투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9. 작은따옴표(‘ ’)

(1) 인용한 말 안에 있는 인용한 말을 나타낼 때 쓴다.

그는 “여러분!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 들어 보셨죠?”라고 말하며 강연을 시작했다.

(2) 마음속으로 한 말을 적을 때 쓴다.

나는 ‘일이 다 틀렸나 보군.’ 하고 생각하였다.
 ‘이번에는 꼭 이기고야 말겠어.’ 호연이는 마음속으로 몇 번이나 그렇게 다짐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10. 소괄호(())

(1) 주석이나 보충적인 내용을 덧붙일 때 쓴다.

니체(독일의 철학자)의 말을 빌리면 다음과 같다.
 2014. 12. 19.(금)
 문인화의 대표적인 소재인 사군자(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는 고결한 선비 정신을 상징한다.

(2) 우리말 표기와 원어 표기를 아울러 보일 때 쓴다.

기호(嗜好) 자세(姿勢) 커피(coffee) 에티켓(étiquette)

(3) 생략할 수 있는 요소임을 나타낼 때 쓴다.

학교에서 동료 교사를 부를 때는 ‘선생(님)’이라는 말을 덧붙인다.
 광개토(대)왕은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임금이다.

(4) 희곡 등 대화를 적은 글에서 동작이나 분위기, 상태를 드러낼 때 쓴다.

현우: (가쁜 숨을 내쉬며) 왜 이렇게 빨리 뛰어?
 “관찰한 것을 쓰는 것이 습관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 상상력이 생겼나 봐요.”(웃음)

(5) 내용이 들어갈 자리임을 나타낼 때 쓴다.

우리나라의 수도는 ()이다.
 다음 빈칸에 알맞은 조사를 쓰시오.
 민수가 할아버지() 꽃을 드렸다.

(6) 항목의 순서나 종류를 나타내는 숫자나 문자 등에 쓴다.

사람의 인격은 (1) 용모, (2) 언어, (3) 행동, (4) 덕성 등으로 표현된다.
 (가) 동해, (나) 서해, (다) 남해

11. 중괄호 ({ })

(1) 같은 범주에 속하는 여러 요소를 세로로 묶어서 보일 때 쓴다.

주격 조사 { 이 가 }	국가의 성립 요소 { 영토 국민 주권 }
---------------------	---------------------------------

(2) 열거된 항목 중 어느 하나가 자유롭게 선택될 수 있음을 보일 때 쓴다.

아이들이 모두 학교{에, 로, 까지} 갔어요.

12. 대괄호 ([])

(1) 괄호 안에 또 괄호를 쓸 필요가 있을 때 바깥쪽의 괄호로 쓴다.

어린이날이 새로 제정되었을 당시에는 어린이들에게 경어를 쓰라고 하였다.
[윤석중 전집(1988), 70쪽 참조]
이번 회의에는 두 명[이혜정(실장), 박철용(과장)]만 빼고 모두 참석했습니다.

(2) 고유어에 대응하는 한자어를 함께 보일 때 쓴다.

나이[年歲] 낱말[單語] 손발[手足]

(3) 원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이나 논평 등을 덧붙일 때 쓴다.

그것[한글]은 이처럼 정보화 시대에 알맞은 과학적인 문자이다.
신경준의 《여암전서》에 “삼각산은 산이 모두 돌 봉우리인데, 그 으뜸 봉우리를 구름 위에 솟아 있다고 백운(白雲)이라 하며 [이하 생략]”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원문에는 ‘없다’ 임.]

13. 겹낫표(『 』)와 겹화살괄호(《 》)

책의 제목이나 신문 이름 등을 나타낼 때 쓴다.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신문은 1896년에 창간된 『독립신문』이다.
『훈민정음』은 1997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지정되었다.
《한성순보》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신문이다.
운동주의 유고 시집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는 31편의 시가 실려 있다.

[붙임] 겹낫표나 겹화살괄호 대신 큰따옴표를 쓸 수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신문은 1896년에 창간된 “독립신문”이다.
운동주의 유고 시집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는 31편의 시가 실려 있다.

14. 홑낫표(「 」)와 홑화살괄호(〈 〉)

소제목, 그림이나 노래와 같은 예술 작품의 제목, 상호, 법률, 규정 등을 나타낼 때 쓴다.

「국어 기본법 시행령」은 「국어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곡은 베르디가 작곡한 「축배의 노래」이다.
 사무실 밖에 「해와 달」이라고 쓴 간판을 달았다.
 〈한강〉은 사진집 《아름다운 땅》에 실린 작품이다.
 백남준은 2005년에 〈엄마〉라는 작품을 선보였다.

[붙임] 홑낫표나 홑화살괄호 대신 작은따옴표를 쓸 수 있다.

사무실 밖에 ‘해와 달’이라고 쓴 간판을 달았다.
 ‘한강’은 사진집 “아름다운 땅”에 실린 작품이다.

15. 줄표 (—)

제목 다음에 표시하는 부제의 앞뒤에 쓴다.

이번 토론회의 제목은 ‘역사 바로잡기 — 근대의 설정 —’이다.
 ‘환경 보호 — 숲 가꾸기 —’라는 제목으로 글짓기를 했다.

다만, 뒤에 오는 줄표는 생략할 수 있다.

이번 토론회의 제목은 ‘역사 바로잡기 — 근대의 설정’이다.
 ‘환경 보호 — 숲 가꾸기’라는 제목으로 글짓기를 했다.

[붙임] 줄표의 앞뒤는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한다.

16. 붙임표 (-)

(1) 차례로 이어지는 내용을 하나로 묶어 열거할 때 각 어구 사이에 쓴다.

멀리뛰기는 도움닫기-도약-공중 자세-착지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김 과장은 기획-실무-홍보까지 직접 발로 뛰었다.

(2) 두 개 이상의 어구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고자 할 때 쓴다.

드디어 서울-북경의 항로가 열렸다.
 원-달러 환율
 남한-북한-일본 삼자 관계

17. 물결표 (~)

기간이나 거리 또는 범위를 나타낼 때 쓴다.

9월 15일~9월 25일
김정희(1786~1856)
서울~천안 정도는 출퇴근이 가능하다.
이번 시험의 범위는 3~78쪽입니다.

[붙임] 물결표 대신 붙임표를 쓸 수 있다.

9월 15일-9월 25일
김정희(1786-1856)
서울-천안 정도는 출퇴근이 가능하다.
이번 시험의 범위는 3-78쪽입니다.

18. 드러냄표(·)와 밑줄(_)

문장 내용 중에서 주의를 미쳐야 할 곳이나 중요한 부분을 특별히 드러내 보일 때 쓴다.

한글의 본디 이름은 훈민정음이다.
중요한 것은 왜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다음 보기에서 명사가 아닌 것은?

[붙임] 드러냄표나 밑줄 대신 작은따옴표를 쓸 수 있다.

한글의 본디 이름은 ‘훈민정음’이다.
중요한 것은 ‘왜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다음 보기에서 명사가 ‘아닌’ 것은?

19. 숨김표(○, ×)

(1) 금기어나 공공연히 쓰기 어려운 비속어임을 나타낼 때, 그 글자의 수효만큼 쓴다.

배운 사람 입에서 어찌 ○○○란 말이 나올 수 있느냐?
그 말을 듣는 순간 ×××란 말이 목구멍까지 치밀었다.

(2) 비밀을 유지해야 하거나 밝힐 수 없는 사항임을 나타낼 때 쓴다.

1차 시험 합격자는 김○영, 이○준, 박○순 등 모두 3명이다.
육군 ○○ 부대 ○○○ 명이 작전에 참가하였다.
그 모임의 참석자는 김×× 씨, 정×× 씨 등 5명이었다.

20. 빠짐표 (□)

(1) 옛 비문이나 문헌 등에서 글자가 분명하지 않을 때 그 글자의 수효만큼 쓴다.

大師爲法主□□賴之大口薦

(2) 글자가 들어가야 할 자리를 나타낼 때 쓴다.

훈민정음의 초성 중에서 아음(牙音)은 □□□의 석 자다.

21. 줄임표(……)

(1) 할 말을 줄였을 때 쓴다.

“어디 나하고 한번…….” 하고 민수가 나섰다.

(2) 말이 없음을 나타낼 때 쓴다.

“빨리 말해!”
“…….”

(3) 문장이나 글의 일부를 생략할 때 쓴다.

‘고유’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본디부터 있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 같은 역사적 환경에서 공동의 집단생활을 영위해 오는 동안 공동으로 발견된, 사물에 대한 공동의 사고방식을 우리는 한국의 고유 사상이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4) 머뭇거림을 보일 때 쓴다.

“우리는 모두…… 그러니까…… 예외 없이 눈물만…… 흘렸다.”

[붙임 1] 점은 가운데에 찍는 대신 아래쪽에 찍을 수도 있다.

“어디 나하고 한번…….” 하고 민수가 나섰다.
“실은…… 저 사람…… 우리 아저씨일지 몰라.”

[붙임 2] 점은 여섯 점을 찍는 대신 세 점을 찍을 수도 있다.

“어디 나하고 한번…” 하고 민수가 나섰다.
“실은… 저 사람… 우리 아저씨일지 몰라.”

[붙임 3] 줄임표는 앞말에 붙여 쓴다. 다만, (3)에서는 줄임표의 앞뒤를 띄어 쓴다.

2 외래어 표기법

제1장 표기의 기본 원칙

제1항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 자모만으로 적는다.

제2항 외래어의 1 음운은 원칙적으로 1 기호로 적는다.

제3항 받침에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

제4항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항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

제2장 표기 일람표

〈국제 음성 기호와 한글 대조표〉

국제 음성 기호	자 음		반 모 음		모 음	
	모음 앞	한글 자음 앞 또는 어말	국제 음성 기호	한글	국제 음성 기호	한글
p	ㅍ	ㅍ, ㅍ	j	이*	i	이
b	ㅂ	ㅂ	ɥ	위	y	에
t	ㅌ	ㅌ, ㅌ	w	오, 우*	e	외
d	ㄷ	ㄷ			ɸ	에
k	ㅋ	ㄱ, ㅋ			ɛ	외
g	ㄱ	ㄱ			ẽ	앵
f	ㅍ	ㅍ			œ	외
v	ㅂ	ㅂ			œ̃	외
θ	ㅌ	ㅌ			æ	외
ð	ㄷ	ㄷ			a	애
s	ㅌ	ㅌ			ɑ	아
z	ㅌ	ㅌ			ã	앙
ʃ	ㅌ	슈, 시			ʌ	어
ʒ	ㅌ	지			ɔ	오
ts	ㅌ	츠			õ	옹
dz	ㅌ	즈			o	오
tʃ	ㅌ	치			u	우
dʒ	ㅌ	지			ə**	어
m	ㅁ	ㅁ			ə	어
n	ㄴ	ㄴ				
ɲ	니*	뉴				
ŋ	ㅇ	ㅇ				
l	ㄹ, ㄹㄹ	ㄹ, ㄹㄹ				
r	ㄹ	ㄹ				
h	ㅎ	ㅎ				
ç	ㅎ	히				
x	ㅎ	흐				

* [j], [w]의 ‘이’와 ‘오, 우’, 그리고 [ɲ]의 ‘니’는 모음과 결합할 때 제3장 표기 세칙에 따른다.

** 독일어의 경우에는 ‘에’, 프랑스어의 경우에는 ‘으’로 적는다.

1 소개
2 용어
3 단장
4 작성례
5 어문규정

제3장 표기 세칙

제1절 영어의 표기

〈국제 음성 기호와 한글 대조표〉에 따라 적되,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적는다.

제1항 무성 파열음 ([p], [t], [k])

1. 짧은 모음 다음의 어말 무성 파열음([p], [t], [k])은 받침으로 적는다.

gap[gæp] 갭	cat[kæt] 캣	book[buk] 북
------------	------------	-------------

2. 짧은 모음과 유음·비음([l], [r], [m], [n]) 이외의 자음 사이에 오는 무성 파열음 ([p], [t], [k])은 받침으로 적는다.

apt[æpt] 앵트	setback[setbæk] 셋백	act[ækt] 액트
-------------	--------------------	-------------

3. 위 경우 이외의 어말과 자음 앞의 [p], [t], [k]는 ‘으’를 붙여 적는다.

stamp[stæmp] 스탬프	cape[keip] 케이프	nest[nest] 네스트
part[pa:t] 파트	desk[desk] 데스크	make[meik] 메이크
apple[æpl] 애플	mattress[mætris] 매트리스	chipmunk[tʃipmʌŋk] 치프멍크
sickness[siknis] 시크니스		

제2항 유성 파열음([b], [d], [g])

어말과 모든 자음 앞에 오는 유성 파열음은 ‘으’를 붙여 적는다.

bulb[bʌlb] 벌브	land[lænd] 랜드	zigzag[zigzæg] 지그재그
lobster[lɒbstə] 로브스터	kidnap[kidnæp] 키드냅	signal[signəl] 시그널

제3항 마찰음([s], [z], [f], [v], [θ], [ð], [ʃ], [ʒ])

1. 어말 또는 자음 앞의 [s], [z], [f], [v], [θ], [ð]는 ‘으’를 붙여 적는다.

mask[mɑ:sk] 마스크	jazz[dʒæz] 재즈	graph[græf] 그래프
olive[ɒlɪv] 올리브	thrill[θril] 스릴	bathe[beɪð] 베이드

2. 어말의 [ʃ]는 ‘시’로 적고, 자음 앞의 [ʃ]는 ‘슈’로, 모음 앞의 [ʃ]는 뒤따르는 모음에 따라 ‘샤’, ‘샤’, ‘셔’, ‘셰’, ‘쇼’, ‘슈’, ‘시’로 적는다.

flash[flæʃ] 플래시	shrub[ʃrʌb] 슈러브	shark[ʃɑ:k] 샤크
shank[ʃæŋk] 샹크	fashion[fæʃən] 패션	sheriff[ʃerɪf] 셰리프
shopping[ʃɒpɪŋ] 쇼핑	shoe[ʃu:] 슈	shim[ʃɪm] 심

3. 어말 또는 자음 앞의 [ʒ]는 ‘지’로 적고, 모음 앞의 [ʒ]는 ‘자’으로 적는다.

mirage[mɪrɑ:ʒ] 미라지	vision[vɪʒən] 비전
--------------------	------------------

제4항 파찰음([ts], [dz], [tʃ], [dʒ])

1. 어말 또는 자음 앞의 [ts], [dz]는 ‘츠’, ‘즈’로 적고, [tʃ], [dʒ]는 ‘치’, ‘지’로 적는다.

Keats[ki:ts] 키츠	odds[ɒdz] 오즈	switch[switʃ] 스위치
bridge[bri:dʒ] 브리지	Pittsburgh[pitsbɜ:g] 피츠버그	hitchhike[hitʃhaik] 히치하이크

2. 모음 앞의 [tʃ], [dʒ]는 ‘츠’, ‘즈’로 적는다.

chart[tʃɑ:t] 차트	virgin[vɜ:dʒin] 버진
-----------------	--------------------

제5항 비음([m], [n], [ŋ])

1. 어말 또는 자음 앞의 비음은 모두 받침으로 적는다.

steam[sti:m] 스팀	corn[kɔ:n] 콘	ring[rɪŋ] 링
lamp[læmp] 램프	hint[hɪnt] 힌트	ink[ɪŋk] 잉크

2. 모음과 모음 사이의 [ŋ]은 앞 음절의 받침 ‘ㅇ’으로 적는다.

hanging[hæŋŋɪŋ] 행잉	longing[lɒŋŋɪŋ] 롱잉
--------------------	--------------------

제6항 유음([l])

1. 어말 또는 자음 앞의 [l]은 받침으로 적는다.

hotel[hotel] 호텔	pulp[pʌlp] 펄프
-----------------	---------------

2. 어중의 [l]이 모음 앞에 오거나, 모음이 따르지 않는 비음([m], [n]) 앞에 올 때에는 ‘ㄹ’로 적는다. 다만, 비음([m], [n]) 뒤의 [l]은 모음 앞에 오더라도 ‘ㄹ’로 적는다.

slide[slaid] 슬라이드	film[filɪm] 필름	helm[helm] 헬름
swoln[swouln] 스월른	Hamlet[hæmlɪt] 햄릿	Henley[henli] 헨리

제7항 장모음

장모음의 장음은 따로 표기하지 않는다.

team[ti:m] 팀	route[ru:t] 루트
--------------	----------------

제8항 중모음⁴⁴⁾([ai], [au], [ei], [ɔi], [ou], [auə])

중모음은 각 단모음의 음가를 살려서 적되, [ou]는 ‘오’로, [auə]는 ‘아워’로 적는다.

time[taɪm] 타임	house[haʊs] 하우스	skate[skeɪt] 스케이트
oil[ɔɪl] 오일	boat[bəʊt] 보트	tower[taʊə] 타워

44) 이 ‘중모음’은 ‘중모음(重母音)’이므로, ‘중모음(中母音)’과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제9항 반모음([w], [j])

1. [w]는 뒤따르는 모음에 따라 [wə], [wɔ], [wou]는 ‘워’, [wɑ]는 ‘와’, [wæ]는 ‘왜’, [we]는 ‘웨’, [wi]는 ‘위’, [wu]는 ‘우’로 적는다.

word[wə:d] 워드	want[wɔnt] 원트	woe[wou] 워
wander[wandə] 완더	wag[wæg] 왜그	west[west] 웨스트
witch[witʃ] 위치	wool[wul] 울	

2. 자음 뒤에 [w]가 올 때에는 두 음절로 갈라 적되, [gw], [hw], [kw]는 한 음절로 붙여 적는다.

swing[swɪŋ] 스윙	twist[twɪst] 트위스트	penguin[peŋɡwɪn] 펭귄
whistle[hwɪsl] 휘슬	quarter[kwɔ:tə] 쿼터	

3. 반모음 [j]는 뒤따르는 모음과 합쳐 ‘야’, ‘애’,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다. 다만, [d], [l], [n] 다음에 [jə]가 올 때에는 각각 ‘디어’, ‘리어’, ‘니어’로 적는다.

yard[jɑ:d] 야드	yank[jæŋk] 앵크	yearn[jɛ:n] 연
yellow[jeləu] 옐로	yawn[jɔ:n] 온	you[ju:] 유
year[jiə] 이어	Indian[ɪndjən] 인디언	battalion[bətæljən] 버탈리언
union[ju:njən] 유니언		

제10항 복합어⁴⁵⁾

1. 따로 설 수 있는 말의 합성으로 이루어진 복합어는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말이 단독으로 쓰일 때의 표기대로 적는다.

cuplike[kʌplaɪk] 컵라이크	bookend[bukend] 북엔드
headlight[hedlaɪt] 헤드라이트	touchwood[tʌtʃwud] 터치우드
sit-in[sɪtɪn] 시틴	bookmaker[bukmeɪkə] 북메이커
flashgun[flæʃɡʌn] 플래시건	topknot[tɒpnot] 톱낫

2. 원어에서 띄어 쓴 말은 띄어 쓴 대로 한글 표기를 하되, 붙여 쓸 수도 있다.

Los Alamos[lɒsæləməʊs] 로스 앨러모스/로스앨러모스
top class[tɒpkləs] 톱 클래스/톱클래스

45) 이 ‘복합어’는 학교 문법 용어에 따르면 ‘합성어’가 된다. 이하 같다.

제4장 인명, 지명 표기의 원칙

제1절 표기 원칙

제1항 외국의 인명, 지명의 표기는 제1장, 제2장, 제3장의 규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제3장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언어권의 인명, 지명은 원지음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Ankara 앙카라 Gandhi 간디

제3항 원지음이 아닌 제3국의 발음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은 관용을 따른다.

Hague 헤이그 Caesar 시저

제4항 고유 명사의 번역명이 통용되는 경우 관용을 따른다.

Pacific Ocean 태평양 Black Sea 흑해

제2절 동양의 인명, 지명 표기

제1항 중국 인명은 과거인과 현대인을 구분하여 과거인은 종전의 한자음대로 표기하고, 현대인은 원칙적으로 중국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한다.

제2항 중국의 역사 지명으로서 현재 쓰이지 않는 것은 우리 한자음대로 하고, 현재 지명과 동일한 것은 중국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한다.

제3항 일본의 인명과 지명은 과거와 현대의 구분 없이 일본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한다.

제4항 중국 및 일본의 지명 가운데 한국 한자음으로 읽는 관용이 있는 것은 이를 허용한다.

東京 도쿄, 동경 京都 교토, 경도 上海 상하이, 상해
臺灣 타이완, 대만 黃河 황허, 황하

제3절 바다, 섬, 강, 산 등의 표기 세칙

제1항 바다는 '해(海)'로 통일한다.

홍해 발트해 아라비아해

제2항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섬은 모두 '섬'으로 통일한다.

타이완섬 코르시카섬 (우리나라: 제주도, 울릉도)

제3항 한자 사용 지역(일본, 중국)의 지명이 하나의 한자로 되어 있을 경우, '강', '산', '호', '섬' 등은 겹쳐 적는다.

온타케산(御岳)	주장강(珠江)	도시마섬(利島)
하야카와강(早川)	위산산(玉山)	

제4항 지명이 산맥, 산, 강 등의 뜻이 들어 있는 것은 '산맥', '산', '강' 등을 겹쳐 적는다.

Rio Grande 리오그란데강	Monte Rosa 몬테로사산
Mont Blanc 몽블랑산	Sierra Madre 시에라마드레산맥



발 행 처 법제처
(www.moleg.go.kr)

발 행 일 2025년 12월

문 의 처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팀
044-200-6858

디자인·인쇄 공간기획
044-865-5709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 열 번째 판 -

수정·증보판

부록 | 정비 권고 용어



차 례

1. 자주 나오는 정비 대상 용어	1
2. 일본식 용어	2
가. 일본식 한자어	2
나. 일본식 외래어	3
3. 정비 대상 용어	4
가. 순화어 활용하기	4

ㄱ	04	ㅈ	55
ㄴ	16	ㅊ	66
ㄷ	18	ㅋ	71
ㄹ	22	ㅌ	72
ㅁ	22	ㅍ	73
ㅂ	25	ㅎ	76
ㅅ	32	A-Z	80
ㅇ	43		

나. 뜻풀이 활용하기	83
-------------------	----

1 자주 나오는 정비 대상 용어

용어	권고안
1인	[사람인 경우] 1명
1차에 한하여	한 차례만, 한 차례에 한정하여
2이상	둘 이상
6월	[기간인 경우] 6개월
가중하다	(기간을, 금액을) 늘리다, (처분을) 가중하다
각호의 1	각 호의 어느 하나
간주하다	(~로) 본다, 보다
감안하여	고려하여
강구하다	마련하다
개입하다	바꾸어 임명하다, 교체하다, 교체임명하다
~에 불구하고	~에도 불구하고
경감하다	(기간을, 금액을) 줄이다, (처분을) 경감하다
경과한	지난
공제한다	뺀다, 제외한다, 공제한다
과태료에 처한다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공립학교	국공립학교
국·공·사립학교	국립·공립·사립학교
규명한	밝힌
규정에 위반하여	규정을 위반하여, 규정에 위반되어
금원	금액, 금품
기타	그 밖의, 그 밖에
기하다	도모하다, 꾀하다
내역	명세, 내용
내지	또는, [숫자와 어울려 쓰는 경우] ~부터 ~까지, ~이상 ~이하
다수의	여러
당해	해당, 그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하여는	대해서는
도래하다	이르다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동법	같은 법
명기하다	(명확하게/분명히) 적다, 기록하다
변경이 있는 경우	~이 변경된 경우
부기하다	덧붙여 적다

용어	권고안
부의하다	회의에 부치다, 회의에 올리다
부적당한	적당하지 아니한
불요	불필요
비치하다	갖추어 두다, 갖추어 놓다
사전에	미리
산식	계산식
상당한	상응하는, 타당한, 상당한
상위하다	서로 어긋나다, 서로 다르다
새로이	새로
소명하다	밝히다, [소송의 경우] 소명하다
소속하에	소속으로
소요되는	드는, 필요한
소요비용	필요한 비용, 드는 비용
소정의	정해진, 일정한
수급	수요와 공급
수·출입	수출입
수인	여러 사람
수지	수입·지출
수취하다	받다
순차로	차례로
승인[동의]을 얻다	승인(동의)을 받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시행에 필요한, 시행에 관한
아니하는 한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위법령] 없는 범위에서
연도말	연도 말
연령	나이 * 예외: 수급연령
오인하다	잘못 인식하다
요하다	~가 필요하다, 요구되다
의한다	따른다
이월	이지출
익일	이튿날, 다음 날
인수·인계	인수인계
일방	어느 한쪽, 한쪽
일시에	한꺼번에
일절	절대로, 전혀
일체의	모든, 전부
임·직원	임직원
자	[자연인의 경우] 사람

용어	권고안
잔여	남은, 나머지
잔입기간	입기의 남은 기간, 남은 입기
저해하다	방해하다, 해치다
적용함에 있어	적용할 때
점·사용허가	점용·사용 허가
제반	모든, 각종
제·개정	제정·개정
즉시로	즉시, 바로 그때부터
증빙서류	증명서류
지불하다	지급하다
지정된 기일까지	지정된 날까지
참작하여	고려하여
처음으로부터	처음부터
천재·지변 기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에]
초래할	가져올, 일으킬

용어	권고안
통괄하다	총괄하다
통·폐합	통폐합
필증	증명서, 확인증, 증
필하다	마치다
하청	하도급
해태하다	게을리하다, 이행하지 않다
허위	거짓
회보하다	알리다, 통지하다, 회신하다
~날로부터	~날부터
~에 한한다	~로 한정한다, ~만 해당한다
~을 제외한다	~은 제외한다
~의 규정에 의하여	~에 따라
~이라 함은	~이란
~하고자 하는	~하려는

2 일본식 용어

가. 일본식 한자어

용어	한자	권고안
가도	假道	임시 도로, 임시 통로
가료	加療	치료
가식	假植	임시 식재, 임시 심기, 겉심기
가필하다	加筆	고쳐 쓰다
감안(하다)	勘案	고려(하다)
갑상선	甲狀腺	갑상샘
개호	介護	간병
거래선	去來先	거래처
건정	鍵錠	잠금장치
게기하다	掲記	규정하다, 열거하다
견습	見習	수습
계리	計理	회계처리
계출	届出	신고
고리	高利	고금리
고아원	孤兒院	보육원
곤색	紺色	감색
공란	空欄	빈칸

용어	한자	권고안
공하다	供	제공하다, 쓰이다, 사용되다 [공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문맥에 맞게 순화]
관능검사	官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능검사[인간의 오감(五感)에 의하여 평가하는 제품검사] • 관능검사[인간의 오감(五感)에 의하여 ○○의 품질을 평가하는 일] • 감각활용검사 • 감각기관활용검사
구근	球根	구근(알뿌리)
구배	勾配	경사, 경사도, 기울기
구좌	口座	계좌
굴삭기	掘削機	굴착기
납골당	納骨堂	봉안당
납득하다	納得	수긍하다, 받아들이다
노임	勞賃	임금
녹비	綠肥	풋거름

용어	한자	권고안
대합실	待合室	맞이방, 대기실
두개골	頭蓋骨	머리뼈
마대	麻袋	자루, 포대
명기하다	明記	(명확하게/분명히) 적다, 기록하다
명찰	名札	이름표
명하다	命	처분을 하다, 명하다 * 명령하다(×)
미강	米糠	쌀겨
미拂	未拂	미지급
부락	部落	마을
분비선	分泌腺	분비샘
불입	拂入	납입, 납부, 냄
불하	拂下	매각
빙점	氷點	어는점
사리	砂利	자갈
사찰	査察	조사
시건	施鍵	잠금
시말서	始末書	경위서
어분	魚粉	어분(생선가루), 생선가루
어획고	漁獲高	어획량
연돌	煙突	굴뚝
엽연초	葉煙草	잎담배
음용수	飲用水	먹는 물, 마시는 물
응하다	應	(명령에) 따르다, 응답하다, (검사를) 받다, (협상에) 응하다
이서	裏書	서명, 확인, 배서
일부인	日附印	날짜도장
입회	立會	참관, 참석, 참여

용어	한자	권고안
자	者	• 사람 [사람만 가리킬 때] • 자 [사람 외에 단체, 법인 등도 가리킬 때]
잔고	殘高	잔액
잔교	棧橋	• 잔교(棧橋: 다리모양의 구조물) • 잔교(선박을 매어두거나 부두에 달도록 구름다리 형태로 만든 구조물) • 구름다리 • 부두연결다리
저리	低利	저금리
전도	前渡	선지급, 미리 지급
절취하다	截取	자르다
절취선	截取線	자르는 선
제전	祭典	축제, 행사
주말하다	朱抹	붉은 선으로 지우다
지득하다	知得	알게 되다
지拂	支拂	지급
지참	遲參	지각
청부	請負	도급
추월	追越	앞지르기
침목	枕木	받침목
통달	通達	도달
품신	稟申	건의
하구언	河口堰	하굿둑
하청	下請	하도급
한천	寒天	우무, 우뭇가사리
행선지	行先地	목적지
후拂	後拂	후지급
흑판	黑板	칠판

나. 일본식 외래어

용어	원어	권고안
가리	加里, kalium	칼륨, 칼리
가성소다	苛性 soda, 水酸化 Natrium	수산화나트륨
구리스	grease	그리스(grease), 윤활유
기어	gear	기어, 변속장치
레자	leather	인조 가죽
모터	motor	모터

용어	원어	권고안
미싱	sewing machine	재봉틀
바란스	balance	밸런스
센타	center	센터
스라브/슬라브	slab	슬래브
엑기스	extract	추출물, 진액
타이루	tile	타일
휴즈	fuse	퓨즈

3 정비 대상 용어

- 용어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정비할 수 있다.
 - 순화어 활용 방식: 대체 가능한 순화어(명사구 포함)로 바꾸거나 순화어를 함께 적는 방법
 - 뜻풀이 활용 방식: 뜻풀이(설명 포함)로 바꾸어 적거나 뜻풀이를 함께 적는 방법
- 문맥을 고려할 때 여기에서 제시한 순화어 또는 뜻풀이가 적절하지 않거나 그보다 더 적절한 것이 있으면, 새로운 순화어 또는 뜻풀이로 바꾸어 쓸 수 있다.
- 아래 용어 목록에서 ㉠은 순화어 목록에 같은 용어가 있음을 의미하고, ㉡은 뜻풀이 목록에 같은 용어가 있음을 의미한다.

가. 순화어 활용하기

- 정비대상 용어는 우리말, 일상에서 더 많이 사용되는 용어, 더 쉬운 한자어 등으로 순화한다.
- 적절한 순화어가 없는 경우 현행 용어를 그대로 쓸 수 있다. 이 경우 동음이의어, 어려운 전문용어, 낯선 한자어 등은 괄호에 한자를 넣어 함께 쓸 수 있다.

ㄱ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1	가각	街角	(길)모퉁이
2	가감	加減	더하고 빼기, 더하거나 빼기, 가감
3	가건물	假建物	임시건물
4	가검물	可檢物	검사물
5	가계약	假契約	임시 계약
6	가공선	架空線	공중 전선
7	가교의치	架橋義齒	고정틀니, 고정성틀니[架橋義齒], 고정틀니(가교의치)
8	가급적	可及的	될 수 있으면, 되도록, 될 수 있는 대로, 가급적
9	가납	假納	임시 납부
10	가내	家內	가내(家內), 집안
11	가도	假道	임시 도로, 임시 통로
12	가두	街頭	길거리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13	가드레일	guardrail	보호 난간, 가드레일
14	가료	加療	치료
15	가료하다	加療	치료하다
16	가리	加里, kalium	칼륨, 칼리
17	가무	歌舞	노래와 춤
18	가미하다	加味	덧붙이다, (맛을) 더하다, 추가하다
19	가병	假病	괘병
20	가불	假拂	우선지급
21	가불금액	假拂金額	우선지급금
22	가사용	家事用	가정용, 가사용(家事用)
23	가산	加算	덧셈, 보탬, 더함
24	가산하다	加算	더하여 계산하다, 더하다, 가산(加算)하다
25	가선	架線	전선 설치, 공중 전선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26	가설인	假設人	가공인물
27	가성소다	苛性 soda, 水酸化 Natrium	수산화나트륨
28	가(假) 속눈썹	假 속눈썹	인조 속눈썹
29	가솔린	gasoline	휘발유
30	가수금	假受金	임시 수령금
31	가스스토브	gas stove	가스난로
32	가스압접	gas壓接	가스압착용접(가스압접)
33	가시광선	可視光線	가시광선(可視光線)
34	가시도	可視度	가시도(可視度)
35	가식	假植	임시 식재, 임시 심기, 결심기
36	가액	價額	가액(價額)
37	가연성	可燃性	가연성(可燃性)
38	가온	加溫	온도를 높임, 가온(加溫)
39	가용	家用	가정용
40	가용성	可溶性	녹는 성질, 가용성(可溶性)
41	가운데점	點	가운데점(○), 가운데점(×) [* 제2장 112쪽에 설명 있음]
42	가이드	guide	가이드, 기준, 지침
43	가이드라인	guide-line	기준, 지침
44	가인	加印	추가 날인
45	가장	假裝	가장(假裝)
46	가점	加點	가산점
47	가제하다	加除	같이 끼우다
48	가주소	假住所	임시주소
49	가중하다	加重	(처분을) 가중하다, (기간을/금액을) 늘리다
50	가지정	假指定	임시지정
51	가절	假綴	임시 묶음, 가절(假綴)
52	가철하다	假綴	임시로 묶다, 철하다
53	가철하다	加綴	묶다, 덧붙여 묶다, 철하다, 덧붙여 철하다
54	가청경보	可聽警報	소리 경보
55	가출	假出	임시 반출
56	가퇴원	假退院	임시 퇴원
57	가필하다	加筆	고쳐 쓰다
58	가하다	加	가하다, (변경을) 하다, (위해를) 주다, (위해를) 입하다, (행위를) 하다
59	가해제	假解除	임시 해제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60	가허가	假許可	임시 허가
61	가환부	假還付	임시 환급, 임시 반환
62	각경	脚徑	각경(몸체의 지름)
63	각고	穀高	각고(겉데기의 높이)
64	각기	各其	각각
65	각련	刻煙	말아 피우는 담배
66	각목의 1	各目	각 목의 어느 하나, 각 목의 구분에 따른
67	각별, 각별로	各別	각각, 따로따로
68	각본조	各本條	각 해당 조문
69	각인	刻印	새김, 도장을 새김, 각인(刻印: 도장을 새김), 각인(刻印: 새김), 각인(刻印: 새김도장)
70	각인하다	刻印	새기다, 도장을 새기다
71	각장	穀長	각장, 겉데기의 길이
72	각조, 각항, 각호, 각목	各條, 各項, 各號, 各目	각 조, 각 항, 각 호, 각 목
73	각종	各種	각종, 여러 가지
74	각치	角值	각도
75	각호	各戶	집집마다
76	각호의 1,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各號	각 호의 어느 하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77	간농양	肝膿瘍	간고름집
78	간벌	間伐	숙아베기
79	간벌하다	間伐	숙아 베다
80	간부	幹部	중간부분, 몸통
81	간석지	干潟地	간석지(○), 개펄(○), 갯벌(×)
82	간수	看守	관리, 간수(看守), [사람의 경우] 교도관
83	간수자	看守者	관리자
84	간수하다	看守	관리하다
85	간인	間印	간인(사잇도장)
86	간인하다	間印	사잇도장을 찍다
87	간조	干潮	간조(干潮)
88	간주하다	看做	(~로) 보다
89	간질	癩疾	뇌진증
90	간찰류	簡札類	편지류
91	같음하다(~ 에 같음하다)		~을/를 같음하다 * 대신하다(×)
92	감경하다	減輕	감경하다, (기간을/금액을) 줄이다
93	감급	減給	급여 감액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94	감모	減耗	감모(減耗), 자연손실
95	감별	鑑別	분류 심사, 감별
96	감속하다	減速	속도를 줄이다
97	감손되다	減損	줄어들다
98	감쇠	減衰	감쇠(減衰), 적어짐, 줄어들짐, 약해짐
99	감수	減收	감수(減收)
100	감수	減水	감수(減水)
101	감수	監守	감수(監守)
102	감수되다	減收	(수확이) 줄어들다
103	감안하다	勘案	고려하다
104	감압병	減壓病	잠수병, 감압병(잠수병)
105	감액하다	減額	감액하다, (금액을) 낮추다
106	감약계수	減弱係數	감약계수(X선 흡수계수)
107	감원	減員	정원을 줄임
108	감자	減資	감자(減資), 자본금 감소
109	감진장치	感震裝置	지진감지장치
110	감하다	減	빼다, 덜다, 낮추다, 줄이다
111	감항능력	堪航能力	안전항행능력, 감항능력(堪航能力)
112	감호	監護	감호, 보호감독
113	감화원	感化院	소년원
114	감문문비	閤門門扉	감문의 문짝
115	갑상선	甲狀腺	갑상샘
116	갑상선염	甲狀腺炎	갑상샘염
117	강구하다	講究	마련하다
118	강급	降級	강등
119	강급하다	降級	강등하다. (등급을) 내리다
120	강도	強度	세기, 강도
121	강삭	鋼索	강철줄(와이어로프)
122	강선	鋼船	강선(鋼船)
123	강제 출자	鋼製	철제 출자
124	강제호기량	強制呼氣量	강제날숨량, 강제호기량(強制呼氣量)
125	강직되다	剛直	굳다
126	강착	降着	착륙
127	강착장치	降着裝置	이착륙장치
128	강철지주	鋼鐵支柱	강철기둥
129	강취	強取	강취(強取)
130	강하	降下	강하(降下)
131	강하하다	降下	내리다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132	강회다짐	剛灰	생석회 흙다짐, 강회다짐(생석회 흙다짐)
133	개개	個個	각각
134	개구	開口	입벌림
135	개구장애	開口障礙	입벌림장애
136	개답	開畚	개답(開畚) ㉸
137	개두수술	開頭手術	개두수술(開頭手術), 머리뼈 절개수술
138	개두술	開頭術	머리뼈 절개술, 머리뼈 절개수술
139	개명	改名	개명(改名)
140	개명하다	改名	이름을 고치다
141	개문출발	開門出發	문열림출발
142	개변하다	改變	고치다
143	개산급	概算給	추산지급, 추산하여 지급
144	개산보험료	概算保險料	개괄 산정 보험료, 추산보험료
145	개산선납 보험료	概算先納 保險料	추산선납보험료
146	개산하다	概算	개괄적으로 계산하다, 어림잡아 계산하다, 추산하다
147	개서	改書	변경, 기재변경
148	개서교부	改書交付	변경교부
149	개서하다	改書	고쳐 적다, 고쳐 쓰다, 고치다
150	개선	改選	변경 선임
151	개수하다	改修	고치다, 개선하다
152	개스킷	gasket	개스킷(Gasket: 누설방지재)
153	개시	開始	시작, 개시(開始)
154	개시시간	開始時間	시작시간
155	개시하다	開始	시작하다, (상속을) 개시하다
156	개의회다	開議	개의회(開議)하다, 회의를 시작하다
157	개인	改印	인감 변경, 인감 바꿈, 인감을 바꿈
158	개임	改任	교체 임명, 교체
159	개임하다	改任	교체하다, 바꾸어 임명하다, 교체하여 임명하다
160	개장	改裝	재포장
161	개장하다	開裝	포장을 열다, 포장을 뜯다
162	개장하다	改裝	다시 포장하다
163	개전의 정	改悛の情	뉘우치는 정도, 뉘우치는 빛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164	개전의 정이 현저한	改悛의 情이 顯著한	뉴우치는 빛이 뚜렷한
165	개정하다	開廷	재판을 시작하다
166	개진하다	開陳	(의견을) 펴다, (의견을) 밝히다
167	개착	開鑿	개착(開鑿)
168	개착하다	開鑿	뚫다, 개착(開鑿)하다, 파다
169	개찬	改竄	정정
170	개찰	改札	표 확인, 입장권 확인
171	개체	改替	바꿈
172	개최하다	開催	열다, 개최하다
173	개축	改築	개축(改築)
174	개측	改測	재측정, 재측량
175	개측하다	改測	개측(改測)하다, 다시 측량하다, 다시 측정하다
176	개폐	改廢	개정 또는 폐지, 개편 또는 폐지, 개방 또는 폐쇄, [학급이나 학과의 경우] 개설 또는 폐지(폐강/축소)
177	개폐기	開閉器	스위치
178	개폐시	開閉時	여닫을 때
179	개피	開披	개봉
180	개피하다	開披	개봉하다, 뜯다
181	개호	介護	간병
182	개호비	介護費	가정 간병비, 간병비
183	개호인	介護人	간병하는 사람(○), 간병인(×)
184	개황	概況	상황, 형편, 개황(概況)
185	객담	喀痰	가래
186	객담도말검사	喀痰塗抹檢査	가래표본검사
187	객담외	喀痰外	가래 아닌 것
188	객토	客土	새 흙 넣기, 객토(새 흙 넣기), 객토(客土: 새 흙 넣기)
189	갭게이지	gap gauge	갭게이지(틈새측정기)
190	갱구	坑口	갱구(坑口)
191	갱내	坑內	갱내(坑內)
192	갱문	坑門	[터널의 경우]터널 출입구
193	갱생하다	更生	선도·교화하다
194	갱의실/경의실	更衣室	탈의실
195	갱정	更正	경정(고침), 경정
196	각출하다	釀出	각출하다, 각자 나눠 내다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197	거골	距骨	목말뼈, 거골(距骨: 목말뼈)
198	거골 경부	距骨 頸部	목말뼈목, 목말뼈 목부위
199	거골하관절	距骨下關節	목말밑관절
200	거동	舉動	행동, 거동
201	거래선	去來先	거래처
202	거류	居留	거류(居留)
203	거마비	車馬費	교통비
204	거버넌스	governance	민관협력, 협치
205	거선하다	擧船	(선박을) 들어 올려 놓다
206	거수하다	擧手	손을 들다
207	거짓 그 밖의		거짓이나 그 밖의
208	거치기간	據置期間	거치기간(據置期間)
209	거택	居宅	집, 가정
210	건	腱	힘줄, 힘줄(건)
211	건강행태	健康行態	건강 관련 생활습관
212	건당	件當	건당, 한 건에
213	건정	鍵錠	잠금장치
214	건초염	腱鞘炎	힘줄윤활막염
215	검량	檢量	수량 재기, 무게 달기, 검량(檢量)
216	검사역	檢査役	검사원, 검사인
217	검사체크리스트	檢査check list	검사점검표
218	검사필증	檢査畢證	검사합격증, 검사확인증
219	검사합격필증	檢査合格畢證	검사합격확인증
220	검시	檢屍	검시(檢屍)
221	검식	檢食	음식 검사, 검식(檢食)
222	검안	檢案	검안(檢案), 검안(사체 검사)
223	검안검	檢眼鏡(一鏡)	검안경(檢眼鏡)
224	검안서	檢案書	시신 검사의견서 ㉠
225	검이경	檢耳鏡	귀보개, 검이경(귀보개)
226	검정필	檢定畢	검정완료, 검정확인
227	검진지령서	檢診指令書	검진지시서, 검진명령서
228	검체	檢體	검사 대상물
229	계기	揭記	열거
230	계기하다	揭記	열거하다, 규정하다
231	계실	憩室	결주머니
232	계양하다	揭揚	달다, 계양하다
233	게을리 하다		게을리하다(○), 게을리 하다(×)
234	게재하다	揭載	게재하다, 싣다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235	격납	格納	보관, 지정보관, 격납
236	격벽	隔壁	경계벽, 칸막이벽, 격벽(隔壁)
237	격일	隔日	격일, 하루걸러
238	격지 간에	隔地 間에	분리된 장소에서
239	견갑	肩胛	어깨
240	견갑 관절	肩胛 關節	어깨관절, 어깨뼈가 있는 자리(견갑) 관절
241	견갑골	肩胛骨	어깨뼈, 견갑골(어깨뼈)
242	견갑골극	肩胛骨棘	어깨뼈돌기, 어깨뼈가시
243	견갑극	肩胛棘	어깨뼈가시
244	견골	肩骨	견갑골(어깨뼈)
245	견관절	肩關節	어깨관절
246	견본	見本	본보기, 견본
247	견봉	肩峯	어깨봉우리
248	견봉돌기	肩峯突起	어깨봉우리돌기, 봉우리돌기
249	견쇄관절	肩鎖關節	봉우리빗장관절(acromioclavicular joint)
250	견습	見習	수습
251	견양	見樣	서식, 본보기, 견본 양식
252	견연 골절, 견열 골절	牽連(←裂) 骨折	찢김 골절
253	견지	見地	관점
254	견취도	見取圖	대상지 현황도
255	견치	犬齒	송곳니
256	견품	見品	견본
257	결계하다	決潰	무너지게 하다, 터져 무너지게 하다
258	결문	結文	맺음말
259	결빙	結氷	결빙, 얼어붙음
260	결석계	缺席届	결석 신고, 결석 신고서
261	결선	結線	전선 연결
262	결속하다	結束	묶다
263	결손	缺損	없어짐, 상실
264	결원이 있는 때에는	缺員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65	결핍	缺乏	부족, 모자람, 결핍
266	결함	缺陷	잘못, 모자람, 흠, 결함
267	결핵의사환자	結核擬似患者	결핵의심환자
268	결행	缺行	미운행
269	겸무	兼務	겸임 업무
270	겸무하다	兼務	업무를 겸하다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271	겸보	兼補	겸해 맡김, 겸해 맡음, 겸임
272	겸보하다	兼補	겸하여 임명하다
273	겸유	兼有	동시 소유
274	경간	徑間	(기동과) 기동 사이
275	경감하다	輕減	(처분을) 경감하다, (기간을/금액을) 줄이다
276	경결	硬結	굳기 ㉸
277	경계책	境界柵	경계 장치, 울타리
278	경골	脛骨	정강이뼈, 정강뼈, 정강이뼈(경골)
279	경골	頸骨	목뼈
280	경골 간부	脛骨 幹部	정강뼈 몸통, 정강이뼈 몸통, 정강이뼈 중간부분
281	경골 과부	脛骨 踝部	정강뼈 관절용기, 정강이뼈 관절용기, 정강이뼈 복사
282	경골 과부골절	脛骨 踝部骨折	정강이뼈 복사 골절
283	경골극	脛骨棘	정강뼈 용기사이결절, 정강이뼈 용기사이결절
284	경골극골절	脛骨棘骨折	정강이뼈 용기 골절
285	경골신경	脛骨神經	정강이뼈신경
286	경과규정, 경과조치	經過規定, 經過措置	경과조치
287	경과년수	經過年數	경과연수
288	경과하다	經過	지나다. [부칙 시행일에서] 경과하다
289	경관	景觀	경치, 경관
290	경관식	經管食	튜브영양공급식
291	경관영양	經管營養	튜브영양공급
292	경구	經口	입
293	경구, 경피 또는 흡입 노출	經口, 經皮	입, 피부 투여 또는 흡입 노출/ 입이나 피부를 통한 투여 또는 흡입 노출
294	경구개	硬口蓋	경구개(단단입천장)
295	경구용	經口用	먹는
296	경구투여약, 경구투여제	經口投與	먹는 약
297	경도	傾度	경사도, 기울기
298	경도	硬度	경도(硬度), 굳기, 경도(硬度: 단단한 정도)
299	경도시험기	硬度試驗器	경도(단단한 정도) 시험기
300	경도하다	傾倒	(재산을) 탕진하다
301	경락	競落	경락(競落)
302	경락인	競落人	[경매에서] 매수인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303	경료된	經了	(필요한 절차를) 마친, 경료된, 설정된
304	경막하 수종	硬膜下水腫	경막밑 물혹, 경막밑 수종
305	경봉	警棒	경찰봉
306	경부	頸部	목, 목(경부), 목부위, ~뼈목, 뒷목부, 뒷목부분, [척추] 목뼈부(경추부)
307	경사	傾斜	기울기, 경사
308	경상돌기	莖狀突起	뿔돌기
309	경수	硬水	센물
310	경악	驚愕	경악, 놀람
311	경우, 때	境遇	* 제3장 187쪽에 설명 있음
312	경우를 제외한다	境遇를 除外	경우는 제외한다 [단서, 괄호 안에서 쓸 때]
313	경운	耕耘	땅갈이, 갈이, 경운(耕運, 토양을 갈고 고름)
314	경유하다	經由	거치다, 경유하다
315	경이하다	輕易	가볍다, 쉽다
316	경정	更正	경정(更正)
317	경정결정	更正決定	경정결정(更正決定)
318	경질	硬質	경질(단단한 재질)
319	경질되다	更迭	바뀌다
320	경질하다	更迭	바꾸다, 변경하다, 경질하다
321	경찰복제	警察服制	경찰제복
322	경추	頸椎	목뼈
323	경추보조기(할로베스트)	頸椎補助器(Halovest)	목뼈고정기(할로베스트), 목뼈보조기(척추고정보조기)
324	경추부	頸椎部	목뼈부(경추부)
325	경추탈구	頸椎脫臼	목뼈탈구
326	경토	耕土	경토(耕土)
327	경피	硬皮	피부
328	경피적 배농술	硬皮的排膿術	피부경유고름배출(술)
329	경피증모양	硬皮症模樣	피부경화증 모양
330	경하다	經	거치다
331	경하다	輕	가볍다, 약하다
332	경하시	傾下時	기울 때
333	경합	競合	경합(競合)
334	경합하다	競合	경합(競合)하다, 경쟁하다, 맞서 겨루다
335	경향교류	京鄉交流	수도권과 지방 교류
336	경화	硬化	단단하게 됨, 굳어짐, 경화(硬化)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337	경·비골	脛·腓骨	정강이뼈·종아리뼈, 정강뼈·종아리뼈
338	계고	戒告	계고(戒告)
339	계구	戒具	보호 기구
340	계근중량	計斤重量	측정무게, 측정중량
341	계금	契金	[금융회사에서] 계금(契金)
342	계기	計器	계기(計器)
343	계도	啓導	교육, 홍보
344	계도하다	啓導	지도하다
345	계류	溪流	계류(溪流)
346	계류삭	繫留索	배 매는 밧줄
347	계류소	繫留所	계류소(선박을 매어두는 곳)
348	계류시설	繫留施設	계류(繫留)시설
349	계류하다	繫留	(배를) 매어 두다, (배를) 붙들어 매다, 계류하다
350	계리	計理	회계처리
351	계박하다	繫泊	계류(하여) 정박하다, 배를 매어 두다
352	계상	計上	계상, 반영
353	계상골	榎狀骨	썩기뼈[설상골(楔狀骨)]
354	계상하다	計上	(예산을) 계상하다, (계산하여) 늘다
355	계선설비	繫船設備	배 매는 설비, 선박 계류 설비
356	계선하다	繫船	계선(繫船)하다, 배를 매다
357	계속	係屬/繫屬	계속(繫屬/係屬), 소송계속(訴訟繫屬), (소송) 제기
358	계인	契印	결침도장(계인), 계인(결침도장), 계인(契印)
359	계출	届出	신고
360	계표	界標	경계표지
361	계표	計票	표 세기, 계표(計票)
362	계호	戒護	경계·보호, 감시·보호, 교도소 보안 유지
363	고가	高價	높은 가격, 고가(高價)
364	고가	高架	고가(高架)
365	고가로	高價	비싼 값으로
366	고가의	高架	지상 위, 높은 곳에 설치하는, 고가(高架)의
367	고갈	枯渴	마름, 고갈
368	고결	固結	굳음, 엉겨어 굳어짐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369	고관절	股關節	엉덩관절, 고관절(엉덩관절), 고관절(股關節)
370	고대조도	高對照度	고대조도(高對照度)
371	고도의	高度의	매우 심한, 고도의
372	고리	高利	고금리
373	고무하다	鼓舞	북돋우다, 고무하다
374	고분	古墳	옛무덤
375	고사	枯死	말라 죽음, 고사
376	고서화	古書畫	고서화(古書畫)
377	고성방가를하다	高聲放歌	큰 소리를 내다
378	고수부지	高水敷地	둔치
379	고식적	古式的	재래식
380	고식적	姑息的	임시변통의, 고식적(palliative)
381	고아원	孤兒院	보육원
382	고옥	古屋	옛집
383	고원	高原	높은 지대, 고원
384	고저	高低	높고 낮음, 높낮이, 고저
385	고저차	高低差	고저차, 높낮이 차
386	고정축거	固定軸距	고정축간거리
387	고조	高潮	고조(高潮)
388	고주파월더	高周波welder	고주파월더(고주파 용접기)
389	고지	告知	고지(告知)
390	고지대	高地帶	고지대, 높은 지대
391	고지방송	告知放送	안내 방송
392	고지하다	告知	고지(告知)하다, 알리다
393	고취	鼓吹	고취, 북돋움, 고무
394	고필, 묵적	古筆, 墨跡	유묵(遺墨: 옛사람의 필적)
395	고하다	告	알리다
396	곡가	穀價	곡물가격
397	곡각지점	曲角地點	굽은 지점, 구부러진 지점
398	곡광도	曲光度	굴절률
399	곡기비행	曲技飛行	곡예비행
400	곡분	穀粉	곡물 가루
401	곡종	穀種	곡물 종류
402	곡직	曲直	곡직(曲直)
403	곤로	焜爐	풍로, 화로
404	곤색	紺(←紺)色	감색
405	곤포	糶包	몽치, 곤포(몽치)
406	골 침식	骨 浸蝕	백침식
407	골단	骨端	뼈끝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408	골두	骨頭	뼈머리
409	골두골	骨頭骨	뼈머리
410	골반골	骨盤骨	골반뼈, 골반골(골반뼈)
411	골반환	骨盤環	골반고리
412	골분	骨粉	뱃가루, 골분(뱃가루)
413	골연골염	骨軟骨炎	뼈연골염
414	골조	骨組	뼈대, 골조
415	골편	骨片	뼈조각
416	공(公)의	公	공공의
417	공구	工區	공구, 공사구역
418	공극	孔隙	틈새
419	공내	孔內	공내(孔內: 관정 내부)
420	공내검층	孔內檢層	공내검층(孔內檢層: 관정 내부의 지층검사)
421	공대지	空對地	공중 대 지상
422	공란	空欄	빈칸
423	공로	公路	공공도로
424	공류	公流	공공유수(公共流水)
425	공률	工率	공정률
426	공막	鞏膜	흰자위막
427	공무소	公務所	공공기관, 관공서, 관계 행정기관
428	공민권	公民權	참정권
429	공법	工法	공사방법, 공법, 공법(工法)
430	공부	公簿	공적 장부, 공문서와 장부, 공문서 묶음, 공부(公簿)
431	공서양속	公序良俗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
432	공석	公席	공석(公席), 공적인 자리
433	공석	空席	공석(空席), 빈자리
434	공설	公設	공설(公設)
435	공술	供述	진술
436	공술인	供述人	진술인
437	공시	公示	공시(公示)
438	공시하다	公示	공시(公示)하다, 공개적으로 게시하다
439	공안	公安	공공의 안녕
440	공안	孔安	공내(孔內)
441	공여하다	供與	제공하다
442	공연히	公然	공공연하게
443	공용	共用	공용(共用)
444	공임	工賃	삿
445	공작물	工作物	인공구조물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446	공전	公典	규범
447	공제	控除	공제
448	공제하다	控除	빼다, 공제하다
449	공조시설	空調施設	공기조화설비시설
450	공조실	空調室	공기조화실(환기 및 냉난방 조정실)
451	공종	工種	공사 종류
452	공중	公衆	공중, (일반)사람들, 일반인
453	공중선	空中線	안테나
454	공중선주	空中線柱	안테나 기둥
455	공지	空地	빈터, 공터
456	공지통신	空地通信	공중 대 지상 통신
457	공진영역	共振領域	공진(共振, resonance) 영역
458	공차	空車	빈 차
459	공차	公差	오차, 허용오차
460	공칭안테나	共稱antenna	공동수신안테나
461	공판정	公判廷	공판법정
462	공하다	供	제공하다, 쓰이다, 사용되다 [‘공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문맥에 맞게 순화]
463	공해대	公海帶	공해대(公海帶)
464	과금	課金	요금, 요금 부과
465	과납	過納	더 냄, 과납
466	과년도	過年度	전년도, 지난해, 지난 연도
467	과다	過多	너무 많음, 과다
468	과다하다	過多	지나치게 많다, 너무 많다, 과다하다
469	과당하다	過當	(정도가) 지나치다
470	과도하다	過度	지나치다
471	과량인 경우, 과량인 때	過量	넘칠 때
472	과부	踝部	복사, 용기, 관절용기
473	과비음	過鼻音	과도한 비음(過鼻音)
474	과상부	踝上部	복사 윗부분, 위관절용기, 관절용기 윗부분
475	과세하다	課稅	세금을 매기다, 과세하다
476	과오급	過誤給	잘못 지급, 과오급(過誤給)
477	과오납	過誤納	잘못 내다, 더 내거나 잘못 내다, 과오납(過誤納)
478	과온	過溫	과온도
479	과원	過員	정원 초과, 인원 초과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480	과원이 되다	過員	정원이 초과되다, 인원이 초과되다, 정원을 넘다, 인원을 넘다
481	과잉	過剩	(도가) 지나침, (수효가) 남아돌, 초과, 과잉
482	과징하다	課徵	과징하다, 징수하다, 부과 징수하다
483	과태료에 처한다		과태료를 부과한다
484	과하다	課	(조세, 과태료를) 부과하다
485	과하다 (별금을 과하다)	科	~에게는 형벌을 과(科)하다, ~에게는 벌금을 과(科)하다, ~은 ○○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486	관개	灌溉	관개, 물대기
487	관거	管渠	관로, 배수관
488	관경	管徑	관경(관지름)
489	관계기관		관계√기관
490	관계 없다, 관계 있다		관계없다(○), 관계있다(○), 관계√없다(×), 관계√있다(×)
491	관골	顱骨	관골(광대뼈)
492	관골	臍骨	불기뼈
493	관급	官給	관급(官給)
494	관급하다	官給	(관공서에서) 지급하다, 주다
495	관능으로	官能	사람의 오감으로
496	관리환	管理換	관리환(管理換)
497	관말	管末	배관 말단
498	관망하다	觀望	바라보다, 지켜보다
499	관목	灌木	작은키나무, 관목(작은키나무)
500	관목류	灌木類	작은키나무류, 관목류(작은키나무류)
501	관사	官舍	관사(官舍)
502	관상	冠狀	관상(촉면의 수직단면)
503	관수	管守	보관, 간수(看守)
504	관용	官用	관용(官用)
505	관인관수	官印管守	관인의 보관, 관인의 보관 및 관리,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506	관장하다	管掌	맡아 처리하다, 맡다, 관장하다
507	관저	官邸	관저, 관용 저택
508	관절가동범위	關節可動範圍	관절운동범위
509	관절강	關節腔	관절공간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510	관절구축	關節拘縮	관절오그라들
511	관절낭	關節囊	관절주머니
512	관절부 염좌로서	關節部 捻挫	관절 부위가 비어
513	관절순	關節脣	관절오목테두리(labrum)
514	관정	管井	관정(管井: 우물) ㉞
515	관제엽서	官製	정부가 발행하는 우편엽서
516	관종	管種	관 종류
517	관하	管下	관할
518	관하여, 대하여	關-, 對-	에/에게, 은/는, 하기 위하여, 관하여/대하여, [가급적 다른 말로 고치고, '관하여, 대하여'를 남용하지 않는다]
519	관할○○	管轄	①관할V○○(관할V지 방자치단체) ②관할○○(관할구역) [국어사전에 한 단어로 등록된 것만 '관할'과 그 다음 단어를 붙여 쓴다]
520	관해	寬解	완화
521	관혈적 수술	觀血的手術	개방수술 ㉞
522	관혈적 정복술	觀血的 整復術	개방고정술 ㉞
523	광견	狂犬	미친개, 광견
524	광갱	鑛坑	지하채굴시설
525	광도	光度	광도, 밝기
526	광해	鑛害	광산피해, 광해(광산피해)
527	괴경	塊莖	덩이줄기
528	괴근	塊根	덩이뿌리
529	괴사창	壞死瘡	괴사종기
530	괴사창	壞死創	괴사상처
531	교두폭	咬頭幅	교두폭(치아머리 돌출 부위 사이 거리)
532	교란하다	攪亂	교란하다, 어지럽히다
533	교량	橋梁	다리
534	교목	喬木	큰나무, 교목(큰나무)
535	교목류	喬木類	큰나무류, 교목류(큰나무류)
536	교목성	喬木性	큰나무류, 교목성(큰나무류)
537	교반	攪拌	교반(攪拌), 휘저어 섞음, 교반(휘저어 섞음)
538	교반하다	攪拌	휘저어 섞다
539	교부	交付	발급, [금전의 경우] 지급, 교부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540	교부하다	交付	내주다, 주다 (돈을) 지급 하다, 내주다, 주다, (증명 서를) 내주다, 발급하다, (교부금, 교부세 등을) 교부하다, [활용]서로 교부하다→서로 주고받다
541	교사	校舍	학교 건물, 교육용 건물
542	교사하다	教唆	교사(教唆)하다
543	교상	咬傷	물림
544	교원성 질환	膠原性 疾患	결합조직병
545	교육 거버넌스	教育 governance	국가교육관리체제, 교육협업체제
546	교육기재	教育器材	교육용 기구 및 재료
547	교육필증	教育畢證	교육수료증, 교육확인증
548	교잡곡물	交雜穀物	교잡(交雜)곡물
549	교점	交點	교차점
550	교좌장치	橋坐裝置	교량받침
551	교지	校地	교육용 토지
552	교체	交替	바꿈, 교체
553	교체하다	交替	바꾸다, 교체하다
554	교합	咬合	맞물림[교합(咬合)]
555	교행	交行	교차 통행
556	교회하다	教誨	교회(教誨)하다, 잘못을 깨우치게 하다 [문맥에 맞게 다른 쉬운 말로 순화]
557	구개루	口蓋漏	입천장뺏길
558	구개수	口蓋垂	목젖
559	구개열	口蓋裂	입천장 갈림증, 구개열(입천장 갈림증)
560	구개음	口蓋音	입천장소리
561	구개인두	口蓋咽頭	입천장 안쪽
562	구거	溝渠	도랑, 구거(溝渠: 도랑)
563	구경	口徑	지름, 구경(口徑)
564	구근	球根	구근(알뿌리)
565	구독하다	購讀	사다, 사서V읽다, 구독하다
566	구두로	口頭	말로, 구두(口頭)로
567	구라인다	grinder	그라인더
568	구릉	丘陵	언덕
569	구리스	grease	그리스(grease)
570	구매하다	購買	구매하다, 사다
571	구명동의	救命胴衣	구명조끼
572	구명하다	究明	밝히다, 밝혀내다, 알아내다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573	구문	歐文	영문자, 유럽 문자
574	○○구배	偸背	○○뒤굽음
575	구배	勾配	기울기, 경사, 경사도, 비탈, 오르막
576	구배표	勾配表	기울기표
577	구보	驅步	달리기
578	구비	具備	갖춤, 구비
579	구비서류	具備書類	첨부서류, 붙임서류
580	구비하다	具備	갖춰 놓다, 갖춰 두다
581	구상	求償	상환청구, 구상(求償)
582	구상권	求償權	구상권(求償權), 상환청구권
583	구상돌기	鉤狀突起	갈고리돌기
584	구상하다	求償	상환청구를 하다
585	구서	驅鼠	쥐잡기
586	구순열	口脣裂	입술갈림
587	구순음	口脣音	입술소리
588	구술사	口述史	구술사(口述史)
589	구술하다	口述	말로 하다, 구술하다
590	구음	口音	발음
591	구입	購入	사들임, 사들이기, 구입
592	구제	驅除	없애기, 제거, 방제
593	구제	舊制	구제도(舊制度)
594	구제조치	驅除措置	없애는 조치
595	구제증명서	驅除證明書	제거증명서
596	구제하다	驅除	없애다, 제거하다
597	구조내력	構造耐力	구조내력(構造耐力)
598	구조부환	救助浮環	구명튜브
599	구좌	口座	계좌
600	구중청량제	口中	구강 청량제
601	구축	拘縮	오그라들
602	구축하다	構築	마련하다, 갖추다, 구축하다
603	구충	驅蟲	해충 제거
604	구충 및 방제	驅蟲 및 防除	병충해 예방 및 해충 제거
605	구치부	臼齒部	저차치아
606	(의견을) 구하다	求	(의견을) 듣다
607	구형	球形	구형, 공 모양
608	구획하다	區劃	구획하다, (경계를) 가른다, 구분하다, 분리하다
609	구휼	救恤	빈민 구제, 구호
610	국	麴	누룩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611	국기	國基	국가의 근본, 국가의 근간, 국기
612	국부	局部	신체 일부
613	국부적	局部的	부분적
614	국새	國璽	국새(國璽: 국가의 도장)
615	국소도포	局所塗布	부분 도포
616	국위선양(예)	國威宣揚	국가를 널리 알리는 데
617	국제반신우표권	國際返信郵票券	국제회신우표권
618	국제신호기류	國際信號旗旒	국제신호기류(국제신호깃발)
619	국·공립		국공립, 국립·공립
620	국·공립학교		국공립학교, 국립·공립학교
621	국·공유지		국유지·공유지
622	국·공·사립학교		국립·공립·사립학교
623	군계	郡界	군경계
624	군인으로서 실역	軍人 實役	현역
625	군풍기	軍風紀	군기
626	굴곡	屈曲	굽히기, 굴곡(굽히기)
627	굴곡 골절	屈曲 骨折	굽힘골절
628	굴곡근수축	屈曲筋收縮	굽힘근 수축
629	굴곡부	屈曲部	굽은 부분, 꺾인 부분, 굴곡부
630	굴삭	掘削	굴착
631	굴삭기	掘削機	굴착기
632	굴삭볼	掘削Bowl	절삭볼(Bowl & Cutting edge)
633	굴신	屈伸	굽히고 펴기
634	굴신근	屈伸筋	굽히고 펴는 근육 [屈伸筋]
635	굴신하다	屈伸	굽히고 펴다
636	굴정공사	掘井工事	구멍뚫기 공사, 굴정(구멍뚫기) 공사
637	굴진	掘進	파나감, 파 들어감, 굴진(굴 파기), 굴진(掘進)
638	굴착	掘鑿	(땅을) 팜, (굴을) 뚫음, 굴착, 땅파기, 굴착(땅파기)
639	굴착공	掘鑿工	굴착시설
640	굴착하다	掘鑿	(땅을) 파다, (굴을) 뚫다
641	굴취하다	掘取	캐내다, 파내다, 굴취하다
642	굴토	掘土	땅파기, 굴토(땅파기)
643	궁박	窮迫	절박한 사정
644	궁박한	窮迫	절박한 사정이 있는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645	(채권의) 권종	券種	(채권의) 종류
646	결석	闕席	결석
647	결원	闕員	결원
648	결원이 있는 때에는	闕員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649	결위된 때	闕位	공석이 생겼을 때
650	결하다	闕	빠지다, 비다, (오건을) 충족하지 못하다
651	궤조	軌條	철로, 레일
652	귀감	龜鑑	본보기, 귀감
653	귀석	貴石	귀석(貴石)
654	귀속조서	歸屬調書	귀속조사문서
655	귀임	歸任	복귀
656	귀환	歸還	돌아옴, 귀환
657	귀휴	歸休	일시 휴가
658	규명	糾明	규명, (사실을) 밝힘
659	규반	畦畔	밭두둑
660	규정에 의하여		에 따라(제○조에 따라)
661	규정에 의한		에 따른(제○조에 따른)
662	균분	均分	균등 배분
663	균분하다	均分	똑같이 나누다, 균등 배분하다, 동일하게 나누다, 같은 금액으로 나누다, 똑같은 비율로 나누다
664	균일하다	均一	균일하다, 고르다
665	그라인더	grinder	그라인더(절삭·연마기) 그라인더(연마기)
666	그래프	graph	그래프, 도표
667	그램	gram	그램
668	그레데이션	gradation	바림
669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문맥에 맞게 해당 내용을 풀어 쓴다. ②제외한다, 예외로 한다 ③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하위 법령에서] 그렇지 않다
670	그룹	group	그룹, 모듬
671	그리드	grid	격자(grid)
672	그린색	green色	녹색, 초록색
673	그밖에, 그밖의		그V밖에, 그V밖의
674	극상돌기	棘狀突起	가시돌기(극돌기)
675	극심한 안면추형	極甚한 顔面醜形	극심하게 흉한 얼굴의 모양
676	근	筋	근육(근)
677	근건	筋腱	근육힘줄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678	근린	近隣	이웃, 근린
679	근성	筋性	근육
680	근속하다	勤續	계속 근무하다, 근속하다
681	근위	近位	몸쪽
682	근위부	近位部	몸쪽부위
683	근위족지관절	近位足趾關節	몸쪽발가락뼈마디관절
684	근위지간	近位趾間	몸쪽 발가락뼈 사이
685	근위지간	近位指間	몸쪽 손가락뼈 사이
686	근위지관절	近位趾關節	근위지관절(몸쪽발가락 뼈마디관절)
687	근위지관절	近位指關節	근위지관절(몸쪽손가락 뼈마디관절)
688	근위지절간 관절	近位指節間關節	몸쪽손가락뼈마디관절, 근위지관절(몸쪽손가락 뼈마디관절)
689	근위지절간 관절	近位趾節間關節	몸쪽발가락뼈마디관절, 근위지관절(몸쪽발가락 뼈마디관절)
690	근입장	根入長	근입장(매설 길이)
691	근접하다	近接	가까이 닿다, 가깝다, 근접하다
692	금렵구, 금렵구역	禁獵區	사냥금지구역
693	금색사	金色絲	금색실
694	금속흄	金屬fume	금속분진(fume), 금속열분진, 금속열먼지
695	금원	金員	금액, 금품
696	금지	禁制	금지
697	금지품	禁制品	금지품
698	금치	禁置	금치(禁置)
699	금회	今回	이번
700	금후	今後	향후, 장래에
701	급부금	給付金	지급금
702	급속	急速	시급, 급히, 빨리, 몹시 빨리
703	급수	給水	물 대기, 물 공급, 급수
704	급시를 요하는	急施	시급히 시행해야 하는, 시급히 필요한, 긴급한
705	급양	給養	음식과 의복, (의복과) 식사, 급양(給養)
706	급여	給與	먹이공급
707	급여대품	給與貨品	급여품 및 대여품
708	급유	給油	유류 공급, 급유
709	급이	給餌	먹이공급
710	급탄	給炭	연탄 공급, 석탄 공급, 급탄(給炭)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711	기	既	이미, 기존에
712	기	旗	깃발
713	기거	起居	생활, 기거
714	기금의 운영	運營	기금의 운용
715	기납	既納	기납, 이미 냄
716	기능부전	機能不全	기능장애
717	기단	旗團	기수단
718	기도	企圖	기도, 꾀함
719	기동	起動	몸을 일으켜 움직임
720	기류 신호	旗旒	기류신호(깃발신호)
721	기립	起立	기립, 일어섬
722	기립하다	起立	일어서다
723	기만	欺瞞	속임, 기만
724	기망	欺罔	속임
725	기면병	嗜眠病	발작수면
726	기밀부유식	氣密浮游式	밀폐되어 부상하는 방식, 기밀부유식(밀폐되어 부상하는 방식)
727	기복용	起伏用	기복용(높낮이와 각도 등을 조절하는 용도)
728	기복장치	起伏裝置	기복장치(높낮이와 각도 등을 조절하는 장치)
729	기부채납	寄附採納	기부수령
730	기산하다	起算	~부터 계산하다, 기산(起算)하다
731	기상치	氣象值	기상기준값
732	기선	基線	기준선
733	기설	既設	이미 설정, 이미 만들
734	기성고	既成高	성과, 실적, ['돈'일 때] 기성액
735	기성의	既成	기성, 기성의, 이루어진
736	기수의	既遂	기수(既遂)의
737	기승하다	騎乘	(말을) 타다
738	기실	氣室	기실(공기주머니)
739	기아	棄兒	버려진 아이, 기아, 기아(棄兒)
740	기아	gear	기어, 변속장치
741	기여하다	寄與	이바지하다, 기여하다
742	기왕	既往	이미, 벌써, 그전, 이전
743	기왕증	既往症	과거 질병, 과거 증세, 기존 병력, 기존 병력(기왕증)
744	기율	紀律	규율
745	기인	起因	원인, 까닭, 인하여, 기인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746	기일	忌日	제삿날, 기일
747	기일	期日	기일, 특정한 날이나 기간
748	기장	旗章	기장(旗章)
749	기장	記帳	장부 기록
750	기장하다	記帳	(장부에) 적다, 써넣다, 기록하다, 기재하다
751	기구·기재	器材	기구·재료
752	기재하다	記載	쓰다, 적다, 적어 넣다, 써넣다, (장부/대장/명부에) 기록하다, (전자문서에) 기재하다
753	기절골	基節骨	첫마디뼈
754	기점	起點	출발점, 시작점, 기점
755	기착	寄着	기착, 들름
756	기채	起債	공채(公債) 모집, 기채(起債)
757	기채지	起債地	공채(公債) 모집 장소, 기채지(起債地)
758	기치	旗幟	깃발
759	기타	其他	그 밖의, 그 밖에
760	기타 필요한 사항	其他	그 밖에 필요한 사항
761	기탁하다	寄託	기탁하다, 부탁하여 ~에 맡기다
762	기포	氣泡	기포, 거품, 공기
763	기풍	氣風	분위기
764	기피하다	忌避	꺼리다, 피하다, 기피하다
765	기하다	企	도모하다, 꾀하다
766	기하다	基	~에 따르다, ~를 바탕으로 하다
767	기한	基	근거한, 기초한, 바탕으로 한
768	기한 내	期限內	기한까지
769	기항지	寄港地	기항지(寄港地)
770	기화로	奇貨	이용하여, 핑계로
771	기흉	氣胸	공기기흉증, 공기기흉증(기흉), 기흉(공기기흉증)
772	기히	既	이미
773	긴급을 요할 때		긴급히 조치해야 할 때, 긴급한 경우, 긴급한 사항인 경우
774	~이/가 긴절이 요구하다		~에 꼭 필요하다, 긴절이(×)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775	긴질히	緊切	절실히
776	길어깨		갓길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777	까스	gas	가스(○), 까스(×)
778	깁연	喫煙	흡연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779	나동연선	裸銅鉛線	노출된 동연선(銅鉛線), 민구리납출
780	나맥	裸麥	쌀보리
781	나안	裸眼	맨눈, 나안(맨눈)
782	나충전부	裸充電部	노출된 충전부, 노출충전부
783	나포하다	拿捕	붙잡다, 나포하다
784	낙도	落島	외딴섬, 낙도
785	낙뢰	落雷	벼락
786	낙부	諾否	승낙 여부
787	낙상	落傷	떨어져 다친, 낙상
788	낙질도가 심하다	洛帙度	결본(缺本: 빠진 책)이 많다
789	낙하물	落下物	떨어진(떨어지는) 물체, 낙하물
790	낙하하다	落下	떨어지다, 낙하하다
791	낙후	落後	뒤떨어짐
792	난굴	亂掘	함부로 팜, 마구 파냄, 난굴
793	난류	卵類	알 종류
794	난백	卵白	알 흰자
795	난분	卵粉	달걀가루, 난분(卵粉)
796	난시청	難視聽	시청이 어려움, 난시청
797	난황	卵黃	알 노른자
798	날인하다	捺印	도장(을) 찍다, 날인하다
799	날조	捏造	(사실처럼) 꾸밈, 지어냄, 날조
800	남빙양	南氷洋	남극해
801	납골당	納骨堂	봉안당
802	납골묘	納骨墓	봉안묘
803	납기	納期	납부기한, 납기
804	납득하다	納得	수긍하다, 받아들이다
805	납기일	納期日	납부기한, 납품기한, 납품기일, 납기일
806	납부하다	納付	내다, 납부하다
807	납입	納入	냄, 치름, 납입
808	납입필통지서	納入義務通知書	납입확인통지서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809	낭종성신	囊腫性腎	낭종성 신장
810	내	內	내, 안
811	내경	內徑	안지름
812	내과	內科	안쪽 복사, 안쪽 복사뼈
813	내과골	內踝骨	안쪽 복사뼈
814	내관	內管	내관(內管)
815	내구연수	耐久年數	사용 가능 기간, 사용 가능 기간(사용연수)
816	내구연한	耐久年限	사용 가능 햇수, 사용 가능 기간
817	내당능장애	內糖能障礙	포도당 내성장애
818	내력	耐力	내력(耐力)
819	내륜	內輪	안쪽 바퀴, 안쪽 둘레, 안둘레
820	내반족	內反足	발꿈치안쪽흔발
821	내방	來訪	찾아옴
822	내번	內瓣	안쪽 뒤집기, 내번(안쪽 뒤집기)
823	내벽	內壁	안쪽 벽
824	내분비선	內分泌腺	내분비샘
825	내성	耐性	견딜성, 견디는 성질, 내성(耐性)
826	내수성	耐水性	내수성(耐水性)
827	내수용	內需用	국내 소비용, 내수용
828	내식가공	耐蝕加工	부식 방지 가공
829	내식성	耐蝕性	내식성(耐蝕性), 내식성(부식이나 침식을 잘 견디는 성질)
830	내신	內申	내부 보고
831	내역	內譯	(비용)명세, (사업)내용, 구체적인 내용
832	내역서	內譯書	명세서
833	내왕하다	來往	오가다
834	내외경 마이크로메타	內外鏡 micrometer	내외경 마이크로미터 (내외경미세측정기)
835	내외경퍼스	內外鏡	내외경퍼스(안팎 지름 측정기)
836	내외과	內外踝	안쪽·바깥쪽 복사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837	내외반	内外反	안굽음·밖굽음[内外反]
838	내외전	内外轉	모으기·벌리기[内外轉]
839	내외측	内外側	안쪽·바깥쪽, 내외측
840	내외측부	内外側部	안쪽·바깥쪽
841	내용년수, 내용연수	耐用年數	내용연수(耐用年數), 사용 가능 햇수
842	내유성	耐油性	내유성(耐油性)
843	내이	內耳	속귀
844	내자	內資	내국자본
845	내재해	耐災害	재해저항성
846	내전	內轉	모으기, 내전(모으기)
847	내지	乃至	[사물인 경우, 수량(숫자)이 아닌 경우] 또는 [수량(숫자)과 어울려 쓰는 경우] ~부터 ~까지, ~이상 ~이하
848	내직경	內直徑	안쪽지름
849	내진	耐塵	내진(耐塵)
850	내진	耐震	내진(耐震)
851	내찰	內札	안쪽 표지
852	내측	內側	안쪽
853	내측부	內側部	안쪽
854	내회전	內回轉	안쪽 돌리기
855	냉동용 쇼케이스	冷凍用 show case	냉동 진열상자, 냉동용 진열상자
856	냉조풍지대	冷潮風地帶	찬 바닷바람 지대
857	너트	nut	너트, 암나사
858	네블라이저	nebulizer	의료용 분무기(nebulizer) ※ 규범표기: 네블라이저
859	네일	nail	손톱·발톱
860	네트워킹	networking	연결망 구축
861	년월일	年月日	연월일, 제조연월일(○), 제조년월일(×)
862	노	爐	노(爐), 가열로
863	노견	路肩	갓길
864	노내	爐內	연소실 내부
865	노면전차	路面電車	트램
866	노목	老木	노목(老木)
867	노반	路盤	토대, 지반
868	노변	路邊	도로변, 길가
869	노뼈 골두골	檣骨 骨頭骨	노뼈머리
870	노상	路上	길, 노상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871	노유자	老幼者	노인과 어린이, 노유자, 노인·어린이, 노유자(노인·어린이)
872	노유자시설	老幼者施設	노인·어린이시설
873	노임	勞賃	임금, 품삯
874	노출하다	露出	드러내다, 노출하다
875	노트	note	공책, 노트
876	노폭	路幅	길 폭, 길 너비
877	노형	爐型	노형(爐型)
878	노후하다	老朽	낡아서 못쓰게 되다, 낡다
879	녹등	綠燈	녹색 등불
880	녹비	綠肥	풋거름
881	녹취기	錄取機	녹음기
882	논슬립	non-slip	미끄럼 방지장치
883	농(膿)	膿	고름
884	농가실증	農家實證	농가적용, 농가적용검증
885	농무기	濃霧期	안개철, 안개가 많은 철
886	농반	膿盤	의료용 쟁반
887	농아자	聾啞者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청각 또는 언어 장애인
888	농양	膿瘍	고름집
889	농용	農用	농업용
890	농자	聾者	청각장애인
891	농흉	膿胸	고름기슴증
892	뇌격	雷擊	어뢰 공격
893	뇌골	腦骨	뇌머리뼈, 뇌골(뇌머리뼈)
894	뇌우	雷雨	뇌우(雷雨)
895	뇌전	雷電	천둥번개
896	뇌좌상	腦挫傷	뇌타박상
897	뇨	尿	오줌
898	누	樓	누각
899	누공	瘻孔	샐길
900	누광	漏光	새는 빛, 누광(漏光), 빛이 새는 것
901	누광되다	漏光	빛이 새다
902	누낭	淚囊	눈물주머니
903	누락되다, 누락하다	漏落	빠뜨리다, 빠지다
904	누수	漏水	누수, 물이 새
905	누정	樓亭	누각, 정자
906	누출하다	漏出	새다, 새어 나가다
907	늑골	肋骨	갈비뼈, 늑골(갈비뼈)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908	늑골흉막	肋骨胸膜	갈비가슴막(늑골흉막)
909	늑막천자	肋膜穿刺	가슴막천자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910	늑연골	肋軟骨	갈비연골(늑연골)
911	능원	陵園	능원(陵園)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912	다과	多寡	많고 적음
913	다낭신증	多囊腎症	못주머니신장
914	다년생	多年生	여러해살이, 다년생
915	다대한	多大	큰, 많은
916	다류	茶類	차 종류
917	다모작	多毛作	여러 번 짓기 (☹)
918	다방	茶房	차집
919	다빈도질환	多頻度疾患	자주 발생하는 질환
920	다수인	多數人	여럿, 여러 명
921	다액	多額	많은 액수, 많은 금액, 법정형의 상한
922	다운로드	download	내려받기
923	다음해		다음 해
924	다이얼 게이지	dial gauge	다이얼게이지(툼니바퀴 식 측정기)
925	다제내성	多劑耐性	여러 약제 저항성
926	다중	多衆	다중, 여러, 많은
927	다층	多層	여러 층
928	다태아	多胎兒	다태아(多胎兒)
929	단단문합술	端端吻合術	끝끝연결술
930	단독	單獨	혼자, 혼자서, 홀로, 단독
931	단락	斷絡	단락(斷絡)
932	단락	短絡	단락(短絡)
933	단목	單木	단목(單木, single tree)
934	단미	斷尾	꼬리 자름, 꼬리 자르기
935	단변	短邊	짧은 변
936	단부호	短符號	짧은 신호
937	단성	短聲	짧은 소리
938	단성생식 행위	單性生殖 行爲	단성생식행위 (單性生殖行爲)
939	단수	端數	끝수, 우수리, 거스름돈, 나머지
940	단수하다	斷水	물 대기를 중단하다, 물 공급을 중단하다
941	단순신낭종	單純腎囊腫	단순신장낭종
942	단안	單眼	한눈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943	단애·절벽	斷崖·絶壁	절벽
944	단음	短音	짧은소리, 단음
945	단정	短艇	작은 배
946	단주식	單柱式	출기등식
947	단축	短縮	줄임, 짧아짐, 단축(짧아짐), 단축
948	단축하다	短縮	줄이다
949	단할인법	單割引法	단리할인법
950	단화	短靴	구두
951	달성하다	達成	이루다, 이룩하다, 달성하다
952	담낭	膽囊	쓸개
953	담도	膽道	쓸개길
954	담마진	蕁麻疹	두드러기
955	담수	淡水	민물
956	담수어	淡水魚	민물고기
957	담수화	淡水化	민물화
958	답	畜	논
959	답신	答申	응답
960	답작	畜作	논농사
961	답판등	踏板燈	발판등
962	당	當	~당[시간당, 마리당, 40명당]
963	당도	糖度	당의 정도, 단맛 정도, 달기, 당도
964	당면	當面	닥침, 당면
965	당부	當否	(처분의) 옳고 그름, 마땅함과 그렇지 않음, 당부(當否)
966	당월	當月	그달
967	당일	當日	그날
968	당초	當初	당초, 맨 처음, 애초, 이전에, 원래
969	당탑	堂塔	전당, 탑
970	당해	當該	해당, 그 ['그'는 '그'가 지시하는 바가 문장에서 명확히 드러날 때에 사용]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971	대	岱	대(岱)
972	대구치	大臼齒	큰어금니
973	대기하다	待機	기다리다
974	대납	代納	대신 냄, 대신 납부
975	대뇌소증상	大腦所症狀	대뇌국소증상
976	대동하고	帶同	더불어, 함께, 데리고
977	대동하다	帶同	데리고 가다, 데리고 오다
978	대두	大豆	콩
979	대두박	大豆粕	콩깻묵
980	대두유	大豆油	콩기름
981	대로	大路	큰길, 한길
982	대료	代料	대금, 값
983	대마	大麻	삼
984	대맥	大麥	보리, 걸보리
985	대목	臺木	접본, 대목(臺木)
986	대무	代務	대리 근무
987	대별하다	大別	크게 나누다
988	대부하다	貸付	빌려주다, 대출하다, 대여하다, 대부하다
989	대불금	代拂金	대신 지급금
990	대사하다	對査	대조 확인하다, 대조 조사하다, 대조하여 조사하다
991	대상	代償	대상(代償)
992	대상목	對象木	대상이 되는 나무
993	대서사	代書士	법무사, 행정사
994	대서하다	代書	대신 쓰다, 대신 작성하다
995	대선하다	貸船	배를 빌리다
996	대소	大小	크고 작음, 크기
997	대수정규 분포	對數正規分布	대수정규분포 (log-normal distribution, 對數正規分布)
998	대안	對岸	건너편, 건너편 언덕
999	대여	貸與	빌려줌, 대여
1000	대여하다	貸與	빌려주다, 대여하다
1001	대오	隊伍	대열, 대오(隊伍)
1002	대위	代位	대위(○), 대신(×)
1003	대음영	大陰影	큰음영
1004	대응하다	對應	맞추다, 대응하다
1005	대전	代錢	대금, 값, 가격, 돈
1006	대전자부	大轉子部	큰돌기
1007	대좌하다	對坐	마주 앉다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1008	대주	貸主	빌려준 사람, 대주(貸主)
1009	대집행	代執行	대집행(代執行)
1010	대차대조표	貸借對照表	재무상태표
1011	대체하다	代替	바꾸다
1012	대출하다	貸出	빌려주다, 대출하다
1013	대측신	對側腎	반대측신장, 반대쪽 신장
1014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015	대퇴	大腿	넓적다리
1016	대퇴 사두근	大腿 四頭筋	넓적다리 네갈래근
1017	대퇴 이두근	大腿 二頭筋	넓적다리 두갈래근
1018	대퇴골	大腿骨	넓적다리뼈, 대퇴골(넓다리뼈)
1019	대퇴골 간부	大腿骨 幹部	넓적다리뼈 몸통, 넓적다리뼈 중간부분
1020	대퇴골 골두	大腿骨 骨頭	넓적다리뼈머리
1021	대퇴골 과부	大腿骨 顆部	넓적다리뼈관절용기
1022	대퇴골 과부 견연 골절	大腿骨 顆部 牽連(←裂) 骨折	넓적다리뼈 관절용기 찢김골절
1023	대퇴골 대전자부	大腿骨 大轉子部	넓적다리뼈 큰돌기
1024	대퇴골 소전자부	大腿骨 小轉子部	넓적다리뼈 작은돌기
1025	대퇴골두	大腿骨頭	넓적다리뼈머리, 대퇴골두(넓적다리뼈머리), 넓적다리뼈머리 (대퇴골두)
1026	대퇴과간	大腿踝間	넓적다리 복사 사이, 웅기사이오목, 넓적다리관절용기 사이
1027	대퇴내전 방지패드	大腿內轉 防止pad	대퇴내전방지패드(넓적 다리 모으기 방지 패드)
1028	대퇴부	大腿部	넓적다리, 넓적다리 부위, 넓적다리(대퇴부)
1029	대퇴부전 외측	大腿部前 外側	넓적다리 전외측
1030	대퇴신경	大腿神經	넓적다리뼈신경
1031	대폭	大幅	많이, 크게, 넓게
1032	대표브랜드	代表brand	대표상표, 대표상품
1033	대하	貸下	빌려줌, 대여
1034	대하금	貸下金	(정부로부터의) 차입금, (정부로부터의) 대출금
1035	대하여는		에는/에게는, 대해서는, 은/는(예: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 정보는)
1036	대합실	待合室	대기실, 맞이방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1037	대향차로	對向車路	반대 방향 차로
1038	대향하다	對向	마주 보다
1039	대흉근	大胸筋	큰가슴근
1040	대·개체	代改替	교체
1041	댄서	dancer	무용가, 춤추는 사람
1042	데		① ~데: 갔는데 ② V데: 가는 데, 가는 데에
1043	데마케이션	demarcation	디딤판경계틀 (demarcation)
1044	데오드 라이트	Theodolite	세오돌라이트 (Theodolite), 경위기(經緯器)
1045	데이터	data	자료, 데이터(○), 데이터(×)
1046	뎃상	dessin	데상(○), 뎃상(×)
1047	도검	刀劍	칼
1048	도계	道界	도경계
1049	도과하다	到過/徒過	지나다, (기간을) 넘기다
1050	도괴	倒壞	무너짐, 무너뜨림
1051	도교	渡橋	다리
1052	도뇨관	導尿管	소변배출관(도뇨관)
1053	도달일	到達日	도달한 날짜
1054	도래	到來	이름, 도래(到來)
1055	도래하다	到來	이르다
1056	도료	塗料	칠, 칠감, 도료
1057	도막	塗膜	도막(도료 도포막)
1058	도말하다	塗抹	지워 없애다
1059	도모	圖謀	꾀함, 도모
1060	도박	賭博	노름, 도박
1061	도벌	盜伐	몰래 베기, 도벌(盜伐)
1062	도복목	倒伏木	쓰러진 나무
1063	도복장	塗覆裝	도장 및 복장
1064	도비	道費	도의 경비, 도비(道費)
1065	도상연습	圖上練習	가상연습
1066	도색하다	塗色	색칠하다, 칠하다
1067	도서	島嶼	섬
1068	도선	導船	수로 안내
1069	도선	渡船	나룻배
1070	도선장	渡船場	나루터
1071	도수	導水	물을 끌어들임, 물을 끌어올림
1072	도수근력	徒手筋力	도수근력(손근력)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1073	도수로	導水路	도수로(導水路) ㉠
1074	도수정복	徒手整備	맨손위치복원
1075	도시	圖示	그림으로 보임, 그려 보임, ~을 그리는 방법
1076	도어개폐 장치	door 開閉裝置	문 여닫이 장치
1077	도용하다	盜用	도용(盜用)하다, 훔쳐 쓰다, 몰래 쓰다
1078	도입하다	導入	들여오다, 도입하다
1079	도자	陶瓷	도기와 자기
1080	도장	塗裝	색칠, 도색, 칠하기
1081	도장하다	塗裝	칠하다
1082	도전부	導電部	전기전도부
1083	도정	搗精	방아 찧기
1084	도정공장	搗精工場	정미소, 도정공장
1085	도주하다	逃走	달아나다, 도주하다
1086	도지	圖誌	그림과 기록물
1087	도출하다	導出	도출하다, 이끌어 내다
1088	도크	dock	독
1089	도포	塗布	바르기, 도포
1090	도포하다	塗布	바르다, 도포하다
1091	도품	盜品	도난 물품
1092	도화	圖畫	그림, 도안과 그림, 도화(圖畫)
1093	독거수용	獨居收容	독방 수용
1094	독거실	獨居室	독방
1095	독거인이거나	獨居人	혼자 거주하거나
1096	독려하다	督勵	감독하며 격려하다, 독려하다
1097	독림가	篤林家	독림가(篤林家: 모범 임업경영인)
1098	돈지	豚脂	돼지기름, 돼지비계, 돈지(돼지기름)
1099	돈지육	豚枝肉	돼지의 지육
1100	돌제	突堤	돌출 제방
1101	돌출	突出	튀어나옴, 돌출, 돌출
1102	돌출부	突出部	튀어나온 부분, 내민 부분, 돌출부
1103	돌핀	dolphin	배알뚝
1104	동공령	瞳孔領	눈동자
1105	동년	同年	같은 해, 그해
1106	동등 이상의 학력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1107	동맥관개 존증	動脈管開 存症	동맥관열림증
1108	동반	同伴	함께 옴, 함께 감
1109	동법, 동조, 동향, 동호, 동목		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향, 같은 호, 같은 목
1110	동복	冬服	겨울옷, 동복
1111	동선	銅線	구리선, 동선(銅線)
1112	동승자	同乘者	같이 탄 사람, 동승자
1113	동의없이		동의\없이
1114	동일, 동일한	同一	같은, 동일한
1115	동자	同字	같은 글자
1116	동전	同前	위와 같음, 앞과 같음, 앞 조와 같음, [조 제목에서] 바로 앞 조의 제목으로 바뀌 씀
1117	동점도	動粘度	운동점성계수
1118	동종	同種	같은 종류
1119	동체	胴體	몸통, 동체(胴體)
1120	동측	同側	같은 쪽
1121	동태	動態	움직임, 동태
1122	동행하다	同行	함께 가다, 같이 가다, 동행하다
1123	두	頭	마리 [말 10두 → 말 10마리]
1124	두개	頭蓋	머리뼈
1125	두개강	頭蓋腔	머리뼈안(두개강)
1126	두개골	頭蓋骨	머리뼈
1127	두개부	頭蓋部	머리 부위
1128	두경부	頭頸部	머리·목 부위
1129	두류	豆類	콩류
1130	두문	頭文	머리말
1131	두발	頭髮	머리털, 머리, 머리카락
1132	두부	頭部	머리, 머리부위
1133	두수	頭數	머릿수
1134	두절되다	杜絶	끊기다, 끊어지다
1135	두정골	頭頂骨	마루뼈
1136	두창	痘瘡	마마, 천연두
1137	둔부	臀部	엉덩이 부위
1138	드라이브스루 (진료/검진)	drive- through	승차(진료/검진)
1139	드레싱	dressing	상처 소독, 소독(dressing)
1140	드레싱세트	dressing set	상처 소독 세트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1141	드레싱카	dressing- car	상처소독용 이동식 밀차, 상처소독용 이동식 수레
1142	드릴	drill	송곳, 기계송곳, 돌개송곳, 천공기, 드릴
1143	드릴링머신, 드릴머신인	drilling machine	드릴링머신 (구멍 뚫는 기계) * 머신(○), 머신인(×)
1144	득실	得失	얻고 잃음, 취득과 상실
1145	득하다	得	반다, 얻다
1146	등	等	등 [* 약칭할 때는 앞말과 붙여 쓸 수 있음]
1147	등광색	燈光色	등불색, 등불빛
1148	등귀하다	騰貴	(가격이) 오르다
1149	등급분류필증	等級分類專證	등급분류증명서
1150	등기부 등·초본	登記簿 騰·抄本	등기부 등본·초본, 등기부 등본과 등기부 초본
1151	등록필증	登錄專證	등록확인증
1152	등사	騰寫	복사
1153	등재되다, 등재하다	登載	올리다, 올라 있다, 싣다, 싣리다, 기록하여 올리다, 등재하다, 등재되다
1154	등초하다	騰抄	복사하다
1155	등화	燈火	[도로교통 관련 법령에서 등화장치]의 총칭으로 쓸 때 등화(燈火), 불빛, 등불
1156	등화관제	燈火管制	불빛가리기, 등화관제
1157	디지털 포렌식	digital forensic	디지털포렌식 (digitalforensic: 전자법의학수사)
1158	디티에이피 (DTaP)	DTaP	디티에이피(DTaP: 디프테리아/파상풍/ 백일해)
1159	디티에이피- 아이피브이 (DTaP-IPV)	DTaP-IPV	디티에이피-아이피브이 (DTaP-IPV: 디프테리아/ 파상풍/백일해/폴리오)
1160	또는		또는, 나, 이나, 거나, 선표, [문장 전체를 풀어 쓴다]
1161	또는 (예: A·B 또는 C)		A, B 또는 C, A나 B 또는 C, A·B 또는 C, A, B, C를 각 호를 만들어서 표시

ㄹ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1162	라디에이터	radiator	라디에이터(방열기)
1163	라바콘/ 러버콘	rubber cone	안전고깔, 고깔봉(러버콘)
1164	라우터	router	라우터(네트워크 연결장치)
1165	라인	line	줄, 선, 라인
1166	랜덤	random	무작위
1167	램프	lamp	등, 표시등
1168	램프	ramp	램프(경사식 진출입로) (㉞)
1169	램프게이트	ramp gate	램프게이트 (경사식 진출입문)
1170	램프웨이	rampway	램프웨이 (경사식 진출입 도로)
1171	랩트레이	lap tray	랩트레이(보조받침)
1172	레벨경보 시스템	level alarm system	수준경보장치, 수준경보체제
1173	레이돔	radome	레이더 안테나 덮개
1174	레이아웃	layout	배열, 배치
1175	레인코트	raincoat	비옷, 우비
1176	레일	rail	철로, 레일, 궤도
1177	레자	leather	인조 가죽
1178	레코드	record	음반, 기록
1179	렉카(차)	wrecker (車)	견인차 ※ 'wrecker'의 규범 표기: 레커
1180	로더	loader	로더(loader: 올리개)
1181	로드킬	roadkill	동물 차길 사고
1182	로서의 (예: 주재자 로서의 품위)		문맥에 맞게 고침 (예: 주재자로서 지녀야 할 품위)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1183	로올러	roller	롤러(○), 로올러(×)
1184	로타리식	rotary式	회전식, 로타리식
1185	로트	lot	제조단위, 롯트(×)
1186	로프	rope	줄, 밧줄, 로프(○) 로우프(×)
1187	루	瘻	셋길, 루(셋길)
1188	룩스	lux	럭스
1189	룸쿨러	room cooler	냉방기
1190	리	里	리, 동·리 [* 里에는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고 '리'를 쓴다]
1191	리더기	reader機	판독기
1192	리듀서, 리듀셔, 레듀샤	reducer	관 이음쇠, 리듀서
1193	리벳	rivet	리벳(동근 버섯모양의 굵은 못)
1194	리셋/리세팅	reset	재설정
1195	리스크(관리)	risk	위험 (관리)
1196	리스프랑 관절	Lisfranc 關節	발목발허리관절(족근중 족관절), 리스프랑관절 (발목발허리관절) (㉞)
1197	리스프랑씨시 (Lisfranc) 관절	Lisfranc 씨시關節	발목발허리관절 (Lisfranc joint: 족근중족관절)
1198	리어 서스펜션	rear suspension	후면 현가장치 (리어 서스펜션)
1199	리어도어	rear door	뒷문(리어도어)
1200	리콜	recall	제작결함 시정
1201	림프선염	lymph腺炎	림프샘염, 임파선염(×)
1202	링겔만 비탁표	Ringelmenn 比濁表	링겔만 매연 농도표 (Ringelmenn smoke chart)

ㄹ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1203	마대	麻袋	자루, 포대
1204	마멸하다, 마멸되다	磨滅	닳다, 마멸하다, 닳아 없어지다
1205	마모	磨耗	닳아 없어짐, 마모
1206	마미총	馬尾총	말총
1207	마스크	mask	얼굴막이, 가리개, 입가리개, 탈, 마스크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1208	마스트	mast	돛대
1209	마이크로 웨이브	microwave	전자레인지
1210	마제신	馬蹄腎	말굽공팔, 말굽신장
1211	마포	麻布	삼베
1212	마필	馬匹	말
1213	만경	蔓莖	덩굴줄기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1214	만곡	彎曲	만곡(굽음)
1215	만곡각도	彎曲角度	굽은 각도
1216	만곡부	彎曲部	만곡부(彎曲部: 굽은 구간)
1217	만기력부	滿期曆簿	형기 종료 기록부
1218	만료	滿了	끝남, 마침, 만료
1219	만료일	滿了日	끝나는 날, 만료일
1220	만연	蔓延	번짐, 널리 퍼짐
1221	만재하다	滿載	가득 싣다, 가득 채우다
1222	만찬	晚餐	저녁식사, 만찬
1223	말가이그니 씨 골절	Malgaigne 骨折	말개뉴 골절 (㉸)
1224	말관절	末關節	끝마디뼈, 끝마디 관절
1225	말단	末端	끝, 하위, 끝부분
1226	말미	末尾	끝부분, 끝, 뒤
1227	말소하다	抹消	지워 없애다
1228	말일	末日	[구체적인 날짜를 쓴다] 예: 1월 31일, 6월 30일 * 예외: 2월 말일
1229	말절골	末節骨	끝마디뼈(말절골(末節骨))
1230	맛사지	massage	마사지(○), 맛사지(×)
1231	망구전개판	網口展開板	전개판(展開板), 그물 전개판(展開板) (㉸)
1232	망실	亡失	잃음, 잃어버림, 분실, 상실
1233	망실하다	亡失	잃다, 잃어버리다
1234	매	枚	(사진 몇) 장
1235	매 ~마다, (매 5년마다)		마다, (5년마다)
1236	매각하다	賣却	팔다, 매각하다
1237	매기	每期	기마다, 매기, 매기(每期)
1238	매뉴얼	manual	매뉴얼(○), 지침서, 설명서, 안내서, 매뉴얼(×)
1239	매니폴드	manifold	매니폴드 (여러 개의 가지관)
1240	매도인	賣渡人	매도인, 파는 사람, 판 사람
1241	매득금	賣得金	판매한 돈, 판매금액
1242	매립	埋立	매움, 매립
1243	매몰	埋沒	파묻음
1244	매몰되다	埋沒	파묻히다, 묻히다
1245	매몰하다	埋沒	묻다
1246	매복마케팅	埋伏 marketing	후원오인유발마케팅
1247	매설하다	埋設	파묻다, 매설하다
1248	매수	枚數	장수, 통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1249	매수하다	買受	매수(買受)하다
1250	매수하다	買收	사다, 매수(買收)하다
1251	매식한 음식물	買食한 飲食物	외부 음식물
1252	매식하다	買食	사서 먹다
1253	매엽	每葉	면마다, 장마다, 쪽마다
1254	매입하다	買入	사들이다, 매입하다
1255	매장물	埋藏物	묻힌 물건, 매장물
1256	매장하다	埋葬	묻다, 매장하다
1257	매점	買占	사재기
1258	매점	賣店	가게
1259	매직	每職	직급마다, 직종마다
1260	매출	賣出	판매, 팔기, 매출
1261	매회계연도	每會計年度	매회계연도
1262	맥관	脈管	혈관
1263	맥락막 열구	脈絡膜 裂口	맥락막 고랑
1264	맥류	麥類	보리류, 보리
1265	맥아	麥芽	엿기름
1266	맹인, 맹자	盲人, 盲者	시각장애인
1267	멀칭	mulching	멀칭(비닐덮기)
1268	멀칭제	mulching 製	멀칭제(덮는 형태 제제)
1269	멀티미터	multimeter	멀티미터(multimeter: 휴대용 전류 전압계)
1270	멀티테스터 (기)	multitester (機)	전기회로시험기, 회로시험기, 전기회로 시험기(멀티테스터기), 회로시험기(멀티테스터)
1271	멀티포맷 컨버터	multi- format converter	다중포맷 변환기
1272	메가폰	megaphone	손확성기(메가폰)
1273	메시/메쉬	mesh	그물망
1274	메이크업	makeup	화장·분장
1275	메커니즘	mechanism	작용원리
1276	메타센터	metacenter	메타센터
1277	면계	面界	면경계
1278	면류	麵類	국수류
1279	면소	免訴	면소(免訴)
1280	면식이 있다	面識	안면이 있다
1281	면전(에서)	面前	(~의) 앞(에서)
1282	면탈하다	免脫	벗어나다
1283	면화	棉花	목화
1284	멸각하다	滅却	없애버리다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1285	명기하다	明記	• 명확하게(명확히) 적다/기록하다 • 분명히 적다/기록하다
1286	명도	明渡	내중, 내어중, 넘겨중, 비워중
1287	명멸하다	明滅	감박거리다, 켜지고 꺼지다
1288	명목의 여부를 불문하고	名目的如何를 不問하고	어떤 명목으로도, 어떤 까닭으로도, 어떤 이유로도
1289	명세	明細	명세, 내용 * 내역(×)
1290	명시측량	明示測量	측량
1291	명시하다	明示	분명하게 밝히다, 분명하게 적다, 구체적으로 밝히다
1292	명의	名義	명의, 이름
1293	명찰	名札	이름표
1294	명칭	名稱	이름, 명칭
1295	명패	名牌	이름패, 명패
1296	명하다 (예: 영업의 정지를 명하다)	命	처분을 하다, 명하다 * 명령하다(×)
1297	모	母	어머니
1298	모니터링단	monitoring 團	감시단, 점검단, 정보수집단
1299	모달 프로그램	modal program	모달(modal)프로그램 (진동 분석 프로그램)
1300	모델	model	모범사례, [서식에서] 표준안
1301	모든	母豚	어미돼지
1302	모두진술	冒頭陳述	최초 진술
1303	모바일 헬스케어	mobile health care	원격건강관리
1304	모발	毛髮	머리카락, 머리털
1305	모병하다	募兵	병사를 모집하다
1306	모부성권	母父性權	모성권·부성권
1307	모사전송 (기)	模寫電送 (機)	팩스
1308	모색	毛色	털 빛깔
1309	모선	母船	모선(母船)
1310	모소낭	毛小囊	털뿔치낭, 모발동지낭
1311	모수	母樹	어미나루
1312	모어, 모우어	mower	잔디 깎는 기계 (mower, 모어) * 모우어(×)
1313	모용	冒用	거짓으로 사용, 함부로 사용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1314	모인하다	冒認	(남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속이다
1315	모재	母材	주요한 재료, 용접물
1316	모지절	母肢節	모지절(母肢節: 엄지손가락뼈마디관절)
1317	모집자	募集者	모집인
1318	모타, 모터	motor	전동기, 발동기, 모터
1319	모터카	motor car	운반궤도차(모터카)
1320	모피	毛皮	털가죽, 모피
1321	모필	毛筆	붓, 털붓
1322	모해하다	謀害	모함하여 해치다
1323	모호하다	模糊	분명하지 아니하다
1324	목골	木骨	목재골조
1325	목골 모르타르조	木骨 mortar造	나무 뼈대 회반죽 구조 (목골 모르타르조)
1326	목과류	木果類	나무열매류, 나무과일류
1327	목각묘	木槨墓	목각묘 (木槨墓: 나무덧널무덤)
1328	목근	木根	나무뿌리
1329	목도	牧道	목장도로, 목장길
1330	목도하다	目睹	목격하다, 보다
1331	목분	木粉	나무가루, 목분(나무가루)
1332	목선	木船	나무배, 목선
1333	목전	目前	눈앞
1334	목책	木柵	나무 울타리, 울타리
1335	목탄	木炭	숯
1336	목피	木皮	나무껍질
1337	목함	木函	나무 상자
1338	몰드	mold	몰드(주조)
1339	몰취	沒取	몰수, 몰취(沒取)
1340	몽리면적	蒙利面積	혜택 면적
1341	몽리자	蒙利者	이용자, 이익을 얻는 사람 혜택을 받는 자(사람)
1342	묘목	苗木	묘목, 모종나무
1343	묘박지	錨泊地	정박지역
1344	묘우	廟宇	묘우(廟宇)
1345	묘포	苗圃	묘목 재배밭, 모밭
1346	묘포장	苗圃場	양묘장
1347	무릎골	무릎骨	무릎뼈
1348	무릎골 완전 적출술	무릎骨 完全 摘出術	무릎뼈 완전제거술
1349	무연분묘	無緣墳墓	무연고 분묘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1350	무인	摺印	손도장, 지장
1351	무임	無賃	무료
1352	무작위 샘플링	無作為 sampling	무작위 추출
1353	무정위 운동증	無定位 運動症	무정위(느린비틀림) 운동증
1354	무주물	無主物	소유자 없는 물건, 입자 없는 물건
1355	무주의	無主	소유자 없는, 입자 없는
1356	무중신호	霧中信號	안개속 신호, 무중신호(霧中信號)
1357	무해	無害	해가 없는, 해롭지 않은, 해롭지 아니한
1358	무후가	無後家	대가 끊긴 집
1359	묵과	默過	(그대로) 넘겨버림
1360	묵서	墨書	검은 글씨
1361	묵선	墨線	검은 줄, 먹줄
1362	묵인하다	默認	(알고도) 넘겨버리다
1363	문란하다	紊亂	어지럽다, 문란하다
1364	문부	文簿	문서와 장부
1365	문비	門扉	문짝
1366	문주	門柱	문주(문기둥)
1367	문책하다	問責	책임을 묻다, 책임 묻다, 문책하다
1368	문합술	吻合術	연결술
1369	문형식	門形式	문형식(門形式)
1370	문호 또는 장벽	門戶 또는 障壁	문 또는 담
1371	물납	物納	물품으로 냄, [약칭할 때] 물납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1372	물료	物料	물품과 재료, 재료, 원료
1373	물양장	物揚場	소형선 부두, 물양장(소형선 부두)
1374	물자대	物資代	물자대금
1375	물형	物形	물건의 생김새
1376	미간지	未墾地	개간하지 않은 땅
1377	미강	米糠	쌀겨
1378	미곡	米穀	쌀, 미곡
1379	미골	尾骨	꼬리뼈, 꼬리뼈(미골)
1380	미납	未納	(아직) 내지 않음, 내지 아니함, 내지 못함, 미납
1381	미등	尾燈	꼬리등, 뒷등, 미등
1382	미립	米粒	미립(쌀알)
1383	미만성	瀾漫性	확산성
1384	미불	未拂	미지급
1385	미불금	未拂金	미지급금
1386	미싱	sewing machine	재봉틀
1387	미연에	未然	미리
1388	미제	未濟	처리되지 아니한, 처리되지 않은
1389	미처리된	未處理	처리되지 아니한, 처리되지 않은
1390	미필	未畢	마치지 아니함, 미필
1391	미흡하다	未洽	모자라다
1392	믹서	mixer	분쇄기, 혼합기
1393	밧		밧, 와/과, 씬표, [문장 전체를 풀어 쓴다]
1394	밧(예: A·B 밧 C)		A, B 및 C, A와 B 및 C, A·B 및 C

ㅂ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1395	바란스	balance	밸런스
1396	바우처	voucher	이용권
1397	바이오마커	biomarker	생체지표(biomarker)
1398	바이패스 밸브	by-pass valve	배관측로밸브[바이패스 밸브(by-pass valve)]
1399	바이패스용	by-pass用	배관측로용(바이패스용)
1400	바켓 엘리베이터	bucket elevator	용기형 승강기 ※ 'bucket'의 규범표기 : 버킷
1401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다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다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1402	반맹	半盲	한쪽 눈이 보이지 않음, 부분 시각장애
1403	반맹증	半盲症	한쪽시아결손, 반맹증 (한쪽시아결손) (㉠)
1404	반분	半分	반으로 나눔, 반분
1405	반소	反訴	맞소송
1406	반송	返送	돌려보냄, 되돌려 보냄
1407	반송	搬送	운송
1408	반신	返信	회신
1409	반월상	半月狀	반월상(반달모양), 반달모양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1410	반월상 연골	半月狀 軟骨	반달연골, 반달모양 물렁뼈
1411	반제하다	返濟	(돈을) 갚다, (돈을) 되갚다
1412	반출하다	搬出	실어내다, 내가다, 내어가다, 반출하다
1413	반파다이폴	半波dipole	반파장 다이폴 안테나
1414	반포	頒布	반포, 배포
1415	반포하다	頒布	널리 알리다, 배포하다
1416	반하다	反	어긋나다, 다르다
1417	반환하다	返還	반환하다, 돌려주다, 되돌려주다
1418	반회후두신경	反回喉頭神經	되돌이후두신경
1419	반흔	癍痕	흉터
1420	반흔구축 성형술	癍痕構築 成形術	흉터복원 성형술
1421	반흔성추상	癍痕性醜相	흉터로 인한 흉한 모양
1422	받은 본인에 한하여		받은 사람만
1423	발광신호	發光信號	빛신호, 불빛신호
1424	발군	拔群	뛰어남, 빼어남
1425	발로	發露	드러남
1426	발매	發賣	팔기, 발매
1427	발매수득률	發賣收得率	발매이익률
1428	발매하다	發賣	팔다
1429	발문하다	發問	질문하다
1430	발병하다	發病	병나다
1431	발본	拔本	뿌리 뽑음
1432	발부	發付	발급
1433	발송인	發送人	보낸 사람, 보내는 사람
1434	발아하다	發芽	싹이 트다, 눈이 트다, 발아하다
1435	발의	發議	제출
1436	발적	發赤	발적(發赤)
1437	발주관서	發注官署	주문 관서
1438	발주하다	發注	주문하다
1439	발착	發着	출발과 도착, 출발·도착
1440	발채	拔萃	가려냄, 뽑아냄, 골라냄, 발채
1441	발채하다	拔萃	가려내다, 뽑아내다, 골라내다, 발채하다
1442	발취	拔取	뽑아냄
1443	발탁하다	拔擢	뽑다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1444	(명령을/ 지시)를 발하다	發	(명령을/지시)를 하다
1445	발하다	發	내다, 보내다, 시작하다, (명)을 내리다, 발송하다, 발표하다
1446	발행처	發行處	펴낸 곳
1447	баттери	battery	배터리(○), 밧데리(×)
1448	방광누공, 방광루공	膀胱瘻孔	방광셋길(방광누공)
1449	방광루	膀胱瘻	방광셋길
1450	방기하다	放棄	내버리다, 내버려 두다
1451	방독마스크	防毒mask	방독면
1452	방류	放流	흘러보냄, 풀어놓음, 방류
1453	방류하다	放流	방류하다, 흘러보내다
1454	방목	放牧	놓아기름, 방목
1455	방벽	防壁	방벽(防壁)
1456	방부	防腐	방부(부식 방지)
1457	방사선속	放射線束	방사선속(放射線束)
1458	방사제	防沙堤	모래막이 둑
1459	방산량	放散兩	방출량
1460	방서	防鼠	쥐막기
1461	방서시설	防鼠施設	쥐를 막는 시설
1462	방석커버	方席cover	방석 씌우개, 방석덮개
1463	방설	防雪	방설(防雪: 눈피해 방지)
1464	방수구	防水口	방수구(防水口)
1465	방습	防濕	습기 방지, 방습
1466	방실	房室	방이나 집, 방실(房室)
1467	방열	防熱	방열(防熱)
1468	방음림	防音林	방음숲
1469	방임하다	放任	버려두다, 내버려두다, 돌보지 않다, 돌보지 아니하다, 방임하다
1470	방제	防除	예방 및 제거
1471	방조제	防潮堤	방조제(防潮堤)
1472	방조하다	幫助	돕다, 거들다, 방조하다
1473	방책	方策	방법, 방법과 계획
1474	방책	防柵	울타리
1475	방청	防鏽	방청(녹방지)
1476	방청도료	防鏽塗料	방청도료(녹방지 도료)
1477	방청도장	防鏽塗裝	부식방지도장
1478	방청제	防鏽劑	부식방지제
1479	방폭성능 시험기	防爆性能 試驗器	폭발방지성능시험기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1480	방풍림	防風林	바람막이숲
1481	배굴	背屈	굽히기, 젓히기 * [손] 손등쪽 굽히기 [발] 발등쪽 굽히기
1482	배기	排氣	공기 배출
1483	배기구	排氣口	공기 배출구
1484	배기덕트	排氣duct	배출덕트(공기 배출통로)
1485	배면	背面	뒤쪽, 뒷면
1486	배부	背部	등 부위, 등
1487	배수	排水	물빼기, 배수
1488	배수관거	排水管渠	배수 도랑, 배수관
1489	배수하다	排水	물을 빼다
1490	배양하다	培養	기르다, 배양하다
1491	배연	排煙	연기 배출
1492	배연탈질 시설	排煙脫窒 施設	질소산화물제거시설
1493	배연탈황 시설	排煙脫黃 施設	황산화물제거시설
1494	배유	配油	기름 배급
1495	배출 덕트	排出 duct	배출 덕트(공기 배출통로)
1496	배치되다	背馳	어긋나다, 배치되다
1497	백미	白米	쌀
1498	백사	白絲	흰 실
1499	백색	白色	흰색
1500	밸러스트 콤팩터	ballast compactor	철도자갈다짐기 (ballast compactor), 밸러스트 콤팩터 (ballast compactor: 철도자갈다짐기)
1501	밸러스트 탱크	ballast tank	밸러스트 탱크 (ballast tank: 평형수 탱크)
1502	밸러스트 흡수선	ballast 吃水線	평형수흡수선
1503	밸브시트 그라인더	valve seat grinder	밸브 시트 그라인더 (연마기)
1504	벳차프랜트	batcher plant	배치 플랜트 (batcher plant: 콘크리트 대량 제조 설비)
1505	벳칭	batching	배칭(○), 벳칭(×)
1506	버니어 캘리퍼스	vernier callipers	아들자 캘리퍼스 버니어 캘리퍼스(㉸)
1507	버큘 탱크로리	vacuum tank lorry	진공탱크로리 ※ 'vacuum'의 규범표기: 배큘업
1508	버킷 림프종	burkitt lymph腫	버킷 림프종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1509	버킷굴삭기	bucket 掘削機	버킷굴착기
1510	벌채하다	伐採	나무를 베다
1511	범례	凡例	일러두기
1512	범발성	汎發性	광범위(범발성)
1513	범선	帆船	돛단배
1514	범위 내에서, 범위 안에서, 범위 이내로		범위에서(○년의 범위에서), 범위 내에서, 범위 안에서
1515	범의	犯意	범죄 의사
1516	범장	帆樑	돛대, 돛[범장(帆裝)]
1517	범정	犯情	범행 당시 상황(정황)
1518	범주	範疇	테두리, 범위, 범주
1519	범포	帆布	돛의 천
1520	범하다	犯	범하다, 저지르다, 짓다
1521	법면	法面	비탈 쪽, 비탈면, 경사면
1522	법이 정하는, 법률이 정하는, 법령이 정하는		법에서 정하는, 법률에서 정하는, 법령에서 정하는
1523	베뉴	venue	장소, 경기장
1524	베이직 슬래그	basic slag	광물을 제련하고 남은 찌꺼기 [광재(鑛滓, 베이직슬래그)]
1525	벤치마크 방식	benchmark 方式	벤치마크(과거 활동 자료량 기반)방식
1526	벽암지	碧巖地	절벽
1527	벽지	僻地	외딴곳, 두메, 벽지
1528	벽천형	壁泉形	벽면분수
1529	변개하다	變改	변경하다
1530	변경이 있는 경우		~이 변경된 경우
1531	변별하다	辨別	분별하다, 변별하다
1532	변식하다	辨識	분별하여 알다
1533	변이원성	變異原性	변이원성(變異原性)
1534	변제하다	辨濟	값다, 물다, 변제하다
1535	변패	變敗	변하여 부패함, 변패(변질하여 썩는 것)
1536	별	別	~별(능력별, 성별, 월별, 직업별, 학년별)
1537	별갑	鼈甲	별갑, 자라 등딱지
1538	별개	別個	다른, 별개의
1539	별단의	別段	다른, 특별한
1540	별도로	別途	따로, 별도로
1541	별첨	別添	별도 붙임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1542	병과하다	併科	동시에 부과하다, 동시에 하다, 함께 부과하다, 병행하다 * [처분의 경우] 병과(併科)하다
1543	병급하다	併給	함께 지급하다, 같이 지급하다
1544	병기	併記	함께 작성, 병기
1545	병기하다	併記	함께 적다, 함께 쓰다, 함께 표기하다, 병기(併記)하다
1546	병리기전	病理機轉	발병기전
1547	병발된	併發	동시 확인된
1548	병변	病變	병,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
1549	병사	病舍	병동
1550	병산	併算	함께 계산, 같이 계산
1551	병서	竝書	나란히 쓰기, 함께 쓰기
1552	병성감정	病性鑑定	병성(病性)감정
1553	병소	病所	병터(아픈 곳)
1554	병용하다	併用	같이 쓰다, 함께 쓰다, 더불어 쓰다, 겸하다, 병용하다
1555	병존	竝存	함께 존재, 병존
1556	병합처리하다	併合處理	함께 처리하다, 병합처리하다
1557	병행	竝行	함께 함, 병행
1558	병행하다	竝行	함께 하다, 동시에 하다
1559	병형	病型	병 유형, 질병 유형
1560	보결	補缺	결원 보충
1561	보균자	保菌者	병원균 보유자
1562	보론	Boron	붕소
1563	보상	報償	보상(報償)
1564	보선	保線	선로 유지 보수
1565	보선	補選	보궐선거
1566	보선원	補線員	선로보수원
1567	보식(補植)하다	補植	보충하여 심다
1568	보우트	boat	보트(○), 보우트(×)
1569	보유하다	保有	가지다, 갖다, 보유하다
1570	보장구	保障具	장애인 보조기, 장애인 보조기기, 장애인 보조기구
1571	보전	補填	보전(補填)
1572	보전	補箋	보충지, 덧종이, (어음, 수표에) 덧댄 종이, 덧붙인 종이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1573	보전하다	補填	채우다, (메워) 보충하다, 보전(補填)하다
1574	보정하다	補正	보충하여 고치다, 바로잡다
1575	보지하다	保持	간직하다, 지니다
1576	보철	補綴	보충하여 형태를 바로잡음, 보철
1577	보철구	補綴具	보조기, 보조기구
1578	보체	補體	도움체
1579	보하다	補	임명하다, 보하다
1580	보험율	保險料率	보험료율
1581	보호책	保護柵	보호 울타리
1582	복간	復刊	재발행
1583	복개	覆蓋	덮개, 덮어씌우기
1584	복명	復命	결과 보고
1585	복명서	復命書	결과 보고서
1586	복몰	覆沒	침몰, 가리앉음
1587	복부	腹部	배 부분, 복부
1588	복시	複視	겹보임, 겹보임(복시)
1589	복외위	腹臥位	엎드린 자세(prone position)
1590	복제	服制	제복 규정, 복제(服制: 제복 규정)
1591	복주식	複柱	겹기둥식
1592	복진폭	複振幅	이중진폭(double amplitude)
1593	복토	覆土	흙덮기, 다시 메우기, 복토
1594	복토하다	覆土	메우다, 흙으로 메우다, 다시 메우다
1595	복포	覆布	포장천
1596	복표	福票	복권
1597	본건	本件	이 사건, 이 일, 이 건(件)
1598	본권	本權	이 권리, 본래 권리, 본권
1599	본드	bond	접착제, 본드
1600	본딩	bonding	결합
1601	본무	本務	맡은 일, 주된 일
1602	본범	本犯	본래의 범인
1603	본법	本法	이 법
1604	본수	本數	포기수, 그루수
1605	본안	本案	이 안, 본안
1606	본장	本章	이 장
1607	본조	本條	이 조
1608	본지	本旨	본뜻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1609	볼트	bolt	수나사, 볼트
1610	봉서	封書	봉함편지
1611	봉쇄	封鎖	막음, 잠금, 봉쇄
1612	봉와직염	蜂窩織炎	연조직염
1613	봉인	封印	봉함 도장, 도장 찍어 봉합, 봉인
1614	봉인지	封印紙	봉인 표지
1615	봉입	封入	넣고 봉함, 봉투 넣기
1616	봉지하다	奉旨	받들다
1617	부	父	아버지
1618	부가	附加	덧붙임, 부가
1619	부가하다	附加	덧붙이다, 더하다, 부가하다
1620	부골	腐骨	썩은 뼈
1621	부교	浮橋	구름다리 ☹
1622	부극	負極	음극
1623	부금	賦金	부과금
1624	부기	附記	덧붙여 적음, 부기
1625	부기하다	附記	덧붙여 적다
1626	부녀	婦女	부녀자
1627	부동의하다	不同意	동의하지 않다, 동의하지 아니하다
1628	부두임	埠頭賃	부두(埠頭) 사용료
1629	부락	部落	마을
1630	부란기	孵卵器	알 깨는 기구, 부란기(孵卵器), 배양기, 배양기(인큐베이터)
1631	부력	浮力	부력(浮力)
1632	부령이 정하는		부령으로 정하는
1633	부분	副本	부분(副本), 복사본
1634	부불금	賦拂金	할부금
1635	부불방법	賦拂方法	지급 방법
1636	부비동	副鼻洞	코결굴, 코결굴[부비동(副鼻洞)], 부비동(코결굴)
1637	부상되다	浮上	떠오르다
1638	부상병	副傷病	부 질병·부상
1639	부상사료	浮上飼料	물에 뜨는 사료
1640	부석	浮石	뜬돌(부석)
1641	부선	解船	부선(解船)
1642	부선임	解船賃	부선(解船) 사용료
1643	부설하다	敷設	(깔아) 설치하다, 깔다, 시설하다, 부설하다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1644	부수되다	附隨	따르다
1645	부숙하다	腐熟	썩히다
1646	부양	浮揚	떠오름, 부양
1647	부여하다, 부여되다	附與	주다, 매기다
1648	부유물질	浮遊物質	떠다니는 물질
1649	부유하다	浮遊	떠다니다, 떠돌다
1650	부응하다	副應	맞추다, 따르다, 부응하다
1651	부지사항	附議事項	회의에 부치는 사항
1652	부지사항	附議案件	회의에 부치는 안건, 회의에 부칠 안건, 안건, 제출안건
1653	부지사항	附議	(회의에) 부치다, (심의에) 부치다
1654	부이	buoy	부표
1655	부자	buzzer	버저(buzzer)
1656	부재	不在	(자리에) 있지 아니함, 부재
1657	부적격자	不適格者	(자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 부적격자
1658	부적당한	不適當	적당하지 아니한, 적당하지 않은
1659	부적합하다	不適合	적합하지 아니하다, 적합하지 않다, 맞지 아니하다, 맞지 않다, 모자라다, 떨어지다
1660	부정유합되다	不整癒合	잘못 붙다[부정유합(不整癒合)] ☹
1661	부조	扶助	부조(扶助)
1662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하면, 부족한 경우에는
1663	부존	賦存	부존(賦存)
1664	부종	浮腫	부어오름
1665	부종하여	附從	따라붙어, 함께
1666	부지	bougie	부지(bougie: 확장기)
1667	부지	不知	알지 못함, 모름
1668	부지	敷地	터
1669	부차적	副次的	부차적(副次的)
1670	부착하다	附着	붙이다, 부착하다
1671	부책	簿冊	문서, 장부, 부책(簿冊: 내용을 자세히 적은 별도 문서나 장부 등)
1672	부표	附票	붙임표
1673	부하다	付	(회의에, 심판에) 부치다
1674	부하다	附	붙이다, 첨부하다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1675	부하변동	負荷變動	오염물질 부하량의 변화
1676	부하에 가하다		공급하다
1677	부합되다, 부합하다	附合	들어맞다, 일치하다, 부합하다
1678	부화하다	附和	(...를) 뒤따르다
1679	북빙양	北氷洋	북극해
1680	○분	分	100분의 ○ [* 이자율은 연 100분의 ○]
1681	분골하여	粉骨	가루로 만들어
1682	분급하다	分給	나누어 지급하다
1683	분기하다	分岐	갈라지다, 나누어지다
1684	분납하다	分納	나눠 내다, 나눠 납부하다, 분할 납부하다
1685	분담	分擔	분담(分擔), 나눠 맡음
1686	분리최저치	分離最低値	분리최저치(최소 분리 간격)
1687	분립되다	分立	(의견이) 나뉜다, (의견이) 갈리다
1688	분만	分娩	분만(分娩)
1689	분만개조	分娩介助	분만 도움
1690	분말	粉末	가루
1691	분묘	墳墓	무덤
1692	분변	糞便	대변
1693	분비선	分泌腺	분비샘
1694	분상	粉狀	분말상태
1695	분수	分收	분배, 수익분배
1696	분수림	分收林	수익분배림, 수익분배림(분수림)
1697	분수하다	分收	(수익을) 나누다
1698	분시험	盆試驗	포트재배시험, 포트(분)재배시험
1699	분여	分與	분배
1700	분여하다	分與	분배하다, 나눠 주다
1701	분열정동형	分裂情動型	조현정동형, 분열정동형(조현정동형)
1702	분열형 정동장애	分裂型情動障礙	조현정동장애
1703	분임자	分任者	임무를 분담하는 사람
1704	분장하다	分掌	나눠 맡다 [* 업무분장]
1705	분제	粉劑	분제(粉劑: 가루 형태 제제)
1706	분진	粉塵	분진, 먼지
1707	분철하다	分綴	나눠 묶다, 나눠 철하다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1708	분할하다	分割	나누다, 분할하다
1709	분합	分合	분할·합병, 분합(分合), 나누고 합침
1710	불	弗	달리
1711	불가결하다	不可缺	불가결하다, 꼭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다
1712	불가피하다	不可避	피할 수 없다, 불가피하다
1713	불구, 불구자	不具, 不具者	신체장애인, 장애인
1714	불구폐질	不具廢疾	영구장애
1715	~에 불구하고	不拘	~에도 불구하고
1716	불능	不能	불가능
1717	불능하다	不能	할 수 없다
1718	불도우저	bulldozer	불도저(○), 불도우저(×)
1719	불명	不明	불명(不明)
1720	불명하다	不明	분명하지 아니하다, 알 수 없다, 명확하지 아니하다
1721	불문하고	不問	~에 상관없이, ~에 관계없이, 불문하고
1722	불복의 경우, 불복이 있는 경우	不服	불복하는 경우
1723	불복종하다	不服從	불복종하다, 복종하지 아니하다, 따르지 아니하다
1724	불비하다	不備	미비하다
1725	불산입하다	不算入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아니한다
1726	불수	不隨	마비
1727	불수리하다	不受理	수리하지 아니하다
1728	불시에	不時	불시에, 예고 없이
1729	불연성	不燃性	불연성(不燃性)
1730	불연재료	不燃材料	불연재료(不燃材料)
1731	불온	不穩	반사회적
1732	불요	不要	불필요
1733	불용액	不用額	불용액(不用額)
1734	불용품	不用品	불용품(不用品)
1735	불유합	不癒合	뼈가 붙지 않음
1736	불응하다	不應	응하지 아니하다, 응하지 않다, 따르지 아니하다, 따르지 않다
1737	불의에, 불의의	不意	뜻하지 않은, 뜻하지 아니한, 불의에, 불의의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1738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불이익을 줘서는,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1739	불인통	不忍痛	참기 힘든 통증
1740	불입	拂入	납입, 납부, 냄
1741	불입금	拂入金	납부금
1742	불참하다	不參	불참하다, 참가하지 아니하다
1743	불투수면	不透水面	물이 스며들지 않는 표면
1744	불하	拂下	매각
1745	불허하다	不許	불허하다, 허락하지 아니하다
1746	불활화	不活化	불활화(不活化)
1747	붐	boom	붐(boom)
1748	붐대	boomstand, boom臺	붐대(회전지지대)
1749	붐 스프레이어	boom sprayer	붐스프레이어(회전지지대 설치 살포기)
1750	브라켓	bracket	브라켓(bracket: 까치발) [외래어 표기법] 브래킷(○), 브라켓(×)
1751	브레이징 용접기	brazing 鎔接器	경납땜(brazing) 용접기
1752	브레이커	breaker	차단기
1753	브레이크	brake	브레이크, 제동기
1754	블랙아이스	black ice	도로 살얼음, 얇은 빙판
1755	브림	brim	테두리(brim)
1756	비 부피	比 부피	비(比) 부피(단위 질량당 부피)
1757	비가연성	非可燃性	비가연성(非可燃性)
1758	비갈	碑碣	비석(碑石)
1759	비강	鼻腔	코안
1760	비강진	枇杷疹	잔비늘증
1761	비계	飛階	비계(飛階)
1762	비골	鼻骨	코뼈
1763	비골	腓骨	종아리뼈
1764	비골	髌骨	넙다리뼈, 넓적다리뼈
1765	비골 근위부	腓骨 近位部	종아리뼈 몸쪽부위
1766	비골두	腓骨頭	종아리뼈머리
1767	비공	鼻孔	코구멍
1768	비관리청	非管理廳	관리청이 아닌, 관리청이 아닌 자
1769	비구	髌臼	볼기뼈절구
1770	비근	腓筋	가자미근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1771	비기	誹機	헐뜯기, 비방
1772	비닐 크롤라이드	vinyl chloride	염화비닐 ※ 규범표기: 클로라이드
1773	비닐피복	vinyl被覆	비닐덮기(비닐피복)
1774	비데오	video	비디오(○), 비데오(×)
1775	비래하다	飛來	날아오다
1776	비루관 폐색	鼻淚管 閉塞	코눈물관 막힘
1777	비목	費目	비목(費目)
1778	비말	飛沫	침방울, 날아 퍼지는 물방울
1779	비박형 기저막 신병증	菲薄形 基底膜 腎病證	비박형 기저막(얇은 바닥막) 신병증
1780	비사	飛沙	모래 날림, 비사(飛沙)
1781	비산	飛散	날림, 흩날림, 비산(飛散)
1782	비산물	飛散物	비산물(흩날리는 물질)
1783	비산시키다	飛散	날려보내다
1784	비산체	飛散體	비산물(흩날리는 물질)
1785	비산하다	飛散	날리다, 날려 흩어지다, 흩날리다
1786	비상점멸 표시등	非常點滅 表示燈	비상깜박이등
1787	비상한 경우	非常한 境遇	비상시
1788	비송	非訟	비송(非訟)
1789	비에멀전 타입의	非emulsion type	에멀션 형태가 아닌
1790	비오톱	biotope	생물서식공간(biotope), 생물서식공간(비오톱)
1791	비옥	肥沃	비옥, 기름짐
1792	비위	非違	비위(非違)
1793	비위관	鼻胃管	비위관(鼻胃管, L-tube), 비위관(코위관)
1794	비익	鼻翼	코방울
1795	비인강	鼻咽腔	코인두
1796	비장	脾臟	비장(脾臟: 지라), 지라
1797	비장종대	脾臟腫大	비장종대(비장비대)
1798	비점	沸點	끓는점
1799	비중격	鼻中隔	코사이막, 코사이벽
1800	비치하다	備置	갖춰 두다, 갖추어 두다, 비치하다
1801	비투수성	非透水性	물이 스며들지 않는 성질의
1802	비해	肥害	비료피해
1803	비호하다	庇護	[부정적인 의미] 비호하다, [긍정적인 의미] 보호하다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1804	비효	肥效	비료효과[肥效]
1805	빈발하다	頻發	자주 발생하다
1806	빈번한	頻繁	잦은
1807	빌리루빈	bilirubin	담적색소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1808	빙수	氷水	얼음물
1809	빙자하다	憑藉	빙자하다, (거짓으로) 핑계 삼다
1810	빙점	氷點	어는점
1811	빨래판로	빨래板路	물걸모양 도로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1812	사경	斜頸	기운목
1813	사계	斯界	해당 분야, 해당 방면
1814	사고가 있을 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1815	사골	死骨	죽은 뼈
1816	사구	沙丘	모래언덕
1817	사구 식생	沙丘 植生	사구 식생(沙丘 植生: 모래언덕 식생)
1818	사구체신염	絲球體腎炎	사구체신(장)염, 사구체신장염
1819	사권	私權	사법(私法)상 권리
1820	사도	私道	사설 도로, 사도(私道)
1821	사두근	四頭筋	네갈래근
1822	사력	沙礫	자갈
1823	사력층	沙礫層	모래자갈층
1824	사료하다, 사료되다	思料	생각하다, 생각되다
1825	사류	絲類	실의 종류
1826	사리	沙利	자갈
1827	사면	斜面	비탈, 비탈면, 경사면
1828	사멸시키다	死滅	죽여 없애다
1829	사방지	砂防地	사방지(砂防地)
1830	사상	絲狀	실모양
1831	사상에 이르게 하다	死傷	사상(死傷)에 이르게 하다,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하다
1832	사상자	死傷者	사상자(死傷者)
1833	사상풍기	思想風氣	선량한 풍속
1834	사상하게 하다	死傷	죽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다
1835	사상하다	死傷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다, 죽거나 다치다
1836	사생아	私生兒	혼외자녀
1837	사석	砂石	모래와 돌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1838	사송	使送	직접 배달
1839	사수	絲數	사수(絲數: 실의 수)
1840	사수위	死水位	사수위(死水位)
1841	사술	詐術	속임수
1842	사양	飼養	기르기, 사육, 사양(기르기)
1843	사양	仕樣	규격
1844	사역집배구	使役集配區	위탁 집배 구역
1845	사역하다	使役	봉사하다
1846	사열	查閱	사열(查閱)
1847	사우	祠宇	사당, 사우(祠宇)
1848	사위	詐僞	거짓, 속임수
1849	사위행위	詐僞行爲	부정행위
1850	사유	私有	사유(私有)
1851	사육	飼育	사육, 기르기
1852	사이드슬립	side slip	옆방향미끄러짐(side slip), 측면미끄러짐
1853	사이즈 일람표	size	크기 일람표
1854	사인을 날인하다	私印	개인 도장을 찍다
1855	사일로	silo	저장창고, 사료저장장, 사일로(저장고), 사일로(사료저장고) (똥)
1856	사일리지	silage	발효사료
1857	사장	沙場	모래사장
1858	사적	事蹟	사고 흔적
1859	사전에	事前	미리, 사전에
1860	사정	査定	심사결정, 조사결정, 사정(査定)
1861	사지	寺址	절터
1862	사지	四肢	팔다리
1863	사지골	四肢骨	팔다리뼈
1864	사질토	沙質土	사질토(沙質土)
1865	사찰	查察	조사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1866	사체	死體	사체, [사람의 경우] 시신
1867	사체검안서	死體檢案書	검안서, 시신검안서
1868	사택	私宅	개인 주택, 개인 집, 집
1869	사택	宿舍	(임직원용) 주택
1870	사토장	捨土場	사토장(흙 처리장)
1871	사회성원	社會成員	사회 구성원
1872	삭감하다	削減	깎다, 줄이다
1873	삭도	索道	공중 철선, 케이블카
1874	삭토	削土	흙깎기
1875	삭편	削片	(나무) 깎인 조각
1876	산간지	山間地	산간지역
1877	산동	散腫	동공확대, 동공확대(산동(散腫))
1878	산란계	產卵鷄	산란용 닭
1879	산록	山麓	산기슭, 산록(산기슭)
1880	산복	山腹	산비탈, 산복(산비탈)
1881	산식	算式	계산식
1882	산양유	山羊乳	산양유(山羊乳)
1883	산욕부	產褥婦	산모
1884	산입	算入	산입(算入)
1885	산입하다	算入	산입(算入)하다, 포함하다, 포함하여 계산하다, [* 문맥에 맞게 문장, 어구, 어절을 다른 형태로 고칠 수도 있다]
1886	산입하지 아니한다	算入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버린다, 제외한다
1887	산자수	產子數	출산한 마릿수
1888	산재하다	散在	흩어져 있다
1889	산적하다	散積	산적(散積)하다
1890	산정	山頂	산정(산꼭대기)
1891	산정	算定	계산해서 정함, 계산해서 결정함, 계산, 산출, 산정(算定)
1892	산정식	算定式	계산식
1893	산제	散劑	산제(散劑: powders)
1894	산채	山菜	산나물
1895	산출하다	算出	계산해내다, (계산하여) 나오다, (계산하여) 정하다, (계산하여) 결정하다
1896	(유물) 산포구역	散布區域	(유물이) 흩어진 지역
1897	산회하다	散會	회의를 종료하다, 회의를 마치다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1898	살서제	殺鼠劑	쥐약
1899	살수	撒水	물 뿌리기, 물 뿌림
1900	살처분	殺處分	도살처분
1901	삼차신경	三叉神經	세갈래신경
1902	삽수	插穗	꺾꽂이모, 꺾꽂이순, 삽수(꺾꽂이순)
1903	삽입하다	插入	삽입하다, 넣다
1904	~상 필요한	上	~을 위하여 필요한, ~상 필요한 [문맥에 맞게 고침]
1905	상간	相姦	간음, 성관계
1906	상계	相計	상계(相計)
1907	상과부	上顆部	위관절용기
1908	상과부굴곡	上顆部屈曲	위관절용기 굽힘
1909	상관 없다, 상관 있다	相關	상관없다(○), 상관있다(○), 상관√없다(×), 상관√있다(×)
1910	상근	常勤	상시 근무, 상근(常勤)
1911	상근직	常勤職	상시근무직
1912	상기하다	詳記	상세하게 기록하다
1913	상당수	相當數	상당수, 많은 수
1914	상당한, 상당하는, 상당의	相當	① 상응하는, 타당한, 해당하는, 적절한, 적당한, 해당 조문의, 상당한 ② 많은
1915	상대방 있는		상대방에게, 상대방이 있는
1916	상대방에 (도달한)		상대방에게 (도달한), [사람, 동물]에게, [시물, 단체, 기관]에
1917	상린자	相隣者	서로 이웃하는 자(사람)
1918	상면	上面	윗면
1919	상무	常務	일상 업무, 상시적인 업무
1920	상박	上膊	위팔
1921	상박골	上膊骨	위팔뼈
1922	상박골 간부	上膊骨 幹部	위팔뼈 몸통, 위팔뼈 중간부분
1923	상박골 경부	上膊骨 頸部	위팔뼈 목부위, 위팔뼈목, 위팔뼈 윗목부분
1924	상박골 과부	上膊骨 顆部	위팔뼈 윗기, 위팔뼈 관절용기 (㉠)
1925	상박골 대결절 견연 골절	上膊骨 大結節 牽連 骨折	위팔뼈 큰결절 찢김 골절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1926	상박골 상과부 굴곡 골절	上膊骨 上頰部 屈曲 骨折	위팔뼈 위관절용기 굽힘골절
1927	상박골 소두	上膊骨 小頭	위팔뼈 작은머리
1928	상박골 외측상과	上膊骨 外側上頰	위팔뼈 가쪽위관절용기
1929	상박골 외측상과 전위 골절	上膊骨 外側上頰 轉位 骨折	위팔뼈 가쪽위관절용기 전위(빠가 어긋남) 골절
1930	상박골 절과부 신전 골절	上膊骨 節頰部 伸展 骨折	위팔뼈 양쪽 위관절 용기골절, 위팔뼈 결절부위 펴골절
1931	상박부	上膊部	위팔부위
1932	상박신경총	上膊神經叢	위팔신경얼기
1933	상반하다, 상반되다	相反	어긋나다
1934	상방	上方	위쪽
1935	상변	上邊	윗변
1936	상병	傷病	부상·질병, 질병·부상, 부상 및 질병,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림, 상병(傷病)
1937	상병명	傷病名	질병·부상명
1938	상병부위	傷病部位	질병·부상 위치
1939	상병자	傷病者	부상자·병자, 다치거나 병든 사람, 부상당하거나 병든 사람
1940	상부여백	上部餘白	위쪽 여백
1941	상세불명의	詳細不明	자세히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원인을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자세히 알 수 없는)
1942	상시	常時	평상시, 항상
1943	상시개호	常時介護	상시 개호(介護), 상시 간호
1944	상신	上申	'상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보고' 등 문맥에 맞는 말로 순화함
1945	상신하다	上申	'상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보고하다', '-하다' 등 문맥에 맞는 말로 순화함
1946	상실하다, 상실되다	喪失	잃다, 잃어버리다, 상실하다, 상실되다
1947	상악	上顎	위턱
1948	상악골	上顎骨	위턱뼈, 위턱뼈(상악골)
1949	상오	上午	오전
1950	상온	常溫	상온(常溫)
1951	상완	上腕	위팔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1952	상완골	上腕骨	위팔뼈
1953	상완골 경부	上腕骨 頸部	위팔뼈목
1954	상완부	上腕部	위팔 부위, 위팔부
1955	상완신경총	上腕神經叢	팔신경얼기
1956	상완심부 열창	上腕深部 裂創	위팔의 깊게 찢긴 상처(심부 열창)
1957	상용	常用	상용(常用)
1958	상위	相違	서로 어긋남, 서로 다름
1959	상위 없음	相違	서로 다름이 없음, 서로 어긋남이 없음
1960	상위하다	相違	서로 어긋나다, 서로 다르다
1961	상이	傷痕	부상
1962	~와의 상이 여부	相異 與否	~가 같은지 여부
1963	상이자	傷痕者	부상자
1964	상이처	傷痕處	부상 및 장애
1965	상이하다	相異	다르다, 서로 다르다
1966	상장간동맥	上腸間動脈	위창자간막동맥
1967	상적하다	上積	포개어 쌓다
1968	상전	桑田	봉발
1969	상정하다	上程	(회의에) 부치다
1970	상주하다	常住	상주(常住)하다
1971	상지	上肢	팔
1972	상지 장관골	上肢 長管骨	팔의 긴 뼈, 상지 장관골 (팔의 긴 뼈), 팔 장관골 (팔의 긴 뼈), 팔(상지) 장관골(팔의 긴 뼈)
1973	상지보조기	上肢補助器	팔 보조기
1974	상지부	上肢部	팔부위
1975	상지부 각 관절부	上肢部 各 關節部	팔의 각 관절 부위
1976	상처드레싱	傷處 dressing	상처 소독 처치
1977	상치되다	相馳	(서로) 다르다, (서로) 어긋나다
1978	상치장소	常置場所	상시 설치 장소, 상시주차장소
1979	상치하다	常置	상시 주차하다
1980	상·하지	上下肢	팔·다리
1981	상·하지/ 상하지	上下肢	위·아래가지, 위아래 가지
1982	상환하다	償還	상환(償還)하다, 갚다
1983	상환하다	相換	상환(相換)하다, 맞바꾸다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1984	상황	商況	시황(市況), 시장상황, 시장 상황
1985	상회하다	上廻	넘다, 웃돌다
1986	새로이		새로
1987	색도	色度	색도(色度)
1988	색소 탈실	色素 脫失	탈색, 탈색소
1989	색인	索引	찾아보기
1990	색인목록	索引目錄	찾아보기 목록
1991	생가	生家	생가(生家)
1992	생계비	生計費	생활비
1993	생사불명 되다	生死不明	생사가 불분명하게 된
1994	생식독성	生殖毒性	생식독성(生殖毒性)
1995	생육지	生育地	서식지
1996	생육하다	生育	기르다, 키우다
1997	생존 중에	生存 中	살아 있는 동안에
1998	생축	生畜	살아있는 가축
1999	생하다	生	생기다
2000	생환하다	生還	생환하다, 살아 돌아오다
2001	샤시프레임	chassis frame	차대, 새시프레임(차대 고정틀)
2002	샤클	shackle	샤클(shackle: 연결고리)
2003	서간	書簡	편지, 우편
2004	서리	署理	직무대리
2005	서맥	徐脈	느린맥
2006	서명·날인	署名·捺印	서명날인, 서명 및 날인, 서명 또는 날인 [가운뎃점을 쓰지 않고 구체적으로 쓴다]
2007	서명·날인 하다	署名·捺印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다, 서명날인하다,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다[가운뎃점을 쓰지 않고 구체적으로 쓴다]
2008	서미	書尾	(글의) 끝, 끝 부분
2009	서바이벌 게임	survival game	모의전투게임(survival game), 생존게임 (survival game)
2010	서손	書損	원본 파기
2011	서식하다	棲息	살다, 서식하다 [* 서식지]
2012	서신	書信	편지
2013	서장	書狀	서류, 편지
2014	서족	鼠族	쥐
2015	서증	書證	서증(書證), 서면증거
2016	서증조사	書證調査	서면조사, 서면증거 조사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2017	서체	書體	글씨체
2018	서한	書翰	편지
2019	서행하다	徐行	천천히 운행하다
2020	서해부	鼠蹊部	살굴부위
2021	서훈	敍勳	훈장·포장 수여
2022	서훈하다	敍勳	서훈(敍勳)하다, 훈장이나 포장(褒章)을 주다
2023	석각묘	石槨墓	돌덧널무덤, 석각묘 (石槨墓: 돌덧널무덤)
2024	석교	石橋	돌다리, 석교(石橋: 돌다리)
2025	석명	釋明	석명(釋明)
2026	석명하다	釋明	밝히다, 밝혀내다
2027	석비	石碑	비석
2028	석유스토브	石油stove	석유난로
2029	석재부	石材部	석재부분
2030	석차	席次	성적 순위
2031	석탄스토브	石炭stove	석탄난로
2032	선거	船車	선박과 차량
2033	선관의무	善管義務	주의의무
2034	선교	船橋	선교(船橋)
2035	선금	先金	선금(先金)
2036	선급	先給	선급(先給), 우선 지급
2037	선급금	先給金	선급금(先給金), 우선 지급금, 선급지급
2038	선납	先納	선납(先納)
2039	선납하다	先納	미리 내다
2040	선내	船內	선박 안
2041	선단, 선단부	先端, 先端部	끝부분
2042	선령	船齡	선박 나이
2043	선로	船路	벋길, 항로(航路)
2044	선로제표	線路諸標	선로표지
2045	선류장	船留場	선류장(船留場), 계류장
2046	선명	船名	선박 이름
2047	선미	船尾	선미(船尾)
2048	선미단	船尾端	선미단(선미쪽의 끝)
2049	선미종경사	船尾縱傾斜	선미종경사(선미쪽으로 기울어진 상태)
2050	선박명	船舶名	선박 이름, 선박 명칭
2051	선발육종	選拔育種	품종개량
2052	선병	選兵	병역판정
2053	선상	線狀	선모양, 선상(선모양)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2054	선수	船首	선수(船首), 뱃머리
2055	선수단	船首端	선수단(선수쪽의 끝집)
2056	선양하다	宣揚	명성을 떨치다, 권위를 떨치다, 널리 알리다
2057	선의로	善意	(그 사실을) 모르고서 * '선의'가 '모르다'의 의미가 아닌 경우에는 그대로 둔다
2058	선의인 경우에는	善意인 境遇에는	몰랐으면, 몰랐을 때에는 * '선의'가 '모르다'의 의미가 아닌 경우에는 그대로 둔다
2059	선임	船賃	뱃삿
2060	선임하다	選任	선임(選任)하다
2061	선저폐수	船底廢水	배 밑바닥 폐수
2062	(문제의) 선제	選題	(문제의) 선정
2063	선주류	船舟類	선박 종류
2064	선차	船車	선박과 차량
2065	선착지	船着地	선박 도착지
2066	선창	船艙	부두
2067	선편	船便	배편
2068	선행하다	先行	선행(先行)하다
2069	선회장	旋回場	선회장(旋回場)
2070	선회하다	旋回	선회(旋回)하다, 빙빙 돌다
2071	설물	屑物	원재료 잔여물
2072	설상	楔狀	쐐기모양
2073	설상골	楔狀骨	쐐기뼈[설상골(楔狀骨)]
2074	설영인	設營人	설치운영자, 설치·운영자
2075	설인인후통	舌咽喉喉痛	혀인두신경통
2076	설해	雪害	눈 피해, 설해(雪害), 눈피해[雪害], 설해(雪害: 눈피해)
2077	섬광등	閃光燈	섬광등(閃光燈)
2078	섬망	譫妄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2079	섬유판	纖維板	섬유판(fiberboard)
2080	성벽	性癖	(못된, 나쁜) 성격
2081	성분	成墳	봉분 조성
2082	성상	性狀	성질·상태, 성질과 상태, 성상(性狀)
2083	성지	城址	성터
2084	성토	盛土	성토(흙쌓기), 흙쌓기
2085	성토사면	盛土斜面	성토사면(쌓기비탈면), 성토(흙쌓기)한 비탈면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2086	성행	性行	성격과 행동, 성품과 행실, 성행(性行: 성품과 행실)
2087	세극등	細隙燈	틈새등
2088	세력	歲曆	달력
2089	세수	世數	세대수(世代數)
2090	세인	世人	세상 사람, 사람들
2091	세적	稅籍	납세자 기본대장
2092	세절하다	細切	잘게 자르다
2093	세정도	洗淨度	세정도(洗淨度)
2094	센서스	census	총조사, 전수조사
2095	센타	center	센터(○), 센터(×)
2096	셀렌(Se)	selenium	셀레늄(Se)
2097	소	訴	소(訴)
2098	소가	訴價	소송목적의 값, 소송물 가액, 소송 가액
2099	소각	燒却	태우기, 소각
2100	소개	疏開	소개(疏開)
2101	소관청	所管廳	소관 기관, 소관 정부기관, 소관 행정청
2102	소구(권)	遡求(權)	상환청구, 상환청구권
2103	소구치	小白齒	작은어금니
2104	소두	小頭	작은 머리
2105	소등하다	消燈	(불을) 끄다
2106	소류지	沼溜地	늪지
2107	소맥	小麥	밀
2108	소맥분	小麥粉	밀가루
2109	소명하다	疎明	[일변] 밝히다, 밝혀내다, [소송] 소명(疎明)하다, 소명하다, 밝혀내다
2110	소분	小分	잘게 나눔, 작게 나눔
2111	소산	疏散	소산(疏散: 분산시킴)
2112	소선	小船	소형 선박
2113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ocial network service	사회관계망서비스(SNS)
2114	소속하에	所屬下	소속으로
2115	소수방	消水防	소수방(消水防: 초기 소화)
2116	소실	燒失	소실(燒失), 불타 없어짐
2117	소아	小兒	유아·어린이, [병원진료과목] 소아
2118	소요되는	所要	드는, 필요한
2119	소요되다	所要	(비용이) 들다, (시간이) 걸리다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2120	소요비용	所要費用	필요한 비용, 드는 비용
2121	소요자금	所要資金	필요한 자금, 드는 자금
2122	소유자에 속한		소유자에게 속한, [사람, 동물]에게, [사물, 단체, 기관]에
2123	소음영	小陰影	작은음영
2124	소인	消印	소인(消印), 날짜도장, 지움도장, 확인인
2125	소인미필의	消印未畢	소인이 없는
2126	소인하다	消印	지움도장을 찍다, 접수 도장을 찍다, 구멍을 뚫다
2127	소임	所任	임무
2128	소잡	掃蠶	누에떨기
2129	소장하다	所藏	소장하다, 간직하다
2130	소재	所在	있는 곳
2131	소재지	所在地	있는 곳, 소재지, 주소
2132	소전자부	小轉子部	작은돌기
2133	소정의	所定	정해진, 일정한
2134	소제	掃除	청소
2135	소지하다	所持	가지다, 지니다, 소지하다
2136	소집연기원	召集延期願	소집연기신청서
2137	소채	蔬菜	채소
2138	소택지	沼澤地	습지 (뚝)
2139	소하물	小荷物	작은 짐, 잔짐
2140	소할	所轄	관할
2141	소행	所行	소행(所行)
2142	소행	素行	평소 행실
2143	소화하다	消化	익히다, 습득(習得)하다, (사채를) 모집 및 인수하다
2144	소화개량 (하다)	消化改良	외부에서 도입된 기술을 개량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다), 선진기술을 익히다
2145	소환장	召喚狀	출석요구서
2146	소훼되다	燒燬	불타 없어지다
2147	소훼하다	燒燬	(불로) 태우다, (불에) 태워 없애다
2148	속구	屬具	(선박) 부속물
2149	속행하다	續行	계속하다, 계속 진행하다
2150	손괴	損壞	파손, 파손이나 붕괴
2151	손괴하다	損壞	파손하다
2152	손괴	損潰	무너짐
2153	손금	損金	손해액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2154	손망실	損亡失	손실·분실
2155	손모	損耗	손모(損耗)
2156	손모량	損耗量	손실량
2157	손바닥뼈 지골 간 관절	指骨 間 關節	손허리손가락관절
2158	손상하다	損傷	(물건을) 부수다, (명예, 품위를) 떨어뜨리다
2159	손실을 가하다	損失	손실을 가하다, 손실을 입히다
2160	손해를 받다	損害	손해를 입다
2161	솔루션	solution	문제 해결, 해결책 ※ 규범표기: 설루션
2162	송검	送檢	(검찰청에) 송치
2163	송과체	松果體	솔방울샘
2164	송기하다	送氣	공기를 보내다
2165	송료	送料	우송료
2166	송부	送付	보냄, 송부, 발송
2167	송부하다	送付	보내다
2168	송수	送水	송수(送水)
2169	송증	送證	발송증서
2170	송하인	送荷人	송하인(送貨人), 짐 부친 사람, 화물 발송인
2171	송·수신	送受信	송수신
2172	쇄골	鎖骨	빗장뼈, 쇄골, 쇄골(빗장뼈)
2173	쇄석	碎石	돌 부수기, 쇄석(碎石: 부서 돌)
2174	쇄정	鎖錠	잠금, 잠금장치를 함, 자물쇠로 채움
2175	쇄항	鎖肛	항문막힘
2176	쇼파관절	chopart's joint	가로발목뼈관절 (lisfranc joint)
2177	속업소버, 속업쇼바	shock absorber	쇼크 업소버(완충장치), 쇼크 업소버 (충격흡수장치)
2178	수(족)배부	手(足)背部	손등·발등 부위
2179	수(족)장부	手(足)掌部	손바닥·발바닥 부위
2180	수개, 수개의	數個	여러, 여러 개, 여러 개의
2181	수거일자	收去日字	수거일
2182	수검	受檢	수검(受檢), 검사받음
2183	수검자	受檢者	검사받는 사람
2184	수결	手決	서명(署名)
2185	수계	水系	수계(水系)
2186	수계하다	受繼	넘겨받다, 이어받다, 승계하다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2187	수고	樹高	나무높이
2188	수고	水高	물높이
2189	수고압력	水高壓力	물높이에 따른 압력
2190	수괴	首魁	수괴(首魁)
2191	수교하다	修交	외교관계를 맺다
2192	수권	授權	수권(授權)
2193	수근	樹根	나무뿌리
2194	수근	手根	손목
2195	수근 간 관절탈구	手根 間 關節脫臼	손목뼈 관절 탈구
2196	수근 골절	手根 骨折	손목 골절
2197	수근 관절면	手根 關節面	손목 관절면
2198	수근간	手根間	손목뼈사이
2199	수근골	手根骨	손목뼈, 수근골(手根骨: 손목뼈)
2200	수근관절부	手根關節部	손목관절 부위
2201	수근부	手根部	손목 부위, 손목
2202	수근중수골	手根中手骨	손목손허리뼈
2203	수급	受給	수급(受給)
2204	수급	收給	수입·지급, 수입과 지급
2205	수급	需給	수요·공급, 수요와 공급
2206	수난	水難	수난, 물난리
2207	수득	收得	이득금, 받는 이득
2208	수득금	收得金	이익금
2209	수득하다	收得	(이득을) 받다, 거두어들이다
2210	수량	水量	물의 양
2211	수령하다	受領	받다, 수령하다
2212	수로	水路	수로, 물길, 뱃길
2213	수류	水流	물의 흐름
2214	수류지	水流地	수류지(水流地)
2215	수리	受理	[단순 접수일 때] 접수, [처리까지 할 때] 접수 처리, 수리(受理)
2216	수리	水利	수리(水利)
2217	수리간섭	水理干涉	수리간섭(水理干涉)
2218	수림	樹林	숲
2219	수림대	樹林帶	방음림(소음막이숲)
2220	수림지대	樹林地帶	숲 지대
2221	수매	數枚	여러 장
2222	수명	羞明	눈부심
2223	수문	水門	수문(水門)
2224	수문문비	水門門扉	수문의 문짝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2225	수발	受發	접수·발송
2226	수배하다	受配	(배급을) 받다
2227	수보	受報	(신고)접수
2228	수봉	收捧	징수
2229	수부	手部	손 부위
2230	수부 월상골	手部 月狀骨	수부 월상골(손의 반달뼈)
2231	수불	受拂	출납, 받음과 치름, 입출, 관리
2232	수불대장	受拂臺帳	출납대장, 관리대장
2233	수불부	受拂簿	출납부
2234	수삭륜	垂索輪	받줄받이장치, 받줄받이(용) 바퀴
2235	수선	修繕	보수, 수리
2236	수세	水洗	수세(水洗), 물 세척
2237	수세	樹勢	수세(樹勢)
2238	수세하다	水洗	물로 씻다
2239	수속	手續	절차
2240	수수	授受	수수(授受), 주고받음
2241	수수	收受	수수(收受), 받음, 거둬서 받음
2242	수수하다	授受	주거나 받다
2243	수신증	水腎症	물콩팥증, 물콩팥증(수신증)
2244	수신하다	受信	받다
2245	수실	樹實	나무 열매
2246	수심	水深	수심(水深)
2247	수액	數額	액수
2248	수업의 실연	實演	모의 수업
2249	수여하다	授與	수여하다, 주다
2250	수엽	樹葉	나뭇잎, 수엽
2251	수용사동	收容舍棟	수용동(收容棟)
2252	수용하다	受容	받아들이다
2253	수원	水源	수원(水源)
2254	수위	守衛	경비원
2255	수유부	授乳婦	젖 먹이는 여성, 젖먹이가 있는 여성
2256	수유자	受遺者	수유자(受遺者)
2257	수은 램프	水銀 lamp	수은등
2258	수인	數人	여러 사람, 몇 사람, 여럿, 여러 명
2259	수입면장	輸入免狀	수입허가서
2260	수입미제액 조서	收入未濟額 調書	미수액 조서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2261	수입미필액	收入未畢額	미수납액
2262	수입선	輸入先	수입처
2263	수입필 보고서	輸入畢報告書	수입확인보고서
2264	수입화주	輸入貨主	수입화물주
2265	수장	手掌	손바닥
2266	수장부	手掌部	손바닥, 손바닥부, 손바닥 부위
2267	수장부 근건	手掌部 筋腱	손바닥 근육힘줄
2268	수장수지 관절	手掌手指關節	손바닥손가락관절
2269	수장재	修粧材	내외부 장식재, 수장재(修粧材: 내외부 장식재)
2270	수장족저	手掌足底	손바닥·발바닥
2271	수재	收載	수록
2272	수저	水底	수면 아래, 물 아래, 물밑
2273	수저전선	水底電線	물밑 전선
2274	수저준설	水底浚渫	물밑 파기, 물밑 파내기
2275	수제문서	手製文書	손으로 작성한 문서
2276	수조	水槽	물통, 수조
2277	수족지	手足指	손가락·발가락, 손발가락
2278	수족지골	手足指骨	손가락 및 발가락 뼈, 손발가락뼈
2279	수종	數種	여러 종류
2280	수종	樹種	나무 종류
2281	수종별	樹種別	나무의 종류(별)
2282	수죄	數罪	여러 죄
2283	수주하다	受注	수주하다, 주문을 받다
2284	수중	水中	물속
2285	수증	受贈	증여받음
2286	수증의 방법	受贈	기증의 방법
2287	수지	手指	손가락
2288	수지	收支	수입·지출, 수입과 지출
2289	수지	樹枝	나뭇가지
2290	수지	樹脂	나뭇진
2291	수지 골절	手指 骨節	손가락 골절, 손가락뼈 골절
2292	수지 신전근건	手指 伸展筋腱	손가락 평근힘줄, 손가락 신전근건(평근힘줄)
2293	수지계산서	收支計算書	수입·지출 계산서
2294	수지골	手指骨	손가락뼈
2295	수직분리 최저치	垂直分離 最低值	수직분리최저치(최소 수직분리 간격)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2296	수직상방	垂直上方	수직으로 위쪽
2297	수직하방	垂直下方	수직으로 아래쪽
2298	수진	受診	진단받다, 진료
2299	수진자	受診者	진단받는 사람
2300	수질오탁	水質汚濁	수질오염
2301	수차	數次	여러 번, 여러 차례
2302	수책	數冊	여러 권
2303	수첨분해	水添分解	수소첨가분해
2304	수체변화	水體變化	물환경변화
2305	수축	獸畜	집짐승, 짐승, 기르는 동물
2306	수취	受取	수령
2307	수취인	受取人	수령인, 받는 사람, 받는이
2308	수취하다	受取	받다
2309	수침	水沈	물의 침투, 물의 침투 정도
2310	수탁하다	受託	수탁하다, 위탁받다
2311	수태	受胎	[사람] 임신, [동물] 새끼배기
2312	수통	數通	여러 통, 몇 통
2313	수표	水標	수위(水位) 표시
2314	수피	樹皮	나무껍질
2315	수필	數筆	여러 필지
2316	수하물	手荷物	손짐, 휴대화물, 수하물(手貨物)
2317	수학하다	修學	공부하다, 수학하다, 수강하다
2318	수형목	秀型木	우렁나무, 수형목(우렁나무), 수형목(秀型木)
2319	수화	手話	수어
2320	수화인	受貨人	화물 수령인, 수화인(受貨人)
2321	수활액 낭종	水滑液 囊腫	수활액 물혹
2322	수회	數回	여러 차례
2323	수·출입	輸出入	수출입
2324	숙근	宿根	목은 뿌리
2325	숙려기간	熟慮期間	충분히 생각할 기간
2326	숙려하다	熟慮	충분히 생각하다
2327	숙주	塾主	교육시설의 장
2328	숙지하다	熟知	자세히 알다
2329	순로	順路	일반적 경로, 정상적 경로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2330	순번	順番	차례
2331	순연	順延	차례로 미룸, 순차연기, 순차적으로 연기
2332	순응하다	順應	따르다, 응하다
2333	순차, 순차로	順次	차례, 차례로,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순서대로
2334	숫자	數字	2명(○), 두 명(○)
2335	숫자 띄어쓰기		* 제2장 85쪽에 설명 있음
2336	첨표		* 제2장 115쪽에 설명 있음
2337	슈터	shooter	공조(덕트·시스템·설비)
2338	스노우	snow	스노(○), 스노우(×)
2339	스마트팜	smart farm	스마트 농장(원격기술 적용 농장)
2340	스웨이징	swaging	스웨이징(압축가공)
2341	스커트	skirt	치마
2342	스커트 가드	skirt guard	디딤판 측면 끼임방지판 (skirt guard)
2343	스커트 디플렉트	skirt deflector	(에스컬레이터의) 디딤판 측면 끼임방지장치(skirt deflector)
2344	스케줄	schedule	일정, 일정표, 계획, 계획표, 시간표
2345	스크러버	scrubber	스크러버(세정기) ㉠
2346	스크린	screen	스크린, 화면, 영상막, 휘장, 막, 장막
2347	스크린 도어	screen door	안전문
2348	스태빌라이저	stabilizer	스태빌라이저(좌우 자세 안정 보조장치)
2349	스테인레스	stainless	스테인리스(○), 스테인레스(×)
2350	스텝카	step car	탑승 계단차(step car)
2351	스트랩	strap	스트랩(strap)
2352	스트레처	stretcher	이동용 침대
2353	스트롱 후레임	strong frame	만능재료
2354	스트리핑	stripping	스트리핑(stripping: 휘발성분 제거)
2355	스티커	sticker	스티커, 딱지, 붙임딱지, 스티커(붙임딱지)
2356	스파 부이	spar buoy	원기둥 부표
2357	스프라켓	sprocket	체인기어 ※ 규범표기: 스프로킷
2358	스플린트	splint	부목(스플린트)
2359	슬개	膝蓋	무릎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2360	슬개건, 슬개인대	膝蓋腱, 膝蓋靭帶	무릎인대
2361	슬개골	膝蓋骨	무릎뼈
2362	슬관절	膝關節	무릎관절
2363	슬관절부	膝關節部	무릎관절, 무릎관절 부위, 무릎관절부
2364	슬라브	slab	슬래브(○), 슬라브(×), 스파브(×)
2365	슬러지	sludge	찌꺼기, 침전물(슬러지), 침전물
2366	슬로건	slogan	구호
2367	슬와	膝窩	무릎오금
2368	습답	濕漚	습답(물 논), 무논
2369	습득자	拾得者	주운 사람
2370	습득하다	拾得	줍다
2371	습벽	習癖	습벽(習癖), 나쁜 버릇
2372	습식탈황 시설	濕式脫黃施設	습식황산화물제거시설
2373	습열소독	濕熱消毒	증기소독
2374	습윤	濕潤	촉촉함
2375	습윤제	濕潤劑	습기유지제
2376	승강	乘降	타고 내림, 오르내림
2377	승계하다	承繼	이어받다, 승계하다
2378	승마	勝馬	승리한 말, 승리마(勝利馬)
2379	승선하다	乘船	승선(乘船)하다, 배에 타다
2380	승수	承水	물 이어받음, 물 승계
2381	승압제	昇壓劑	혈압상승제
2382	승역지	承役地	[지역권에서] 편익 제공지, 승역지(承役地)
2383	승용자동차	乘用自動車	승용차, 승용자동차
2384	승용하다	乘用	타다, 탑승하다
2385	승인년도	承認年度	승인연도
2386	승인필증	承認畢證	승인확인증
2387	승자투표 적용자	勝者投票的中者	경주 결과를 맞힌 사람
2388	승조	乘組	탑승
2389	승하다	乘	곱하다
2390	승합자동차	乘合自動車	승합차, 승합자동차
2391	승홍	昇汞	이염화수은
2392	시 (신청시)	時	시(신청 시, 신청할 때) * 예외(비상시, 평상시, 필요시, 유사시)
2393	시간	屍姦	사신과의 성행위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2394	시간당 (1시간당)		시간당 [* '1시간당' 에서 '1'은 불필요하므로 생략한다]
2395	시간	施鍵	잠금
2396	시간장치	施鍵裝置	잠금장치
2397	시계	視界	시계(視界)
2398	시계	市界	시경계
2399	시계열순	時系列順	시간의 흐름 순
2400	시굴	試掘	시험 굴착
2401	시급을 요하다	時急	시급하다, 긴급하다
2402	시기	始期	시작일, 시작되는 시기
2403	시기생리학	視器生理學	눈생리학
2404	시기해부학	視器解剖學	눈해부학
2405	시단	始端	시작선
2406	시달	示達	지시, 전달, 통보
2407	시달하다	示達	알리다, 지시하다, 문서로 지시하다, 전달하다
2408	시드 로트	seed lot	보존균주군집(시드 로트)
2409	시로	視路	시각경로
2410	시료	試料	시료, 시험용 재료
2411	시말서	始末書	경위서
2412	시멘트 모르타르	cement mortar	시멘트모르타르
2413	시뮬레이션	simulation	모의실험, 시뮬레이션(모의실험)
2414	시방서	示方書	설계설명서, 작업설명서, 설명서
2415	시브	sheave	시브(sheave: 도르래)
2416	시비	施肥	거름주기, 비료 주기, 시비(거름주기), 비료 사용
2417	시비량	施肥量	비료량
2418	시상	矢狀	시상(정면의 수직 단면)
2419	시상하다	施賞	시상하다, 상 주다
2420	시야변상	視野變狀	시야 이상
2421	시야협착	視野狹窄	시야 좁아짐, 시야협착(시야 좁아짐)
2422	시업	始業	작업 시작
2423	시업, 시업중	施業	사업 시행, 사업 중
2424	시용	試用	시험용
2425	시우량	時雨量	시간당 강우량
2426	시운전	試運轉	시험운전
2427	시유	市乳	시판 우유 ㉞
2428	시유면	施釉面	유약을 바른 면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2429	시정	視程	가시거리, 시정(視程: 식별 가능 최대 거리)
2430	시제품	試製品	시험제품 ㉞
2431	시체스트	sea chest	시체스트(sea chest: 해수 유입구)
2432	시표	視標	시표(시력검사용 표지)
2433	시한성	時限性	사용기한이 정해진(시한성)
2434	시험축	試驗畜	시험용 가축
2435	시험필증	試驗畢證	시험합격확인증
2436	시혜	施惠	혜택
2437	식료	食料	식료, 음식재료
2438	식목	植木	식목(植木), 나무 심기
2439	식별하다	識別	(분별하여) 알아보다, 구별하다, 식별하다
2440	식부면적	植付面積	재배 면적, 경작 면적
2441	식부장치	植付裝置	모내기장치
2442	식생	植生	식생(植生)
2443	식생하다	植生	자라다
2444	식수	植樹	나무 심기
2445	식순	式順	차례, 식의 차례
2446	식염	食鹽	먹는 소금
2447	식재	植栽	(나무) 심기, (나무) 가꾸기
2448	식재면적	植栽面積	심은 면적
2449	식재하다	植栽	심고 가꾸다, 심다
2450	식지	式紙	서식 용지
2451	신	腎	신(腎: 콩팥), 신장, 콩팥
2452	신결손	腎缺損	신장결손
2453	신경공	神經孔	신경구멍
2454	신고부	申告簿	신고 장부
2455	신고필증	申告畢證	신고확인증, 신고증명서, 신고확인서
2456	신근	伸筋	편근
2457	신록각석	腎鹿角石	신장사슴불결석
2458	신농양	腎膿瘍	신장고름집
2459	신도	伸度	늘어나는 정도, 신도(伸度)
2460	신동	腎洞	신장동(콩팥굴, renal sinus)
2461	신루	腎瘻	신장삿길[腎瘻]
2462	신립	申立	신청
2463	신명	身命	신명, 몸과 목숨
2464	신문	訊問	신문(訊問)
2465	신반흔	腎癍痕	신장흉터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2466	신병	身柄	신체 (구속) [‘신병’이라는 용어를 가급적 사용하지 않음]
2467	신병인수	身柄引受	인수 [가급적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함]
2468	신병이송	身柄移送	이송
2469	신빙하다	信憑	신뢰하다
2470	신서	信書	편지
2471	신속	新屬	새로운 속(屬)
2472	신손상	腎損傷	신장 손상
2473	신애	信愛	존중
2474	신우루	腎盂瘻	신우샛길[腎盂瘻]
2475	신임지	新任地	새 근무지
2476	신입자	新入者	신입 수용자
2477	신입하는 자	新入	새로 들어오는 사람, 새내기
2478	신입하다	新入	처음 들어오다, 새로 들어오다
2479	신장	伸張	높임, 증대
2480	신적출술	腎摘出術	신장절제
2481	신전	伸展	펴기, 신전(펴기)
2482	신전 골절	伸展 骨折	펴골절
2483	신전건	伸展腱	펴근힘줄
2484	신전근건	伸展筋腱	펴근힘줄
2485	신전위	伸展位	편 자세
2486	신조	新造	신조(新造)
2487	신조함, 신조된	新造	새로 만든
2488	신종	新種	새로운 종(種)
2489	신주위	腎周圍	신장 주위
2490	신증후군 출혈열	新症候群 出血熱	유행성출혈열, 신증후군출혈열 (유행성출혈열)
2491	신지번	新地番	새 토지번호, 새 지번
2492	신체류지	新滯留地	새 체류지
2493	신품종	新品種	새 품종, 신품종
2494	신하수	腎下垂	신장차짐
2495	신·구	新舊	신구
2496	실권	失券	주권(株券) 잃음, 주권(株券) 상실
2497	실권	失權	권리 잃음, 권리 상실
2498	실내의장	室內意匠	실내건축
2499	실링구조	sealing 構造	밀폐구조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2500	실비	實費	실제 비용, 실비(實費)
2501	실사	實査	실제조사, 현장조사, 현지조사, 실شم조사,
2502	실역	實役	현역으로서 치르는 병역
2503	실연	實演	실연(實演)
2504	실연자	實演者	실연자(實演者)
2505	실용기간	實用其間	사용가능기간
2506	실익	實益	실익, 실질적인 이득
2507	실인	實印	인감도장
2508	실조	失調	실조 (失調: 조화운동못함증)
2509	실중량	實重量	실제 무게, (컨테이너 무게를 뺀) 화물의 무게
2510	실증	實證	‘실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문맥에 맞게 순화함
2511	실지	實地	실제
2512	실지	失地	잃어버린 땅
2513	실지조사	實地調査	현장조사, 실제조사
2514	실챔버	seal-chamber	봉인 체임버 (seal chamber)
2515	실추	失墜	떨어뜨림
2516	실측치	實測値	실측값
2517	실화	失火	실화(失火)
2518	심계항진	心悸亢進	두근거림
2519	심굴하다	深掘	깊이 파다
2520	심기형	心畸形	심장 기형
2521	심낭	心囊	염동주머니, 심장주머니, 심막, 심장막, 심낭
2522	심낭루	心囊瘻	심장막샛길
2523	심낭막	心囊膜	심장막
2524	심낭염	心囊炎	심장막염
2525	심대하다	甚大	매우 중대하다
2526	심도	深度	깊이, 깊은 정도, 심도(深度)
2527	심리	審理	심리(審理)
2528	심막	心膜	심장막
2529	심맥관	心脈管	심혈관
2530	심문	審問	심문(審問)
2531	심미적	審美的	심미적(審美的)
2532	심방세동	心房細動	심방전떨림
2533	심볼	symbol	심벌(○), 심볼(×)
2534	심부 열창	深部 裂創	깊게 찢긴 상처(심부 열창)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2535	심신	審訊	심문(審問)
2536	심신장애	心神障礙	정신장애
2537	심연	深淵	깊은 못, 심연(深淵: 깊은 못)
2538	심장 제세동기	心臟 除細動器	심장충격기
2539	심폐기	心肺器	심장하파두름기
2540	심히	甚	매우, 몹시, 심하게
2541	싱가폴	Singapore	싱가포르(○), 싱가포르(×)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2542	싱크홀	sinkhole	지반침하(싱크홀)
2543	사이렌	siren	사이렌(○), 싸이렌(×)
2544	사이로	silo	사일로(○), 싸이로(×)
2545	쌍방	雙方	양쪽
2546	쌍태아	雙胎兒	쌍둥이
2547	써라밴드, 테라밴드	thera band	탄성밴드
2548	씨씨	cc	시시(○), 씨씨(×) (예: 800시시)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2549	아나 필락시스	ana phylaxis	아나필락시스 (초과민반응)
2550	아니 된다		아니 된다, [별표, 별지 서식에서] 안 된다
2551	아니면 (~ 후가 아니면)		~된 후에, ~하기 전에는
2552	아니하게		아니하게, 않게
2553	아니하는		아니하는, 않는
2554	아니하는 한		아니하는 범위에서, 않는 범위에서, 아니하면, 경우 외에는
2555	아니한		아니한, 않은
2556	아웃리거, 아우트리거, 아우트리거	outrigger	전도방지용 지지대 (outrigger), 아우트리거(outrigger, 전도방지용 지지대)
2557	아이스박스	ice box	냉동상자
2558	아자	啞者	말 못하는 사람
2559	아카이브	archive	자료 저장소
2560	아쿠아리움	aquarium	수족관
2561	아쿠아 슈즈	aqua shoes	수중용 기능성 신발
2562	아키덕트 시설	aqueduct 施設	송배수로 시설
2563	아킬레스건	achilles腱	아킬레스힘줄
2564	아탈구	亞脫臼	불안전탈구(아탈구)
2565	악골	顎骨	턱뼈
2566	악관절	顎關節	턱관절
2567	악교정수술	顎矯正手術	턱[顎]교정수술
2568	악력	握力	쥐는 힘, 악력
2569	악안면	顎顔面	턱얼굴, 악안면(턱얼굴)
2570	악안면부	顎顔面部	턱얼굴부위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2571	악역	惡疫	악성 감염병
2572	악의로	惡意	(그 사실을) 알고도, 알고 * '악의'가 '알다'의 의미가 아닌 경우에는 그대로 둔다
2573	악의인 경우에는	惡意인 境遇	알았으면, 알았을 때에는 * '악의'가 '알다'의 의미가 아닌 경우에는 그대로 둔다
2574	악천후	惡天候	거친 날씨
2575	악하선	顎下腺	턱밑샘
2576	악화되다	惡化	악화되다, 나빠지다
2577	안검	眼瞼	눈꺼풀
2578	안검유착	眼瞼癒着	눈꺼풀유착
2579	안구로	眼球癆	안구위축
2580	안구진탕증	眼球震盪症	눈떨림증(안구진탕증)
2581	안면	顔面	얼굴
2582	안면 두개골	顔面 頭蓋骨	얼굴머리뼈, 얼굴머리뼈(안면두개골)
2583	안면부	顔面部	얼굴, 얼굴 부위
2584	안면부 열창	顔面部 裂創	얼굴 찢김상처(열창)
2585	안모비대칭	顔貌非對稱	얼굴 비대칭
2586	안벽	岸壁	부두벽, 안벽(부두 벽)
2587	안벽	안壁	안쪽벽
2588	안부	眼部	눈
2589	안분	按分	비율에 따른 배분
2590	안분계산	按分計算	비율에 따라 계산, 안분계산(按分計算)
2591	안분기장	按分記帳	분리 기록
2592	안분하다	按分	일정한 비율로 나누다, 비율대로 나누다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2593	안와	眼窩	눈구멍, 안와(眼窩: 눈구멍)
2594	안저	眼底	안저(눈바닥)
2595	안전바	安全bar	안전손잡이
2596	안전펜스	安全fence	안전울타리
2597	안전헬멧	安全helmet	안전모
2598	안진	眼震	눈떨림
2599	알러지	allergie	알레르기
2600	알칼리	alkali	알칼리, 염기
2601	알콜	alcohol	알코올(○), 알콜(×)
2602	암거	暗渠	지하도랑, 지하 관로, 속도랑, 암거(暗渠: 속도랑)
2603	암산	巖山	바위산
2604	암염	巖鹽	돌소금, 암염(巖鹽)
2605	암페어메타	ampere meter	암페어미터(전류계)
2606	압괴	壓壞	압력손상
2607	압날	押捺	눌러 짚음
2608	압력챔버	壓力 chamber	압력실(壓力室)
2609	압맥	壓麥	납작보리
2610	압송	壓送	가압송수
2611	압송	押送	호송
2612	압입	壓入	새기다
2613	압착	壓着	압착, 눌러 붙임
2614	양각	仰角	올려본 각, 상향각
2615	양등하다	昂騰	(가격이) 오르다
2616	양양하다	昂揚	드높이다, 북돋우다
2617	양와위	仰臥位	양와위(supine position: 바로 누운 자세)
2618	양카바지	anchor barge	앵커바지(anchor barge: 튼니바퀴뒹 화물운반선)
2619	애로	隘路	어려움, 고충, 애로
2620	애로사항	隘路事項	고충사항
2621	액량	液量	액체량
2622	액비화	液肥化	액체비료화
2623	액상	液狀	액체
2624	액와	腋窩	겨드랑이
2625	액적	液滴	물방울
2626	액제	液劑	물약
2627	엠블렘, 엠블럼	emblem	상징 문양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2628	앵커, 양카	anchor	정착장치
2629	야기하다, 야기되다	惹起	일어나다, 일으키다, 생기다
2630	야생조수	野生鳥獸	야생조수(野生鳥獸)
2631	야적하다	野積	쌓다
2632	약가	藥價	약값
2633	약간	若干	몇
2634	약간인	若干人	몇 명
2635	약기하다	略記	줄여 쓰다
2636	약사	藥事	약사(藥事)
2637	약사	藥師	약사(藥師)
2638	약장	略章	약장(略章), 약식 기장 ㉞
2639	약장	略裝	약식 복장
2640	약정	藥政	약무행정
2641	약지	藥指	넋째 손가락
2642	약취하다	掠取	(물건을) 약취(掠取)하다, 약탈해 가져가다, 훔치거나 빼앗아서 가져가다
2643	약취하다	略取	(사람을) 약취(略取)하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데려가다
2644	약해	藥害	[농약의 경우] 농약 피해
2645	약협	藥莢	화약통
2646	약호	略號	약식 부호
2647	양극성 정동장애	兩極性情動障礙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2648	양극성장애	兩極性障礙	조울증, 양극성장애(조울증)
2649	양도	讓渡	양도(讓渡)
2650	양도양수	讓渡讓受	양도·양수, 양도(讓渡)·양수(讓受)
2651	양도하다	讓渡	양도(讓渡)하다, 넘겨주다(×), 넘기다(×)
2652	양만장	養鰻場	장어양식장
2653	양말단	兩末端	양 끝
2654	양묘	養苗	모기르기, 양묘
2655	양봉	養蜂	벌치기, 양봉
2656	양부	良否	'양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문맥에 맞게 순화함
2657	양산	量產	대량생산
2658	양산품	量產品	대량생산품
2659	양성공	養成工	수련공
2660	양수표	量水標	수위표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2661	양수하다	讓受	양수(讓受)하다, 넘겨받다(x)
2662	양식	樣式	[문서에서] 서식, 양식
2663	양안	兩岸	양쪽 언덕, 양쪽 기슭(양안), 양안(兩岸: 양쪽 기슭)
2664	양안	兩眼	양쪽 눈, 두 눈, 양쪽 안구
2665	양안 적출술	兩眼 摘出術	양쪽 안구 적출술
2666	양안구	兩眼球	두 눈, 양쪽 안구
2667	양안부	兩岸部	양쪽 기슭부(양안부)
2668	양안시	兩眼視	두 눈 보기, 두 눈으로 보는 시각
2669	양액	養液	배양액
2670	양여	讓與	무상양도, 양여
2671	양유	羊乳	양유(羊乳), 양젖
2672	양잠	養蠶	누에치기, 양잠
2673	양정	量定	결정, ~량 결정, ~ 정도 결정
2674	양지간	兩地間	양 지역 사이
2675	양축	養畜	가축 사육
2676	양측 치골	兩側 恥骨	양쪽 두덩뼈
2677	양측성	兩側性	양쪽
2678	양치식물	羊齒植物	양치식물, 고사리식물
2679	양토	養兔	토끼 기르기, 양토(養兔)
2680	양하	揚荷	짐 나르기, 짐 나르기(揚荷)
2681	양형	量刑	형량 결정
2682	어구	漁具	어구, 고기잡이 도구
2683	어깨뼈 외전	어깨뼈 外轉	어깨벌림
2684	어렵	漁獵	고기잡이
2685	어렵구	漁獵具	어로·수렵도구
2686	어로	漁撈	고기잡이, 조업
2687	어린선	魚鱗癬	비늘증
2688	어망	漁網	그물, 고기그물, 어망
2689	어법	漁法	고기잡이 방법
2690	어병	魚病	물고기 질병
2691	어분	魚粉	생선가루, 어분(생선가루)
2692	어상자	魚箱子	고기상자
2693	어유	魚油	생선기름, 수산동물유
2694	어음	語音	말소리
2695	어즙	魚汁	생선즙
2696	어필	御筆	임금의 필적, 어필(御筆: 임금의 필적)
2697	어황	漁況	고기잡이 상황, 어황(漁況)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2698	어획고	漁獲高	어획량
2699	어·패류, 어패류	魚貝類	어패류
2700	언	堰	둑
2701	언도	言渡	선고
2702	언동	言動	말과 행위, 말과 행동
2703	언제	堰堤	둑, 댐
2704	언택트	untact	비대면, 비접촉
2705	얻다		(승인, 면허, 인가, 동의 등을) 받다
2706	엄수	嚴守	(비밀) 유지, 엄수
2707	엄중문책 하다	嚴重問責	엄중히 책임을 묻다
2708	업라이트	upright	지시대, 지지대(upright)
2709	업태	業態	영업실태
2710	업황	業況	영업상황
2711	없는 한	限	없으면, 없다면, 없을 때에는
2712	~에		와, 과, 로, 으로, 을, 를, 보다, 예, 에게, 에서, 이
2713	~에 관계있는		과(와) 관계있는
2714	~에 부족하고		~보다 적고
2715	~에 있어 (제공함에 있어)		데, 데에, 할 때(제공하는 데, 제공하는 데에, 제공할 때)
2716	~에 있어, ~에 있어서		* 제3장 187쪽에 설명 있음
2717	~에게		[사물, 단체, 기관] ~에, [사람, 동물] ~에게
2718	에놀러판	annular 板, annular plate	에놀러 판(annular plate)
2719	에어 컨디셔너	air conditioner	에어컨, 냉난방조절기
2720	에어 컴프레서	air compressor	에어컴프레서 (공기압축기)
2721	~에의		* 문맥에 맞게 고침
2722	에이치(H) 기류	H 旗旒	에이치 기류(H 깃발)
2723	에트레티 네이트	etretinate	에트레티네이트(etretin ate: 중증건선치료제)
2724	에프알피 (FRP)	FRP	강화플라스틱(FRP)
2725	엑기스	extract	추출물, 농축액, 진액, 엑기스(x)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2726	엠엠알 (MMR), 엠엠아르 (MMR)	measles-mumps-rubella combined vaccine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2727	여과쇄석	濾過碎石	여과용 깬돌
2728	여부	與否	사용하는지, 사용하는지 여부(○), 승인, 승인 여부(○), 인정, 인정 여부(○), 타당성(○), 타당성 여부(x)
2729	여분	餘分	나머지, 여분
2730	여수	餘水	남는 물
2731	여수로	餘水路	여수로(여분 수량 배수로) ㉠
2732	여입	戾入	재편입
2733	여입하다	戾入	도로 날다, 다시 날다, (국고로) 편입하다
2734	여죄	餘罪	여죄, 다른 범죄
2735	여타의	餘他	그 밖의 (다른 것)
2736	여하에 불구하고	如何	~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2737	여하한	如何	어떠한, 어떤
2738	여하한 명의로도	如何한 名義	어떠한 명목으로도
2739	역가	力價	역가(力價: 표준용액 작용력)
2740	역문	譯文	번역문
2741	역산하다	逆算	거꾸로 계산하다
2742	연	鉛	납
2743	연골	軟骨	물렁뼈
2744	연도	沿道	연도(沿道: 옆길)
2745	연돌	燃突	굴뚝
2746	연동하다	連動	연동하다, 맞물려 움직이다, 함께 움직이다
2747	연령	年齡	나이, 연령 [복합명사일 때: 수급연령]
2748	연륙	連陸	육지와 연결된, 연륙
2749	연무	煙霧	부연 연기
2750	연번	連番	일련번호
2751	연부액	年賦額	연도별 금액
2752	연부조직	軟部組織	연조직(soft tissue), 물렁조직(연부조직)
2753	연분진	鉛粉塵	납 분진, 납 먼지
2754	연석	緣石	연석(경계석)
2755	연성하감	軟性下疳	무른 궤양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2756	연승	延繩	주낙 ㉠
2757	연와조	煉瓦造	벽돌구조
2758	연월수	延月數	총 개월 수
2759	연율	年率	연이율, 연 이자율
2760	연장	延長	총길이, 전체 길이
2761	연접되다	連接	이어지다, 연이어지다, 접하다, 서로 맞닿다, 연접되다
2762	연지	蓮池	연못
2763	연철하다	連綴	이어 붙이다
2764	연초종자	煙草種子	담배씨
2765	연축성 사경	攣縮性 斜頸	연축기운목
2766	연하	嚙下	삼킴
2767	연하장애	嚙下 障礙	삼킴장애
2768	연혁	沿革	연혁, 내력
2769	연호하다	連呼	연이어 부르다
2770	연흔	漣痕	물결 자국, 연흔(漣痕: 물결 자국)
2771	열독하다	閱讀	읽다
2772	열람에 공하다	閱覽	열람하도록 제공하다
2773	열상	裂傷	찢김상처(열상)
2774	열석자	列席者	참석자
2775	열석하다	列席	참석하다
2776	열식간벌	列式間伐	줄속이베기
2777	열창	裂創	찢김상처, 찢김상처 (열창), 찢김상처
2778	열해	熱害	열해(熱害: 열로 인한 피해)
2779	염	鹽	소금, 염
2780	염가	廉價	싼값, 염가
2781	염생산업	鹽生産業	소금생산업
2782	염수	鹽水	소금물
2783	염수장	鹽水藏	소금물 절임, 소금물 저장, 염수장(鹽水藏)
2784	염장	鹽藏	소금 절임, 염장(鹽藏)
2785	염좌	捻挫	뱀, 염좌(뱀)
2786	염해	鹽害	염분 피해, 염해(鹽害: 염분 피해)
2787	엽간열	葉間裂	엽간열(엽사이틈새)
2788	엽견	獵犬	사냥개
2789	엽구	獵具	수렵도구
2790	엽결련	葉卷煙	시가(cigar)
2791	엽기	獵期	수렵기간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2792	엽연초	葉煙草	잎담배
2793	영달	令達	'영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지침전달', '명령전달'과 같이 문맥에 맞는 말로 순화함
2794	영림	營林	산림경영
2795	영선	營繕	시설관리, 수리
2796	영어	營漁	어업 경영
2797	영위하다	營爲	하다, 경영하다, 영위하다
2798	영치금	領置金	보관금, 영치금(領置金)
2799	영치품	領置品	보관품, 영치품(領置品)
2800	영치하다	領置	보관하다, 영치(領置)하다
2801	예가	豫價	예정 가격, 예정된 가격
2802	예납하다	豫納	미리 납부하다, 미리 내다
2803	예산수지	豫算收支	예산수입·지출
2804	예선	曳船	예인선(曳引船)
2805	예선삭	曳船索	예인(曳引) 밧줄
2806	예수하다	預受	맡다, 유치하다, 관리하다
2807	예인삭, 예인색	曳引索	예인용 줄
2808	예인훅	曳引hook	예인용 고리(Hook)
2809	예입	預入	예금, 저금
2810	예찰	豫察	예비관찰
2811	예탁	豫託	예탁(豫託), 미리 맡김
2812	예하기관	隸下機關	소속 기관
2813	예항	曳航	예인항해 ㉠
2814	예항하다	曳港	항구로 예인(曳引)하다
2815	예후	豫後	처리 후 상태, 병세 진행, 병세 전망, 예후
2816	오구돌기	烏口突起	부리돌기
2817	오구쇄골	烏口鎖骨	부리빗장관절
2818	오구쇄골부	烏口鎖骨部	부리빗장관절부위
2819	오기하다	誤記	잘못 쓰다, 오기하다
2820	오납	誤納	오납(誤納)
2821	오니	汚泥	오염된 흙, 오니(汚泥), 오염 침전물, 오니(오염된 침전물)
2822	오독	汚瀆	더럽힘
2823	오리지날	original	오리지널(○), 오리지날(×)
2824	오물	汚物	오물, 쓰레기
2825	오벌목	誤伐木	잘못 베 나무
2826	오손	汚損	망가짐, 변형 [문맥에 맞는 말로 순화함]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2827	오수	污水	더러운 물, 오수(污水)
2828	오스굿씨병	Osgood 病	오스굿씨병 (정강뼈거친면뼈연골증)
2829	오액	汚液	구정물(汚液)
2830	오욕하다	汚辱	모욕하다
2831	오인	誤認	오인(誤認)
2832	오인하다	誤認	잘못 인식하다
2833	오일	oil	기름, 기름류
2834	오일펌프	oil pump	기름 펌프
2835	오일펜스	oil fence	오일펜스(기름막이), 해양유류오염확산차단 장치(Oil Fence)
2836	오자	誤字	틀린 글자, 오자
2837	오탁방지막	汚濁防止膜	수질오염 방지막
2838	오혜돌기	烏喙突起	어깨뼈부리돌기, 부리돌기
2839	옥내	屋內	집 안, 건물 안, 옥내
2840	옥외	屋外	집 밖, 건물 밖, 옥외
2841	온라인망	online網	전산망
2842	온수	溫水	온수, 더운물, 뜨거운 물
2843	온탕침지	溫湯浸漬	온탕침지(온탕에 담금)
2844	옴부즈만	ombudsman	옴부즈맨(○), 옴부즈만(×)
2845	와류	渦流	소용돌이
2846	완강기	緩降機	하강기
2847	완경사	緩傾斜	완만한 경사
2848	완관절	腕關節	손목관절
2849	완관절 내 월상골 전방 탈구	腕關節 內 月狀骨 前方 脫臼	손목관절 내 반달뼈(월상골) 앞쪽 이탈
2850	완관절부	腕關節部	손목관절 부위
2851	완구	玩具	장난감
2852	완납하다	完納	다 내다, 완전히 납부하다, 완납하다
2853	완료하다	完了	마치다, 끝내다
2854	완전신전	完全伸展	완전 펴기
2855	완전적출술	完全摘出術	완전 제거 수술
2856	완제	完濟	모두 변제, 전부 변제, 완전 변제
2857	완제	完製	완제품, [비행기] 완제기
2858	외견상	外見上	겉보기에
2859	외경	外徑	바깥지름
2860	외과	外踝	바깥쪽 복사, 바깥쪽 복사뼈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2861	외과골	外踝骨	바깥쪽 복사뼈
2862	외관	外觀	겉모습, 외관
2863	외관도	外觀圖	외관도(外觀圖)
2864	외기	外氣	외부 공기
2865	외륜	外輪	바깥 바퀴, 외륜(外輪)
2866	외문	外門	겉문
2867	외반슬	外反膝	가쪽흰무릎
2868	외반족	外反足	가쪽들린흰발
2869	외번	外翻	바깥쪽 뒤집기, 외번(바깥쪽 뒤집기)
2870	외비공협착	外鼻孔狹窄	바깥코공간(외비공) 협착
2871	외에는 (~한 외에는)		~가 아니면, ~가 아닌 경우에는
2872	외용제	外用製	바르는 약
2873	외용제 도포	外用製 塗布	약 바르기
2874	외유하다	外遊	외국에 머무르다
2875	외의	外衣	겉옷
2876	외이	外耳	바깥귀(외이)
2877	외이도	外耳道	바깥귀길
2878	외이도염	外耳道炎	바깥귀길염(외이도염)
2879	외자	外資	외국자본
2880	외장	外裝	겉포장, 외장
2881	외전	外轉	벌리기, 외전(벌리기)
2882	외직경	外直徑	바깥쪽지름
2883	외측상과	外側上顆	가쪽위관절웅기
2884	외피	外皮	겉포장, 겉껍질
2885	외함	外函	외부상자, 바깥상자, 겉상자, 외함(外函)
2886	외화가득률	外貨稼得率	외화획득비율 (㉔)
2887	외화가득액	外貨稼得額	외화획득금액
2888	외회전	外回轉	바깥쪽 돌리기
2889	요골	橈骨	노뼈, 요골(橈骨: 노뼈)
2890	요골 간부	橈骨 幹部	노뼈 몸통, 노뼈 중간부분
2891	요골 경부	橈骨 頸部	노뼈목
2892	요골 골두	橈骨 骨頭	노뼈머리, 노뼈머리(요골 골두)
2893	요골 골두골	橈骨 骨頭骨	노뼈머리
2894	요골 원위 골단	橈骨 遠位 骨端	노뼈 먼쪽뼈끝
2895	요골 원위	橈骨遠位	노뼈 먼쪽
2896	요골 원위부	橈骨 遠位部	노뼈 먼쪽부위, 노뼈 끝쪽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2897	요골경상 돌기	橈骨莖狀 突起	노뼈 뾰족기
2898	요골두	橈骨頭	노뼈머리
2899	요관장문합	尿管臟吻合	요관장연결, 요관장문합(尿管腸吻合: 요관장연결)
2900	요관피부 문합	尿管皮膚 吻合	요관피부연결, 요관피부문합(尿管皮膚 吻合: 요관피부연결)
2901	요대	腰帶	허리띠
2902	요대체	要代替	'대체가 필요함'과 같이 문맥에 맞는 말로 순화함
2903	요도	要圖	요약도
2904	요도루	尿道瘻	요도셋길[尿道瘻]
2905	요도상열	尿道上裂	요도위열림증(요도상열)
2906	요도하열	尿道下裂	요도밑열림증(요도하열)
2907	요로	療爐	요로(療爐: 고온기열장치)
2908	요루	尿瘻	요로셋길, 요도셋길, 요루(요도셋길)
2909	요보호아동	要保護兒童	보호가 필요한 아동
2910	요부	腰部	요부(허리), 허리뼈부(요추부)
2911	요부조자	要扶助者	도움이 필요한 사람
2912	요사위	撓斜位	손목의 요골(橈骨: 노뼈) 쪽 굽히기(요사위), 요사위(노뼈쪽 굽히기)
2913	요산치	尿酸値	요산수치
2914	요수근관절	橈手根關節	노손목관절
2915	요역지	要役地	[지역권에서] 편익 수혜지, 요역지(要役地)
2916	요인	要人	주요 인사(人士)
2917	요척관절	腰脊關節	노자관절
2918	요천추 신경총	腰薦椎 神經叢	허리엉치신경얼기
2919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을 받은 때		(~가) 요청하면, (~가) 요청한 경우, (~로부터) 요청을 받으면, (~로부터) 요청을 받았으면, (~로부터) 요청을 받았을 때, (~로부터) 요청을 받은 경우
2920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한 경우, 요청을 받은 경우
2921	요체	要諦	핵심
2922	요추	腰椎	허리뼈
2923	요추부	腰椎部	허리뼈부(요추부)
2924	요추화	腰椎化	허리뼈화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2925	요크	yoke	마스트갈고리(masthook), 마스트훅(masthook: 타워크레인 기둥에 거는 갈고리)
2926	요하다, 필요로 하다	要, 必要	~이(가) 필요하다, ~을(를) 필요로 하다, ~이(가) 요구되다
2927	욕수	浴水	목욕물
2928	용광하다	鎔鑪	광물을 녹이다, 금속을 녹이다
2929	용기	容器	그릇, 용기
2930	용무	用務	용무, 불일
2931	용법	用法	사용법
2932	용선	備船	용선(備船)
2933	용수원	用水源	용수원(用水源)
2934	용수하다	用水	물을 사용하다
2935	용융되다	熔融	녹다
2936	용이하다	容易	쉽다
2937	용인	傭人	고용인, 고용된 사람
2938	용인하다	容認	용인(容認)하다
2939	용적	容積	부피, 용적
2940	용접공	鎔接工	용접기사
2941	용제	溶劑	용제(溶劑)
2942	용착	溶着	용착(溶着)
2943	용출	湧出	용출, (물 따위가) 솟아 나옴
2944	용출하다	湧出	(물 따위가) 솟아 나오다
2945	우굴	右屈	오른쪽 굽히기
2946	우단	右端	오른쪽 끝
2947	우란	右欄	오른쪽 칸, 오른쪽난
2948	우력	偶力	[물리용어] 우력(偶力), 짝힘
2949	우모	羽毛	깃털
2950	우모분	羽毛粉	우모분(깃털가루)
2951	우발하다	偶發	우발하다, 우연히 발생하다
2952	우송하다	郵送	우편으로 부치다
2953	우수	雨水	빗물, 우수(雨水)
2954	우수관거	雨水管渠	우수(雨水)관로
2955	우수저류 시설	雨水貯留施設	빗물저장시설
2956	우심지역	尤甚地域	(교통체증이) 심각한 지역
2957	우역	牛疫	우역(牛疫)
2958	우의	雨衣	비옷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2959	우지	牛脂	쇠기름, 우지(쇠기름)
2960	우지육	牛枝肉	소의 지육
2961	우천시	雨天時	비 올 때
2962	우체에 부치다	郵遞	우편으로 부치다
2963	우체함	郵遞函	우체통
2964	우측상단	右側上端	오른쪽 위, 오른쪽 위 끝
2965	우편수취함	郵便受取函	우편함
2966	우현	右舷	우현, 우측 뱃전, 오른쪽 뱃전
2967	우흔	雨痕	빗방울 자국, 우흔(雨痕: 빗방울 자국)
2968	운고	雲高	구름 높이, 운고(구름 밑부분 고도) ☹
2969	운금	運金	운임
2970	운량	雲量	구름양
2971	운반기구	運搬具	운반기구
2972	운반선	運搬船	운반선(運搬船)
2973	운임	運賃	운송료, 운임
2974	운재로	運材路	임산물 운반로
2975	운전수	運轉手	운전사
2976	원거리	遠距離	원거리, 먼 거리
2977	원격지	遠隔地	먼 거리, 멀리 떨어진 곳, 원격지[물리적인 거리가 멀다는 뜻 외에 접근성이 낮은 의미가 있는 경우]
2978	원도	原圖	원도(原圖)
2979	원무	園務	업무, 유치원 업무, (-)원의 업무
2980	원본	元本	원금
2981	원상	原狀	원상(原狀), 원래 상태
2982	원상병	原傷病	최초 질병·부상
2983	원수	員數	사람 수, 인원
2984	원스톱 (서비스)	one-stop	통합, 일괄 (서비스)
2985	원아	園兒	원아(園兒)
2986	원야	原野	원야(原野), 벌판
2987	원에 의하다	願	의사에 따르다
2988	원영	圓影	둥근 음영
2989	원원잠종	原原蠶種	원원누에씨(신품종최초 누에씨) ☹
2990	원위	遠位	끝쪽, 먼쪽
2991	원위부	遠位部	끝쪽, 먼쪽, 먼쪽 부위
2992	원위지간	遠位指間	먼쪽 손가락뼈 사이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2993	원위지관절	遠位指關節	끝손가락뼈마디관절
2994	원위지절	遠位指節	끝손가락뼈마디관절
2995	원지	園池	정원과 연못
2996	원청	元請	원도급
2997	원추각막	圓錐角膜	원뿔각막
2998	원추형	圓錐形	원뿔형
2999	원피	原皮	가공하지 않은 가죽, 가공 전의 가죽, 원피(原皮: 가공 전의 가죽)
3000	원·하청	元·下請	도급·하도급
3001	월	月	[기간일 때] 개월, [날짜일 때] 월
3002	월경	越境	경계 넘기, 국경 넘기
3003	월계	月計	한 달 합계, 월 합계, 월계(月計)
3004	월동	越冬	월동, 겨울나기
3005	월상골	月狀骨	반달뼈, 반달뼈(월상골)
3006	월선	越線	선을 넘음, 월선
3007	월실수액	月實收額	월실수입액(月實收入額)
3008	월하장	越夏場	여름 날 곳, 월하장(越夏場)
3009	월할	月割	월 단위
3010	웨어러블 기기	wearable 機器	착용형 기기
3011	웰니스	wellness	건강관리
3012	위계	僞計	속임수, 위계(僞計)
3013	위계를 한 자	僞計	거짓 구실을 꾸민 사람, 거짓 계락을 꾸민 사람, 속임수를 사용한 사람
3014	위규	違規	규정 위반
3015	위기하다	委棄	[지역권에서] (소유권을) 넘기다
3016	위락	慰樂	놀이
3017	위력	威力	위력(威力)
3018	위반되다, 위반하다 (~에 위반하다, ~에 위반되다)	違反	~을(를) 위반하다
3019	위산	違算	위산(違算), 틀린 계산
3020	위성위치 측정시스템	GPS	위성위치확인시스템 (GPS)
3021	위성항법 시스템	GPS	위성위치확인시스템 (GPS)
3022	위성항법 장치	GPS	위성위치확인시스템 (GPS)
3023	위식	僞飾	거짓으로 꾸밈, 가식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3024	위업	偉業	위대한 업적
3025	위업선양	偉業宣揚	업적을 널리 알림
3026	위축신	萎縮腎	위축신장
3027	위탁증거금	委託證據金	위탁증거금(委託證據金)
3028	위해	危害	위해(危害)
3029	윈드시어	wind shear	급변풍(wind shear)
3030	유고시	有故時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사고가 있을 때(x)
3031	유공포장	有孔包裝	투수성(透水性) 포장
3032	유관기관	有關機關	관계 기관, 유관 기관, 관련 기관
3033	유기하다	遺棄	유기하다, 버리다, 내버리다
3034	유년	幼年	어린 나이, 어린 시절, 어린이
3035	유덕	遺德	후세에 끼친 덕
3036	유도표지판	誘導標識板	유도표지판(誘導標識板)
3037	유락	遊樂	유락(遊樂)
3038	유로	流路	유로(流路)
3039	유루	遺漏	빠진 부분, 빠짐, 누락
3040	유류	遺留	유류(遺留)
3041	유막	油膜	기름막
3042	유무	有無	사망자 유무(○), 타당성, 타당하지(○), 타당성 유무(x)
3043	유문부	幽門部	날문부
3044	유물 산포구역	遺物 散布區域	유물이 흩어진 지역
3045	유미흉	乳糜胸	암축기슴증
3046	유박류	油粕類	깻묵류
3047	유발검사	誘發檢査	원인검사
3048	유별	類別	종류별
3049	유보	留保	유보(留保)
3050	유분	油分	기름 성분
3051	유사하다	類似	비슷하다, 유사하다
3052	유산스	usance	유전스(수입 관련 기한부 어음)
3053	유상의치	有床義齒	부분틀니[有床義齒], 부분의치[有床義齒], 보조 유지장치가 있는 틀니(유상의치), 틀니(유상의치)
3054	유서가 있다	由緒	내력을 적은 기록이 있다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3055	유서하다	宥恕	'유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문맥에 맞게 순화함
3056	유수	流水	흐르는 물, 유수(流水)
3057	유수검지장치	流水檢知裝置	유수검지장치(流水檢知裝置)
3058	유수분리	油水分離	유수분리(油水分離)
3059	유숙하다	留宿	(남의 집에서) 묵다, 유숙하다
3060	유실수	有實樹	열매나무, 유실수
3061	유실자	遺失者	잃어버린 사람
3062	유실하다	遺失	유실하다, 잃어버리다
3063	유아	乳兒	젖먹이
3064	유양돌기	乳樣突起	꼭지돌기
3065	유예하다	猶豫	유예하다, 미루다
3066	유용	有用	유용(有用)
3067	유용	流用	유용(流用)
3068	유용하다	流用	유용(流用)하다, 돌려쓰다, 유용하다
3069	유우	乳牛	젖소
3070	유원장	遊園場	놀이 공간, 체육장
3071	유의차	有意差	유의미한 차이
3072	유인물	油印物	인쇄물, 등사물
3073	유입하다	流入	유입하다, 흘러들다
3074	유자격자	有資格者	자격(이) 있는 사람
3075	유자망	流刺網	유동성그물, 유자망(유동성그물)
3076	유전소 화력	油專燒 火力	유류 화력
3077	유종	油種	기름 종류
3078	유증	遺贈	유증(遺贈), 유언으로 한 증여
3079	유지	溜池	웅덩이, 유지(溜池), 유지(溜池: 웅덩이)
3080	유지	留止	정지, 중지
3081	유지	遺志	유지(遺志)
3082	유지작물	油脂作物	기름작물
3083	유지하다	留止	멈추다
3084	유착되다	癒着	붙다
3085	유처리제	油處理劑	기름처리제
3086	유첨	有添	붙임 있음, 첨부물 있음
3087	유출하다	流出	유출하다, 흘러나오다, 흘러나가다, 새다
3088	유치	留置	유치(留置)
3089	유치도뇨관	留置導尿管	고정소변배출관 (유치도뇨관)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3090	유치증서	留置證書	보관증서
3091	유탈하다	遺脫	빠지다, 빠뜨리다
3092	유탈크	油tank	기름탱크, 기름통
3093	유포지	油布紙	유포지(油布紙)
3094	유포하다	流布	퍼뜨리다
3095	유하거리	流下距離	물이 흘러내리는 거리 ㉠
3096	유해조수구제	有害鳥獸驅除	유해조수제거
3097	유황	硫黃	유황(硫黃)
3098	유희	遊戲	놀이
3099	유희실	遊戲室	놀이실
3100	육골분	肉骨粉	고기뺏가루, 육골분(고기뺏가루)
3101	육묘장	育苗場	양묘장
3102	육분	肉粉	고기가루, 육분(고기가루)
3103	육성종	育成種	개량 품종
3104	육안	肉眼	눈, 맨눈, 시각, 육안(맨눈)
3105	육안으로	肉眼	눈으로, 직접 눈으로
3106	육안표본검사실	肉眼標本検査室	맨눈표본검사실
3107	육우	肉牛	고기소
3108	육절기	肉切機	고기절단기
3109	육종	育種	종자 키우기, 씨앗 개량
3110	윤거	輪距	윤간거리 ㉠
3111	윤작	輪作	돌리짓기(윤작)
3112	윤축	輪軸	윤축(輪軸)
3113	율/률, 열/렬	率, 列	① 률, 렬: ('L' 외의 '자음' 다음에서) 확률, 유량변동률, 행렬, 병렬, 직렬 ② 율, 열: ('L' 또는 '모음' 다음에서) 비율, 선율, 전율, 백분율, 보험료율, 나열
3114	~(으)로부터	(으)로부터	~으로부터 제외하다 → ~에서 제외하다, ~날로부터 → ~날부터, ~일로부터 → ~일부터, ~한 날부터, 공직으로부터 → 공직에서, 처음으로부터 → 처음부터, 즉시로부터 → 즉시, 그때부터
3115	~으로써		~여, ~여서, ~으로써(높여서, 보고함으로써)
3116	은닉하다	隱匿	감추다, 숨기다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3117	은비	隱祕	은밀히 함
3118	음곡	音曲	음악
3119	음수	陰數	음수, 0보다 작은 수
3120	음압	陰壓	음압 상태(기압을 떨어트린 상태)
3121	음용	飲用	음용, 마시는 데 쓰는, 마시는, 먹는, 먹는물용
3122	음용되다	飲用	마시다
3123	음용수	飲用水	먹는물, 먹는 물, 마시는 물
3124	음행	淫行	음행, 음란한 짓(행위)
3125	음향	音響	음향, 소리
3126	응결수	凝結水	물방울
3127	응력	應力	변형력, 응력(변형력)
3128	응소	應召	응소, 소집에 응함
3129	응하다	應	(명령에) 따르다, 응답하다, (협상에) 응하다, (검사를) 받다 [문맥에 맞게 해당 내용을 풀어 씀]
3130	~의(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 혼인관계의 종료한 때부터)		~가(저작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혼인관계가 끝난 때부터)
3131	의거하여	依據	의하여, 따라, 좇아, 근거 삼아
3132	의료수가	醫療酬價	의료수가(醫療酬價)
3133	의료시혜	醫療施惠	의료 혜택
3134	의무	醫務	의무(醫務)
3135	의사환자	疑似患者	의심환자
3136	의용하다	依用	의용(依用)하다, 빌려 쓰다, 그대로 사용하다
3137	의의	意義	의의, 뜻
3138	의장품	儀裝品	어선에 장치된 설비품
3139	의정	醫政	의무행정
3140	의제	擬制	의제, 의제(擬制)
3141	의지	義肢	인공팔다리
3142	의지창	義肢倉	인공사지 제작시설
3143	의치	義齒	틀니
3144	의하여 (방법에 의하여)		따라, [수단·방법으로 쓰일 때] 으로, 의하여
3145	의하여 (합의에, 서류에, 외상에, 고의에 의하여)		'의하여'를 그대로 사용(합의에 의하여, 서류에 의하여, 외상에 의하여, 고의에 의하여)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3146	의하여, 의한다 (규정에 의하여)		에 따라, 에 따른, 따른다(제○조에 따라, 제○조에 따른)
3147	2 이상(의 지방자치 단체)		둘 이상(○), 2 이상(×) [‘단위명사’가 없으면 숫자를 한글로만 쓴다]
3148	이 법 시행일전에, 이 법 시행전에		이 법 시행 전에
3149	이 법에 규정한		이 법에서 규정한
3150	이 법을 시행한 후 최초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3151	이각	耳殼	귓바퀴
3152	이개	離開	분리
3153	이격 현상	離隔 現象	벌어짐 현상
3154	이격거리	離隔距離	간격
3155	이격하다	離隔	떨어뜨리다, 거리를 두다, 간격을 유지하다
3156	이관	耳管	이관(耳管), 귀관(이관)
3157	이관검사기	耳管檢査器	귀관검사기(이관검사기)
3158	이관기능	耳管機能	귀관기능(이관기능)
3159	이관하다	移管	관할을 옮기다
3160	이기	移記	이기(移記), 이기(옮겨 작성)
3161	이년도	二年度	다음 연도
3162	이단	離斷	분리절단
3163	이동	異同	같지 않음, 이동(異同)
3164	이두근	二頭筋	두갈래근
3165	이두근건	二頭筋腱	이두근힘줄(biceps tendon)
3166	이루	耳漏	귓물
3167	이를		목적어가 따로 있으면 '이를'을 삭제함
3168	이를 준용한다 (○○규정은 ~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의 경우에는 ○○을 준용한다, ~에 관하여는 ○○을 준용한다
3169	이메일	email	전자우편
3170	이면	裏面	이면, 뒷면(뒤쪽), 속, 안
3171	이명증	耳鳴症	귀울림증
3172	이물	異物	이물, 이물질, 다른 물질
3173	이미	異味	조화롭지 않은 맛, 다른 맛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3174	이비경	耳鼻鏡	이비경(귀·코 검사 거울)
3175	이상 ~ 이내, 내지 ~ 이내		~ 이상 ~ 이하
3176	이서	裏書	서명, 확인, 배서
3177	이석하다	離席	자리를 뜨다, 자리를 비우다
3178	이설하다	移設	(시설을) 옮기다. (시설을) 옮겨 설치하다
3179	이송하다	移送	옮기다, 이송하다
3180	이수하다	履修	(과정을) 마치다, (과목, 교육)을 이수하다
3181	이시	異時	다른 때, 다른 시각
3182	이식	利息	이자
3183	이식	移植	옮겨심기
3184	이식하다	移植	옮겨 심다, 이식(移植)하다
3185	이온크로마 토그래피 (IC)	ion chromatog raphy	이온분석기(ion chromatography)
3186	이완되다	弛緩	느슨해지다, 이완(弛緩)되다
3187	이월하다	移越	이월(移越)하다
3188	이유	離乳	젖 떼기(이유)
3189	이유하다	離乳	젖을 떼다
3190	이율	利率	이자율
3191	이입자	移入者	이송(된) 수용자
3192	이입하다	移入	이입(移入)하다, 옮겨 넣다
3193	이재자	罹災者	재해 피해자
3194	이적	利敵	이적(利敵)
3195	이적	移積	옮겨 쌓기
3196	이적	移籍	이적(移籍)
3197	이적하다	移積	옮겨 쌓다
3198	이전하다	移轉	이전(移轉)하다
3199	이종	異種	이종, 다른 종류
3200	이질통	異質痛	무해자극동증, 이질통증
3201	이질환	耳疾患	귓병
3202	이첨판막	二尖瓣膜	승모판(mitral valve)
3203	이첩	移牒	[소송절차에서] 이첩
3204	이첩하다	移牒	보내어 알리다, 넘기다
3205	이체	移替	이체(移替)
3206	이축	移築	이축(移築)
3207	이취	異臭	이상한 냄새
3208	이취하다	泥醉	심하게 취하다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3209	이탈하다	離脫	이탈하다, (...에서) 벗어나다
3210	이표	利票	이자 지급표, 이표(이자 증표), 이표(이자 지급에 관한 증표)
3211	이하선	耳下腺	귀밑샘
3212	이행기	履行期	이행기(履行期)
3213	이환되다	罹患	(질병에) 걸리다, (충치가) 생기다
3214	익금	益金	이익금, 익금(益金)
3215	익년	翌年	다음 해, 이듬해, 다음 연도
3216	익상편	翼狀片	군날개
3217	익월	翌月	다음 달
3218	익일	翌日	이튿날, 다음날
3219	익충	益蟲	익충(益蟲)
3220	인	人	[사람인 경우에만] 명 [* 예와: 2인승, 3인분, 5인 가족]
3221	인감을 날인하다	印鑑	인감도장을 찍다
3222	인거인	隣居人	이웃, 이웃에 사는 사람, 이웃사람
3223	인경	鱗莖	비늘줄기
3224	인공와우기관	人工蝸牛機關	인공달팽이관이식기관
3225	인기	印記	낙관(落款)
3226	인낙	認諾	인낙(認諾)
3227	인덕턴스	inductance	인덕턴스(유도계수)
3228	인도하다	引渡	인도하다, 넘겨주다
3229	인동거리	隣棟距離	이웃한 건물과의 거리
3230	인력풀	人力pool	인력 후보군, 인력자원, 인력 은행
3231	인마	人馬	사람과 동물
3232	인망	引網	인망(引網), 끌그물
3233	인멸하다	湮滅	없애다, 없애버리다, 인멸하다
3234	인발	引拔	인발(뽑아냄), 인발(引拔)
3235	인발블록	引拔block	인발블록 (drawing block)
3236	인부	認否	인정 여부
3237	인부임	人夫賃	삿
3238	인상서	人相書	인상 설명서, 외모 설명서
3239	인상채득	印象採得	차아 본뜨기
3240	인성	韌性	질긴 성질, 질긴 정도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3241	인센티브	incentive	우대 혜택, 특전, 성과급
3242	인수서	引受書	인수 확인서
3243	인수증	引受證	인수 증명서, 인수증
3244	인수하다	引水	물을 끌어들이다
3245	인수·인계	引受引繼	인수인계
3246	인스턴트	instant	즉석식품
3247	인식하다	認識	알아보다
3248	인양하다	引揚	끌어올리다, 건져내다
3249	인용	認容	인용(認容)
3250	인육	印肉	인주, 도장밥
3251	인입	引入	인입(引入)
3252	인장	印章	도장
3253	인장강도	引張強度	인장강도(引張強度)
3254	인장력	引張力	당기는 힘, 인장력
3255	인지	隣地	인접 지역, 이웃 토지, 이웃 땅
3256	인차	人車	사람 수송용 (궤도)차량
3257	인체유래물 은행	人體由來物 銀行	인체유래물은행 (人體由來物銀行)
3258	인체티(T) 림프영양성 바이러스	人體T lymph營養性virus	사람T세포림프친화바이러스(HTLV)
3259	인출	引出	인출(引出)
3260	인출하다	引出	(돈을) 찾다
3261	인취하다	引取	인수 취득하다, 넘겨받다
3262	인치하다	引致	인치(引致)하다
3263	인터체인지 (IC)	interchange	나들목(IC)
3264	인텔리전트 퍼스널 헬스케어 기기	intelligent personal healthcare 機器	지능형 개인 건강관리 기기
3265	인텔리전트 빌딩	intelligent building	인텔리전트빌딩(정보화 빌딩)
3266	인프라	Infra	기반, 기반시설
3267	~로 인하여	因	~로 인하여, ~로 [* ~'때문에'로 순화하지 않음]
3268	인하하다	引下	인하하다, 내리다
3269	인후	咽喉	목구멍
3270	인·허가	認許可	인허가, 인가·허가
3271	일계	日計	날수 계산
3272	일과성	一過性	일시적 증상
3273	일괄하여	一括	한꺼번에
3274	일단	一團	일단(一團)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3275	일두	一頭	한 마리
3276	일람정기 출급	一覽定期 出給	일람정기출급(一覽定期 出給), 정한 날짜에 지급
3277	일몰시	日沒時	일몰시, 해질때, 해가질때
3278	일몰후	日沒後	일몰후, 해진후, 해가진후
3279	일방	一方	어느 한쪽, 한쪽
3280	일방향	一方向	한쪽 방향
3281	일부인	日附印	날짜도장
3282	일상지	一上肢	한쪽 팔
3283	일수	日數	날의 수, 날짜, 일수
3284	일시, 일시에	一時	일시(에), 한꺼번에, 한 번에, 일시적으로, 잠시
3285	일시정지	一時停止	우선 멈춤
3286	일신상	一身上	개인 사정
3287	일실하다	逸失	잃어버리다 (시기를) 놓치다
3288	일안시	一眼視	한 눈으로 보는 시각
3289	일액	日額	하루치, 일당
3290	일원	一員	구성원, 한 사람
3291	일위대가	一位代價	단위 수량당 단가
3292	일자	日字	날짜
3293	일정률	一定率	일정 비율
3294	일조	日照	별조임
3295	일체	一體	하나, 일체
3296	일체, 일체의, 일절, 일절의	一切	① 모든, 전부 ② (부정문에서) 어떤~도, 절대로, 전혀
3297	일출시	日出時	일출시, 해가 뜰 때
3298	일출전	日出前	일출 전, 해가 뜨기 전
3299	일측	一側	한쪽
3300	일측 폐야	一側 肺野	한쪽 폐의
3301	일측성	一側性	한쪽
3302	일측엽 부분절제술	一側葉 部分切除術	한쪽엽 부분절제
3303	일할	日割	일 단위
3304	일할계산 하다	日割計算	일 단위로 계산하다, 일수(日數)대로 계산하다,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하다
3305	일환으로	一環	(~의) 하나로
3306	임검	臨檢	현장조사, 현장검사, 현장검증
3307	임과	林科	산림관련학과
3308	임도	臨道	임시 도로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3309	임령	林齡	숲의 나이
3310	임료	賃料	삿, 임대료
3311	임면	任免	임면(任免)
3312	임목무육	林木撫育	숲 가꾸기
3313	임상	林相	산림 모습, 숲의 모습, 숲의 모양, 산림의 형태
3314	임상도	林相圖	임상도(林相圖)
3315	임정	林政	산림행정
3316	임종	林種	숲의 종류
3317	임지	任地	근무지
3318	임차	賃借	임차(賃借)
3319	임파선 종대	淋巴腺腫大	림프절 비대
3320	임핀저	impinger	임핀저(impinger: 집진측정장치)
3321	임하여	臨	임하여, 직면하여, 이르러, 나가서, 따라야
3322	임해	臨海	임해(臨海)
3323	임황	林況	숲 현황(임황)
3324	임·직원, 임직원	任·職員, 任職員	임직원
3325	입각하여	立脚	~에 따라서, 근거하여, 입각하여, 입각하다
3326	입거하다	入渠	입거(入渠)하다
3327	입고하다	入庫	(물건을) 창고에 넣다
3328	입도	粒度	날알 크기, 알 크기, 입자 크기
3329	입면도	立面圖	입면도(立面圖)
3330	입목	立木	입목(立木)
3331	입목죽	立木竹	입목(立木)·죽(竹)
3332	입방미터	立方	세제곱미터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3333	입보하다	立保	보증을 서거나 보증인으로 세우다
3334	입산	入山	입산, 산에 들어감
3335	입상	立像	입상(서 있는 상태)
3336	입식작목	入殖作物	재배작물
3337	입안	立案	입안(立案)
3338	입안하다	立案	(안·계획 등을) 만들다, 세우다, 입안하다
3339	입어	入漁	입어(入漁)
3340	입욕	入浴	목욕
3341	입자	粒子	알갱이, 작은 알갱이
3342	입자상	粒子狀	알갱이 형태, 입자 모양, 입자 형태
3343	입적하다	入籍	(호적에) 올리다
3344	입정	入廷	법정 입장
3345	입정하다	入廷	법정에 들어가다
3346	입증하다	立證	증명하다, 입증하다 [*입증'을 남발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347	입질하다	入質	질권을 설정하다
3348	입표	立標	경계표지, 입표(立標)
3349	입하	入荷	입하(入荷)
3350	입하하다, 입하되다	入荷	~이 들어오다, ~을 들여오다
3351	입회	入會	가입
3352	입회	立會	참관, 참석, 참여
3353	입회인, 입회자	立會人	참관인, 참관자, 참석자, 현장 출석자
3354	입회조사	立會調査	참관조사
3355	잉여	剩餘	잉여금, 나머지
3356	잉태	孕胎	임신

ㄷ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3357	자	子	자녀
3358	자	者	① 사람 [사람만 가리킬 때] ② 자 [사람 외에 단체, 법인 등도 가리킬 때]
3359	자각적굴절 검사	自覺的屈折檢査	자각적(주관적) 굴절검사
3360	자견	仔犬	(12개월 미만의) 강아지
3361	자동 제세동기	自動除細動器	자동심장충격기
3362	자력	資力	자금융력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3363	자력으로	自力	혼자 힘으로
3364	자문	諮問	① [질문하는 쪽] 자문하다, 문의하다, 묻다 ② [대답하는 쪽] 자문에 응하다, 질문에 답하다, 질문에 검토의견을 내놓다 [* 자문을 받다(×), 자문을 얻다(×), 자문을 구하다(×), 자문을 요청하다(×)]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3365	자변으로	自辯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여, 자기의 부담으로, 자기의 비용 부담으로
3366	자복하다	自服	자복(自服)하다
3367	자불소독기	煮沸消毒器	끓임소독기, 자비소독기(煮沸消毒器: 끓임소독기)
3368	자비로	自費	자기 비용으로, 자비로
3369	자상	刺傷	자상(찔린 상처)
3370	자서하다	自書	직접 쓰다, 스스로 쓰다, 직접 적다, 스스로 적다
3371	자수	字數	글자 수
3372	자양	字樣	필적(筆跡)
3373	자연감모	自然減耗	자연손실
3374	자연고사되다	自然枯死	자연히 죽다
3375	자연채포	自然採捕	자연 채취·포획
3376	자의	自意	자의, 스스로
3377	자인	自認	스스로 인정, 자인(自認)
3378	자조	自助	자조(自助)
3379	자조금	自助金	자조금(自助金)
3380	자중	自重	자중(自重), 물건 자체의 무게, 자체중량
3381	자진하여	自進	스스로, 자진하여
3382	자축	仔畜	새끼 가축
3383	자택	自宅	자택, 자기 집
3384	자하다	資	협조하다
3385	자행하다	恣行	저지르다
3386	자형	字形	(글자) 모양, 자형(字形)
3387	작도	作圖	제도(製圖)
3388	작량감경	酌量減輕	작량감경, 정상참작 감경
3389	작량감경하다	酌量減輕	헤아려 가볍게 하다
3390	작량하여	酌量	헤아려, 고려하여
3391	작목	作目	작물의 종류, 재배작물의 종류, 재배작물
3392	작목별	作目別	재배작물의 종류별, 재배작물별
3393	작문	作文	글짓기
3394	작부	作付	재배방법
3395	작부체계	作付體系	작부체계(作付體系), 경작 차례
3396	작열통	灼熱痛	불에 타는 듯한 통증 (痛)
3397	잔고	殘高	잔액
3398	잔고량	殘高量	잔량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3399	잔교	棧橋	구름다리, 선창다리, 잔교(구름다리)
3400	잔무	殘務	남은 일, 잔무
3401	잔여	殘餘	남은, 나머지
3402	잔여재산	殘餘財産	잔여재산, 남은 재산
3403	잔유량	殘有量	잔유량, 남아 있는 양
3404	잔임기간	殘任期間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전임자의) 남은 임기
3405	잔재하다	殘在	남아 있다, 남다
3406	잔존하다	殘存	남아 있다, 남다
3407	잔형	殘刑	남은 형
3408	잔형기	殘刑期	남은 형기
3409	잠견	蠶繭	누에고치
3410	잠사	蠶絲	잠사(蠶絲: 누에고치실)
3411	잠실	蠶室	누엣간, 잠실(蠶室)
3412	잠업	蠶業	잠업(蠶業)
3413	잠입하다	潛入	숨어들다, 잠입하다
3414	잠종	蠶種	누에씨
3415	잡서	雜書	잡서(雜書)
3416	장간막	腸間膜	창자간막(창자사이막)
3417	장경	長徑	장축(긴지름)
3418	장골	腸骨	엉덩뼈
3419	장관골	長管骨	팔과 다리의 긴 뼈, 장관골(팔·다리의 긴 뼈), 장관골(팔다리의 긴 뼈)
3420	장관벽	腸管壁	창자벽
3421	장굴	掌屈	손바닥쪽 굽히기, 장굴(굽히기)
3422	장기수위	長期水位	장기수위(長期水位)
3423	장남	長男	장남, 맏아들
3424	장래에	將來	앞으로, 장래에
3425	장루	腸瘻	창자셋길, 장루(창자셋길)
3426	장리하다	掌理	맡아 처리하다, 총괄하다
3427	장물	贓物	장물(贓物)
3428	장방형	長方形	직사각형
3429	장부호	長符號	긴 부호
3430	장사	葬事	장사(葬事)
3431	장성	長聲	긴소리
3432	장애인 보장구	障礙人 保障具	장애인보조기기, 장애인보조기구
3433	장애인 보조기	障礙人 補助器	장애인보조기구
3434	장애자	障礙者	장애인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3435	장열, 장렬	葬列	장례행렬
3436	장음	長音	긴소리
3437	장의비	葬儀費	장례비
3438	장일	葬日	장삿날
3439	장제	葬祭	장례
3440	장제(裝蹄) 업무	裝蹄 業務	말에 편자를 대는 업무
3441	장제비	葬祭費	장례비
3442	장책	墻柵	울타리, 담
3443	장치	藏置	보관
3444	장치	裝置	장치(裝置), 장착
3445	장치물품	藏置物品	보관물품
3446	장파형로	長波形路	비대칭 도로
3447	장폐색	腸閉塞	장폐색증(장자막힘증)
3448	장표	帳票	장부와 전표
3449	장피누공	腸皮瘻孔	창자피부셋길, 장피부셋길
3450	장학상	獎學上	학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3451	장흉곽신경	腸胸廓神經	긴가슴신경(장흉곽)
3452	재가	裁可	결재
3453	재감중	在監中	수감 중
3454	재개하다	再開	재개(再開)하다, 다시 시작하다
3455	재결	裁決	재결(裁決)
3456	재경정하다	再更正	다시 고치다
3457	재교부	再交付	재발급
3458	재료 적치장	材料積置場	재료를 쌓아두는 곳
3459	재배작목	栽培作目	재배작물의 종류
3460	재산실사	財産實査	재산실제조사
3461	재식	栽植	식재(植栽)
3462	재식하다	栽植	심다
3463	재심	再審	다시 심사, 다시 심의, 재심
3464	재역	災厄	재해
3465	재영중	在營中	군복무 중
3466	재임	再任	재임(再任)
3467	재적	材積	목재 부피, 목재 면적, 나무부피
3468	재정	裁定	재정(裁定)
3469	재정인	在廷人	'재정인'을 사용하지 않고 문맥에 맞게 순화함
3470	재차	再次	다시, 거듭, 두 번째
3471	쟁송	爭訟	쟁송(爭訟)
3472	쟁투	爭鬪	다툼, 서로 다툼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3473	저가	低價	싼값
3474	저감	低減	저감, 줄이기
3475	저감하다	低減	줄이다
3476	저렴하다	低廉	(가격이) 싸다, 값싸다, 저렴하다
3477	저류	貯留	모아 둠, 저장
3478	저류시설	貯留施設	저류시설(貯留施設: 물저장시설)
3479	저류하다	貯溜	(물 등을) 가두어 두다
3480	저리	低利	저금리
3481	저명	著名	이름난, 저명한
3482	저목장	貯木場	나무창고
3483	저수	貯水	저수(貯水)
3484	저수조	貯水槽	저수조(貯水槽)
3485	저습지	低濕地	저습지(低濕地)
3486	저작	咀嚼	씹기
3487	저작근	咀嚼筋	씹기근육
3488	저작기능	咀嚼機能	씹는 기능, 씹는 기능(저작기능)
3489	저지 고지	低地高地	낮은 땅 높은 땅, 낮은 지역 높은 지역
3490	저지하다	沮止	막다, 막아내다
3491	저질	底質	밑바닥 퇴적물(저질)
3492	저질토	底質土	밑바닥 퇴적물 토양(저질토)
3493	저촉	抵觸	불일치
3494	저촉되다	抵觸	어긋나다, 일치하지 아니하다, 일치하지 않다
3495	저치	貯置	저장
3496	저판	底板	밑판
3497	저하하다	低下	(처우를) 낮추다, (처우가) 낮아지다, (기능이) 떨어지다
3498	저해하다	沮害	방해하다, 해치다
3499	저황왁스유	低黃 wax油	저유황 고유동점 연료유
3500	적격자	適格者	자격에 적합한 사람, 자격이 있는 사람, 조건에 적합한 사람
3501	적기	適期	제때, 알맞은 시기, 제철, 적기
3502	적대	赤帶	붉은색 띠
3503	적등	赤燈	붉은색 등
3504	적발하다	摘發	적발하다, 들추어내다
3505	적부	適否	적합 여부
3506	적산유량계	積算流量計	적산유량계(합산유량계)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3507	적색	赤色	붉은색
3508	적석총	積石塚	적석총 (積石塚: 돌무지무덤)
3509	적설	積雪	적설, 눈 쌓임
3510	적송	積送	(물품을) 실어 보냄
3511	적송방법	積送方法	실어 보내는 방법
3512	적송지	積送地	적송지(積送地)
3513	적시	適時	제때, 적시
3514	적시하다	適示	구체적으로 제시하다
3515	적요	摘要	주요 내용
3516	적응증	適應症	적용되는 질환 등 ㉞
3517	적의	適宜	적절히, 알맞게
3518	적의한	適宜	마땅한, 적절한
3519	적재고	積載庫	(쌓아 두는) 창고, 적재고
3520	적재고	積載高	적재 높이
3521	적재지	積載地	짐 싣는 곳, 적재지
3522	적재하다	積載	(짐을) 싣다
3523	적전	敵前	적전(敵前)
3524	적정하다	適正	적절하다, 알맞다, 적정하다(적정 수준)
3525	적정한	適正	적절한, 적당한, 적정한
3526	적조	赤潮	적조(赤潮)
3527	적중단위	的中單位	경주 결과를 맞힌 단위
3528	적중시키다	的中	맞히다
3529	적중자	的中者	경주 결과를 맞힌 사람, 대상이 되는 결과를 맞힌 사람
3530	적출	積出	(짐을) 실어냄, 적출
3531	적출술	摘出術	제거술
3532	적출하다	摘出	들어내다, 꺼내다, 끄집어내다
3533	적취	摘取	꺼내 가짐
3534	적하	積下	(짐) 내리기
3535	적하	積荷	(짐) 싣기, (짐) 쌓기, 쌓아 놓은 물품, 적화(積貨)
3536	적하목록	積荷目錄	화물 목록, 짐 목록
3537	전	田	밭
3538	전가하다	轉嫁	넘기다, 떠넘기다, 미루다
3539	전간	癲癩	뇌전증
3540	전간성	癲癩性	뇌전증성
3541	전공상	戰公傷	전상·공상
3542	전과	前科	전과(前科)
3543	전과	前過	과거의 잘못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3544	전굴	前屈	앞굽히기
3545	전기절연 저항	電氣絶緣抵抗	전기절연차단저항
3546	전답	田畝	논밭
3547	전대	前貸	미리 빌림
3548	전대	轉貸	다시 빌려 줌, 전대(轉貸)
3549	전대(前貸) 채권	前貸債權	미리 준 돈의 채권
3550	전대하다	轉貸	다시 대여하다, 다시 빌려 주다, 전대(轉貸)하다
3551	전도	前渡	선지급, 미리 지급
3552	전도	轉倒	앞어짐, 쓰러짐, 전도
3553	전도액	前渡額	선지급액
3554	전동덤 웨이터	電動dumb waiter	전동 소형물품 운반용 승강기
3555	전두골	前頭骨	이마뼈(전두골)
3556	전득자	轉得者	넘겨받은 사람, 넘겨받은 자
3557	전등기	前登記	종전 등기
3558	전락	轉落	굴러떨어짐
3559	전락하다	轉落	굴러떨어지다, ~ 밖으로 쏟아지다
3560	전력	前歷	과거 경력
3561	전리방사선	電離放射線	전리(電離: 이온화) 방사선 ㉞
3562	전리층	電離層	전리층(이온화된 대기 영역)
3563	전말	顛末	경위
3564	전말조사	顛末調査	경위조사
3565	전매하다	轉賣	다시 팔다, 전매(專賣)하다
3566	전면	前面	앞면
3567	전몰	戰歿	전사
3568	전문	電文	전자통신문
3569	전문증거	傳聞證據	전문증거(傳聞證據)
3570	전박부	前膊部	아래팔 부위
3571	전박의지	前膊義肢	인공 아래팔
3572	전반슬	前反膝	과다펴짐무릎(전반슬)
3573	전방	前方	앞쪽
3574	전방 탈구	前方脫臼	앞쪽 이탈
3575	전방굴곡	前方屈曲	앞굽히기(전방굴곡)
3576	전방으로	前方	전방으로(앞쪽으로)
3577	전복	顛覆	뒤엎음, 뒤집힘, 전복
3578	전분	澱粉	녹말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3579	전사	轉寫	복사, 전사(베껴 작성)
3580	전상방거상	前上方擧上	앞위쪽올리기, 전상방거상 (앞위쪽 올리기)
3581	전석	甄石	벽돌
3582	전속하다	專屬	전속(專屬)하다
3583	전수하다	傳授	넘겨주다, 전해주다, 전수하다
3584	전승	傳承	전하여 이어감, 전승
3585	전실	前室	준비실
3586	전실	專室	전용 준비실
3587	전업	專業	전업, 전문업
3588	전업	轉業	업종 바꿈, 업종 전환, 직업전환
3589	전완골	前腕骨	아래팔뼈
3590	전완부	前腕部	아래팔
3591	전용	專用	전적으로 사용, 전용(專用)
3592	전원	全員	모든 사람, 모두, 전원
3593	전원	轉院	다른 ○○시설로의 이동, 다른 ○○시설로의 이송, 의료기관 변경, 전원(轉院)
3594	전원병원	轉院病院	전원병원(轉院病院)
3595	전월	前月	지난달
3596	전위	轉位	어긋남, 전위(빠가 어긋남)
3597	전위 골절	轉位 骨折	어긋나는 골절, 전위골절(빠가 어긋나는 골절)
3598	전위가 없는 골절	轉位가 없는 骨折	빠가 어긋난 경우가 아닌 골절
3599	전일	前日	전날
3600	전임	專任	전담
3601	전자우편 메일	電子郵便 mail	전자우편
3602	전자하부	轉子下部	돌기 아랫부분
3603	전작	田作	밭농사
3604	전작물	田作物	밭작물
3605	전장	全長	전체 길이, 총길이
3606	전장품	電裝品	전기·전자장치 또는 그 부품
3607	전쟁종지	戰爭終止	전쟁이 끝남
3608	전정	剪定	가지치기
3609	전조	前條	앞 조문
3610	전주	電柱	전봇대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3611	전주와	前肘窩	팔오금
3612	전지	戰地	전쟁 지역, 전쟁터
3613	전지	轉地	다른 지역에서
3614	전차	前次	직전
3615	전차금	前借金	미리 빌려준(빌린) 돈, 미리 지급한 돈, 미리 준 돈
3616	전착용	電着用	전착용(전기 도장용)
3617	전책임	全責任	모든 책임
3618	전촉	轉觸	위촉, 다시 위촉, 촉탁, 다시 촉탁
3619	전촉하다	轉觸	촉탁하다, 전촉하다, 다시 위촉하다, 다시 맡기다, 다시 촉탁하다
3620	전출하다	轉出	옮겨가다, 전출(轉出)하다
3621	전치부	前齒部	송곳니를 포함한 앞니부위(전치부), 전치부(위아래턱 첫 번째 앞니, 두 번째 앞니, 송곳니)
3622	전파하다	傳播	퍼뜨리다, 전파하다
3623	전폐	全廢	아주 그만둠, 모두 없앴
3624	전폐되다	全廢	전부 상실되다, (기능을) 모두 잃다
3625	전폭	全幅	전체 너비
3626	전표면	前表面	앞 표면, 앞 결면
3627	전해	電解	전기분해
3628	전행하다	專行	오로지 ~가 하다, 오로지 ~만이 하다
3629	전화	戰禍	전쟁의 피해
3630	전환하다	轉換	바꾸다, 전환하다
3631	전회	前回	직전
3632	전후	前後	앞뒤, 순서
3633	전후만	前後彎	척추앞뒤굽음
3634	전후양시에	前後兩時	앞뒤의 두 시점에
3635	전·후십자 인대	前·後十字 靱帶	앞·뒤 십자인대
3636	절감하다	節減	줄이다, 절약하다, 절감하다
3637	절개하다	切開	떼다, 자르다, 절개(切開)하다
3638	절과부	節顆部	결절부위
3639	절과부 신전 골절	節顆部 伸展 骨折	양쪽 위관절 용기골절
3640	절단	切斷	자르기, 절단
3641	절리 상태	節理 狀態	갈라진 상태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3642	절반하다	折半	반으로 가르다, 반씩 나누다
3643	절사	切捨	끊어 버림, 버림
3644	절상	切上	높임, 올림
3645	절상하다	切上	올리다, 높이다
3646	절손	切損	부러짐, 잘려 없어짐, 절손(切損)
3647	절연	絶縁	전열차단
3648	절연내력	絶縁耐力	절연내력(내전압)
3649	절연내력계	絶縁耐力計	절연내력(내전압)시험기
3650	절연내력 시험기	絶縁耐力試驗器	절연내력(내전압)시험기
3651	절연상태	絶縁状態	전기 또는 열을 통하지 않는 상태
3652	절연용	絶縁用	전열차단용
3653	절연저항계	絶縁抵抗計	절연저항계(절연저항측정기)
3654	절연차폐체	絶縁遮蔽體	전열·차단 물체
3655	절연하다	絶縁	전열을 차단하다
3656	절엽	切葉	절엽(切葉)
3657	절지	切芝	절지(切芝), 떼 뜨기
3658	절차를 취하다	節次	절차를 밟다, 차례를 밟다, 순서를 밟다
3659	절취고	截取高	토양을 잘라내는 높이
3660	절취부	截取部	잘린 부분
3661	절취선	截取線	자르는 선
3662	절취하다	截取	자르다, 잘라내다
3663	절취하다	竊取	훔치다
3664	절토	切土	땅깎기, 깎아 냄, 절토(땅깎기), 절토(흙깎기) ㉸
3665	절토사면	切土斜面	절토사면(깎기비탈면), 절토(땅깎기)한 비탈면
3666	절편	切片	(뼈)조각, 벗조각
3667	절하	切下	절하(切下)
3668	절화	折花	절화(折花)
3669	절·성토사면, 절토·성토사면	切盛土斜面	절토사면(깎기비탈면)· 성토사면(쌓기비탈면) ㉸
3670	점멸하다	點滅	깜박이다
3671	점비제	點鼻劑	점비제(點鼻劑)
3672	점안제	點眼劑	점안제(點眼劑: 안약), 점안제(點眼劑)
3673	점액수종	粘液水腫	점액부종
3674	점역	點譯	점자 번역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3675	점역사·교정사	點譯士·校正士	점역·교정사 (點譯·校正士)
3676	점이제	點耳劑	점이제(點耳劑)
3677	점진적으로	漸進	점진적으로, 점차
3678	점토	粘土	찰흙, 점토, 점토(粘土)
3679	점포	店鋪	가게, 점포
3680	점하다	占	차지하다
3681	점화하다	點火	불붙이다
3682	점·사용 허가	占·使用	점용·사용 허가
3683	접속되다	接續	이어지다, 연결되다, 접속되다
3684	접수	接穗	접수(접순)
3685	접안하다	接岸	접안(接岸)하다
3686	접적	接敵	적과 접촉하는
3687	접적지역	接敵地域	적과 접촉하는 지역, 접경지역
3688	접적해역	接敵海域	적과 접촉하는 해역
3689	접지부분	接地部分	땅에 닿는 부분, 접지부분
3690	정계정맥류	精系靜脈瘤	덩굴정맥류
3691	정고	艇庫	보관창고
3692	정관이 정하는	定款	정관에서 정하는
3693	정당에게	政黨	정당에, [사람, 동물] ~에게, [사물, 단체, 기관] ~에
3694	정도	精度	정밀도
3695	정동장애	情動障礙	정동장애(조울병)
3696	정려	精勵	모든 힘을 다함
3697	정려하다	精勵	부지런히 하다, 부지런히 힘쓰다, 노력하다
3698	정립	定立	정하여 세움, 정립
3699	정맥	精麥	보리쌀
3700	정박	碇泊	배가 머무름, 정박
3701	정박하다	碇泊	배가 머무르다, 정박하다
3702	정범	正犯	정범(正犯)
3703	정산	精算	정산(精算)
3704	정상	情狀	사정, 형편
3705	정상인	正常人	비장애인
3706	정선	停船	선박운항정지(정선)
3707	정선하다	停船	선박을 정지시키다
3708	정수	淨水	깨끗한 물, 물을 깨끗이 함, 정수
3709	정수	定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3710	정시	呈示	내어 보임, 정시(呈示)
3711	정신병자	精神病者	정신질환자
3712	정신분열병, 정신분열증	精神分裂病, 精神分裂症	조현병
3713	정신지체	精神遲滯	지적장애
3714	정실로	情實	사사로이
3715	정압조정실	定壓調整室	정압조정실(일정 압력 유지·조정실)
3716	정양	靜養	요양
3717	정역	定役	정역(定役)
3718	정온	定溫	일정한 온도
3719	정온하다	靜穩	고요하고 편안하다, 평온하다
3720	정원수	定員數	정원(定員)
3721	정위	正位	바른 위치, 바른 자리
3722	정육	精肉	정육, 살고기
3723	정을 알고	情	(그) 사실을 알고, 정황(또는 사정)을 알고
3724	정의	情意	정신, 감정
3725	정전	正前	바로 앞
3726	정정하다	訂正	바로잡다, 고치다, 바로 고치다
3727	정제	錠劑	알약
3728	정제하다	整除	나누어 떨어지다
3729	정주식	定柱式	가운뎃기동식
3730	정지	整地	땅고르기, 정지(땅고르기), 정지(흙고르기)
3731	정지시거	停止視距	정지가시거리
3732	정지하다	整地	땅고르기를 하다
3733	정체되다	停滯	밀리다, 막히다, 정체되다
3734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에 따라
3735	정황	情況	형편, 상황, 정황
3736	제	諸	여러, 모든
3737	제○조 제○항 제○호 ○목		제○조제○항제○호○목 [조, 항, 호, 목 번호를 모두 붙여 쓴다]
3738	제1수지 관절	第1手指關節	제1 손가락관절, 제1 손가락관절(뽀족손가락뽀마디관절)
3739	제1수지 관절(엄지 손가락은 지관절)에서	第1手指關節	제1 손가락관절에서
3740	제1족지 관절	第1足指關節	제1 발가락관절(뽀족발가락뽀마디관절)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3741	제1족지 관절(엄지 발가락은 지관절)에서	第1足指關節	제1 발가락관절에서
3742	제1지관절	第1指關節	뽀족가락뽀사이관절, 제1지관절(뽀족손가락뽀마디관절)
3743	제1지관절	第1趾關節	뽀족가락뽀사이관절, 제1지관절(뽀족발가락뽀마디관절)
3744	제1지관절 (엄지발가락 ~지관절)	第1趾關節	뽀족가락뽀사이관절 (엄지발가락의 경우 가락뽀사이관절), 제1지관절(뽀족발가락뽀마디관절, 엄지발가락의 경우에는 발가락 관절)
3745	제1지관절 (엄지손가락 ~지관절)	第1指關節	뽀족가락뽀사이관절 (엄지손가락의 경우 가락뽀사이관절)
3746	제1지관절 (엄지의 경우에는 지관절)	第1指關節	제1지관절(뽀족손가락뽀마디관절, 엄지손가락의 경우에는 손가락 관절)
3747	제2수지 관절	第2手指關節	제2손가락관절(뽀족손가락뽀마디관절), 제2손가락관절
3748	제2족지 관절	第2足指關節	제2 발가락관절
3749	제5위	第5位	다섯째 자리
3750	제거	除去	없앰, 제거
3751	제고를 위하여	提高	높이기 위하여, 높이려고
3752	제고하다	提高	높이다, 제고하다
3753	제관계	諸關係	모든 관계
3754	제구	祭具	제사 용구
3755	제규정	諸規定	모든 규정, 각종 규정, 여러 가지 규정
3756	제균하다	除菌	세균을 없애다, 세균을 제거하다
3757	제기하다	提起	(소송을) 제기하다, (안을) 내다
3758	제당	堤塘	제방
3759	제당표구	堤塘標高	제방표고
3760	제독	除毒	독성제거
3761	제매	弟妹	동생
3762	제모	制帽	제모(制帽)
3763	제반	諸般	모든, 여러, 각종, 전반적인
3764	제방	堤防	제방, 둑
3765	제방고	堤防高	제방높이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3766	제법	製法	제조법
3767	제불안전 골절	諸不完全骨折	전부 불안전골절
3768	제빙	製氷	제빙(製氷)
3769	제세	諸稅	각종 세금
3770	제세공과금	諸稅公課金	각종 세금과 공과금
3771	제세동기	除細動器	(자동)심장충격기
3772	제소	提訴	소송 제기, 제소
3773	제소하다	提訴	소송을 제기하다
3774	제수당	諸手當	모든 수당, 각종 수당
3775	제습기	除濕機	습기 제거기
3776	제식	制式	제작 양식, 형태·규격, 양식
3777	제식표	制式表	제작 양식표
3778	제염	除鹽	제염(除鹽)
3779	제염장	製鹽場	제염장(製鹽場)
3780	제원	諸元	규격·성능 표시, 형태 특성, 규격 및 성능 지표, 제원(諸元) ㉞
3781	제위험	諸危險	모든 위험, 각종 위험
3782	제작의장	製作意匠	조형미
3783	제전	祭典	행사, 축제
3784	제조 롯트 번호	製造 lot 番號	제조단위번호
3785	제조년월일	製造年月日	제조 연월일
3786	제증명	諸證明	각종 증명
3787	제증명서	諸證明書	각종 증명서
3788	제증명서류	諸證明書類	각종 증명 서류
3789	제지하다	制止	막다, 제지하다
3790	제진	除塵	먼지 제거
3791	제진하다	除塵	먼지를 제거하다
3792	제책	製冊	제본
3793	제책된	製冊	책자 형태의
3794	제체	堤體	담 본체
3795	제충당금	諸充當金	각종 충당금
3796	제판시설	製版施設	인쇄판제작시설
3797	제하다	除	빼다
3798	제하여	際	~할 때에
3799	제·개정	制·改定	제정·개정
3800	조갑위축	爪甲萎縮	손발톱위축
3801	조견표	早見表	일람표
3802	조기	早期	일찍, 이른 시일, 조기
3803	조달하다	調達	조달하다, 대다, 마련하다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3804	조도	照度	조명도, 조도, 조도(밝기)
3805	조도계	照度計	밝기측정기, 조도계(밝기측정기)
3806	조도기	照度器	조도기(밝기측정기)
3807	조동	粗動	조동(된덜림)
3808	조두	鳥痘	조류수두
3809	조력	助力	도움, 보조, 조력
3810	조력하다	助力	협력하다, 지원하다
3811	조련	調練	훈련, 조련
3812	조례가 정하다	條例	조례로 정하다, 조례에서 정하다
3813	조림	造林	조림(造林)
3814	조림자	造林者	나무 가꾸는 사람, 조림자(造林者)
3815	조변	調辨	조달, 현지조달
3816	조사료	粗飼料	풀사료 ㉞
3817	조서	調書	조서(調書), 조사서
3818	조석	潮汐	조석(潮汐)
3819	조선대	造船臺	배 만드는 작업대
3820	조선자	造船者	배 만드는 자
3821	조선지	造船地	배 만든 곳, 배 만드는 곳
3822	조세탈루	租稅脫漏	조세 탈루, 조세 누락
3823	조속기	調速機, governor	조속기(연료 분사량 조정기), 조속기(과속조절기)
3824	조속한	早速	빠른, 조속한
3825	조수	鳥獸	조수(鳥獸)
3826	조수류	鳥獸類	조수류(새·짐승)
3827	조업	操業	작업
3828	조울증	躁鬱症	양극성 장애(조울증)
3829	조장하다	助長	조장하다, 장려하다, 촉진하다
3830	조적식	組積式	벽돌쌓기식
3831	조정	調停	조정(調停)
3832	조정	調整	조정(調整)
3833	조차	操車	조차(操車)
3834	조처	措處	처리, 조치
3835	조체	繰替	일시 전용
3836	조타	操舵	조타(操舵)
3837	조판시설	組版施設	판짜기시설
3838	조풍	潮風	해풍(海風)
3839	조해	潮害	조수(潮水) 피해
3840	조향장치	操向裝置	조향장치(방향조절장치)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3841	조혈기계	造血器系	조혈계(혈구형성계통)
3842	조회하다	照會	알아보다
3843	족관절	足關節	발목관절 발목관절(족관절)
3844	족관절부	足關節部	발목관절 부위
3845	족관절부 염좌	足關節部 捻挫	발목관절 부위 염좌
3846	족관절부의 내외과	足關節部 内外踝	발목관절 부위의 안쪽·바깥쪽 복사
3847	족근 골척골간	足根 骨趾骨間	발목뼈·자뼈 간, 발목뼈 척골 간, 발목뼈(족근골) 자뼈 간
3848	족근골	足根骨	발목뼈, 발목뼈(족근골)
3849	족근관절	足根關節	발목관절
3850	족근부	足根部	발목
3851	족근중족	足根中足	발목발허리
3852	족근중족 관절	足根中足 關節	발목발허리관절 (족근중족관절), 발목발허리(리스프랑) 관절, 발목발허리관절 (Lisfranc joint) (㉸)
3853	족배부	足背部	발등, 발등부
3854	족배부 근건	足背部 筋腱	발등 근육힘줄
3855	족배부 근건파열창	足背部 筋腱破裂瘡	발등 근육힘줄 파열상처
3856	족부	足部	발 부위
3857	족부 중족골두	足部 中足骨頭	족부 중족골두(발의 발허리뼈머리)
3858	족중골	足踵骨	발꿈치뼈, 발뒤꿈치뼈, 발뒤꿈치뼈(중족골)
3859	족중골	足中骨	발허리뼈
3860	족지	足指	발가락
3861	족지골	足指骨	발가락뼈
3862	족하다	足	~로 충분하다, ~로 만족하다
3863	존부	存否	존재 여부
3864	존속기간	存續期間	존속기간(存續期間)
3865	존안	存案	보존
3866	존치하다	存置	존치하다, 그대로 두다
3867	종격	縱隔	세로간(종격)
3868	종격동	縱隔洞	가슴세로간(종격동) (㉸)
3869	종결하다	終結	마치다, 끝나다, 종결하다
3870	종계	種鷄	종계(種鷄: 씨닭), 씨닭, 종계
3871	종골	踵骨	발꿈치뼈, 발꿈치뼈(종골), 종골(발꿈치뼈)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3872	종괴	腫塊	종괴(덩이), 종괴(멍울)
3873	종균	種菌	씨균, 종균(種菌), 종균
3874	종근	種根	씨뿌리, 종근(種根), 종근
3875	종기	終期	종료일, 끝나는 시기
3876	종단	終端	끝선
3877	종돈	種豚	종돈(種豚: 씨돼지), 씨돼지, 종돈
3878	종란	種卵	씨알, 종란(種卵), 종란
3879	종람에 공하다	縱覽	열람하게 하다, 볼 수 있도록 하다
3880	종래의	從來	종래의, 기존의
3881	종료시까지	終了時	끝날 때까지, 종료할 때까지, 종료 시까지
3882	종료하다	終了	끝나다, 마치다, 종료하다
3883	종마	種馬	종마(種馬)
3884	종물	從物	종물(從物), 딸린 물건
3885	종봉	種蜂	씨벌, 종봉(種蜂)
3886	종서	縱書	세로쓰기
3887	종선	從船	부속선
3888	종신	終身	평생
3889	종약	宗約	종약(宗約: 종중 규약)
3890	종양	種羊	종양(種羊)
3891	종업하다	終業	작업을 마치다
3892	종업하다	從業	업무에 종사하다
3893	종용하다	從憑	권하다, 부추기다
3894	종자	種子	종자, 씨, 씨앗
3895	종지하다	終止	끝나다
3896	종창	腫脹	부어오름, 부기
3897	종축	種畜	씨가축, 종축(씨가축)
3898	종토	種兔	씨토끼
3899	종패	種貝	종패(씨조개)
3900	종피색	種皮色	종피색(種皮色: 씨껍질색)
3901	종형	縱形	세로형
3902	종횡	縱橫	종횡(縱橫)
3903	좌	左	왼쪽
3904	좌골	坐骨	궁둥뼈(좌골)
3905	좌골신경	坐骨神經	궁둥뼈(좌골)신경
3906	좌굴	左屈	왼쪽 굽히기
3907	좌단	左端	왼쪽 끝
3908	좌란	左欄	왼쪽 간, 왼쪽난
3909	좌상	挫傷	타박상
3910	좌장	座長	주재자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3911	좌전굴 측정기	坐前屈 測程器	앉은 자세에서 윗몸굽힘 측정기 (㉸)
3912	좌창	瘞瘡	종기
3913	좌측	左側	왼쪽
3914	좌현	左舷	좌현(左舷)
3915	죄적	罪迹	범행 흔적, 범죄 흔적
3916	죄증	罪證	범죄의 증거
3917	죄질	罪質	죄의 성질, 죄질
3918	주간	晝間	낮, 주간
3919	주개	廚芥	음식물 찌꺼기
3920	주곡선	主曲線	주곡선(주가 되는 등고선)
3921	주관절	肘關節	팔꿈치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
3922	주관절 내 상박골 소두	肘關節 內 上膊骨 小頭	팔꿈치관절 속 위팔뼈 작은머리
3923	주관절부	肘關節部	팔꿈치관절부, 팔꿈치관절 부위
3924	주근	主根	원뿌리
3925	주금	株金	주식출자금
3926	주두부	肘頭部	팔꿈치머리 부위, 팔꿈치
3927	주류	酒類	술, 술 종류
3928	주류	駐留	주류(駐留)
3929	주말하다	朱抹	붉은 선으로 지우다
3930	주물	主物	주물(主物), 주된 물건
3931	주벌	主伐	주된 벌목
3932	주범	主帆	주된 돛
3933	주벽	周壁	둘레벽, 주위 벽, 벽둘레
3934	주벽	酒癖	술버릇
3935	주사	酒齙	주사(Rosacea: 장미증)
3936	주산단지	主産團地	주 생산단지
3937	주상골·월상골간	舟狀骨·月狀骨間	손배뼈·반달뼈 사이
3938	주상병	主傷病	주 질병·부상
3939	주서	朱書	붉은 글자
3940	주서 믹서	juicer mixer	과즙기
3941	주석	註釋	풀이, 주석
3942	주선	朱線	붉은 선
3943	주수하다	注水	물을 넣다, 물을 주다
3944	주야	晝夜	밤낮
3945	주업	主業	주된 업무, 주 업무
3946	주유하다	注油	주유하다, 기름(을) 넣다
3947	주작목	主作木	주요 재배작물
3948	주재	主宰	주관, 맡아서 처리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3949	주정	酒精	에탄올
3950	주취	酒醉	주취, 음주
3951	주취자	酒醉者	술 취한 사람, 술에 취한 사람
3952	주취하다	酒醉	술에 취하다
3953	주택환경개조 코디네이팅	住宅環境改造 coordinating	주택환경개조 관리 및 조정(코디네이팅)
3954	주파수대폭	周波數帶幅	주파수대역폭
3955	주형	主桁	주형(교량보, 거더)
3956	주형	鑄型	거꾸집
3957	주화	鑄貨	주화(鑄貨)
3958	주효하다	奏效	효과적이다, 효력이 나타난다
3959	죽	竹	죽(竹), 대나무
3960	죽목	竹木	죽목(竹木)
3961	준설	浚渫	준설(浚渫)
3962	준수하다	遵守	준수하다, 지키다
3963	중경	中耕	중경(사이갈이)
3964	중권엽	中卷葉	속말음잎
3965	중등도	重等度	중등도(重等度)
3966	중량	重量	무게, 중량
3967	중수골	中手骨	손허리뼈
3968	중수수지 관절	中手手指 關節	손허리손가락관절
3969	중수지관절	中手指關節	손허리손가락관절, 손허리손가락관절 (중수지관절)
3970	중심선상부	中心線上部	중심선의 윗부분
3971	중절골	中節骨	중간마디뼈
3972	중족골	中足骨	발허리뼈, 발허리뼈(중족골)
3973	중족골저	中足骨低	발허리뼈 기저(metatarsal base)
3974	중족족근 관절	中足足根 關節	발목발허리(리스프랑) 관절
3975	중족지관절	中足指關節	발허리발가락관절, 발허리발가락관절 (중족지관절), 중족지관절 (발허리발가락관절) (㉸)
3976	중족지절 관절	中足指節 關節	발허리발가락관절, 중족지관절 (발허리발가락관절)
3977	중증도	重症度	중증도(重症度)
3978	중추지관절	中樞指關節	중추손가락관절
3979	중하다	重	무겁다, 심하다, 중하다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3980	중혼	重婚	이중혼인
3981	즉시급	即時給	즉시 지급
3982	즉시로	即時	즉시
3983	증빙서류, 증빙서	證憑書類	증명서류, 증명서
3984	증식하다	增殖	불어나다, 늘어나다, 높이다, 증식하다
3985	증양식지	增養殖地	증식·양식 지역
3986	증적	證迹	증거흔적, 지취, 관련 정보
3987	증치	增置	증원
3988	지		① ~지: 있는지 [막연한 의문] ② 지: 먼지된 지 [시간의 흐름]
3989	지골	指骨	손가락뼈, (손가락의) 뼈
3990	지골간	指骨間	손가락뼈 사이
3991	지관절	指關節	손가락관절, 가락뼈사이관절, 지관절(가락뼈사이관절)
3992	지관절	趾關節	발가락관절, 가락뼈사이관절, 지관절(가락뼈사이관절)
3993	지급필통지	支給畢通知	지급완료통지
3994	지기	識記	기록
3995	지남력	指南力	인지력
3996	지대	地代	토지 임대료
3997	지대지	地對地	지상 대 지상
3998	지대지통신	地對地通信	지상 대 지상 통신
3999	지대하다	至大	매우 크다
4000	지도격시법	指導隔時法	지도격시법(指導隔時法)
4001	지도통신식	指導通信式	지도통신식(指導通信式)
4002	지득하다	知得	알게 되다
4003	지려천박	智慮淺薄	지적능력부족
4004	지력증진	地力增進	땅심 돋우기, 지력(地力) 증진
4005	지료	地料	토지 임대료
4006	지물	地物	지물(地物)
4007	지변	支辨	변제, 충당, 갚음
4008	지분	持分	몫, 지분
4009	지불	支拂	지급
4010	지불기	支拂期	지급시기, 지급기간
4011	지불하다	支拂	지급하다, 내다
4012	지석묘	支石墓	고인돌
4013	지소	池沼	못과 늪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4014	지연응소	遲延應召	지연도착
4015	지장	指章	손도장
4016	지장목	支障木	장애가 되는 나무
4017	지장물	支障物	장애물, 방해물, 걸림돌, 지장물(支障物) [문맥에 맞춰 순화함]
4018	지적재산권	知的財産權	지식재산권
4019	지절 원위부	指節 遠位部	손가락뼈마디관절의 끝쪽, 지절 원위부
4020	지주	支柱	기둥, 받침대, 지지대
4021	지주막하	蜘蛛膜下	거미막밑
4022	지주목	支柱木	버팀목
4023	지중	地中	지하, 땅속, 지중(地中)
4024	지지워커	支持walker	보행보조차
4025	지질	地質	지질(地質)
4026	지질	紙質	옷감 재질
4027	지참	遲參	지각
4028	지체없이	遲滯	지체√없이
4029	지침	指針	지침, 길잡이
4030	지칭하다	指稱	지칭하다, 말하다, 일컫다, 가리키다
4031	지편	紙片	종잇조각
4032	지표	地表	지표(地表)
4033	지표수	地表水	지표수(地表水)
4034	지하굴착	地下掘鑿	지하굴착(땅파기)
4035	지하심도	地下深度	지하 깊이
4036	지황	地況	토지 현황(지황)
4037	직경	直徑	지름
4038	직계존· 비속	直系尊卑屬	직계존비속, 직계 존속·비속,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4039	직교	直交	직각으로 교차
4040	직권 또는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직권으로 또는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4041	직근	直近	바로 위, 바로 아래
4042	직근상급 기관	直近上級機 關	바로 위 상급기관
4043	직매하다	直賣	직매(直賣)하다
4044	직상	直上	바로 위
4045	직상 근위부	直上 近位部	바로 위 부위
4046	직상수급인	直上受給人	바로 위 수급인
4047	직상수직면	直上垂直面	바로 위 수직면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4048	직상층	直上層	바로 위층
4049	직송	直送	직송, 바로 보냄
4050	직업보도	職業輔導	직업 교육·지원
4051	직파	直播	직파(直播), 바로 뿌림
4052	직하	直下	바로 아래
4053	직하부	直下部	바로 아래 부위
4054	직하층	直下層	바로 아래층
4055	진경제	鎮痙劑	경련완화제
4056	진구성 탈구	陳舊性 脫臼	진구성 탈구 (오래된 탈구)
4057	진균	真菌	곰팡이, 진균
4058	진달	進達	전달
4059	진달하다	進達	보내다, 전달하다
4060	진력하다	盡力	힘쓰다
4061	진부	眞否	진정 여부, 진위 여부
4062	진애	塵埃	먼지
4063	진작하다	振作	복돋다, 복돋우다, 떨치다
4064	진전	振顫	진전(떨림)
4065	진전증	振顫症	진전증(떨림증)
4066	진정	眞正	진정(眞正)
4067	진화용	鎮火用	진화용(鎮火用)
4068	집금	集金	수금
4069	집금수당	集金手當	수금수당
4070	집단 폐사하다	集團 斃死	집단으로 죽다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4071	집라인	Zip-line	하강 레포츠(Zip-line)
4072	집락계산기	集落計算器	집락계산기 (미생물 배양·계산기)
4073	집래하다	集來	모이다
4074	집성목재	集成木材	집성한 목재제품
4075	집수암거	集水暗渠	집수(集水) 도랑, 물 모으는 도랑
4076	집수정	集水井	집수정(물저장고)
4077	집유	集乳	집유(集乳)
4078	집진장치	集塵裝置	먼지 제거장치, 먼지 모음장치
4079	집필	執筆	집필, 글쓰기
4080	집필하다	執筆	집필하다, (글을) 쓰다
4081	집하장	集荷場	집하장(集荷場)
4082	집합하다	集合	모이다
4083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4084	집화	集貨	집화(集貨)
4085	징구하다	徵求	제출을 요구하다, 요구하여 제출받다, 내게 하다, 받다 [* 법적 근거에 따라] 징수하다
4086	징벌에 처하다	懲罰	징계하다
4087	징수하다	徵收	징수하다, 징수(徵收)하다, 받다 * 거두어들이다(×)
4088	징후	徵候	조짐, 징후

㉔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4089	차감하다	差減	빼다
4090	차관선	借款先	차관 공여자
4091	차광	遮光	빛가림
4092	차기	次期	다음, 다음번, 차기
4093	차년도	次年度	다음 연도, 다음 해
4094	차단하다	遮斷	끊다, 차단하다
4095	차대	車臺	차대(車臺)
4096	차륜	車輪	차바퀴, 바퀴
4097	차면시설	遮面施設	가림, 가림 시설
4098	차명	車名	차 이름, 자동차 이름
4099	차수	遮水	물막이
4100	차순위자	次順位者	바로 다음 순위자, 차순위자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4101	차압	差壓	차압(압력차)
4102	차압계	差壓計	차압계(압력차 측정기)
4103	차음	遮音	소리 차단
4104	차인잔액	差引殘額	잔액 나머지 돈, 잔액 나머지 금액,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
4105	차임	借賃	임차료
4106	차임	車賃	차비
4107	차입처	借入處	빌린 곳
4108	차입하다	借入	차입(借入)하다
4109	차입하다	差入	차입(差入)하다, (의복 등을) 넣어 주다
4110	차장	車掌	승무원
4111	차제	此際	이 기회에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4112	차종	車種	차종류, 자동차종류, 차종
4113	차주	借主	차용인
4114	차출하다	差出	뽑아내다
4115	차폐	遮蔽	가림, 차폐
4116	차폐체	遮蔽體	차단물체
4117	차폭등	車幅燈	차폭등(車幅燈)
4118	차형	車型	차 형태, 자동차 형태
4119	차환	借換	차환(借換)
4120	차회	次回	다음번, 다음 회
4121	차후	此後	이후
4122	착공	着工	공사 시작, 착공
4123	착급	着給	착급(着給)
4124	착모하다	着帽	모자를 쓰다
4125	착색	着色	물들임, 착색
4126	착석하다	着席	앉다, 자리에 앉다
4127	착수	着水	착수(着水)
4128	착수하다	着手	시작하다
4129	착순	着順	도착순, 도착 순서
4130	착용하다	着用	입다, 쓰다, 신다, 착용하다
4131	착유	搾乳	젖 짜기, 착유(搾乳)
4132	착정장치	鑿井裝置	우물 파는 장치
4133	착화	着火	점화
4134	찬동	贊同	찬성
4135	찬조	贊助	찬조(贊助)
4136	찬조하다	贊助	뜻을 같이하다
4137	참관	參觀	참관, 살펴봄
4138	참사자	參祀者	제사 참가자
4139	참작하다	參酌	고려하다, 참작하다
4140	참절하다	僭竊	불법으로 점령하다
4141	참칭	僭稱	거짓, 참칭(僭稱)
4142	창달	暢達	발전
4143	창성	創姓	성(姓)을 지음, 창성(創姓)
4144	창호	窓戶	창문
4145	창호도	窓戶圖	창호도(창문 도면)
4146	채굴하다	採掘	캐내다, 캐어내다
4147	채수	採水	물 퍼 올리기
4148	채염	採鹽	소금 채취
4149	채조	採藻	해조 채집
4150	채종	採種	씨받기, 채종(採種)
4151	채취	採取	캐내다, 얻다, 채취하다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4152	채탄	採炭	석탄 캐기, 채탄
4153	채포	採捕	채취·포획
4154	채혈백	採血bag	혈액백
4155	책정	策定	정함, 책정
4156	처단하다	處斷	처벌하다
4157	처사	處事	일 처리
4158	처하다	處	(벌금에) 처하다 * (벌금형을) 과(科)하다, 부과하다 * (과태료를) 부과하다
4159	척결하다	剔抉	척결하다, 없애다
4160	척골	尺骨	자뼈, 척골(尺骨: 자뼈)
4161	척골	脊骨	척추뼈, 등골뼈
4162	척골 간부	尺骨 幹部	자뼈 중간부분, 자뼈 몸통, 자뼈 몸통(척골 간부)
4163	척골 골두	尺骨 骨頭	자뼈머리
4164	척골 근위부	尺骨 近位部	자뼈 몸쪽부위
4165	척골 주두부	尺骨 肘頭部	자뼈 팔꿈치머리 부위
4166	척골신경	尺骨神經	자뼈(척골)신경
4167	척굴	蹠屈	발바닥쪽 굽히기, 척굴(발바닥쪽 굽히기)
4168	척사위	尺斜位	손목의 척골(尺骨: 자뼈) 쪽 굽히기(척사위), 척사위(자뼈쪽 굽히기)
4169	척수	隻數	선박 수, 어선 수
4170	척주	脊柱	척주(등골뼈)
4171	척주체	脊柱體	척추뼈몸통
4172	척주체간	脊柱體幹	척추뼈몸통
4173	척추강	脊椎腔	척추공간(척추강)
4174	척추골	脊椎骨	척추뼈
4175	척추궁	脊椎弓	척추뼈고리(척추궁)
4176	척추전굴증	脊椎前屈症	척추앞굽음증(척추전만증)
4177	척추측만증	脊椎側彎症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
4178	척추후만증	脊椎後彎症	척추뒤굽음증(척추후만증)
4179	천거하다	薦舉	추천하다
4180	천골	薦骨	엉치뼈, 엉치뼈(천골)
4181	천공	穿孔	구멍 뚫기, 구멍뚫기(천공), 천공(구멍 뚫기), 구멍
4182	천공방식	穿孔方式	구멍 뚫기 방식
4183	천공술	穿孔術	원형절제술, 천공술(원형절제술)
4184	천반	天盤	천장의 암반
4185	천비골신경	淺腓骨神經	얕은종아리신경 (표재비골신경)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4186	천장골 간 관절	薦腸骨 間關節	영치영덩관절
4187	천장관절	薦腸關節	영치영덩관절, 영치영덩관절(천장관절), 천장관절(영치영덩관절)
4188	천장관절 이개	薦腸關節 離蓋	영치영덩관절 분리
4189	천재·지변	天災·地變	천재지변
4190	천정	天井	천장
4191	천추	薦椎	영치뼈
4192	천추골	薦椎骨	영치뼈
4193	천추화	薦椎化	영치뼈화(천추화)
4194	천포창	天庖瘡	천포창(물집증)
4195	천후상태	天候狀態	날씨 상태, 기후 상태
4196	철도임	鐵道賃	철도 운임
4197	각 장의 철목	綴目	편철한 각 장 사이
4198	철목	綴目	편철항목
4199	철야	徹夜	밤샘, 철야
4200	철야하다	徹夜	밤새우다
4201	철주	鐵柱	쇠기둥
4202	철폐하다	撤廢	없애다
4203	첨규콘딜롬	尖圭Condyloma	뾰족콘딜로마 (Condyloma acuminatum)
4204	첨기하다	添記	추가로 적다, 함께 적다
4205	첨목	添木	버팀목
4206	첨부	添附	붙임, 첨부
4207	첨언하다	添言	덧붙여 말하다
4208	첨장	添狀	첨가 명세서
4209	첨족	尖足	발꿈치들린흰발, 첨족
4210	첨부하다	貼付	붙이다
4211	첨용하다	貼用	붙이다
4212	청기장애	聽器障礙	청각기관 장애
4213	청무	廳務	관청 업무
4214	청부	請負	도급
4215	청수	淸水	맑은 물
4216	청수시간	聽守時間	수신시간
4217	청인	廳印	관인(官印)
4218	청정하다	淸淨	맑고 깨끗하다, 청정하다
4219	청취하다	聽取	듣다
4220	청피반양	靑皮斑瘍	울혈반혈관염
4221	체가거리	遞加距離	누계거리
4222	체감하다	遞減	차례로 줄이다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4223	체당금	替當金	대지금, 대신 지급한 비용
4224	체당하다	替當	대신 지급하다
4225	체득하다	體得	익히다, 체득하다
4226	체류하다, 체재하다	滯留, 滯在	체류하다
4227	체부	體部	몸통
4228	체약국	締約國	조약체결국, 협약체결국
4229	체인마모 스케일	chain磨耗 scale	체인 마모 측정기 (chain elongation scale)
4230	체임	替任	교체임용
4231	체장	體長	몸길이
4232	체적	體積	부피
4233	체차	遞次	차례로
4234	체크리스트	check list	점검표, 점검 항목
4235	체크밸브	check valve	검사밸브
4236	체표	體表	몸 표면, 신체 표면
4237	(골반 부위) 체표 면	體表面	(골반 부위) 표면
4238	체표면적	體表面積	신체 표면, 신체 표면 면적
4239	체화되다	體化	내재되다
4240	체크	check	체크(○), 체크(×)
4241	초과 과량인 경우	超過 過量	초과하여 넘칠 때
4242	초년	初年	첫해
4243	초다수성	超多收性	다수확, 초다수확
4244	초두	初頭	첫머리, 처음
4245	초두목	梢頭木	초두목(梢頭木)
4246	초래하다	招來	(지장을) 주다, 불러일으키다, 가져오다
4247	초발	初發	처음 발병(초발)
4248	초병	哨兵	보초병
4249	초본류	草本類	풀류, 풀 종류, 초본류(草本類)
4250	초빙	招聘	모셔 옴, 모심, 초빙
4251	초생지	草生地	풀밭
4252	초식가축	草食家畜	풀먹이 가축
4253	초음파탐상 시험기	超音波探傷試驗器	초음파탐상시험기 (초음파이용조사기), 초음파시험기 (㉸)
4254	초일	初日	첫날
4255	초지	草地	초지, 풀밭, 꼴밭
4256	초지조성	草地造成	꼴밭 조성, 풀밭 조성, 초지 조성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4257	초크	chock	바퀴 고정 받침목
4258	초화류	草花類	초화류(草花類)
4259	촉지도	觸指圖	점자 안내판, 시각장애인용 안내판
4260	촉탁의사	囑託醫師	계약의사
4261	촉탁하다	囑託	(업무를) 맡기다, 촉탁하다
4262	총가	銃架	총 받침대
4263	총공급고	總供給高	총공급량
4264	총괄적	總括的	종합적, 전체적
4265	총람자료	總覽資料	종합자료, 종합서적목록
4266	총리령이 정하다		총리령으로 정하다
4267	총불입금	總拂入金	총납입금
4268	총비골신경	總腓骨神經	온종아리(총비)신경
4269	총수담관	總輸膽管	총담관(온쓸개관)
4270	총용뇌관	銃用雷管	총 뇌관
4271	총용실포	銃用實包	총알
4272	총인(T-P)	總磷	총인(total phosphorus)
4273	총종	銃種	총 종류, 총의 종류
4274	총질소(T-N)	總窒素	총질소(total nitrogen)
4275	총체적	總體的	전체적
4276	총햇치선	總Hatch船	총해치선(總Hatch船)
4277	총·포	銃·砲	총포
4278	촬영하다	撮影	찍다
4279	최고	催告	독촉, 촉구, 최고(催告)
4280	최다액	最多額	최다액(最多額)
4281	최단	最短	최단(最短), 가장 짧음
4282	최대경	最大徑	최대 지름
4283	최악	最惡	최악, 가장 나쁨
4284	최원축간거리	最遠軸間距離	가장 먼 축간거리
4285	최장	最長	최장, 최장(最長), 가장 길
4286	최종일	最終日	최종일, 마지막 날
4287	최초	最初	처음, 맨 처음, 최초
4288	최하위	最下位	맨 아래, 제일 낮은, 최하위
4289	추계	推計	어림셈, 추정, 추계
4290	추구검사	追求檢査	추적검사
4291	추궁하다	追窮	캐묻다, 따져 묻다, 추궁하다
4292	추기하다	追記	추가로 적다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4293	추백리	皚白痢	병아리흰설사병, 추백리(皚白痢: 병아리흰설사병), 추백리
4294	추불	追拂	추가 지급
4295	추산하다	推算	어림잡다, 미루어서 계산하다
4296	추상	醜相	흉터
4297	추상지	槌狀趾	망치 모양 발가락, 추상지
4298	추송하다	追送	추가로 보내다, 덧붙여 보내다
4299	추완하다	追完	추후 보완하다
4300	추월	追越	앞지르기
4301	추지하다	推知	추측하여 알다, 미루어 알다
4302	추형	癩形	흉한 형태, 흉한 모양, 추한 형태(모양)
4303	추후	追後	나중, 이다음, 뒤, 다음, 추후
4304	추흔	醜痕	흉한 흉터
4305	축거	軸距	앞뒤바퀴의 거리, 축간거리
4306	축분	畜糞	축분(畜糞), 가축 똥
4307	축사	畜舍	축사, 가축우리
4308	축상	軸狀	축상(정면의 수평단면)
4309	축소하다	縮小	축소하다, 줄이다
4310	축압기	蓄壓機	축압기(압력흡수저장장치)
4311	축제	築堤	둑 쌓기, 축제(築堤)
4312	축종	畜種	가축의 종류, 가축의 종자
4313	축종별	畜種別	가축 종류별
4314	축중	軸重	축하중
4315	출감	出監	출소
4316	출구	出口	출구, 나가는 곳
4317	출급	出給	출급, 내줌
4318	출두	出頭	출석
4319	출선하다	出船	배가 떠나다, 배가 출발하다, 출선(出船)하다
4320	출소	出訴	소 제기
4321	출원시기	出願時期	신청 시기
4322	출입구, 출·입구	出入口	출입구, 출입문
4323	출자좌	出資座	출자계좌
4324	출재	出財	출재(出財)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4325	출재하다	出財	출재(出財)하다, 재산을 내놓다
4326	출정	出廷	법정 출석
4327	출정하다	出廷	법정에 출석하다
4328	출주	出走	출진
4329	출주마	出走馬	출진하는 말
4330	출주하다	出走	경주에 내보내다
4331	출하하다	出荷	실어 내다, 출하하다
4332	출항하다	出港	(배가) 나가다, 출항하다
4333	출현하다	出現	나타나다, 출현하다
4334	충기판실	充氣瓣室	충기밸브실
4335	충수	充水	물을 채우다
4336	충용	充用	충용(充用)
4337	충용하다	充用	보충하여 쓰다
4338	충원하다	充員	인원을 채우다
4339	충전하다	充填	채우다, 충전하다
4340	취거하다	取去	가져가다
4341	취락	聚落	취락, 촌락
4342	취로사업	就勞事業	공공근로사업
4343	취사	炊事	밥 짓기, 부엌일, 취사
4344	취사원	炊事員	조리원
4345	취입	取入	끌어들임
4346	취입	吹入	녹음
4347	취주	吹奏	연주
4348	취집	聚集	수집
4349	취체	取締	단속, 규제
4350	취출	取出	꺼냄
4351	취토장	取土場	취토장 (取土場: 흙 채취장)
4352	취한증	臭汗症	땀악취증
4353	취합하다	聚合	모으다
4354	쉐잉껌	chewing gum	껌, 쉐잉껌(○), 쉐잉검(×)
4355	측구	側溝	옆도랑, 곁도랑, 곁도랑, 길도랑, 측구(길도랑), 길도랑(측구)
4356	측두골	側頭骨	관자뼈(측두골)
4357	측만	側彎	옆굽음
4358	측방	側方	옆부분, 옆쪽
4359	측벽	側壁	측벽(側壁)
4360	측변	側邊	옆변
4361	측상방거상	側上方舉上	옆위쪽올리기, 측상방거상(옆위쪽올리기)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4362	측약	側藥	마찰제, 마찰약
4363	측점	測點	측정점
4364	측정하다	測定	측정하다, 재다
4365	측주식	側柱式	옆기둥식
4366	측차	側車	운반차
4367	측표	測標	측량표지
4368	측후	測候	기후 측정, 기상 측정
4369	층고	層高	층고(層高), 층과 층 사이의 높이
4370	치골	恥骨	두덩뼈, 두덩뼈(치골)
4371	치골 결합부 이개	恥骨 結合部離開	두덩결합분리 (치골결합분리)
4372	치골 상·하지	恥骨 上·下枝	두덩뼈 위·아래가지
4373	치골지	恥骨枝	두덩뼈가지(치골지)
4374	치근	齒根	치아뿌리(치근)
4375	치근막염	齒根膜炎	치아뿌리(치근)막염
4376	치루	痔漏/痔瘻	항문셋길
4377	치면	齒面	치아표면
4378	치면세마	齒面洗磨	치아표면치석제거
4379	치목	治木	치목(治木: 나무다듬기)
4380	치사하다	致死	치사(致死)하다, 사망에 이르게 하다, 죽음에 이르게 하다, 죽게 하다
4381	치상하다	致傷	치상(致傷)하다, 상해에 이르게 하다, 다치게 하다
4382	치설음	齒舌音	잇몸소리
4383	치아	齒牙	치아, 이
4384	치아우식	齒牙齲蝕	충치, 치아우식
4385	치아우식증	齒牙齲蝕症	충치
4386	치어	稚魚	어린 물고기, 치어(稚魚), 치어(어린물고기)
4387	치열	痔裂	항문열창
4388	치은	齒齦	잇몸
4389	치잠	稚蠶	어린누에
4390	치조골	齒槽骨	잇몸뼈(치조골), 이틀뼈, 치조골(이틀뼈), 치조골(이틀)
4391	치주농양	齒周膿瘍	잇몸고름집
4392	치주질환	齒周疾患	잇몸병
4393	치차	齒車	톱니바퀴
4394	치탈	禿奪	박탈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4395	치폐	稚貝	어린 조개
4396	친수	親授	직접 수여
4397	침로	針路	침로(針路: 선수 방향)
4398	침목	枕木	받침목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4399	침지	浸漬	침지(浸漬: 약제에 담금)
4400	침지하다	浸漬	담그다
4401	침하하다	沈下	내려앉다
4402	칭량	稱量	무게 측정

ㄱ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4403	카 (카, ~ 등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는~)	car	운반차량
4404	카고 컨베이어	cargo conveyor	수화물 이동장치 (Cargo Conveyor)
4405	카드뮴흙	cadmium fume	카드뮴분진
4406	카메라펜	camera pen	카메라 부착 펜
4407	카바	cover	덮개 ※ 규범표기: 커버
4408	카테터	catheter	도관, 도관(카테터)
4409	칼라	color	컬러(○), 칼라(×)
4410	캐노피	canopy	지붕덮개, 캐노피(지붕덮개)
4411	캐놀러	cannula	삽입관
4412	캐비닛	cabinet	캐비닛(○), 캐비넷(×)
4413	캠핑	camping	야영
4414	캡타이어 케이블	cabtyre cable	캡타이어케이블 (경질고무케이블)
4415	커넥터	connector	커넥터(접속기)
4416	커버류	cover類	덮개류
4417	커피숍	coffee shop	커피숍(○), 커피숍(×)
4418	컨덕턴스	conductance	컨덕턴스(전기전도율)
4419	컨베이어카	conveyor car	수화물 하역차 (conveyor car)
4420	컨테이너 달리	container dolly	화물 트레일러 (container dolly) ※ 'dolly'의 규범표기: 돌리
4421	컨텐츠	contents	콘텐츠(○), 컨텐츠(×)
4422	컴비네이션 램프	combination lamp	후미등(콤비네이션램프, 콤비네이션램프(후미등))
4423	케이싱	casing	케이싱(casing: 굴착면 보호관)
4424	케틀	kettle	주전자, 솥, 가열용기, 케틀(kettle: 가열 용기)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4425	켈로이드	keloid	흉터종(켈로이드)
4426	코스	course	코스, 과정, 경로
4427	코크스	cokes	다공질 고체 탄소 연료, 코크스(다공질 고체 탄소 연료)
4428	코호트 격리	cohort 隔離	동일집단 격리
4429	콘베이어	conveyor	컨베이어(○), 콘베이어(×)
4430	컨테이너	container	컨테이너(○), 콘테이너(×)
4431	콘택트렌즈	contact lens	콘택트렌즈(○), 콘텍트렌즈(×)
4432	콜타르피치	coal tar pitch	콜타르 찌꺼기 (coal tar pitch)
4433	쿨러	cooler	냉각기
4434	크레인	crane	기중기
4435	크롤칼키	chlor calcium hypochlorite	클로르석회 (chlor 石灰: 표백분)
4436	크롬(6가), 6가크롬 (Cr6), 6가 크롬 (Cr6+)	Chrom	6가크로뮴(Cr6+)
4437	클라이밍	climbing	암벽타기
4438	클러스터	cluster	협력지구
4439	클린벤치	clean bench	클린벤치 (무균작업실형대)
4440	키스 앤드 라이드 구역	kiss and ride 區域	환승정차구역
4441	(진단) 키트	kit	(진단) 도구

E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4442	타, 타 ~	他	다른 것, 다른 ~
4443	타가	他家	다른 집, 남의 집
4444	타각적	他覺的	객관적, 타각적(객관적) ⊕
4445	타당성 여부, 타당성 유무		타당성, 타당한지
4446	타력	精力	타력(精力)
4447	타방	他方	다른 쪽
4448	타법과의 관계		다른 법률과의 관계
4449	타안	他眼	다른 눈
4450	타액선	唾液腺	침샘(타액선)
4451	타액선 루	唾液腺 瘻	침샘뺨길(salivaryfistula)
4452	타에 우선하여		다른 것에 우선하여
4453	타운	town	마을
4454	타일	tile	타일
4455	타이틀	title	제목
4456	타인	他人	타인[단체나 법인이 포함된 경우, 다른 사람[사람인 경우]
4457	타인	打印	타인(打印: 관인을 찍음)
4458	타전하다	打電	전보나 무전을 치다, 타전하다
4459	타정	打釘	못을 박음
4460	타정총	打釘銃	못총
4461	타처	他處	다른 곳
4462	타형	他刑	다른 형(刑)
4463	탁도	濁度	혼탁도
4464	탁송하다	託送	운송을 위탁하다
4465	탁월하다	卓越	뛰어나다
4466	탁질 물질	濁質 物質	이물질
4467	탄자	彈子	탄알
4468	탈구	脫臼	탈구, 뺨
4469	탈납	脫-	납성분 제거
4470	탈루	脫漏	탈루, 누락
4471	탈모	脫帽	모자를 쓰지 않은(알고), 모자 등을 쓰지 않은(알고), 모자 벗은
4472	탈산	脫酸	탈산(脫酸: 산성 제거)
4473	탈수초성	脫韃韜性	탈수초성(말이집탈락)
4474	탈실하다	脫失	이탈하거나 없어지다, (색깔이) 없어지다
4475	탈염	脫鹽	염류제거, 염(鹽)류제거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4476	탈자	脫字	빠진 글자, 탈자
4477	탈지	脫脂	기름 빼기, 탈지
4478	탈지면	脫脂綿	약솜, 탈지면
4479	탈청	脫菁	녹제거
4480	탈황	脫黃	황산화물제거
4481	탈회	脫會	탈퇴
4482	탑승하다	搭乘	탑승하다, 타다
4483	탑재하다	搭載	탑재하다, 싣다
4484	태그	tag	꼬리표, 태그(○), 택(×)
4485	태만히 하다	怠慢	게을리하다
4486	태양	態樣	형태, 모습이나 형태
4487	택벌	擇伐	골라베기
4488	탈کم	talcum	면도용 파우더
4489	터그카	tug car	소형 견인차(tug Car)
4490	터보차저	turbocharger	터보차저(turbocharger: 배기터빈 과급기)
4491	터빈 블레이드	turbine blade	터빈 블레이드(날개)
4492	터어기	Turkey	타키(○), 터어기(×), 튀르키예(○)
4493	텔레비전	television	텔레비전(○), 텔레비전(×)
4494	토물	吐物	구토물
4495	토벽조	土壁造	흙벽구조
4496	토사	土砂	토사, 토사(土砂), 흙과 모래, 흙모래
4497	토석	土石	토석, 토석(土石), 흙과 돌
4498	토성	土性	토양의 성질
4499	토압	土壓	토압(土壓), 땅의 압력
4500	토잉 트랙터	towing tractor	항공기 견인차(towing tractor)
4501	토제	土堤	흙둑
4502	토조	土造	흙구조
4503	토출	吐出	배출
4504	토취장	土取場	취토장(取土場), 취토장(흙 채취장), 채토장(採土場), 흙 파는 곳, 흙 채취장
4505	토크렌치	Torque Wrench	토크 측정기 ⊕
4506	통고하다	通告	알리다
4507	통괄하다	統括	총괄하다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4508	통달	通達	도달
4509	통리하다	統理	총괄하다
4510	통모함이 없어	通謀	모의하지 아니하고, 모의하지 않고
4511	통보필증	通報畢證	통보확인증
4512	통보하다	通報	통보하다, 알리다
4513	통산하다	通算	합산하다
4514	통상	通常	일반적으로, 일반, 보통
4515	통상우편물	通常郵便物	보통우편물
4516	(상하수도의) 통수	通水	(상하수도의) 개방
4517	통용	通用	통용, 널리 쓰임
4518	통전	通電	통전(通電)
4519	통정한	通情	상대방과 따고 한
4520	통지하다	通知	알리다, 통지하다
4521	통첩	通牒	통지
4522	통첩하다	通牒	알리다, 통지하다
4523	통풍건습계	通風乾濕計	습도측정기기
4524	통할	統轄	총괄
4525	통할점	統轄點	총괄점
4526	통할하다	統轄	총괄하다
4527	통화등기	通貨登記	현금등기
4528	통·폐합	統廢合	통폐합
4529	퇴거하다	退去	퇴거하다, 나가다
4530	퇴록	退錄	(등록) 말소, 삭제
4531	퇴비사	堆肥舍	퇴비저장시설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4532	퇴석하다	退席	퇴장하다
4533	퇴영	退營	퇴영(退營)
4534	퇴정	退廷	법정 퇴장
4535	퇴청	退廳	퇴근
4536	퇴피로	退避路	대피구역
4537	퇴행운전	退行運轉	후진 운전
4538	투기하다	投棄	버리다, 투기하다
4539	튜브카테터	tube catheter	튜브도관
4540	튜빙	tubing	튜빙(tubing: 배관)
4541	트랜스코더	transcoder	코드변환기
4542	트랜스폰더	transponder	트랜스폰더(질의응답장치), 트랜스폰더(자동응답장치)
4543	트렁크	trunk	화물칸, 트렁크
4544	트렁크리드	trunk lid	트렁크리드(트렁크덮개)
4545	트레이	tray	쟁반형 용기(tray)
4546	특발성	特發性	특발성(원인불명)
4547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4548	특사배달	特使	특별배달
4549	특식	特食	특별식
4550	티덱	Tdap	티덱(Tdap: 파상풍/ 디프테리아/백일해)
4551	티디	Td	티디(Td: 파상풍/ 디프테리아)
4552	틸트	tilt	기울임

ㄷ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4553	파고	波高	물결의 높이
4554	파고라	pergola	퍼걸러(서양식 정자)
4555	파단	破斷	깨져 분리되다
4556	파랑	波浪	파도
4557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자연인만 있는 경우에는 '사람']
4558	파열창	破裂創	파열상처
4559	파이로젠 시험	Pyrogen 試驗	파이로젠시험(발열성 물질 시험)
4560	파이프랙	pipe rack	파이프지지대(rack), 파이프받침대(rack)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4561	파절	破節	깨짐
4562	파종	播種	씨뿌리기, 파종
4563	파지	破肢	절뚝거림(파지)
4564	파출금	派出給	출장 지급
4565	파출부	派出婦	가사도우미
4566	파행	跛行	절뚝거림
4567	파훼	破毀	파손
4568	판권	版權	출판권
4569	판매대전	販賣代錢	판매대금
4570	판명되다	判明	밝혀지다
4571	팸플렛	pamphlet	소책자, 팸플릿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4572	패각류	貝殼類	조개껍데기류, 조가비류
4573	패류	貝類	조개류
4574	패스너	fastener	파스너(fastener: 잠금장치)
4575	패용	佩用	패용, 달기
4576	패용기간	佩用期間	달고 있는 기간
4577	패용하다	佩用	달다
4578	패총	貝塚	조개더미
4579	팬츠	pants	바지
4580	%	%	퍼센트
4581	퍼지	purge	퍼지(purge: 가스 배출)
4582	펄스	pulse	맥동파
4583	페스트	pest	흑사병
4584	페트리디쉬	Petri dish	페트리접시 (미생물 배양 용기)
4585	펜스	fence	울타리
4586	편악	便顎	편악(위턱 또는 아래턱)
4587	편위	偏位	편위(위치 이상)
4588	편중되다	偏重	편중되다, 치우치다
4589	편철	編綴	철, 편철
4590	편철필증	編綴畢證	편철확인증
4591	편철하다	編綴	철하다
4592	편취	騙取	속여 뺏음, 편취
4593	편취하다	騙取	속여 뺏다
4594	편평족	扁平足	평발(편평족)
4595	평량	評量	양을 재다
4596	평문	平文	보통 문장
4597	평방미터	平方meter	제곱미터
4598	평분	平墳	평분(平墳)
4599	평이하다	平易	평이하다, 쉽다
4600	평정	評定	평가, 평정
4601	평정가격	評定價格	평가액
4602	평판재하 시험치	平板載荷試驗值	평판재하시험값
4603	평활도	平滑度	표면의 매끄러움 정도
4604	폐기종	肺氣腫	폐기종(폐공기증)
4605	폐농양	肺膿瘍	폐농양(폐고름집)
4606	폐도	閉道	폐쇄도로
4607	폐사지	廢寺址	절터
4608	폐사하다	斃死	죽다
4609	폐산	廢酸	폐산(廢酸)
4610	폐색	閉塞	막힘, 막음, 폐색(閉塞), 폐색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4611	폐쇄부전	閉鎖不全	폐쇄부전(폐쇄기능상실)
4612	폐야	肺野	허파면, 허파, 허파 넓이
4613	폐용	廢用	폐용(기능상실)
4614	폐용되다	廢用	용도 상실되다, 사용하지 못하게 되다
4615	폐지	廢止	(사업의) 폐업, (시설의, 운영의) 폐지
4616	폐지한다 (~법은 이를 폐지한다)		~법은 폐지한다
4617	폐직	廢職	직위가 없어짐
4618	폐직되다	廢職	직책이(직위가) 없어지다, 직책을(직위를) 없애다
4619	폐질	廢疾	불치병, 중증요양상태, 장애
4620	폐천부지	廢川敷地	폐 하천터, 폐 하천땅
4621	폐치분합 폐치·분합	廢置分合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침,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 폐지·설치·분할·통합, 폐지·설치·분리·합병
4622	포가	砲架	총포받침대
4623	포말소화기	泡沫消火器	거품소화기
4624	포장	鋪裝	흙덮기, 포장(흙덮기) ㉠
4625	포장	圃場	모장(圃場: 논·밭 등)
4626	포장노면	鋪裝路面	포장된 노면
4627	포장단량	包裝單量	포장단위무게
4628	포장도	鋪裝道	포장도로
4629	포전	圃田	채소밭
4630	포전매매	圃田賣買	밭떼기 매매, 밭떼기 거래, 포전매매(圃田賣買)
4631	포태하다	胞胎	임신하다
4632	포트홀	pot hole	도로(노면) 파임
4633	폭원	幅員	너비, 땅 넓이
4634	폭주하다	暴注	밀리다, 쌓이다, 밀려들다, 폭주하다
4635	폴리비닐 클로라이드 (PVC)	PVC	폴리염화비닐(PVC)
4636	폴리오	polio	회색질척수염(polio)
4637	폴립	polyp	용종
4638	표목	標木	푯말
4639	표목	標目	목록, 목차
4640	표방	標榜	내세움, 표방
4641	표방하다	標榜	내세우다
4642	표상	表象	표시, 상징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4643	표석	標石	표지돌, 표지
4644	표주	標柱	표지기둥, 못대
4645	표지기	標識旗	표지깃발
4646	표찰	標札	표지판, 이름표
4647	표치	標幟	표지
4648	표토	表土	표토(表土)
4649	푼		퍼센트
4650	품신	稟申	건의
4651	풍압	風壓	풍압, 바람의 압력
4652	풍치	風致	경치, 경관
4653	풍치지구	風致地區	경관지구
4654	풍토	風土	분위기
4655	풍해	風害	풍해, 바람 피해, 바람으로 인한 피해
4656	퓨우즈	fuse	퓨즈(○), 퓨우즈(×)
4657	프라스터	plaster	플라스터(○), 프라스터(×)
4658	프라스틱	plastic	플라스틱(○), 프라스틱(×)
4659	프레임	frame	고정틀
4660	프로세스	process	절차
4661	프로토콜	protocol	프로토콜(protocol), 통신 규약
4662	프로톤강조 영상	proton	양성자밀도 강조영상
4663	프로펠러 샤프트	propeller shaft	프로펠러 샤프트(프로펠러 축)
4664	프론트도어	front-door	앞문(프런트도어), 프런트도어(앞문)
4665	프론트서스펜션	front suspension	프런트서스펜션(전면 현가장치)
4666	플래시버트 용접	flash butt 鎔接	플래시버트용접(불꽃맞 대기용접)
4667	플레어 헤더	flare header	플레어 헤더(flare header: 배출 가스 집합시설)
4668	플레어스택	flare stack	플레어스택(flare stack: 배출가스연소탑)
4669	플렉서블 PCB	flexible PCB	연성 인쇄회로기판 ※ 규범표기: 플렉시블
4670	피가환부인	被假還付人	임시반환받은 사람
4671	피계호자	被戒護者	경계·보호받는 사람, 감시·보호 대상자
4672	피교육자	被教育者	교육생, 교육 대상자, 교육을 받는 사람, 교육받는 사람
4673	피로티	pilotis	필로티(○), 피로티(×)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4674	피막	皮膜	도포막
4675	피병사	避病舎	격리 병동
4676	피복	被服	옷·신발·장신구 등의 총칭, 옷, 의복, 의류
4677	피복류	被服類	의복류
4678	피복비	被服費	의복비
4679	피석방자	被釋放者	석방된 사람, 석방대상자
4680	피용자	被傭者	피용자(被傭者), 고용된 사람
4681	피징발자	被徵發者	징발당한 사람, 징발된 사람, 징발대상자
4682	피탈	被奪	빼앗김, 탈취 당함
4683	피트	pit	구덩이(pit), 하부공간(pit), 피트(pit: 인공지하구조물) (○)
4684	피하출혈	皮下出血	피부밑 출혈
4685	피합산카드	被合算card	연계카드
4686	피험자	被驗者	시험대상자
4687	피혁	皮革	가죽
4688	피환부인	被還付人	반환받은 사람
4689	픽셀	pixel	화소(pixel)
4690	픽토그램	pictogram	그림문자
4691	핀란드	Finland	핀란드
4692	핀틀후크	pintle hook	핀틀훅(pintle hook: 견인용 고리)
4693	필렛용접	fillet 鎔接	필렛용접(모서리 용접)
4694	필요 있는		필요한, ~할 필요가 있는
4695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필요할 때에는
4696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4697	필자	筆者	글쓴이
4698	필증	畢證	증명서, 확인증, ~증
4699	필터	filter	여과기
4700	필하다	畢	마치다, 확인하다

ㅎ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4701	하 요척골 관절	下 橈尺骨關節	먼쪽 노뼈·자뼈 관절, 먼쪽 노자관절
4702	하	下	~하 [* 제2장 108쪽에 설명 있음]
4703	하계	夏季	하계, 여름철
4704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려면, ~하려는 경우에는, ~할 때에는, ~할 경우에는
4705	하구언	河口堰	하굿둑
4706	하근무복	夏勤務服	여름 근무복
4707	하기	夏期	여름철, 하기(夏期)
4708	하는 때		할 때, 하는 경우
4709	하단	下端	하단, 아래쪽
4710	하달하다	下達	알리다
4711	하드카피	hard copy	출력물(하드카피)
4712	하등의	何等	아무런
4713	하면	下面	아랫면, 하면(下面)
4714	하물	荷物	하물(荷物), 화물
4715	하방	下方	아래쪽
4716	하방주시	下方注視	아래(하방) 주시
4717	하상	河床	하천 바닥, 하상(河床)
4718	하수관거	下水管渠	하수관로
4719	하악	下顎	아래턱, 하악(아래턱)
4720	하악골	下顎骨	아래턱뼈, 아래턱뼈(하악골), 하악골(아래턱뼈)
4721	하악과두	下顎顆頭	아래턱관절돌기(하악과두)
4722	하악관절	下顎關節	아래턱관절
4723	하악지	下顎枝	턱뼈가지(하악지)
4724	하악체	下顎體	턱뼈몸통(하악체)
4725	하여금 (예: ~로 하여금)		~에게, ~을, ~이, ~로 하여금
4726	하역	荷役	하역(荷役)
4727	하오	下午	오후
4728	하이드로겐 시아나이드(HCN)	HCN	시아노화수소(HCN)
4729	하이드로릭 밸런스	hydraulic balance	하이드로릭밸런스
4730	하이픈	hyphen	붙임표(-)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4731	하자	瑕疵	하자, 흠, 결함, 잘못, 문제점
4732	하정모	夏正帽	여름용 정모(正帽)
4733	하주	荷主	화물주, 화주(貨主)
4734	하중	荷重	하중, 무게
4735	하지	下肢	다리, 하지(다리와 발)
4736	하지 못한다		[불능의 의미일 때] ~할 수 없다, [금지의 의미일 때] ~해서는 안 된다
4737	하지 아니하는 한		~하는 경우 외에는, ~하는 경우가 아니면,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4738	하지 장관골	下肢 長管骨	다리의 긴 뼈, 다리 장관골(긴 뼈), 다리 장관골(다리의 긴 뼈)
4739	하차하다	下車	차에서 내리다
4740	하청	下請	하도급
4741	하퇴골	下腿骨	정강이뼈·종아리뼈, 하퇴골(정강이뼈·종아리 뼈) ㉠
4742	하퇴부	下腿部	정강이, 종아리
4743	하퇴의지	下腿義肢	인공다리(종아리 이하 부분)
4744	하폭	河幅	하천 폭
4745	하화하다	下貨	짐 내리다, 짐을 내리다
4746	하회하다	下廻	밀돌다
4747	학령	學齡	취학연령
4748	학령	學齡	총 수학 연수
4749	한 때		하였을 때, 한 경우, [시점(時點)이 중요한 경우] 한 때
4750	한선염	汗腺炎	땀샘염(한샘염)
4751	한천	寒天	우무, 우뭇가사리
4752	~에 한하다, 한한다 (~에 한한다)	限	~에 한정한다, ~로 한정한다, ~만 해당한다, ~만을 할 수 있다, ~만을 말한다
4753	한하여	限	~에서만, ~로 한정하여, ~만 해당하여, ~으로만, ~에만
4754	1회에 한하여	限	한 차례만, 한 번만, 한 차례에 한정하여
4755	한해	旱害	가뭄 피해, 한해(旱害), 가뭄해
4756	할 수 있는 후에		할 수 있게 된 후에(예: 추인할 수 있게 된 후에)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4757	할당	割當	배정
4758	할로베스트	Halo vest	척추고정보조기, 목뱃고정기(할로베스트)
4759	할맥	割麥	보리 정제, 정제 보리, 할맥
4760	함수	鹹水	짠물
4761	함양하다	涵養	기르다, 함양하다
4762	함에 족한		~할 수 있는
4763	함에는		할 때에는, 하는 경우에는
4764	함유하다	含有	함유하다, 포함되어 있다, 들어 있다
4765	합격증서 교부연명부	合格證書 交付連名簿	대장
4766	합작투자	合作投資	공동투자, 합작투자
4767	합책	合冊	합책, 책 합침, 장부 합침
4768	합책하다	合冊	책을 합치다, 장부를 합치다
4769	합철	合綴	한데 묶음, 합침
4770	항간	港間	항구 사이
4771	항계	港界	항만경계
4772	항공서간	航空書簡	항공 우편
4773	항공임	航空賃	항공 운임
4774	항로	航路	뱃길, 항로
4775	항법	航法	항해 방법
4776	항온	恒溫	항온, 일정한 온도
4777	항재성	恒在性	지속적
4778	해도	海圖	해도, 바다 지도
4779	해득	解得	이해(理解)
4780	해득하다	解得	알아듣다
4781	해면	海面	해수면
4782	해면	解免	해임, 해임 또는 면직
4783	해면신	海綿腎	해면신장
4784	해면하다, 해면되다	解免	물러나게 하다, (~에서) 물러나다
4785	해산부	解産婦	산모
4786	해산부·산욕부	解産婦·産褥婦	임산부
4787	해상	海上	바다 위, 해상
4788	해상	海床	바다 밑바닥, 해상(海床)
4789	해소	解消	(사유가) 없어짐, 해소
4790	해소되다	解消	(사유가) 없어지다
4791	해수	海水	해수, 바닷물
4792	해안사구	海岸砂丘	해안사구(해안모래언덕)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4793	해외	海外	국외
4794	해외동포	海外同胞	재외동포
4795	해외영인 자료	海外影印 資料	국외 인쇄물 원본자료
4796	해저	海底	바다 밑, 해저
4797	해제	解題	해제(解題: 책 설명)
4798	해철	解撤	해체
4799	해충구제	害蟲驅除	해충제거
4800	해태	海苔	김
4801	해태하다	懈怠	게을리하다, 제때 하지 아니하다, 제때 하지 않다, 이행하지 못하다, 이행하지 않다 * 게을리 하다(×)
4802	해풍	海風	바닷바람, 해풍
4803	해하다	害	해치다, 침해하다, 해를 끼치다
4804	해황	海況	바다 상황, 해황(바다 상황)
4805	핸드레일	handrail	안전손잡이
4806	핸드폰	hand phone	휴대전화(○) 핸드폰(×) 휴대폰(×)
4807	핸들	handle	운전대
4808	햄머	hammer	해머(○), 햄머(×)
4809	행선지	行先地	목적지
4810	행정처분		[붙여 씀] (건축허가, 영업정지, 허가취소, 인가취소, 등록취소, 변경허가, 변경인가, 변경등록, 변경신고, 중지명령, 착공신고, 폐쇄명령 등)
4811	행태장애	行態障礙	행동장애(행태장애)
4812	행태증후군	行態症候群	행동증후군(행태증후군)
4813	행하다	行하다	하다, 수행하다(사업을 하다, 업무를 수행하다)
4814	행형	行刑	형 집행
4815	향낭	香囊	향낭(향주머니)
4816	향수	享受	누림
4817	향수하다	享受	받다, 누리다
4818	향유	享有	누림, 향유
4819	향유하다	享有	누리다
4820	향후	向後	다음, 앞으로, 향후
4821	허부	許否	허가 여부, 허락 여부
4822	허브	hub	중심지
4823	허여	許與	허락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4824	허위	虛偽	거짓
4825	허하다	許	허락하다, 허가하다
4826	현혈환부 예치금	獻血還付 預置金	현혈환급예치금
4827	헤르니아	hernia	탈장, [뇌의 경우] 뇌탈장
4828	헤모크로 마토시스	Hemochro matosis	혈색소증
4829	헥타아르	hectare	헥타르(○), 헥타아르(×)
4830	헬더로우더	holder loader	화물 하역장비(Helder Loader) ※ 'loader'의 규범표기: 로더
4831	헬멧	helmet	안전모
4832	현가장치	懸架裝置	완충장치
4833	현상	現狀	현재 상태
4834	현상병	現傷病	현재 질병·부상
4835	현수식	懸垂式	현수식(매달식) (㉠)
4836	현시	顯示	표시
4837	현시하다	顯示	나타내다
4838	현안문제	懸案問題	현안
4839	현원	現員	현재 인원
4840	현장실사	現場實查	현장 실제 조사, 현장조사
4841	현재증	現在症	현재 증세
4842	현재하다	現在	있다
4843	현재하지 아니하다	現在	있지 아니하다, 있지 않다
4844	현존선	現存船	현재 있는 배, 현존선
4845	현증	眩症	현증(관찰 시 소견)
4846	현지실사	現地實查	현지 실제 조사, 현지조사, 실제조사
4847	현출하다	現出	드러나다
4848	현훈	眩暈	현기증
4849	혈기흉	血氣胸	혈액공기 가슴증
4850	혈종	血腫	혈종(혈액덩이)
4851	혈흉	血胸	혈액가슴증, 혈액가슴증(혈흉), 혈흉(혈액가슴증)
4852	혈흔	血痕	혈흔, 핏자국
4853	협각	夾角	끼인각, 사잇각
4854	협소하다	狹小	협소하다, 좁다
4855	협점막	頰粘膜	볼 안쪽막
4856	협조전	協助電	협조문
4857	형광램프	螢光lamp	형광등
4858	형무소	刑務所	교정시설, 구치소, 교도소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4859	형상	形狀	모양·상태, 형상
4860	형적	形迹	남은 흔적
4861	호명하다	呼名	이름을 부르다
4862	호버크래프트	Hovercraft	레저용 공기부양정, 공기부양정(호버크래프트)
4863	호선하다	互選	(구성원)들이 (그 구성원) 중에서 선출하다, 호선(互選)하다
4864	호소	湖沼	호수와 늪, 늪, 호소(湖沼), 호소(湖沼: 호수와 늪)
4865	호안	護岸	호안(기슭·둑 침식 방지시설), 호안(기슭·제방 보호시설), 해안 보호둑
4866	호오스	hose	호스(○), 호오스(×)
4867	호우	豪雨	호우, 큰비
4868	호전되다	好轉	좋아지다
4869	호종	號鐘	호종(선박 위치 알림 종)
4870	호창되다	呼唱	불리다
4871	호천	湖川	호수와 하천
4872	호칭하다	呼稱	부르다
4873	혹은		또는
4874	혼거수용	混居收容	공동수용, 집단수용
4875	혼거실	混居室	공동생활실
4876	혼소하다	混燒	섞어서 연소시키다
4877	혼음	混淫	집단 성행위
4878	혼입	混入	섞어 넣음, 혼입
4879	혼재	混在	섞여 있음
4880	혼재	混載	함께 실음
4881	혼촉	混觸	뒤섞여 접촉, 잘못 이음
4882	혼혈아	混血兒	다문화가정 자녀
4883	혼화하다	混和	섞다
4884	홍피증	紅皮症	홍색피부증
4885	화구	火口	분화구(噴火口)
4886	화기주의	火氣注意	불조심
4887	화농성	化膿性	고름형성(화농성)
4888	화농성 창상	化膿性 創傷	고름형성 상처
4889	화물창	貨物艙	화물창고
4890	화분	花粉	꽃가루, 화분
4891	화상	畫像	사진, 영상
4892	화상강의	畫像講義	영상강의
4893	화상회의	畫像會議	영상회의
4894	화의	和議	화생절차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4895	화이버보드	fiberboard	섬유판, 섬유판(fiberboard) ※ 규범표기: 파이버 보드
4896	화일	file	파일(○), 화일(×)
4897	화재성상	火災性狀	화재의 성질·상태
4898	화재시뮬레이션시스템	火災simulationssystem	화재모의실험체계 (화재시뮬레이션시스템)
4899	화주	貨主	화물주, 화주(貨主)
4900	화훼	花卉	화초
4901	확산	擴散	퍼짐, 확산
4902	확인인	確認印	확인 도장
4903	확인필증	確認畢證	확인증명서
4904	확지하다	確知	확실히 알다
4905	확진	確診	확정 진단
4906	확폭	擴幅	(폭의) 확장, 확폭(확장된 폭)
4907	환가할 수 있는	換價	(금전으로) 교환할 수 있는
4908	환급하다	還給	환급하다, 되돌려주다
4909	환류	還流	환류(還流), 반영
4910	환문하다	喚問	불러 묻다
4911	환부	還付	환부(還付), 반환, 환급
4912	환부금	還付金	반환금
4913	환부불능	還付不能	반환 불능, 반환 불가능
4914	환부하다	還付	반환하다
4915	환불	還拂	반환
4916	환소하다	還所	(교도소로) 데려오다
4917	환수하다	還收	환수하다, 돌려받다, 도로 거두어들이다
4918	환승하다	換乘	갈아타다, 환승하다
4919	환적	換積	환적(옮겨 싣기)
4920	환적물품	換積物品	환적물품(옮겨 실은 물품)
4921	환적하다	換積	옮겨 싣다, 환적(換積)하다
4922	환축	患畜	병든 가축
4923	환토	換土	환토(흙바꾸기)
4924	활액낭염	滑液囊炎	활액낭염(유탄낭염)
4925	황색	黃色	노란색
4926	회(灰) 처리장	灰處理場	재처리장
4927	회개하다	悔改	뉘우치다
4928	회계년도	會計年度	회계연도
4929	회람	回覽	회람, 둘러보기
4930	회람하다	回覽	둘러보다
4931	회뢰	賄賂	뇌물수수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4932	회맹부	回盲部	돌막창자(회맹)
4933	회무	會務	(위원회/심의회) 사무, 업무
4934	회보	回報	회답
4935	회보하다	回報	(대답을) 통지하다
4936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심각한 손해
4937	회부	回附	(회의에) 부침, 회부
4938	회부하다	回附	(회의에) 부치다, (안건을 ~에) 넘기다
4939	회분식	回分式	비연속식
4940	회선근개	回旋筋蓋	회선근개 ㉞
4941	회송하다	回送	돌려보내다
4942	회외	回外	회외(뒤침) ㉞
4943	회전익	回轉翼	회전날개
4944	회합	會合	모임
4945	횡	橫	가로
4946	횡단도로	橫斷道路	횡단보도
4947	횡돌기	橫突起	가로돌기, 가로돌기(횡돌기) ㉞
4948	횡목	橫木	가로지름 막대
4949	횡문근 융해증	橫紋筋 融解症	횡문근 융해증 (가로무늬근융해증)
4950	횡서	橫書	가로쓰기
4951	횡전	橫轉	옆으로 회전
4952	횡치	橫馳	가로지름
4953	횡형	橫形	가로형
4954	후굴	後屈	뒤굽히기
4955	후동목	後棟木	자투리 나무
4956	후두골	後頭骨	뒤통수뼈(후두골)
4957	후두과	後頭類	후두과(後頭類: 뒤통수 관절용기)
4958	후두음	喉頭音	목구멍소리
4959	후류	後流	후류(後流: 뒤쪽 바람)
4960	후면	後面	뒷면, 뒤쪽
4961	후방	後方	후방, 뒤쪽, 뒷방향
4962	후방거상	後方舉上	뒤쪽올리기, 후방거상(뒤쪽 올리기)
4963	후부	後部	뒷부분
4964	후불	後拂	후지급
4965	후사경	後寫鏡	뒷거울
4966	후순위 책정자	後順位 策定者	후순위 조정 대상자
4967	후크온미터	hook on meter	클램프형 전류계 (클램프 미터)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4968	후폐	朽廢	낡아서 버림
4969	훈육	訓育	교육
4970	훼기	毀棄	파기
4971	웬더	fender	펜더(후받기), 펜더
4972	힘응력	힘應力	힘응력(힘변형력)
4973	휴대하다	携帶	지나다
4974	휴식실	休息室	휴게실
4975	휴즈	fuse	퓨즈(○), 휴즈(×)
4976	휴지	休止	운영중단, 운영정지
4977	휴지하다	休止	(사업을) 휴업하다, (운영을) 정지하다, (시설을, 운영을) 휴지하다
4978	흡후드	fume hood	국소배기장치, 국소배기장치(흡후드) ㉔
4979	흉고직경	胸高直徑	가슴높이저름
4980	흉골	胸骨	복장뼈, 복장뼈(흉골), 흉골(복장뼈) ㉔
4981	흉곽근	胸廓筋	가슴근, 흉곽근
4982	흉곽내	胸廓內	가슴우리
4983	흉관	胸管	가슴림프관(흉관)
4984	흉관 삽관술 을 시행	胸管 插管術	가슴에 삽관수술을 시행
4985	흉막	胸膜	가슴막(흉막)
4986	흉막반	胸膜癍	가슴막반, 가슴막반(흉막반)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4987	흉막비후	胸膜肥厚	가슴막비후, 흉막비후
4988	흉막액	胸膜液	가슴막심출액, 흉막액
4989	흉막염	胸膜炎	가슴막염, 흉막염 (가슴막염), 흉막염
4990	흉부	胸部	가슴 부위, 흉부
4991	흉부	胸部	흉부(등), 등뼈부(흉추부)
4992	흉선	胸腺	가슴샘
4993	흉요추	胸腰椎	등허리뼈
4994	흉위	胸圍	가슴둘레
4995	흉추	胸椎	등뼈
4996	흉추부	胸椎部	등뼈부(흉추부)
4997	흑색	黑色	검은색
4998	흑판	黑板	칠판
4999	흡결	欠缺	흠
5000	흡기 매니폴드	吸氣 manifold	흡기매니폴드(Intake manifold, 吸氣多岐管)
5001	흡습	吸濕	습기 흡수
5002	희박하다	稀薄	희박하다, 드물다
5003	희석하다	稀釋	물게 하다
5004	히트펌프 시스템	heat pump system	열펌프시스템
5005	히팅맨틀	heating mantel	가열맨틀
5006	힌지형	hinge型	힌지형(경첩형)

A-Z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5007	3D프린터	3D printer	삼차원프린터
5008	ABS모듈	ABS module	바퀴잠금방지식 제동장치(ABS) 모듈
5009	AI	AI	인공지능
5010	Airport Analysis Chart	Airport Analysis Chart	공항 분석 일람표 (Airport Analysis Chart)
5011	Al	Al	알루미늄(Al)
5012	ALT, 에이엘티검사	ALT	간기능검사(ALT) ㉔
5013	AMOLED	AMOLED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
5014	Anterior inferior tibiofibular ligament	Anterior inferior tibiofibular ligament	앞아래정강종아리인대 (anterior inferior tibiofibular ligament)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5015	Anterior talofibular ligament	Anterior talofibular ligament	앞목발종아리인대 (anterior talofibular ligament)
5016	Anti-HCV	Anti-HCV	C형간염항체, C형간염바이러스(HCV) 항체 검사 ㉔
5017	Anti-HIV	Anti-HIV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 (HIV) 항체 검사
5018	Anti-HTLV	Anti-HTLV	사람T세포림프친화바이 러스(HTLV) 항체 검사
5019	Anti-HTLV - I / II	Anti-HTLV - I / II	사람T세포림프친화바이 러스(HTLV) I 형/ II 형 항체 검사
5020	AR	AR	증강현실
5021	ARS	ARS	자동응답시스템(ARS)
5022	Artifacts	Artifacts	허상(Artifacts)
5023	As	As	비소(As)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5024	atlanto-occipital joint	atlanto-occipital joint	고리뒤통수관절(atlanto-occipital joint)
5025	Autotransplantation	Autotransplantation	자가이식(Autotransplantation)
5026	B/L	B/L	선화증권(Bill of Lading), 선하증권, 선하증권(Bill of Lading),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 선하증권(Bill of Lading, 船荷證券)
5027	B/L번호, B/L No.	B/L No.	선하증권번호, 선하증권(bill of lading)번호
5028	B-A유	B-A油	경질중유(B-A유)
5029	B-B유	B-B油	중질중유(B-B유)
5030	BOD	BOD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5031	B-total	B-total	총붕소(B-total)
5032	CAD/CAM	CAD/CAM	전산설계(CAD/CAM)
5033	Calcaneofibular ligament	Calcaneofibular ligament	발꿈치종아리인대(calcaeofibular ligament)
5034	CAS번호, CAS No.	CAS No.	화학물질식별번호, 화학물질식별번호(CAS No.), CAS(Chemical Abstract Service)번호
5035	CATV	CATV	유선방송
5036	Cd	Cd	카드뮴(Cd)
5037	CFIT	CFIT	비행 중 육지 또는 수면 충돌사고(CFIT)
5038	CHG	CHG	압축소스가스(CHG)
5039	Child-pugh	Child-pugh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5040	CIC	Clean Intermittent Catheterization	청결간헐적소변배출(Clean Intermittent Catheterization, CIC)
5041	CIP(Clean In Place)	CIP(Clean In Place)	내부세척(CIP, Clean In Place)
5042	CITES	CITES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5043	CN	CN	시안(CN)
5044	CNG	CNG	압축천연가스(CNG)
5045	Co	Co	코발트(Co)
5046	Cr+6	Cr+6	6가크롬(Cr6+)
5047	Cu	Cu	구리(Cu)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5048	Dressing	Dressing	소독(Dressing)
5049	DSC 청수수신기	DSC 聽守受信機	디지털선택호출(DSC, Digital Selective Calling) 수신기 (국)
5050	ECU	ECU	전자제어장치(ECU)
5051	ESS	ESS	에너지저장장치
5052	F.A.O. 사업조성	F.A.O. 事業造成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5053	FEV1	FEV1	초당 강제배출량
5054	FRP, F.R.P	FRP	강화플라스틱, 강화플라스틱(FRP)
5055	FVC	FVC	강제폐활량
5056	Gas Chromatograph-FID	Gas Chromatograph-FID	기체 크로마토그래프-불꽃 이온화 집출기
5057	Gas Chromatograph-MS	Gas Chromatograph-MS	기체 크로마토그래프-질량 분석기
5058	Gas Chromatograph-MSD	Gas Chromatograph-MSD	기체 크로마토그래프-선택 질량 분석기
5059	GMP	GMP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기준(GMP)
5060	GPS	GPS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GPS)
5061	Grade	Grade	등급
5062	Grid System	Grid System	격자구조(Grid System)
5063	HACCP	HACCP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5064	HBsAg	HBsAg	B형간염표면항원(HBsAg) 검사 (국)
5065	HBV	HBV	B형간염바이러스(HBV)
5066	HCV	HCV	C형간염바이러스(HCV)
5067	HDI	HDI	헥사메틸렌 디아소시아네이트(hexamethylene diisocyanate)
5068	Hg	Hg	수은(Hg)
5069	HIV	HIV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5070	HSK No	HSK No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HSK No.)
5071	I/L	I/L	수입 승인서(Import License)
5072	ICD-10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10th Version)	ICD-10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10th Version)	제10차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10th Version)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5073	IMO번호	IMO番號	국제해사기구번호(IMO Number)
5074	IP 보호등급	IP 保護等級	국제보호등급 (International Protection Code)
5075	IUCN	IUCN	국제자연보전연맹 (IUCN)
5076	IWC	IWC	국제포경위원회(IWC)
5077	juice	juice	과즙, 주스(○), 주스(×)
5078	LED	LED	발광다이오드, 엘이디(LED)
5079	Li	Li	리튬(Li)
5080	LMO	LMO	유전자변형생물체(LMO)
5081	LNG	LNG	액화천연가스(LNG)
5082	LPG	LPG	액화석유가스(LPG)
5083	LSWR	LSWR	저유황 고유동점 연료유(LSWR)
5084	L-tube	L-tube	비위관(鼻胃管, L-tube)
5085	Malgaigne 골절	Malgaigne 骨折	말게뉴 골절
5086	MDI	MDI	메틸렌 디페닐 디이소시아네이트 (Methylene Diphenyl Diisocyanate)
5087	MMSI번호	MMSI番號	해상이동업무식별번호 (MMSI)
5088	Mn	Mn	망간(Mn)
5089	Ni	Ni	니켈(Ni)
5090	NTIS	NTIS	국가과학기술자식정보 서비스(NTIS)
5091	NY criteria	NY criteria	NY분류기준(NYcriteria)
5092	OLED	OLED	유기발광다이오드
5093	PACS	PACS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PACS)
5094	Pb	Pb	납(Pb)
5095	PCB	PCB	폴리염화비페닐(PCB),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5096	PCR	PCR	중합효소연쇄반응(PCR)
5097	PEFR	PEFR	최고날숨유량
5098	Performance Data	Performance Data	성능자료(Performance Data)
5099	pH	pH	수소이온지수(pH)
5100	pH 미터	pH meter	수소이온농도 측정기 (pH 미터)
5101	Plate Reader	Plate Reader	색깔 농도 비교 판독기(Plate Reader)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5102	Possible type	Possible type	가능형(Possible type)
5103	Probable 및 Definite type	Probable 및 Definite type	개연형 및 확정형 (Probable 및 Definite type)
5104	PVC	PVC	폴리염화비닐(PVC)
5105	Reinke씨 부종	Reinke씨 浮腫	라인케부종(성대부종)
5106	RIBA	RIBA	재조합면역블롯검사 (RIBA)
5107	RPM 미터	RPM meter	분당 회전수 측정기 (RPM미터), rpm미터 (분당 회전수 측정기)
5108	RTOLW Chart	RTOLW Chart	활주로 이착륙 하중 일람표(RTOLW Chart)
5109	Scintillation Counter	Scintillation Counter	방사능 측정 계수기
5110	SCR	SCR	선택적 환원촉매장치 (SCR)
5111	Se	Se	셀레늄(Se)
5112	SMS	SMS	문자메시지
5113	T/L Chart	T/L Chart	전이고도 일람표 (T/L Chart)
5114	TDI	TDI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 (Toluene Diisocyanate)
5115	TEQ	TEQ	TEQ(독성 등가치)
5116	T-N	T-N	총질소(Total Nitrogen), 총질소(T-N)
5117	T-P	T-P	총인(Total Phosphorus), 총인(T-P)
5118	USB	USB	(이동식) 정보저장매체 (USB)
5119	UV	UV	자외선
5120	UV 코팅	UV coating	자외선 차단 코팅
5121	UV-VIS 분광분석계	UV-VIS 分光分析機	자외선-가시광선 분광광도계
5122	VAN	VAN	부가가치통신망(VAN)
5123	VAT	VAT	부가가치세
5124	VR	VR	가상현실
5125	Western Blot	Western Blot	웨스턴블롯(Western Blot) 검사
5126	Zn	Zn	아연(Zn)

나. 뜻풀이 활용하기

- 어려운 용어에 대한 적합한 대체어가 없는 경우에는 용어에 대한 뜻풀이를 괄호에 넣어 함께 적을 수 있다.
- 용어에 뜻풀이를 붙이는 경우 필요하면 한자·원어를 함께 적을 수 있다.

번호	정비 대상 용어	권고안
1	가공주초	가공주초(加工柱礎: 원석을 다듬은 주춧돌)
2	가공횡단	가공횡단(架空橫斷: 공중에 가로지름)
3	가관절	가관절(假關節: 부러진 뼈가 완전히 아물지 못하여 그 부분이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
4	가금	가금(家禽: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5	가스하이드레이트	가스하이드레이트(저온고압 상태에서 천연가스와 물이 결합돼 만들어진 고체 에너지)
6	가제식	가제식(加除式: 끼우고 뺄 수 있는)
7	간곡선	간곡선(주곡선 사이에 긋는 점선)
8	감작성	감작성(感작성: 외부 자극에 의한 면역계 반응성), 감작성(感작성, sensitizing)
9	강열잔분	강열잔분(검체를 강열할 때 휘발하지 않고 남은 물질)
10	강제배류법	강제배류법(지하에 매설된 금속에서 누설된 전류로부터 부식을 방지하는 전기 방식법)
11	강제햇치카바	강제햇치카바(갑판 아래 잠깐 입구를 강제로 덮는 장치)
12	개답	개답(눈을 고쳐 만들) ☹
13	개방성 공막	개방성 공막(각막을 제외한 안구의 대부분을 싸고 있는 흰색의 막)
14	개방성 공막 열창	개방성 공막(각막을 제외한 안구의 대부분을 싸고 있는 흰색의 막) 찢김상처
15	개봉선원	개봉선원(밀봉되지 않은 방사성동위원소)
16	개질장치	개질장치(改質裝置: 탄화수소의 구조를 변화시켜 제품의 품질을 높이는 조작 장치)
17	개착방식	개착방식(땅을 뚫거나 파는 방식)
18	개착식	개착식(땅을 뚫거나 파는 방식)
19	개판	개판(서까래 위를 덮는 널빤지)
20	건류	건류(석탄 등 고체 유기물을 공기가 통하지 않는 기구에 넣고 가열하여 휘발성 물질과 비휘발성 물질을 분리하는 일)
21	검안서	검안서(사망사실을 의학적으로 확인한 문서) ☹
22	검정증인	검정증인(檢定證印: 군수품 품질보증 기준에 따른 검사를 마쳤음을 증명하는 도장)
23	검지체계	검지체계(도로 일정 지점에서 차량의 존재나 교통량, 속도, 점유율, 차량길이 등의 교통상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설치한 장치)
24	겔베르 유지계	게르버 유지계(유제품 속 지방 함유율 측정기)
25	견갑 관절부위의 회선근개	어깨관절 부위의 돌림근띠(어깨관절을 감싸면서 어깨관절을 돌리는 네 근육의 힘줄)
26	결점과율	결점과율[缺點果率: 전체 양에 대한 결점과(병충해과, 상해과, 외관불량과, 미숙과 등)의 개수비율]
27	경간장	경간장(徑間長: 교각 중심에서 인근 교각 중심까지의 길이)
28	경결	단단하게 굳음(조직이나 그 한 부분이 염증이나 출혈 때문에 결합조직이 증식하여 단단해짐), 경결(硬結: 단단하게 굳음) ☹
29	경방용구	경방용구(警防用具: 경계하거나 방어하는 데 쓰는 용구), 경방용구(警防用具: 경계·방어하는 데 쓰는 용구)

번호	정비 대상 용어	권고안
30	경종업	경종업(논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업)
31	경추궁	목뼈고리(목뼈의 추골 뒷부분인 추궁), 목뼈궁(頸椎宮: 목뼈의 추골 뒷부분인 추궁)
32	경판	경판(동체의 양 끝부분에 부착하는 판)
33	경하배수톤수	경하배수톤수(사람, 화물 등을 적재하지 않은 선박자체의 톤 수)
34	경하중량	경하중량(사람, 화물 등을 적재하지 않은 선박 자체의 중량)
35	계곡선	계곡선(주곡선 5줄마다 표시하는 굵은 실선)
36	계기별납	계기별납(요금 표시기에 의한 일괄 요금 별도 납부)
37	계대배양	계대배양[繼代培養: 세포, 바이러스 또는 세균증식을 위해 새로운 배지에 옮겨 대(代)를 이어 배양하는 방법], 계대배양[繼代培養: 세포증식을 위해 새로운 배양접시에 옮겨 세포의 대(代)를 이어 배양하는 방법]
38	계류	계류(繫留: 옥외에 정류한 항공기를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일)
39	계류	계류(繫留: 소송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중인 상태)
40	계류사	계류사(繫留舍: 동물을 격리해 놓은 건축물)
41	계류식	계류식(한 마리씩 묶어두거나 가두어 사육하는 방식)
42	고막 천공	고막천공(고막에 구멍이 뚫리는 일)
43	고원식 교차로	고원식 교차로(주변 도로보다 약간 높게 만든 교차로)
44	고원식 횡단보도	고원식 횡단보도(주변 도로보다 약간 높게 만든 횡단보도)
45	고화제	고화제(固化劑: 고체화를 위한 첨가물)
46	고휘도	고휘도(광원의 단위 면적당 밝기의 정도가 높은 것)
47	고휘도방전램프	고휘도방전램프[휘도(광원의 단위 면적당 밝기의 정도)가 높은 방전램프]
48	골막이	골막이(작은 계류나 경사지에 빗물에 의해 생긴 골짜기·물길에 축조되는 높이가 낮은 구조물)
49	골유합	골유합(뼈가 붙음)
50	공간분해능시험	공간분해능시험(작은 크기에서 대조도 차이가 높은 물질이 인접하여 있을 때의 식별능력시험)
51	공기색전증	공기색전증(기포가 동맥이나 정맥을 따라 순환하다가 혈관을 막는 것)
52	공동구	공동구(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하는 지하설치 시설물)
53	공수비행	공수비행(空手飛行: 유상승객·화물 등을 실지 않고 하는 비행)
54	공시험	공시험(본시험과의 대조를 위해 같은 조건에서 분석대상 성분을 제외한 실험)
55	과균비율	과균비율(果均比率: 크기의 고르기), 과균비율(果均比率: 크기가 고른 정도)
56	관능검사	관능검사[인간의 오감(五感)에 의하여 평가하는 제품검사], 관능검사[오감(五感)을 이용한 검사], 관능검사[사람의 오감(五感)으로 제품의 품질을 평가하는 일], 관능검사[사람의 오감(五感)으로 제품을 평가하는 일], 관능검사[사람의 감각에 의한 평가]
57	관능평가	관능평가[인간의 오감(五感)에 의한 제품 평가]
58	관능평가요원	관능평가요원[인간의 오감(五感)으로 제품을 평가하는 사람]
59	관정	우물(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한 수리 시설) ☞
60	관측정	관측정(觀測井: 지하수 오염 감시 및 수위, 수량 등을 관측하기 위해 파놓은 샘)
61	관혈적 수술	개방정복(피부와 근육 절개 후 골절된 뼈를 바로잡는 시술) ☞
62	관혈적 정복술	개방정복(피부와 근육 절개 후 골절된 뼈를 바로잡는 시술), 출혈을 동반하는 교정수술 ☞

번호	정비 대상 용어	권고안
63	광감작성	광감작성(빛에 의한 면역계 반응성)
64	광고온계	광고온계(光高溫計: 밝기로 온도를 재는 기계)
65	광독성	광독성(빛에 의한 독성 반응성)
66	광쇄충	광쇄충(광물 또는 돌 등을 분쇄하는 충)
67	광역분수령	광역분수령(廣域分水嶺)
68	광유	광유(석유 등 광물성원료로부터 얻어진 기름)
69	광재	광재(鑛滓: 제련하고 난 찌꺼기), 광물을 제련하고 남은 찌꺼기[광재(鑛滓), 베이직슬래그], 광재(광물을 제련하고 남은 찌꺼기)
70	괘불	괘불(掛佛: 부처·보살 및 경전 내용을 그려서 야외법회 시 걸어놓는 예배용 불화)
71	교반기	교반기(휘저어 섞는 장치), 교반기(물체를 휘저어 섞는 기구)
72	교반장치	교반장치(휘저어 섞는 장치)
73	교통장주	교통장주(Traffic Pattern: 비행장 상공을 도는 경로)
74	국시	국가 이념과 국가 정책의 기본 방침
75	군진의학	군진의학(軍陣醫學: 군 및 군인과 관련한 보건위생분야를 연구하는 의학)
76	굴진탐사	굴진탐사(경도를 만들어 수행하는 탐사방법)
77	권과경보장치	권과경보장치(와이어로프 과다 말림 알림 장치)
78	권과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와이어로프 과다 말림 방지 장치)
79	권상능력	권상능력(물건을 매달아 올리거나 내리는 힘)
80	권상용	권상용(물건을 매달아 올리거나 내리기 위한 용도)
81	권상장치	권상장치(와이어로프를 말아 물건을 들어 올리는 장치)
82	권양기	권양기(도르래를 이용하여 빗줄이나 쇠사슬로 물건을 들어올리거나 내리는 기계)
83	권양장치	권양장치(중량물을 높은 곳으로 들어 올리거나 끌어당기는 장치)
84	균질기	균질기(재료를 잘게 부수어 걸쭉한 상태의 액체로 만드는 기기)
85	그라우팅	그라우팅[grouting: 균열이나 공동(空洞) 등의 틈새에 그라우트(주입액)를 주입하거나 충전(充填)하는 것]
86	극돌기	극돌기(棘突起: 척추뼈고리 정중면에서 뒤쪽으로 뻗은 돌기)
87	근전전동의수	근전전동의수[사용자의 의도를 잔존근육에서 발생하는 근전도(EMG) 신호를 통해 파악하여 손동작을 구현하는 인공손]
88	근해연승어업	근해연승어업(근해에서 긴 줄에 여러 개의 낚시를 달아 물고기를 잡는 도구를 이용한 어업)
89	급전선	급전선(전파에너지를 전송하기 위하여 송신장치 또는 수신장치와 안테나 사이를 연결하는 선)
90	기동복	기동복(활동에 편한 옷)
91	기밀	기밀(기체가 통하지 않게 밀봉하는 것)
92	기주식물	기주식물(寄主植物: 초식성곤충이나 그 애벌레의 먹이가 되는 식물), 기주식물[병원체나 해충에 의해 병이 들거나 해(害)를 입을 수 있는 식물]
93	나포	나포(운송 수단 및 그에 실린 재화나 사람을 붙잡는 것)
94	낙반	낙반(落磗: 갭내 천장이나 벽의 암석이 떨어짐), 낙반(落磗: 갭내 천장이나 벽의 암석이 떨어지는 것)
95	낙사상	낙사상(落死傷: 떨어져 죽거나 다침)
96	난좌	난좌(卵座: 가축의 알을 운반·판매 등의 목적으로 담아두거나 포장하는 용기)
97	내냉성	저온견딜성, 내냉성(저온에 견디는 성질)
98	내부부상지붕	내부부상지붕(탱크내부 저장물질 위에 떠있는 지붕)
99	내수배제	내수배제(저류된 물을 배출하여 제거하는 것)

번호	정비 대상 용어	권고안
100	내화도	내화도(耐火度: 열에 견디는 정도)
101	내화성	내화성(불에 견디는 성질)
102	내화성능	내화성능(불에 견디는 성능)
103	넥샤워	수입마사지(Neck Shower: 목포수처럼 떨어지는 물의 수입으로 목, 어깨 등을 마사지하는 것)
104	노두	노두(露頭: 지표에 드러난 부분)
105	노이즈시험	노이즈(기계 동작을 방해하는 전기신호) 시험
106	뇌축삭	뇌축삭(신경세포에서 나온 돌기)
107	니스킨채수기	니스킨채수기(Niskin 採水器: 플라스틱 재질로 만든 물 퍼 올리는 기구)
108	다모작	다모작(같은 땅에서 종류가 다른 작물을 1년에 세 번 이상 심어 거두는 것) ㉞
109	단립식	단립식(單粒式: 한 개의 낱알 단위로 수분을 측정하는 방식)
110	단자	단자(單子: 사주, 후보자 명단, 선물 품목, 돈의 액수, 물품 내용 등을 기록한 고문서)
111	단조	단조(鍛造: 금속을 두들기거나 눌러서 필요한 형태로 만드는 일)
112	당간지주	당간지주(불화를 그린 깃발을 거는 장대를 걸어두기 위해 세운 기둥), 당간지주(괘불이나 불교적 내용을 그린 깃발을 건 장대를 지탱하기 위해 좌우로 세운 기둥)
113	대린벽	대린벽(對隣壁: 서로 직각으로 교차되는 벽)
114	대립제	대립제(大粒劑: 굵은 알갱이 형태 제제)
115	대사산물	대사산물(물질대사 중 생성물질), 대사산물(물질대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
116	대수속력	대수속력(Making way: 항공기의 물에 대한 속력으로서 자기 항공기 또는 다른 항공기·선박의 추진장치의 작용이나 그로 인한 항공기의 관성에 의하여 생기는 것)
117	대파	대파(代播: 재해 등으로 대신 다른 씨앗을 뿌리는 일)
118	데시케이터	데시케이터(물질 건조, 흡습성 시료 보존을 위한 유리 건조기)
119	덴타	덴타(tenter: 원료를 주형에 맞게 펴는 공정)
120	도드락다듬	도드락다듬(돌기가 달린 망치로 석재를 다듬는 일)
121	도로원표	도로원표(道路元標: 도로의 출발점, 도착점 또는 경과지역을 표시하는 표지)
122	도류화시설	도류화시설(導流化施設: 도로의 흐름을 원활하게 유도하는 시설)
123	도리	도리(서까래를 받치기 위해 기둥과 기둥 사이에 설치한 부재)
124	도말	도말(塗抹: 박리세포를 슬라이드글라스에 발라 진단 목적으로 만든 표본)
125	도수로	도수로(차도에 모인 물을 차도 밖으로 빼내는 수로) ㉞
126	도엽	도엽(축척별로 일정한 크기의 경위도 간격으로 자른 지도 1장)
127	도재전장관	상부보철(사기 재료로 이 빛깔이 나도록 만든 인공치아)
128	도체	도체(도축하여 머리 및 장기 등을 제거한 몸체)
129	독성역치	독성역치(독성을 보이는 최소한의 수준)
130	동력원치	동력원치(쇠중량물을 끌어올리거나 당기는 동력기계)
131	동수경사도	동수경사도(動水傾斜圖: 물이 흐르는 거리에 대한 낙차비율을 나타낸 도면), 동수경사도(動水傾斜度: 물이 흐르는 방향의 직선거리에 대한 수위 차이)
132	동정	동정(同定: 생물 분류학상의 소속이나 명칭을 바르게 정하는 일)
133	두석장	두석장(놋쇠를 오리거나 새김질하여 기구의 장식물을 만드는 일을 하는 장인)
134	두흉갑장	두흉갑장(머리·가슴의 껍데기 길이)
135	드레인 라인	드레인 라인(drain line: 파이프 접촉면상의 빗물을 빼내는 관)
136	드롭박스	드롭박스(drop box: 게임테이블에 부착된 현금함)
137	드잡이공	드잡이공(기울어진 구조물을 해체하지 않고 도구를 이용하여 바로 잡는 사람)

번호	정비 대상 용어	권고안
138	등전위화	등전위화(전위를 같게 만드는 일)
139	라이닝	라이닝(lining: 침식 및 부식 방지를 위해 재료의 접촉면에 약품재 등을 대는 일)
140	라인스피드미터	라인 스피드 미터(line speed meter: 레이저, 빔 등을 이용한 비접촉 방식의 엔진 분당 회전수 측정기)
141	라포르	라포르(rapport: 치료자와 환자 간의 공감적 인간관계)
142	램프	램프(위아래로 교차하는 두 도로를 잇는 경사로) ㉞
143	럽처밸브	럽처밸브(rupture valve: 압력배관 파손 시 기름의 누설에 의한 승강기의 하강을 제지하는 장치)
144	레진	레진(치아 메움용 합성수지재)
145	렉산	폴리카보네이트(열가소성 플라스틱의 하나)
146	루버	루버(louver: 통풍이나 빛가림을 위해 폭이 좁은 판을 빗대는 창살)
147	루프팬방식	루프팬 방식(roof fan: 지붕에 설치하는 배기장치)
148	리깅	리깅(Rigging: 항공기 정비를 위한 조절작업)
149	리스프랑관절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발등뼈와 발목을 이어주는 관절)
150	리스프랑관절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발등뼈와 발목을 이어주는 관절) ㉞
151	릴렉스 라이닝	수중침대(Relax Lining: 눕거나 앉은 자세에서 등, 허리, 종아리, 발바닥 등을 마사지할 수 있는 침대)
152	마사토	마사토(磨砂土: 점성이 없는 백토)
153	마이크로피쉬	마이크로피쉬(microfiches: 책의 각 페이지를 축소 촬영한 시트 필름)
154	마이크로피펫	마이크로피펫(micropipette: 일정한 부피의 액체를 정확히 옮기는 데 사용하는 관)
155	말가이그니시 골절	말가이그니 골절(Malgaigne fracture: 골반에 생기는 중복골절) ㉞
156	망구전개판	망구전개판(綱口展開板: 그물을 펼치기 위해 그물의 양 옆줄에 하나씩 달려 있는 방패모양의 판) ㉞
157	망입유리	망입유리(두꺼운 판유리에 철망을 넣은 것)
158	매취사업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 등을 조합이 일괄 구매하여 직접 판매하는 사업, 회원과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 등을 중앙회가 일괄 구매하여 직접 판매하는 사업
159	모듈	모듈(module: 전체·조직을 이루는 구성 요소·단위), 모듈(module: 특정 기능제공 독립장치나 구성요소)
160	모사	모사(茅沙: 그릇에 담은 모래와 그 모래에 꽃은 띠 묶음)
161	모식표본	모식표본(模式標本: 기존 종의 생물학적 특성을 추가로 설명한 표본)
162	모터 그레이더	모터 그레이더(motor grader: 땅 고르는 기계)
163	모페드형	모페드형(원동기를 장착한 소형 이륜차의 통칭)
164	목재부후균	목재부후균(木材腐朽菌: 목재를 썩히는 균류)
165	목책성	목책성(木柵城: 나무로 둘러막은 성)
166	묘삼대	묘삼대(苗蓆代: 파종 후 일년 남짓 자란 어린 인삼의 대금)
167	무구	무구(武具: 전쟁에 쓰는 무기 등 도구)
168	무도증	무도증(근육에 나타나는 비자발적인 운동장애의 한 종류)
169	미립제	미립제(微粒劑: 아주 작은 알갱이 제제)
170	미만성 뇌축삭 손상	미만성 뇌축삭 손상(뇌에 충격이 가해져 뇌세포를 연결시키는 축삭이 손상되어 신경계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
171	미분제	미분제(微粉劑: 고운 가루 형태 제제)
172	미스트	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
173	미장	미장(벽이나 천장, 바닥 등의 바탕면에 진흙이나 회 등을 바름)

번호	정비 대상 용어	권고안
174	미탁제	미탁제(微濁製: 용매에 잘 녹지 않는 물질을 용매에 잘 분산시키기 위해 넣는 미세한 형태의 용액)
175	밀봉선원	밀봉선원(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176	바이스	핸드 바이스(hand vise: 가공물 고정을 위한 소형 기구)
177	박류	박류(粕類: 식물성 원료에서 원하는 물질을 짠 나머지), 박류(粕類: 식물성 원료에서 원하는 물질을 짜고 남은 찌꺼기)
178	박석	박석(薄石: 평평한 돌)
179	반가층	반가층(半價層: 방사선의 강도를 반감하는 데 필요한 물질의 두께)
180	반돈채수기	반돈채수기(van Dorn 採水器: 합성고무로 만든 원통모형의 물 퍼 올리는 기구)
181	반맹증	반맹증(주시했을 때 시야가 수직으로 나누어져 오른쪽 또는 왼쪽이 보이지 않는 증상) ㉞
182	반발경도	반발경도(反撥硬度: 튀어오르는 높이에 따른 단단한 정도)
183	반파정류	반파정류[교류전압의 정(+) 또는 부(-)의 한쪽만을 이용하는 정류방식]
184	발아세	발아세[發芽勢: 일정 기간까지 어린싹(유아) 또는 어린뿌리(유근)가 출현한 낱알 수의 비율]
185	방고래	방고래(구들장 밑에 불길과 연기가 통하는 길)
186	방식전위	방식전위(부식 방지에 필요한 최소 전위)
187	방유제	방유제(防油堤: 기름 유출 방지 독)
188	방화땀퍼	방화땀퍼(화재 시 연기 등을 차단하는 장치)
189	배경휘도	배경휘도(배경의 단위 면적당 밝기 정도)
190	배지	배지[培地: 버섯류, 양액(배양액) 재배 농산물 등의 생육에 필요한 양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하거나 작물이 자랄 수 있도록 조성된 토양 외의 물질], 배지(培地: 생물을 기르는 데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 있는 액체나 고체)
191	배첩장	배첩장(서화나 자수를 족자, 액자, 병풍, 서첩 따위로 꾸미는 장인)
192	배토판	배토판(排土板: 불도저 따위의 앞부분에 부착하여 지면을 고르거나 미는 등에 사용하는 금속제 판)
193	배풍기	배풍기(오염된 공기를 뽑아내는 통풍기)
194	배향곡선지	배향곡선지(背向曲線地: S자형태의 지형)
195	버니어캘리퍼스	아들자 캘리퍼스(버니어캘리퍼스: 아들이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 버니어캘리퍼스(아들이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 ㉞
196	변와공사	변와공사(기와를 해체하거나 이는 일)
197	변와와공	변와와공(기와를 해체하거나 이는 사람)
198	변와장	변와장(기와를 해체하거나 이는 일을 하는 장인)
199	벌크 상태	벌크 상태(판매단위로 포장되지 않고 선박의 탱크, 초대형 상자 등에 대용량으로 담긴 상태)
200	베인	베인(vane: 공기의 흐름을 위한 작은 날개)
201	베일러	베일러(baler: 볏짚 묶는 기계)
202	보디 샤워	전신샤워(Body Shower: 욕조 벽면에서 나오는 물줄기가 어깨, 허리, 종아리 등을 마사지하는 것)
203	보호각	보호각(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물)
204	복장유물	복장유물(腹藏遺物: 불상의 내부에 봉안된 유물)
205	복호화	복호화(Decoding: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
206	봉안	봉안(奉安: 받들어 모심)
207	부교	부교(받침기둥 없이 물에 띄우는 다리) ㉞
208	부도	승탑(僧塔: 고승의 사리를 모신 탑)
209	부동시	부동시(不等視: 두 눈의 굴절차이가 크거나 굴절의 종류가 다른 증상)
210	부두법선	부두법선(부두가 설치된 거리 방향을 따라 이어진 선)

번호	정비 대상 용어	권고안
211	부등상증	상(像)의 크기가 다르게 느껴지는 증상[부등상증(不等像症)]
212	부등침하	부등침하(不等沈下: 기초지반이 침하함에 따라 구조물이 불균형하게 침하를 일으키는 현상), 구조물이 현저히 불균형하게 가라앉은 현상
213	부석	부석(浮石: 떨어질 위험이 있는 돌)
214	부선거	부선거(浮船渠: 선박을 건조 또는 수리하거나 선박에 짐을 싣고 부리기 위한 설비), 부선거(浮船渠: 선박을 건조 또는 수리하거나 선박에 짐을 싣고 부리기 위한 부양식 설비)
215	부숙	부숙(穉해서 익히는 것), 부숙(腐熟: 썩어서 익힘)
216	부숙도	부숙도(穉해서 익히는 정도)
217	부숙토	부숙토(腐熟土: 썩어서 익힌 흙)
218	부잔교	부잔교(선박을 매어두거나 부두에 달도록 물 위에 띄워 만든 구조물) 부잔교(浮棧橋: 부두에 방주를 연결하여 띄워서 수면의 높이에 따라 위아래로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한 잔교)
219	부재	부재(部材: 구조물의 뼈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재료를 가공한 것)
220	부정유합	부정유합(배가 제 위치에 붙지 않은 것) ☹
221	부조파	부조파[1보다 작은 고조파 차수의 비정수배(非整數倍) 고조파 성분]
222	분동	분동(分銅: 대저울 따위로 무게를 달 때 무게의 표준이 되는 추)
223	분산성액제	분산성액제(分散性液劑: 흩어지는 성질의 물약 제제)
224	분상질립	분상질립[紛狀質粒: 부피의 50% 이상이 분상질(종자 내부의 조직이 치밀하지 못하고 공간이 많아 희게 보이는 성질) 상태인 낱알]
225	분수령	분수령(分水嶺: 물이 나뉘는 산맥이나 산마루)
226	분의	분의(粉衣: 약제 가루를 입힘)
227	분의제	분의제(粉衣劑: 가루 약제를 입혀 만든 제제)
228	불상개금	불상개금(佛像改金: 불상에 금칠을 다시 하는 것)
229	불침윤성	불침윤성(不浸潤性: 수분 흡수를 막는 성질)
230	불화장	불화장(불교에 관한 그림을 그리는 장인)
231	불활성기체	불활성기체(다른 원소와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어려운 기체)
232	붕해	붕해(정제, 캡슐제, 과립제, 환제, 좌제 등이 시험액 안에서 정해진 조건 아래 규정시간 안에 녹거나 흩어지는 것)
233	비가식 부분	비가식 부분(통상적으로 식용으로 섭취하지 않는 원료의 특정부위)
234	비나스	비나스(Vinnase: 사탕수수나 사탕무에서 알코올 생산 후 남은 찌꺼기)
235	비망계정	비망계정(어떤 경제활동의 발생을 기억하기 위해 기록하는 계정)
236	비육 상태	비육상태(살이 붙은 상태)
237	비치사적	비치사적(죽음에 이르지 않는 정도)
238	빌지킬	빌지킬(Bilge Keel: 선박이 흔들리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측과 선저를 잇는 만곡부에 설치된 얇고 긴 판)
239	빙붕	빙붕(氷棚: 바다에 떠 있는 두꺼운 얼음 덩어리), 빙봉(氷棚: 육상의 얼음과 연결되어 바다에 떠 있는 규모가 큰 얼음덩어리)
240	사경	사경(寫經: 불교의 교리를 손으로 베껴 적은 경전)
241	사미	사미(死米: 부피의 75% 이상이 분상질 상태인 낱알)
242	사분	사분(砂分: 사염화탄소(CCl4)비중선별법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무게 퍼센트(%)로 나타낸 것)
243	사양관리	사양관리(알맞은 영양소를 공급하여 잘 자라고 생산을 잘하도록 하는 일련의 활동)
244	사이드포트	사이드포트(하역을 위한 선체 옆면 출입구)
245	사일로	사일로(사료용 및 가공용 곡물 등을 저장하는 탱크형 저장시설) ☹

번호	정비 대상 용어	권고안
246	사장교	사장교(비스듬히 드리운 케이블로 상판을 지탱하는 다리)
247	사지의 단(單)마비가 인정되는 사람	팔다리의 일부가 마비된 사람
248	산가	산가(酸價: 지질 1그램을 중화하는 데 필요한 수산화칼륨의 밀리그램(mg) 수를 말하며, 결합형태로 있지 않은 분리된 지방산의 양을 말함)
249	산악파	산악파(山岳波: 기류가 산을 넘을 때 생기는 대기 중의 파동)
250	산자	산자(撒子: 가는 나뭇가지를 엮어 지붕 서까래나 고미가래 위를 덮는 것)
251	상박골 과부	위팔뼈 관절용기(위팔뼈의 등근부분으로 팔꿈치관절에 닿는 부분) ㉞
252	상악기저골	위턱 기저골(이부리의 골 부위를 둘러싸고 있는 뼈)
253	상전장골극	상전장골극(上前腸骨棘: 골반뼈 옆에 튀어나온 뼈)
254	상제	상제(喪制: 상중에 있는 사람) [* '상례에 관한 제도'의 의미로 쓰일 경우 '상제(喪制)']
255	상하악 절치절단연간	상하악 절치절단연간(위턱, 아래턱 양쪽 첫 번째 앞니 사이)
256	상호대차	상호대차(相互貸借: 도서관 간에 도서관자료를 상호교류하는 것)
257	색대	색대(가마나나 섬 속에 들어있는 곡식 등의 물건을 찢어서 빼내어 보는 데 사용하는 기구)
258	생장추	생장추(Increment borer: 목질화된 줄기의 일부를 채취할 때 쓰는 송곳 같은 기구)
259	서각	서각(書刻: 글과 그림을 새겨 넣는 것)
260	서지	서지(surge: 전류·전압 등의 과도 파형)
261	서지보호장치	서지보호장치[서지(surge: 전류·전압 등의 과도 파형)로부터 각종 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
262	서지설비	서지설비(전류·전압 등이 순간적으로 크게 증가할 때 증가한 전류·전압으로부터 시설 등을 보호하는 설비)
263	석빙고	석빙고(石氷庫: 돌로 만든 얼음 창고)
264	석성	석성(石城: 돌로 쌓은 성)
265	석표	석표(石標: 마을 등 영역의 경계를 표시하는 돌로 만든 팻말)
266	선가대	선가대(선박을 땅 위로 끌어 올려놓을 수 있는 구조물 및 설비)
267	선량당량	선량당량(인체의 방사선 흡수선량)
268	선석	선석(선박을 매어두는 위치)
269	선진천공	선진천공(先進穿孔: 탐사 등의 목적으로 갱도개설 전 미리 구멍을 뚫는 작업)
270	선하역사	선하역사(시설이 선로 아래 설치되는 역사)
271	설물	작업설(생산 공정에 투입되는 제품을 만들고 남은 부분)
272	설치제원	설치제원(諸元: 시설의 성능과 특성을 나타낸 수치 지표)
273	성토면	성토면(흙쌓기한 면)
274	성토부	성토부(흙쌓기를 한 부분)
275	성토지	성토지(흙쌓기를 한 땅)
276	세굴	세굴(洗掘: 단면이 물에 의해 깎이는 현상)
277	세균분리동정용	세균분리동정(同定: 생물 분류학상의 소속이나 명칭을 바르게 정하는 일)용
278	세륜시설	세륜시설(바퀴 등의 세척시설)
279	세립제	세립제(細粒劑: 가루 제제의 대체형으로 매우 잔 알갱이 제제)
280	세맥	세맥(細麥: 맥주보리를 체는 크기가 2.2mm인 세로논의 판체로 쳤을 때 통과하는 낱알)
281	소단	소단(小段: 비탈면의 경사를 완화시키기 위해 중간에 좁은 폭으로 설치하는 평탄한 부분)
282	소인	소인(燒印: 열에 달구어 찍는 도장)
283	소택지	소택지(沼澤地: 늪과 연못으로 둘러싸인 습한 땅) ㉞

번호	정비 대상 용어	권고안
284	손틀방류	손틀방류(틀에 손잡이를 달아 사람이 직접 잡고 바닥을 긁어 조개류 등을 채취하는 도구류)
285	송기식마스크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286	수기(手技)치료	수기치료(기구나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치료하는 방법)
287	수동아크용접기	수동 아크용접기(방전 시 발생하는 불꽃을 이용한 용접기)
288	수득률(收得率)	수득률(손실을 제하고 실제 활용한 비율)
289	수로도지	수로도지(水路圖誌: 항해와 해양에 관한 각종 정보를 수록한 도면)
290	수리상수	수리상수(水理常數: 지하 수류의 침투 또는 투수에 관한 흙의 성질을 대표하는 계수)
291	수리지질	수리지질(水理地質: 땅속의 물 특히, 지하수와의 관련성 측면에서의 지질)
292	수면부상성	수면부상성(水面浮上性: 물 표면에 떠오르는 성질)
293	수면전개제	수면전개제(水面展開劑: 이동형 액체 제제)
294	수밀	수밀(액체가 통하지 않게 밀봉하는 것) 수밀(액체가 새지 않도록 밀봉되어 있는 상태) 수밀(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은 것)
295	수밀 격벽	수밀 격벽(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칸막이벽)
296	수밀○○	수밀○○(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 수밀○○(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는 ○○)
297	수밀격벽판	수밀 격벽판(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칸막이벽의 판)
298	수밀성	수밀성(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성질)
299	수복지구	수복지역(한국전쟁 정전협정에 따라 북위 38도 이북 중 대한민국에 편입된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
300	수장	수장(綬章: 포상할 때 주는 끈과 배지)
301	수장공사	수장공사(건축물 내부 마무리 공사)
302	수준	수준(水準: 각 지점 간 상대적 높이 또는 평균 해수면으로부터의 높이)
303	수치	수치(綬織: 포상 시 수여하는 끈으로 된 깃발)
304	스위프 사이클	스위프 사이클(규정된 주파수 범위를 한 번 왕복하는 것)
305	스컴	스컴(scum: 하수나 폐수에서 발생하는 가스로 인해 물 위나 물속에 떠다니는 찌꺼기 등)
306	스크래퍼	스크래퍼(표면의 먼지를 긁어서 제거하는 사설) [외래어 표기법] 스크레이퍼
307	스크러버	스크러버(가스 속에 떠다니는 고체 또는 액체 입자를 모으는 장치) ㉠
308	스크레이퍼	스크레이퍼(scraper: 흙을 절삭·운반하거나 펴 고르는 등의 작업을 하는 토공기계)
309	스테빌라이즈	스테빌라이저(원유 등에 함유된 부탄보다 낮은 끓는점의 성분을 증류로 제거하여 증기압 조절을 하기 위한 정류탑)
310	스토마커	스터머커(stomacher: 자동으로, 재료를 잘게 부수어 걸쭉한 상태의 액체로 만드는 기기)
311	슬내장	속무릎장애(슬내장: 외상성 무릎관절 통증)
312	슬라롬	슬랄롬(Slalom: 장애물을 피해 지그재그로 움직이며 통과하는 주행)
313	슬랫	슬랫(slat: 양력 증대를 위해 비행기 주날개 앞부분에 설치되는 작은 날개)
314	습식착암	습식착암(濕式鑿巖: 액체를 써서 바위 뚫기)
315	승모판	승모판(원심실과 원심방 사이의 판막)
316	승탑	승탑(僧塔: 고승의 사리를 모신 탑)
317	실린더몰드	실린더몰드(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를 시험하기 위하여 일정 규격의 시험용 물체를 만드는 기구)
318	시유	시유(원유를 가공처리 하여 시중에서 판매하는 우유) ㉠
319	시작품	시작품(제조공정이 아닌 연구소나 실험실에서 제작한 제품)
320	시제품	시제품(제조공정에서 제품 품질을 시험하기 위한 제품) ㉠
321	신장도	신장도(伸張度: 늘어나는 정도)

번호	정비 대상 용어	권고안
322	실속속도	실속속도[실속(失速: 비행기를 띄우는 양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속도]
323	실역미필보충역	현역군을 제외한 보충역, 실역미필보충역(군복무를 마치지 못한 보충역)
324	심근교	심근교(심장 표면을 주행하는 관상동맥이 심장근육 속에 들어가 있는 경우)
325	심낭삼출	심낭삼출(심장막과 막 사이의 공간에 피 등 수분이 차는 질환)
326	아스팔트샌드	아스팔트샌드(모래와 아스팔트의 혼합물)
327	아스팔트프라이머	아스팔트 프라이머(아스팔트를 휘발성 액체로 녹인 것), 아스팔트 프라이머(표면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
328	아크용접	아크용접(방전 시 발생하는 불꽃을 이용한 용접)
329	아포스티유	아포스티유(Apostille: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 요구 폐지 협약)
330	안강망	안강망(조류가 빠른 곳에 어구를 고정해 놓고 조류의 힘에 의해 어군이 자루그물 속에 들어가게 하는 강제 함정어구)
331	안와격리증	눈골격 격리증(두 눈을 감싸고 있는 뼈 사이가 정상보다 멀리 있는 질환)
332	안전광주	안전광주(경내외 주요시설(경도 포함)의 안전을 위해 채굴하지 않고 남겨두는 광체 기둥)
333	알캡톤노증	알캡톤노증(알캡톤을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대사장애 질환)
334	암거	암거(땅속 또는 구조물 속 도랑), 땅속이나 구조물 밑으로 낸 도랑 형태
335	암문	암문(暗門: 망루 없이 만든 문)
336	압인	압인(押印: 도장을 찍음), 압인(押印: 도장을 눌러 찍음)
337	압인	압인(壓印: 찍힌 부분이 도드라져 나오거나 들어가도록 만든 도장)
338	압출마감	압출마감(틀이나 좁은 구멍으로 눌러서 밀어내는 방법으로 표면을 마무리하는 공법)
339	액면계	액면계(용기 속의 액체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340	앵커	앵커(anchor: 구조물과 지반을 결합하는 정착체)
341	야영덱	야영덱(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
342	약장	약장(略章: 약식의 훈장, 휘장, 문장 등) ㉞
343	양로기	양로기(揚路機: 레일틀을 드는 기구)
344	양륙	양륙(선박으로부터 수산물 및 화물 등을 육상으로 옮기는 것), 양륙(선박으로부터 수산물 등을 육상으로 옮기는 것)
345	양륙량	양륙량(선박으로부터 수산물 등을 육상으로 옮긴 양), 양륙량(선박으로부터 수산물 및 화물 등을 육상으로 옮긴 양)
346	양륙항	양륙항(선박으로부터 수산물 및 화물 등을 육상으로 옮기는 항)
347	양묘기	양묘기(달줄을 감거나 푸는 기계)
348	양묘포지	양묘포지(養苗圃地: 묘목을 생산 및 관리하여 배출하는 곳)
349	양생조	양생조(養生槽: 균기 전 콘크리트 보호·관리 탱크)
350	양정	양정(揚程: 펌프가 물을 퍼 올리는 높이)
351	양중작업	양중작업(들어 옮기는 작업)
352	에이엘티검사, ALT	ALT(간기능검사 중 하나) 검사 ㉞
353	에이엠에이	미국의학협회(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354	에폭시라이닝	에폭시라이닝(epoxy lining: 침식 및 부식 방지를 위해 재료의 접촉면에 에폭시 접착제를 대는 일)
355	여수로	여수로(餘水路: 물이 일정량을 넘을 때 여분의 물을 빼내기 위하여 만든 물길) ㉞
356	여압	여압(기내 공기 압력을 지상과 가깝게 조절·유지하는 것)
357	역치	역치(閾值: 생물체가 자극에 대한 반응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자극의 세기를 나타내는 수치)
358	연기식	잇따라 적는 방식으로 된

번호	정비 대상 용어	권고안
359	연도교	연도교(連島橋: 섬과 섬 사이를 잇는 다리)
360	연륙교	연륙교(連陸橋: 육지와 섬을 잇는 다리), 연륙교(連陸橋: 육지와 섬을 이어주는 다리)
361	연부연납	연부연납(세금 신고기한 경과 후 장기간 분할납부하는 것)
362	연승	연승(긴 줄에 여러 개의 낚시를 달아 물고기를 잡는 도구) ㉞
363	연신	연신(원료를 가늘게 늘이는 공정)
364	연주소	연주소(방송사항의 제작·편성 및 조정에 필요한 설비와 그 종사자의 총체)
365	열간압연	열간압연(熱間壓延: 금속재료를 재결정온도 이상에서 하는 압연)
366	열매체유	열매체유(열 전달에 이용하는 합성유)
367	영구	영구(靈柩: 시신을 담은 관)
368	영인	영인(影印: 원본을 사진 등의 방법으로 복제한 것)
369	예상 상병기간	부상 및 질병의 치유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370	예시장	예시장(경주 전 출주마의 상태를 관객이 확인할 수 있는 장소)
371	예항	예항(끌고 비행하는 것) ㉞
372	예항줄	예항줄(항공기 등을 끌고 비행하기 위한 줄)
373	오실로스코프	오실로스코프(입력전압의 변화를 화면에 출력하는 장치),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 전압의 변화를 화면으로 보여주는 장치), 오실로스코프(변화가 심한 전기 현상의 파형을 눈으로 관찰하는 장치)
374	오토 데시케이터	자동 데시케이터(물질 건조, 흡습성 시료 보존을 위한 유리 건조기)
375	와공	와공(기와를 해체하거나 이는 사람)
376	와전류검사	와전류검사(와전류를 이용한 결함 검사)
377	와편담	와편(瓦片)담(진흙과 깨어진 기와 조각으로 쌓은 담)
378	외전거상	바깥쪽으로 돌려 위로 올리기(외전거상)
379	외화획득률	외화획득률(외화획득액에서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㉞
380	요붕증	요붕증(尿崩症: 소변이 지나치게 많이 나오는 병)
381	요크	바대(잘 해지는 곳에 안으로 덧대는 것)
382	용골	용골(선박 바닥 중앙의 길이 방향 지지대)
383	용선로	용선로(鎔銑爐: 무쇠를 녹이는 가마)
384	용재림	용재림(用材林: 재목을 이용할 목적으로 가꾸는 나무숲)
385	용지도	용지도(토지의 용도를 기록한 지도)
386	우세시정	우세시정(prevaling visibility: 평명한 지역의 절반 이상의 범위에서 형상을 식별할 수 있는 최대거리)
387	우제류	우제류(偶蹄類: 소, 돼지, 양, 염소, 사슴 및 야생 반추류 등과 같이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
388	운고	구름고도(Ceiling: 하늘의 5/8 이상을 가리는 최하층 구름고도) ㉞
389	원원잠종	원원누에씨(새로운 품종의 누에씨 중 최초로 생산되는 종자) ㉞
390	월대	월대[月臺: 궁궐 또는 향교 등 주요 건물 앞에 설치하는 넓은 기단 형식의 대(臺)]
391	위성탑재체	위성 탑재체(搭載體: 정찰, 통신, 지구 탐사, 기상예보 따위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탑재되는 위성체의 구성 부분)
392	원치	원치(중량물을 끌어올리거나 당기는 기계설비)
393	윗 인방	위 인방(引枋: 문이나 창 아래나 위로 가로질러 설치하여, 상부 무게를 받치도록 하는 구조물)
394	윙렛	윙렛(winglet: 비행기 주날개 끝에 수직 또는 거의 수직으로 부착하는 작은 날개)
395	유결화제	유결화제(기름을 굳게 하는 물질)

번호	정비 대상 용어	권고안
396	유경식피술	유경피부이식술(피부·피하조직을 전부 잘라내지 않고 일부를 남기고 이식하는 방법), 유경식피술(피부의 혈행을 보존한 채로 이식하는 수술)
397	유구	유구(遺構: 옛 구조물의 흔적)
398	유리게이지	유리측정기(Gauge Glass: 수면이나 유면의 높이를 측정하는 유리로 된 기구)
399	유리골편	유리골편(遊離骨片: 따로 떨어진 뼈 조각)
400	유병율	유병률(특정 기간 동안 일정한 지역에서 나타나는 인구당 환자 수의 비율을 말함)
401	유산양	유산양(乳山羊: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염소)
402	유소견자	질병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403	유수수량	유수수량(有收水量: 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을 통하여 공급한 총급수량 중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수량)
404	유압 유닛	유압 유닛(油壓 unit: 높은 압력의 기름을 빼낼 수 있도록 한 장치)
405	유제	유제(油劑: 물에 녹지 않는 액체 제제)
406	유탁제	유탁제(乳濁劑: 용매에 잘 녹지 않는 물질을 용매에 잘 분산시키기 위해 넣는 용액)
407	유하거리	유하거리[하천·호소(湖沼)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오는 방향으로 잦 거리 ㉞]
408	육림	육림(育林: 인공적으로 숲을 가꾸는 것)
409	육종실	육종실(育種室: 품종 개량 및 개발 연구 공간)
410	윤거	윤거(좌우 바퀴 폭의 중심선 사이 거리) ㉞
411	음압격리	음압격리(陰壓隔離: 병실 내부의 기압을 떨어뜨리는 등의 높은 수준의 격리)
412	음압기계	음압기계(병실 내부 기압을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기계)
413	음압병실	음압병실(병실 내부 기압을 인위적으로 떨어뜨려 병균, 바이러스가 밖으로 퍼져나가지 않도록 설계한 병실)
414	음압시설	음압시설(병실 내부 기압을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시설), 음압시설(陰壓施設: 방 안의 기압을 낮춰 내부 공기가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설비)
415	의사증	의사증(전염성 질병으로 의심되는 병)
416	의사환축	의사환축(擬似患畜: 임상검사, 정밀검사 또는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
417	이료과목	이료과목(안마, 마사지, 지압 등의 수기요법과 전기치료, 침구 등의 자극요법 등을 포함한 과목)
418	이성화	이성화(異性化: 화합물을 형성하는 분자를 다른 물체로 변화시키는 화학반응)
419	이접안용예선	이안·접안용 예인선(선박을 육지에 대거나 떨어뜨리는 용도로 사용되는 선박)
420	이종곡립	이종곡립(異種穀粒: 해당 곡종 외의 다른 곡립)
421	이환 축사	이환(罹患)축사(가축전염병에 걸린 동물을 격리해 놓은 축사)
422	인공어초시설	인공어초시설(바닷속 동식물의 번식을 돕는 인공시설)
423	인레이	인레이(Inlay: 충치 부분을 제거한 후에 인공물로 속을 채우는 시술)
424	인발제품	인발제품(금속관 등의 끝부분을 끌어당겨 지름, 관벽 두께를 감소시킨 제품)
425	인버터	인버터(직류전력을 교류전력으로 변환하는 장치)
426	인습기	인습기(인력으로 소량의 벼껍질을 벗겨 내는 기구)
427	인영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 인영(印影: 도장에 새겨지는 모양)
428	임팩트해머	임팩트해머(충격 효과를 주는 망치)
429	입식	입식(入殖: 가축의 사육시설에 새로운 가축을 들여놓는 행위), 입식(시설에 새로운 가축 등을 들여놓는 것)
430	입식량	입식량(○에 새로운 ○을 들여놓는 양)

번호	정비 대상 용어	권고안
431	입식일	입식일(○○에 새로운 ○○을 들인 날짜)
432	입식제한	입식제한(○○에 새로운 ○○을 들여놓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
433	입제	입제(粒劑: 작은 알갱이 형태 제제)
434	입형	입형(粒形: 낱알의 생김새 또는 모양새)
435	자가채종	자가채종(自家採種: 자급용 종자를 농가에서 직접 생산하는 것)
436	자동방화뎀퍼	방화뎀퍼(화재 시 연기 등을 차단하는 장치)
437	자분탐상검사	자분탐상검사(자기를 이용한 결함 검사)
438	자분탐상시험기	자분탐상시험기(자기를 이용한 결함 조사기)
439	자이로식 계기	자이로식 계기(회전축이 수평 위치로 유지되어 항공기 선회나 자세 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고 방향, 위치, 수평 상태 등을 표시하는 기기)
440	작열통	작열통(灼熱痛: 불에 타는 듯이 따갑고 아픈 통증) ㉞
441	잔교	잔교(선박을 매어두거나 부두에 달도록 구름다리 형태로 만든 구조물), 잔교(棧橋: 선박이 부두에 달도록 구름다리 형태로 만든 구조물), 잔교(棧橋: 다리모양의 구조물)
442	장기선수수익	장기 선수수익(先受收益: 대가의 수익은 이루어졌으나 수익의 귀속시기가 ○○ 이후인 수익)
443	장기수	장기수(長期樹: 오랜 기간 가꾸어야 하는 나무)
444	장기응력	장기응력(연속적으로 작용하는 힘에 의한 변형력)
445	장안소	장안소(출주마가 경주에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장소)
446	재배포장 시험	재배 포장시험(圃場試驗: 밭 등에서 이루어지는 시험)
447	재번조품	재번조품(再繁殖品: 다시 구운 도기와 자기)
448	저녹스버너	저녹스버너(연소조절에 의한 방법으로 질소산화물 발생을 억제하는 버너)
449	저류조	저류조(빗물, 하수, 오수 등을 모아두기 위해 설치하는 큰 통)
450	저류지	저류지(배수로를 따라 모여드는 물을 관개에 다시 쓰기 위하여 모아두는 곳)
451	저서생물	저서생물(低棲生物: 바다·늪·하천·호수 따위의 밑바닥에 사는 생물)
452	저시정	저시정(식별 가능 최대 거리가 짧은 것)
453	저작 시	음식물을 씹을 때
454	적응증	적응증(適應症: 적용대상 질병이나 증상) ㉞
455	적응증상	적응증상(適應症狀: 적용대상 질병이나 증상)
456	전(塹)	전돌(塹壕: 흙으로 구워 만든 벽돌)
457	전돌	전돌(塹壕: 흙으로 구워 만든 벽돌)
458	전력구	전력구(전기 관련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지하 시설물)
459	전리방사선	전리방사선(電離放射線: 물질을 통과할 때에 이온화를 일으키는 방사선) ㉞
460	전보	전보(塡補: 부족한 부분을 채워 보상하는 것)
461	전살	전살(電殺: 전기를 이용한 살처분 방법)
462	전석	전석(轉石: 굴러 내릴 위험이 있는 돌)
463	전선열화검사	전선열화검사(電線劣化檢査: 전선을 대상으로 외부적·내부적 영향에 따른 화학적·물리적 변화를 측정하는 검사)
464	전세품	전세품(傳世品: 전해져오는 물품)
465	전양정	전양정(全揚程: 펌프가 물을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높이의 총합)
466	전자기 클램프	주 전선을 따라 이동하며 전자기를 측정하는 기기
467	전적	전적(典籍: 글과 그림을 기록하여 묶은 책)
468	전축담	전축(塹築)담(벽돌로 쌓은 담)

번호	정비 대상 용어	권고안
469	전축분	전축분(博築墳: 벽돌을 쌓아 올린 무덤)
470	전축성	전축성(博築城: 벽돌로 쌓은 성)
471	전탑	전탑(博塔: 벽돌로 쌓은 탑)
472	절개배농	절개하여 고름을 빼내는 방법(절개배농)
473	절건비중	절건비중(골재가 완전 건조 상태일 때의 비중)
474	절성토랑	절토·성토랑(땅깎기·흙쌓기를 한 양)
475	절연유 산가 측정기	절연유 산가 측정기(절연유의 산화 정도를 분석하는 기기)
476	절토	절토(땅깎기 공사로 발생한 흙) ☹
477	절토면	절토면(땅깎기를 한 면)
478	절토부	절토부(땅깎기를 한 부분)
479	절·성토면, 절성토면	절토·성토한 면(땅깎기·흙쌓기한 면)
480	절·성토사면, 절토·성토사면	절토·성토한 비탈면(땅깎기·흙쌓기한 비탈면) ☹
481	점성토	점성토(찰기가 있는 흙)
482	접도	접칼(나무를 접붙일 때 쓰는 칼)
483	접적지구	접적지역(군사분계선에서 12킬로미터 이내 지역)
484	접촉조	접촉조(接觸槽: 폐수를 염소 등의 약품과 접촉시키기 위한 탱크)
485	정격	정격(기기의 사용조건 및 성능의 범위)
486	정립	정립(整粒: 미곡류·맥류·두류(콩류)·잡곡류 등의 건전립(건실하고 정상인 낱알))
487	정반	정반(기계 부분품의 조립·검사 등에 사용되는 평면판)
488	정백률	정백률(精白率: 일정량의 맥류를 도정했을 때 백미가 생산되는 무게비율)
489	정변위압축기	정변위압축기(기체의 용적을 압축하는 기계)
490	정유	정유(精油: 식물에서 얻는 휘발성 기름)
491	정장	정장(正章: 약식이 아닌 정식으로 된 훈장이나 문장 등)
492	제관시설	제관시설(관을 만드는 시설)
493	제와장	제와장(전통 한식기와의를 만드는 일을 하는 장인)
494	제원	제원(諸元: ○○의 치수나 무게 등의 성능과 특성을 나타낸 수적 지표) ☹
495	조곡선	조곡선(간곡선 사이에 굽는 촘촘한 점선)
496	조사	조사(照射: 빛을 쬐는 것)
497	조사료	조사료(단백질, 전분 등이 적고 섬유질이 많은 사료) ☹
498	조섬유	조섬유(粗纖維: 식품분석에서 산과 알칼리로 일정하게 처리하고 남은 물질)
499	조쇄	조쇄(캐넌 광석을 초벌로 깨는 일)
500	조위	조위(조수에 의한 해수면의 높이)
501	조유지	조유지(潮遊地: 방조제 인쪽의 유수나 방조제 바깥쪽에서 유입된 바닷물을 임시 저장하는 곳)
502	조재	조재(벌채한 나무를 마름질하여 재목을 만듦)
503	조제유류	조제유류(調製乳類: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고, 이에 영유아의 성장 발육에 필요한 영양성분을 첨가하여 모유의 성분과 유사하게 가공한 것)
504	조차장소	조차장소(操車場所: 자동차를 돌리는 등 자동차를 다루는 장소)
505	족근중족관절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발등뼈와 발목을 이어주는 관절) ☹
506	종격동	종격동(좌우 흉막강 사이에 있는 부분) ☹
507	종균대	종균대(種菌代: 씨로 쓸 흙씨나 평이실 등의 대금)

번호	정비 대상 용어	권고안
508	종이배지	종이배지(영양소가 함유되지 않은 종이로 수분만을 별도로 공급하여 종자가 발아하는지를 검사하는 데 사용하는 것)
509	중하중	중하중(縱荷重: 일시적으로 가해지는 하중)
510	좌전굴 측정기	좌전굴 측정기(앉아서 뒷몸을 앞으로 굽히는 동작을 측정하는 기기) (순)
511	좌창	좌창(겉으로는 상처가 없으나 속의 피하 조직이나 장기가 손상된 부상)
512	주련	주련(柱聯: 기둥 장식 글귀)
513	주상골	손배뼈(손목 관절에서 엄지 쪽에 위치하는 손목뼈의 하나)
514	주상골	발배뼈(발목 관절에서 엄지 쪽에 위치하는 발목뼈의 하나)
515	주정계	주정계(원유 신선도 시험을 위해 원유와 알코올의 응고 여부 관찰을 위한 도구)
516	주정음료	주정음료(에틸알코올 희석이나 불순물 정제를 거친 주류)
517	중도리	중도리(서까래 중간을 받치는 수평의 도리)
518	중족지관절	발허리발가락관절(중족지관절, 발허리뼈의 둥근 머리와 발가락뼈 첫마디뼈의 오목한 바닥 사이의 관절) (순)
519	증기양생	증기양생(증기를 뿌리면서 굳히는 일)
520	증답용구	증답용구(贈答用具: 편지 등을 주고받는 데 쓰는 용구)
521	증착시설	증착시설(진공 속에서 금속 등을 가열하여 증기로 만들어 다른 물체에 부착시키는 시설)
522	증환지	증환지(增換地: 당초 권리면적보다 면적을 늘려 토지를 교환하는 것), 증환지(增換地: 당초 권리면적보다 많은 면적으로 환지받는 것)
523	지대관	지대관(支臺冠: 틀니를 지지하는 치아에 금속관을 씌운 것)
524	지대주	지대주(支臺柱: 인공치관과 인공치근을 연결하는 구조물)
525	지압응력	지압응력(支壓應力: 두 물체의 접촉면에 압력이 가해질 때 생기는 내부 저항력)
526	지역	지역(地役: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에 이익이 되도록 사용하는 일)
527	지육	지육(枝肉: 도살하여 머리, 내장, 발을 잘라 내고 아직 부위별로 나누지 않은 고기), 지육(枝肉: 머리, 내장, 발을 잘라 내고 아직 부위별로 나누지 않은 고기), 지육(枝肉: 머리, 꼬리, 발 및 내장 등을 제거한 몸체)
528	지자기	지자기(지구에서 자기권계면까지 형성된 자기장)
529	지지부재	지지 부재(部材: 구조물의 뼈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재료를 가공한 것)
530	직선보간	직선보간(두 값을 기초로 그 값들 사이의 함수값을 구하는 근사계산법)
531	진구성 미정복	진구성 미정복(탈구된 관절이 만성화되어 회복되지 않는 상태)
532	진애검사	진애검사(먼지 등 이물질들을 측정하는 검사)
533	집전함	게임 테이블의 드롭박스(Drop box: 게임테이블에 부착된 현금함)
534	착빙	착빙(着氷: 공기 중에 냉각된 물방울이 얼음이 되어 항공기 기체에 달라붙는 현상)
535	착유우	착유우(분만 이후 우유를 생산하는 소)
536	창정비	창정비(Depot Maintenance: 대규모 정비시설 및 장비를 운영하여 수행하는 최상위 정비단계), 창정비(정비개념 중 완전복구와 재생정비가 목표인 최상위 정비단계)
537	채묘연	채묘연(조개 등의 종자를 붙인 줄)
538	채수기	채수기(물 퍼 올리는 기구)
539	채수포	채수포(採穗圃: 꺾꽂이·접목 등 영양번식을 위한 유전자의 채집을 목적으로 하는 수목원)
540	천연하중	천연하중(下種: 씨를 뿌리는 것)
541	천음속	천음속(遷音速: 물체 주위의 흐름 속에 음속 이하 부분과 음속 이상 부분이 공존할 때의 물체 속도)
542	첨포시험	첨포시험(貼布試驗: 접촉 피부염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원인 추정 물질을 몸에 붙여 반응을 조사하는 시험)

번호	정비 대상 용어	권고안
543	청력역치	청력역치(주파수별로 단순음을 들려주었을 때 각 주파수대에서 검사대상자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나 말)
544	체반폭	체반폭(양쪽 가슴지느러미 사이의 너비)
545	초례	초례(醮禮: 성년식에서 술을 마시고 주도를 훈계하는 행사)
546	초음파탐상시험기	초음파탐상시험기(초음파를 이용한 결함 조사기) ☞
547	최심하상	최심하상(하천의 가장 깊은 곳)
548	추체	추체(椎體: 척추뼈를 구성하는 원통형의 뼈)
549	축중계	축중계(軸重計: 하나의 축이 받는 무게를 재는 기계), 축하중계(하나의 축이 받는 무게를 재는 기계)
550	취입보	취입보(取入淤: 하천에서 관개용수를 수로에 끌어 들이기 위하여 만든 저수시설)
551	축대	축대(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옆 부분의 여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분리대 또는 갓길에 차도와 동일한 횡단경사 및 구조로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부분)
552	침사지	침사지(沈砂池: 모래나 흙 등을 가라앉히기 위한 못), 침사지(沈砂池: 흙이나 모래 등을 가라앉히기 위한 못)
553	칩스	칩스(Chips: 카지노에서 베팅에 사용되는 도구)
554	카운트룸	카운트룸[드롭박스(Drop box: 게임테이블에 부착된 현금함)의 내용물을 계산하는 계산실]
555	캐노피	캐노피(기둥으로 받치거나 매달아 놓은 덮개), 캐노피(기둥으로 받치거나 매달아 놓은 덮개를 말하며, 3면 이상에 벽이 없는 구조의 것)
556	캐스트코어	캐스트코어(cast core: 치아에 기둥을 세워 손상된 치아를 복구하는 치료 중 환자 맞춤형 치료)
557	캡스턴	캡스턴(에인용 줄을 감거나 푸는 기계)
558	켓 헤드, 켓 헤드	켓 헤드(cat head: 프론트 지브와 카운터 지브를 연결하는 부재)
559	커머	커머(단위 질량당 흡수된 전하입자의 운동에너지)
560	커튼월	커튼 월(칸막이 구실만 하고 하중을 지지하지 않는 외벽)
561	콜론	콜론(call loan: 초단기 자금 대여)
562	콤포비용	콤포(카지노사업자가 고객 유치를 위해 고객에게 숙식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 비용
563	콤포법 테스터	콤포법 테스터(Cobb Method Tester: 종이 또는 판지의 물 흡수도 시험기)
564	큐비클	큐비클(전기 기기, 수전·변전 설비 등을 둘러싼 구조물)
565	크레딧제공	크레딧(카지노사업자가 고객에게 게임 참여를 조건으로 칩스를 신용대여하는 것)제공
566	타각적	타각적(검사자가 대상자의 주관적 의사 표현 없이 증상을 확인하는 것), 타각적(대상자의 주관적 의사 표현 없이 증상이 확인되는 것) ☞
567	타각적 검사	타각적 검사(검사자가 대상자의 주관적 의사 표현 없이 증상을 확인하는 검사)
568	타이탬퍼	타이탬퍼(tie tamper: 철로 자갈 다지는 장비)
569	타진기	타진기(두드려 진단하는 기구)
570	탑재체	탑재체(搭載體: 정찰, 통신, 지구 탐사, 대기질 감시, 기상예보 등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성본체에 실은 장비)
571	탱화	탱화(幀畫: 부처, 보살, 성현을 그려 벽에 거는 그림)
572	터빈	터빈(높은 압력의 액체·기체를 날개바퀴의 날개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회전하는 힘을 얻는 기계)
573	토성	토성(土城: 흙으로 쌓은 성)
574	토크렌치	토크 렌치(torque wrench: 볼트와 너트를 규정된 회전력에 맞춰 조이는 데 사용하는 공구), 토크렌치(볼트와 너트를 규정된 회전력에 맞춰 조이는 공구) ☞
575	토탈 스테이션	토탈 스테이션(total station: 각도·거리 통합 측량기)
576	토탈 스테이션측량	토탈 스테이션측량(total station測量: 각도·거리 통합 측량기를 이용한 측량)
577	통선	통선(通船: 강과 바다를 오가는 배)

번호	정비 대상 용어	권고안
578	통재기둥	통재기둥(通材기둥: 이음없이 하나로 만들어진 기둥)
579	퇴구비	퇴구비(堆廐肥: 볏짚, 낙엽 등 부산물을 부숙시켜 만든 퇴비와 축사에서 나오는 두엄의 통칭)
580	투색총	투색총(줄을 쓰도록 만든 특수총)
581	투수성	투수성(透水性: 물이 스며들게 하는 성질)
582	트롤리	트롤리(trolley: 흙 등 운반 차량)
583	트윌직 능직	트윌직 능직(twill weave: 무늬가 비스듬한 방향으로 도드라지게 짠 옷감)
584	파이핑	파이핑(piping: 흙·모래 등이 깎여 땅속에 관 모양의 물길이 생기는 현상)
585	파지력	파지력(손으로 쥐었을 때의 힘)
586	판축담	판축(板築)담(판자 사이에 흙을 넣어 다진 담)
587	패스트로프	패스트로프(fast rope: 헬기가 착륙할 수 없는 지역에서 적에게 노출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전고리를 사용하지 않고 로프만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하강하는 방법)
588	팩토링어음	팩토링어음(기업이 상거래와 관련하여 취득한 어음을 팩터링 회사가 사들인 후 관리·회수하는 어음)
589	팩토링채권	팩토링채권(금융회사가 취득한 외상매출채권)
590	팬텀	팬텀(의료기기 성능 평가용 인체조직 모형)
591	페어링	페어링(fairing: 노출부의 보호 및 공기 저항력 감소를 위한 유선형 덮개)
592	편년	편년(編年: 고고학적 자료를 시간의 선후로 배열한 연대)
593	편지식	편지식(片持式: 기둥에 설치된 가로재에 표지판을 부착하는 방식)
594	평균휘도계	평균휘도계[광원(光源) 단위 면적당 밝기의 평균 측정기]
595	평판재하시험	평판재하시험(평평한 재하면에 하중을 가하고, 그 하중의 크기와 재하면의 변위 관계를 통해 지반의 지지력 등을 구하는 시험)
596	폐기선원	폐기선원(사용이 종료된 방사성동위원소)
597	폐확산능	폐확산능(폐로 유입된 공기가 혈액 내로 녹아드는 정도)
598	포방전	포방전(鋪方塲: 바닥에 까는 네모난 전돌)
599	포스트	포스트(post: 치아에 기둥을 세워 손상된 치아를 복구하는 치료 중 기성품 치료)
600	포스트-인레이	포스트-인레이(Post-Inlay: 심하게 손상된 치아에 기둥을 삽입하여 틀을 만든 후 인공물을 채우는 시술)
601	포장	포장(鋪裝: 길바닥에 돌과 모래 따위를 깔고 그 위에 시멘트나 아스팔트 따위로 덮어 길을 단단하게 다져 꾸미는 일) ㉠
602	포장시험	포장시험(圃場試驗: 발 등에서 이루어지는 시험)
603	포지	포지(圃地: 묘목을 생산 및 관리하여 배출하는 곳)
604	포헤드	포헤드(泡head: 포 소화제를 방출하여 불을 끄는 헤드)
605	포화잠수	포화잠수(飽和潛水: 특정 수심에서 잠수자의 신체가 더 이상의 기체를 흡수하지 않는 포화상태에서 필요한 만큼 머무를 수 있는 잠수방법)
606	폰툰부선	폰툰부선(선박을 정박할 수 있도록 수면 위에 인공적으로 설치해 놓은 부선)
607	풍력터빈	풍력터빈(풍력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장치)
608	풍하중	풍하중(바람으로 인하여 구조물에 발생하는 하중)
609	프라이머	프라이머(표면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
610	프론트 지브	프론트 지브[지브(크레인에서 물건을 매다는 팔 모양의 가로대)의 긴 부분]
611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콘크리트에 미리 압축응력을 주어 인장강도를 높인 것)
612	플로팅	욕조 안마(Floating Massage: 낮은 면의 노즐에서 분사되는 물로 다리나 허리 등을 마사지하는 것)
613	피그취급장치	피그(pig)취급장치(배관 내의 이물질 제거 및 이상 유무 파악 등을 위한 장치)
614	피토관	피토관(pitot tube: 기체나 액체의 흐르는 속도를 구하는 장치)

번호	정비 대상 용어	권고안
615	피트	피트(차량 하부의 검사, 정비 등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 설치된 구조물), 피트(대형 난방관이나 하수도관 등이 들어가는 망속 구조물) ㉸
616	피팅	피팅(fitting: 고정시키는 부품)
617	피판술	피판술(皮瓣術: 피부와 결손 부위를 덮는 수술)
618	하드우드 레이저 베닝	하드우드 레이저 베닝(단단한 목재에 레이저로 글자나 그림을 새기는 방법)
619	하지직거상검사	하지직거상(下肢直舉上: 다리를 뺀어 위로 올리는)검사
620	하퇴골	하퇴골(경강이뼈와 종아리뼈를 통틀어 이르는 말) ㉸
621	하퇴내과	하퇴내과(下腿內踝: 발목 안쪽의 복사뼈)
622	항문장	항문장(주둥이에서 항문까지의 길이)
623	항촉도엽번호	항촉도엽번호(항공기로 측량하여 축척별로 일정한 크기에 따라 분할한 지도에 부여한 일련번호)
624	해리성 대동맥류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
625	핸드홀	핸드홀(손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
626	헬기레펠	헬기레펠(helicopter rappel: 헬기가 착륙할 수 없는 지역에서 헬기에 로프를 매달아 20~40미터 상공에서 하강하는 방법)
627	현수교	현수교(주케이블과 보조케이블로 상판을 지탱하는 다리)
628	현수식	현수식(懸垂式: 기둥에 설치된 가로재에 표지판을 매다는 방식) ㉸
629	혈액배지	혈액배지(blood agar: 세균, 세포 등을 배양하기 위해 필요한 영양소에 혈액을 첨가하여 만든 액체나 고체)
630	혐기성	혐기성(嫌氣性: 산소가 없을 때 생육하는 성질)
631	호기성	호기성(好氣性: 산소가 있을 때 생육하는 성질)
632	호선	호선(弧線: 둥근 형태의 교정용 줄)
633	호스팅	호스팅(서버 대여, 운영 등의 서비스)
634	호안공	호안공(기습·독 침식방지시설 공사)
635	호퍼	호퍼(hopper: 밑에 깔때기 출구가 있는 큰 통), 호퍼(hopper: 깔때기 모양의 출입구가 있는 큰 통)
636	혼축성	혼축성(混築城: 돌과 흙을 섞어 쌓은 성)
637	활동	활동(滑動: 미끄러져 움직임)
638	활착	활착(活着, survival: 묘목을 옮겨 심고 난 뒤의 생존한 것), 활착(活着, survival: 나무를 옮겨 심은 뒤에 그 나무가 살아남음)
639	회선근개	돌림근띠(회전근개라고도 하며, 어깨관절을 감싸면서 어깨관절을 돌리는 네 근육), 돌림근띠(어깨관절을 감싸면서 어깨관절을 돌리는 네 근육의 힘줄) ㉸
640	회외	뒤침[回外: 손바닥이 위를 향한 상태가 되도록 움직이는 것] ㉸
641	회피기동	회피기동(escape manoeuvre: 장애물 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속력·경로를 바꾸며 움직이는 것)
642	획지	획지(劃地: 구획된 한 단위의 토지)
643	횡돌기	횡돌기(橫突起: 척추뼈에서 양쪽 옆으로 뻗은 돌기, 가로돌기) ㉸
644	훈격	훈격(공훈에 따른 훈장, 포장 등의 등급)
645	휘도	휘도(輝度: 광원의 단위면적당 밝기의 정도)
646	휘도계	휘도계[광원(光源)의 단위면적당 밝기 측정기]
647	흠	흠(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
648	흠후드	흠후드(fume hood: 급배기형 유해가스 정화장치) ㉸
649	흉골	복장뼈(가슴 한복판에 세로로 있는 짝이 없는 세 부분으로 된 뼈) ㉸
650	흡수클램프	주 전선을 따라 이동하며 방출되는 최대 무선 주파수 전력을 측정하는 기기

번호	정비 대상 용어	권고안
651	Anti-HCV 검사	Anti-HCV 검사(C형간염항체 검사) ☞
652	Anti-HIV type 1/2 검사	Anti-HIV type 1/2 검사(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 항체 유형 1/2 검사)
653	Anti-HTLV type 1/2 검사	Anti-HTLV type 1/2 검사(사람T세포림프친화바이러스 항체 유형 1/2 검사)
654	Bag-valve 마스크	백 밸브 마스크(bag-valve mask: 자동 팽창 환기 마스크)
655	Colles, Colles 골절	콜리스 골절(Colles fracture: 손목 관절의 2.5cm 이내 노뼈의 아래끝 골절), 콜리스골절(팔목 바로 위 노뼈가 부러져 손바닥이 등쪽이나 바깥쪽으로 돌아간 상태)
656	DSC 인코더	DSC(Digital Selective Calling: 디지털선택호출) 인코더 ☞
657	F.R.P 라이닝	F.R.P 라이닝(F.R.P lining: 침식 및 부식 방지를 위해 재료의 접촉면에 강화플라스틱 약품재를 대는 일)
658	HBsAg 검사	HBsAg 검사(B형간염표면항원 검사) ☞
659	Smith 골절	스미스골절(Smith fracture: 콜리스 골절의 반대로서 끝쪽 뺏조각이 앞쪽으로 튀어나온 노뼈 끝쪽 골절), 스미스골절(콜리스 골절의 반대로서 팔목 바로 위 노뼈가 부러져 뺏조각이 손바닥쪽으로 어긋난 상태)
660	Tail-Skid	꼬리 스킴드(tail skid: 항공기 꼬리 아래 장착되는, 지면 접촉 시 기체 손상 방지장치)



발 행 처 법제처
(www.moleg.go.kr)

발 행 일 2025년 12월

문 의 처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팀
044-200-6854

디자인·인쇄 행복한나무
02-324-7335

